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 長水史料



長水文化院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 長水史料

長水文化院





## 발 간 사

역사란, 지난날의 인류 사회에 있어서 흥망과 변천 과정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추려서 시공성을 가지고 체계화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공인하는 사료의 기록을 정사라고 한다면, 경향 각지에서 구전설화, 민담 등 사건들을 객관적인 판단보다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채록한 것을 야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조실록은 전제군주인 왕이 정치·경제·문화·군사 산업 등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사를 펴나가는 과정을 매일 일기 형식으로 사관에 의해 작성된 기록을 편찬한 왕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통치 행위를 서면화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방대한 실록 중에서 장수에 관한 사료들을 추출해 낸다면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수의 지난날의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전해오는 잘못된 기록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둘째, 내고장의 좋고 나쁜 과거의 사실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금번 발간하는 이 책자로 인해서 오도된 부분의 장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고 묻혀 있던 새로운 사실들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서책을 엮어내기까지 심혈을 경주해서 어려운 작업을 맡아 수고해 주신 동신대학교 오종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자를 펴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김상두 군수님, 김홍기 군의회 의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99년 11월

장수문화원장 김진영





## 우리 군민들에게 읽혀지기를 ...

—조선왕조실록에서 본 장수—

우리 고장 장수는 예로부터 뇌계 유희인 선생 같은 학문이 높은 문장가들과,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친 충의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장수가 중남부지방 산악권의 분지로 교통 왕래가 어려웠으니 자연 정치인들의 피난지가 되었고, 이 분들의 후손이 장수 지역의 학문의 한 맥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 곳 장수에서 난 인물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조선왕실과 장수가 관련지어진 일들이 적지 않게 실록에 남아있어 이 기록을 정리한 것은 보람있는 작업이며, 장수 역사서로 손색이 없다 할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장수의 기록을 재조명함으로써 비춰진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들에게 자긍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기에 훗날 역사적 기록을 담은 책으로 길이 간직되길 바라면서 그동안 자료를 수



집하고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신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1999년 11월

장수군수 김 상 두





## 축간사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장수의 사료—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천과 다양한 문화의 발달 속에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되새겨 우리 장수의 모습을 정립해 보는 일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의 참모습을 찾아서 우리 지역의 정통성을 재조명하고, 문화적 맥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진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과거사에 비취진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과 우리 고장의 문화적, 지리적인 여건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잊혀가는 향토 문화를 재인식함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재산이 되길 기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장수군을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미래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발전하여 21세기에는 역



사의 향기가 가득하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군민의 마음을 합하는 활력소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발굴하여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장수문화원 김진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11월

장수군의회 의장 김 홍 기



## 『朝鮮王朝實錄』의 長水史料에 대한 意義

문학박사 오 종 근

##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사료를 지역별로 소개한 책은 없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되어 100여 권이 넘는 책으로 완간되었다. 대개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 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이다. 1,893권 888책으로 필사본과 인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조실록’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무시하고 붙인 명칭으로서 정당한 것이 못된다.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국보 151호로 지정되었다. 25왕의 실록명칭 등 그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왕대	명 칭	권수	책수	편 찬 연 대
1	태 조 실 록	15	3	1413(태종13)
2	정 종 실 록	6	1	1426(세종8)
3	태 종 실 록	36	16	1431(세종13)
4	세 종 실 록	163	67	1454(단종2)
5	문 종 실 록	12	6	1455(세조1)
6	단 종 실 록	14	6	1469(예종1)
7	세 조 실 록	49	18	1471(성종2)
8	예 종 실 록	8	3	1472(성종3)
9	성 종 실 록	297	47	1499(연산군5)
10	연산군일기	63	17	1509(중종4)
11	중 종 실 록	105	53	1550(명종5)
12	인 종 실 록	2	2	1550(명종5)
13	명 종 실 록	34	21	1571(선조4)
14	선 조 실 록	221	116	1616(광해군8)
14	선조수정실록	42	8	1657(효종8)
15	광해군일기, 태백산본 정족산본	187	64	1633(인조11)
		187	39	1653(효종4)
16	인 조 실 록	50	50	1653(효종4)
17	효 종 실 록	21	22	1661(현종2)
18	현 종 실 록	22	23	1677(숙종3)
18	현종개수실록	28	29	1683(숙종9)
19	숙 종 실 록	65	73	1728(영조4)
20	경 종 실 록	15	7	1732(영조8)
20	경종개수실록	5	3	1781(정조5)
21	영 조 실 록	127	83	1781(정조5)
22	정 조 실 록	54	56	1805(순조5)
23	순 조 실 록	34	36	1838(헌종4)
24	헌 종 실 록	16	9	1851(철종2)
25	철 종 실 록	15	9	1865(고종2)



<표 1>에서 보듯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적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으로 축척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실록편찬시에 이용되는 사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 순으로 정리 작성해 둔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시에 사관들이 각각 작성해 둔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기관의 기록과 개인의 문집 등이었다.

그러나 후세에는 『비변사등록』, 『일성록』 또한 중요한 자료가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 만한 자료는 각 사관의 사초이다. 사관은 넓게는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이 바로 전임의 사관이였다. 이들 전임사관은 품계는 비록 낮았지만 청화한 벼슬로서 항상 궁중에 들어가 국가의 각종 회의에 빠짐 없이 참석하여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기 잘잘못 및 인물에 대한 비평, 그리고 기밀사무 등을 직필하였다. 따라서 각 사관들의 사초는 기밀을 요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춘추관에 두지 아니하고 사관들이 각각 간직하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출된 사료는 그 극비성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전제 왕권으로써도 이것은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필화사건, 즉 사화(史禍)가 일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같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실록이 어려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기 어려우므로 고전국역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국역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1968년 이후 태조에서 성종실록까지를,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 이후 연산군에서 명종까지의 실록을 이미 국역하여 간행하였고, 그 이후 실록도 두 기관에서 분담하여 모두 완역하였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미 실록 전체를 모두 국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는 철종 이후 고종·순종까지 이어지는데 고종·순종의 경우 그 실록의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지시를 받으며 이왕직(李王職)에서 편찬한 것으로서, 그 내용 가운데에는 왜곡 또는 허위의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철종까지의 실록과 구별하여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태조에서 철종까지의 실록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장수지방의 사료는 그것에서 원문과 관계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찾아냈으며, 다만 고종·순종에 대한 사료는 우리 나라에서 간행된 것이 없어서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의 『이조실록』에서 참고하여 원문과 내용을 참조하였다.

## 2

장수(長水)라는 옛이름으로 기록된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長水縣條의 연혁에 잘 나타나 있다.



本百濟兩坪縣新羅改高澤屬長溪郡 高麗改今名屬南原府恭讓王  
三年兼任長溪本朝 太祖元年 復祈爲長水縣兼長溪監務 太宗十  
四年例改縣監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151 지리지 장수현조에는

長水縣 本百濟兩坪縣 新羅改高澤縣爲長溪領縣 高麗長水縣爲  
南原府任內 本朝太祖元年 壬申復分爲長水縣與長溪郡兼監務  
太宗十四年 甲午置長水縣監

(장수현은 본래 백제의 우평현이었는데 신라에서 고택현으로 고쳐서 장계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에서는 장수현으로 고쳐서 남원부의 임내로 하였고, 본조 태조 원년 임신에 다시 나누어서 장수현으로 하여 장계군과 함께 감무를 겸하게 하였다. 태종14년 갑오에 장수현감을 두었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輿地圖書』, 『湖南邑誌』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내용이 후대 문헌의 기준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장수의 성씨(姓氏)에 대해서는 후대의 문헌과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표 2>

문헌 항목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 勝覽 (1528~1530)	輿地圖書 (1757~1765)	湖南邑誌 (1899)
토성 (長水)	李, 井, 高, 吳 (亡姓), 黃(續)	李, 吳, 井, 高, 林, 薛趙, 黃, (모두 續)	李, 黃, 吳, 金 (永山), 韓(清州), 朴(完山), 梁, 宋 (延安), 鄭, 孫, 柳, 全, 安, 高, 林, 尹, 洪, 姜, 陸, 丁, 崔(완 산), 俞, 張, 權, 西門, 趙, 蔡	李, 黃, 吳, 金, (永山), 韓(清 州), 梁, 鄭, 孫, 柳, 全, 安, 朴 (忠州), 宋(延 安), 金(咸昌), 朴(全州), 韓(錦 山), 陸, 洪, 崔, 姜, 尹, 俞, 黃 (昌原), 高, 西 門, 丁, 張, 蔡, 權, 宋(礪山)
토성 (長溪)	白, 裴, 柳, 吳, 玄, 金(續: 鄉吏)	白, 裴, 柳, 吳, 玄, 金(續)		
토성 (陽岳)	李, 崔	李, 崔		
토성 (梨方)	裴	裴		
복흥 (福興)		林, 芮, 趙, 李, 廉, 景, 扈		

위의 <표 2>에서 보듯 『조선왕조실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토성(土姓)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체계를 가졌는데, 이는 지역별로 성씨들의 귀천의 구별이 조선 초기에는 명확했다는 것인데, 조선시대 후기에 올수록 지역별로 분류체계가 없어져 貫鄉 체계가 뭉뚱그려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조선시대 후기 사회에 오면 신분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 토산물에서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감, 대추, 배(梨), 오미자, 석이, 인삼, 지초(芝草), 꿀, 밀(黃蠟), 자리(席) 등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오미자, 인삼, 자초(紫草), 석이버섯, 벌꿀, 감 등이고, 『輿地圖書』에서는 오미자, 석이, 자초, 봉밀, 자호 등이다, 그리고 『호남읍지』에서는 오미자, 자초, 벌꿀, 자호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토산물(土産物)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長水地方의 인구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에는 81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수는 3백20호이고, 군정은 시위군이 9명이고, 진군이 17명이고, 선군은 1백59명이고 방패(防牌)는 1명이다.

특히, 병조(兵曹)의 체계에 대한 변천 과정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① 문종 원년 9월 19일 : 군기감에서 염초(焰硝)를 구워내는 방법을 1도(道)의 1도회(都會)에서 염초를 구워내게 하고, 한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하도록 하였다.

[전라도는 4都會로 나누어 長水는 南原府都會에 속하게 하였다.]

- ② 단종 1년 6월 9일 : 여러 도(道) 도회소(都會所)에서 만드는 군기(軍器)가 일정하지 않아서 감련관(監鍊官)의 하는 데에 따라 백성들에게 폐단이 많으므로 변경시키다.

[전라도를 8都會所로 나누어 長水를 全州都會所에 소속시켜 갑(甲) 5부,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袋)·나도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



이다.]

- ③ 세조 1년 9월 11일 : 각 도 연해의 요해지(要害地)에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였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았기에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면 이를 막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근방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 좌익(左翼), 우익(右翼)으로 나누어 분속시켰다.

[전라도의 전주도(全州道)는 중익을 전주로 하여 3개 현을, 좌익은 금산을 중심으로 4개 현, 우익은 김제를 중심으로 3개 현이고, 남원도(南原道)는 중익에 남원을 중심으로 3개 현, 左翼은 長水를 중심으로 2개 현, 右翼은 순창을 중심으로 2개 현이다.]

- ④ 세조 3년 10월 20일 : 여러 도(道)의 중익, 좌익, 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였다.

[전라도는 7개 거진(巨鎭)으로 나누어 長水는 남원진(南原鎭)에 속하게 하였다.]

- ⑤ 세조 12년 7월 12일 : 장수 군기사(軍器寺)에는 향각궁(鄉角弓) 26장(張)이고, 마전(磨箭)·통전(筒箭)이 각각 13부, 장창(長槍) 8자루(柄), 중창(中槍) 18자루(柄), 환도(環刀) 26과(把), 궁현(弓弦) 52개이다.

- ⑥ 성종 1년 2월 3일 : 여러 군사가 정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액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고, 아울러 피폐하게 됩니다. 또 을유년에 충청, 전라, 경상도의 군사를 병적에 몰릴 때에 받



(田) 5결(結)로 한 정부(丁夫)에 준하고, 고공(雇工), 백정(白丁)을 아울러 계산하여 보(保)를 만들었으므로 그 액수는 비록 많으나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長水는 제색군사(諸色軍士)가 3백 78인데 지금은 3백 30으로 정했다.]

- ⑦ 성종 2년 2월 1일 : 제도의 군액(軍額)이 너무 많다. 병사는 많은 것보다 정한 것이 귀중하니, 재주를 시험하지 않은 조사는 그 수를 적당히 감하다.

[長水는 3백 78가운데에서 전에는 48을 줄여 3백 30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70을 줄여서 2백 60으로 정한다.]

- ⑧ 순조 11년 3월 30일 : 長水는 본래 순포(純布)로 수납하게 하였는데, 지난 신해년에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순전(純錢)으로 대납하였습니다. 그것은 면포가 귀할 때에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경장(更張)한 것에 불과하며, 이번에 도로 본색포(本色布)로 비납(備納)하게 한 것도 역시 주민들의 청원에서 나온 것이다.

- ⑨ 고종 8년 4월 29일 : 장수현에 화포군(火砲軍) 15명을 내왔다.

결국 ⑧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兵曹에 관한 長水地方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⑧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장수지방을 비롯한 곳곳의 지진이나 우뢰, 그리고 흉년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조선 후기 사회의 일면을 잘 나타내 주는



요소로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세금을 수납하게 하는 방안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③, ④는 이제까지는 바다는 바다, 육지는 육지의 형태로 방어에 충실했는데, 육지와 바다의 관계, 즉 수군과 육군의 방어체계를 공공히 하자는 상호 관련성 속에서 군비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 4

長水地方은 누가 뭐라고 해도 孝烈婦의 고장이요, 정절의 고장이다. 유교의 실천원리가 忠孝라면 조선시대 처음으로 향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 ① 중종 8년 4월 13일

長水居正兵張永孫之門(永孫則父母之喪廬墓三年不食鹽醬親辦祭物極盡誠孝)

장수에 사는 정병 장영손에게 정문을 내렸다.(영손은 부모의 상사에 3년 동안 시묘를 살면서 염장을 먹지 않았으며 제물을 판비하여 그 효성을 극진히 하였다.)

##### ② 중종 21년 7월 3일

長水縣幼學金敬孫父死不離殯側哀毀過禮漁獵養母質 供甘旨母年過百歲而死 敬孫年亦七十而三年 不離墓側啜粥哀毀家有急難足不到門



(장수현 유학 김경손은 아버가 죽자 빈소를 떠나지 않고, 몸이 바싹 여의어 예에 지나치게 슬퍼하였다.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 팔아 어미를 봉양하면서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렸기 때문에 백살이 넘어서야 죽었다. 경손의 나이도 70이었지만 3년 동안 물만 마시고 슬피 울면서 여묘살이를 했다. 그 간에는 집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않았다.)

③ 중종 23년 8월 21일

예조가 효자와 절부(節婦)들에 관하여 공사를 가지고 입계하니 정문(旌門)하였다.(長水幼學 金敬孫)

④ 영조 39년 8월 1일

命旌全羅道長水縣士人西門培妻鄭氏 良人林東三妻吳召史閭

(전라도 장수현의 사인 서문배의 아내 정씨와 양인 임동삼의 처 오소사 마을에 정표하라고 명하다.)

⑤ 정조 10년 11월 11일

旌烈女長水縣良女粉黛

(열녀 장수 양녀 분대에게 열녀문을 하사하다.)

⑥ 순조 12년 3월 13일

각 식년(式年)의 경외(京外)의 충·효·열의 문서를 정부에 보고했는데 등급을 나누어 초계(抄啓)하였다.

(孝子贈職秩: 장수 고 동지 金聖輔)



이러한 효자 장영손(張永孫), 김경손(金敬孫) 등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 『輿地圖書』, 『湖南邑誌』 등에서도 나타나는 바, 특히 충효를 실천하는 내용이 왕명에 의해서 증명되어 왕조실록에 의젓하게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장수지방의 여러 내용 가운데서도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옛부터 長水는 三節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다. 朱論介, 丁敬孫, 長水殉義吏 등이 그것이다. 역사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물은 시대가 낳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수는 忠孝者를 비롯한 孝烈婦가 많이 있다는 점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 차 례

- ◆ 발간사 ... 장수문화원장 / 3
- ◆ 축간사 ... 장수군수 / 5
  - ... 장수군의회회장 / 7
- ◆ 『조선왕조실록』의 長水史料에 대한 意義 / 9
- ◆ 조선왕조실록의 長水史料

### 태종 ..... 31

- 12년 9월 8일 / 31
- 16년 4월 29일 / 31

### 세종 ..... 32

- 4년 3월 9일 / 32
- 7년 12월 28일 / 32
- 9년 9월 15일 / 33
- 10년 7월 14일 / 34
- 12년 4월 18일 / 34
- 14년 6월 23일 / 36
- 16년 2월 4일 / 37
- 27년 7월 13일 / 38
- 30년 5월 21일 / 51
- 150지리지 / 경상도 / 진주목 / 안음현 / 52
- 150지리지 / 경상도 / 경상도 / 53



- 151지리지 / 전라도 / 전라도 / 64
- 151지리지 / 전라도 / 남원 도호부 / 79
- 151지리지 / 전라도 / 남원 도호부 / 장수현 / 83
- 151지리지 / 전라도 / 남원 도호부 / 진안현 / 85

 **문 종** ..... 87

- 원년 9월 19일 / 87
- 1년 6월 19일 / 94
- 2년 2월 8일 / 97

 **판 종** ..... 111

- 1년 6월 9일 / 111
- 2년 12월 28일 / 119
- 3년 4월 24일 / 120

 **세 조** ..... 121

- 1년 9월 11일 / 121
- 2년 1월 10일 / 133
- 3년 10월 20일 / 134
- 12년 7월 12일 / 139
- 14년 1월 7일 / 146

 **성 종** ..... 148

- 1년 2월 3일 / 148
- 2년 12월 26일 / 166
- 3년 2월 1일 / 167
- 7년 12월 9일 / 192
- 11년 3월 21일 / 193
- 13년 12월 12일 / 197



- 18년 5월 17일 / 198
- 22년 7월 4일 / 198



..... 206

- 8년 5월 28일 / 206



..... 207

- 8년 4월 13일 / 207
- 11년 9월 10일 / 208
- 12년 4월 1일 / 209
- 13년 4월 27일 / 210
- 14년 10월 6일 / 210
- 15년 4월 8일 / 211
- 15년 4월 13일 / 211
- 17년 4월 7일 / 212
- 19년 4월 10일 / 213
- 21년 7월 3일 / 213
- 23년 4월 14일 / 220
- 23년 8월 21일 / 220
- 25년 8월 19일 / 226
- 37년 7월 3일 / 226
- 37년 12월 22일 / 227
- 39년 2월 3일 / 228



..... 229

- 2년 4월 19일 / 229
- 2년 7월 5일 / 230
- 11년 9월 29일 / 231
- 12년 11월 30일 / 232
- 21년 7월 19일 / 233



 선 조

239

- 6년 9월 20일 / 239
- 11년 3월 28일 / 241
- 26년 6월 5일 / 242
- 26년 7월 20일 / 248
- 26년 11월 9일 / 251
- 29년 3월 4일 / 253
- 30년 10월 13일 / 259
- 30년 10월 21일 / 263
- 30년 11월 2일 / 265
- 30년 12월 16일 / 267
- 32년 8월 19일 / 269
- 34년 8월 5일 / 272
- 39년 11월 28일 / 273
- 선조수정실록 25년 7월 1일 / 276

 광 에

277

- 1년 2월 12일 / 277
- 2년 12월 28일 / 279
- 6년 7월 3일 / 280
- 10년 3월 25일 / 281
- 10년 3월 28일 / 282
- 10년 4월 19일 / 282
- 10년 4월 27일 / 284
- 14년 8월 15일 / 285
- 14년 8월 26일 / 287

 의 조

290

- 1년 4월 11일 / 290



- 2년 2월 11일 / 293
- 2년 7월 12일 / 293
- 3년 1월 17일 / 300
- 4년 3월 23일 / 301
- 6년 9월 15일 / 302
- 12년 2월 16일 / 307
- 17년 10월 8일 / 308



..... 309

- 3년 9월 6일 / 309
- 9년 4월 22일 / 309



..... 310

- 2년 8월 4일 / 310
- 7년 3월 5일 / 310
- 7년 9월 13일 / 311
- 10년 5월 28일 / 312
- 11년 4월 23일 / 312
- 현종개수실록 2년 8월 4일 / 313
- 현종개수실록 7년 2월 23일 / 313
- 현종개수실록 7년 3월 5일 / 323
- 현종개수실록 7년 9월 13일 / 324
- 현종개수실록 10년 5월 28일 / 324
- 현종개수실록 11년 4월 23일 / 325



..... 326

- 1년 2월 23일 / 326
- 4년 11월 19일 / 327
- 12년 9월 6일 / 327
- 12년 11월 29일 / 332



- 20년 5월 20일 / 354
- 21년 8월 1일 / 355
- 22년 2월 3일 / 356
- 27년 10월 24일 / 359
- 34년 2월 12일 / 367
- 37년 11월 5일 / 369
- 37년 11월 27일 / 372
- 40년 12월 27일 / 375
- 43년 6월 29일 / 375



..... 377

- 3년 11월 21일 / 377
- 경종개수실록 3년 11월 21일 / 380



..... 382

- 1년 10월 16일 / 382
- 5년 4월 6일 / 385
- 9년 8월 7일 / 408
- 9년 11월 15일 / 413
- 10년 7월 14일 / 417
- 33년 1월 18일 / 418
- 33년 3월 1일 / 419
- 39년 8월 1일 / 420



..... 424

- 8년 4월 30일 / 424
- 10년 11월 11일 / 427
- 11년 5월 23일 / 428
- 13년 9월 9일 / 434
- 17년 5월 19일 / 435





..... 439

- 2년 9월 12일 / 439
- 11년 3월 30일 / 442
- 12년 3월 13일 / 476
- 17년 3월 16일 / 481



..... 486

- 8년 8월 10일 / 486
- 13년 11월 25일 / 487



..... 488

- 2년 5월 10일 / 488
- 5년 11월 22일 / 488
- 8년 4월 29일 / 489
- 15년 10월 19일 / 491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장수현감 / 492

◆ 찾아보기 / 497





조선왕조실록의 長水史料







● 태종 12년 9월 8일

庚寅 全羅道 長水縣 地震

[풀이] \_\_\_\_\_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 태종 16년 4월 29일

辛卯 全羅道 長水, 長城, 珍山, 龍潭縣 隕霜

[풀이] \_\_\_\_\_

전라도 장수현(長水縣), 장성현(長城縣), 진산현(珍山縣), 용담현(龍潭縣)에서 서리가 내렸다.





● 세종 4년 3월 9일(병인)

全羅道 長水, 錦山, 南原, 鎭安, 珍山, 龍潭 地震

[풀이] \_\_\_\_\_

전라도의 장수(長水), 금산(錦山), 남원(南原), 진안(鎭安), 진산(珍山), 용담(龍潭)에 지진이 일어났다.

● 세종 7년 12월 28일(계사)

癸巳 昌原府使 張友仁, 長水縣監 崔得之辭 上引見曰 守令 出宰百里 專制一邑 其任匪輕 是用重選 爾等念茲不忘 輕徭 薄賦 以保斯民



[풀이]

창원 부사(昌原府使) 장우인(張友人), 장수 현감(長水縣監) 최득지(崔得之)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은 나가서 백 리의 땅을 맡아 다스리며 한 고을을 전단(專斷)하는 것이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임(選任)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를 생각하여 잊지 말고 요역(徭役)을 경하게 하고 세금을 적게 하여 백성을 보호하라.” 하였다.

### ●세종 9년 9월 15일(경자)

慶尙道 仁同, 新寧, 迎日, 彦陽, 寧海, 興海, 永川, 梁山, 清河, 河陽, 蔚山, 忠淸道 丹陽, 忠州, 全羅道 順天, 益山, 錦山, 和順, 長水, 長城 地震

[풀이]

경상도 인동(仁同), 신녕(新寧), 영일(迎日), 언양(彦陽), 영해(寧海), 흥해(興海), 영천(永川), 양산(梁山), 청하(清河), 하양(河陽), 울산(蔚山)과 충청도의 단양(丹陽), 충주(忠州)와 전라도의 순천(順天), 익산(益山), 금산(錦山), 화순(和順), 장수(長水), 장성(長城)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났다.



● 세종 10년 7월 14일(갑자)

慶尙道及 全羅道 南原, 珍原, 玉果, 潭陽, 全州, 和順, 古阜, 扶安, 泰仁, 龍潭, 益山, 井邑, 淳昌, 興德, 沃溝, 金溝, 長水, 金堤, 忠淸道 沃川, 忠州, 等官 地震

풀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원(南原), 진원(珍原), 옥과(玉果), 담양(潭陽), 전주(全州), 화순(和順), 고부(古阜), 부안(扶安), 태인(泰仁), 용담(龍潭), 장수(長水), 김제(金堤)와 충청도의 옥천(沃川), 충주(忠州) 등지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다.

● 세종 12년 4월 18일(정해)

慶尙道 靈山, 咸安, 玄風, 陝川, 金海, 宜寧, 山陰, 三嘉, 機張, 固城, 蔚山, 慶州, 大邱, 興海, 長鬐, 安東, 延日, 義城, 寧海, 盈德, 榮川, 淸河, 義興, 眞寶, 泗川, 奉化, 青松, 咸陽, 晉州, 昆南, 新寧, 高靈, 密陽, 安陰, 昌原, 漆原, 永川, 淸道, 金山, 星州, 仁同, 開寧, 梁山, 珍城, 鎭海, 居昌, 東萊, 善山, 彦陽, 尙州, 醴泉, 知禮, 慶山, 河東, 巨濟, 河陽, 軍威, 昌寧, 全羅道 南原, 益山, 南平, 潭陽, 寶城, 同



福, 綾城, 興德, 高興, 康津, 順天, 長城, 靈巖, 高敞, 茂長, 羅州, 井邑, 高山, 泰仁, 和順, 樂安, 珍原, 茂朱, 昌平, 金溝, 全州, 任實, 龍安, 古阜, 淳昌, 求禮, 谷城, 玉果, 龍潭, 茂珍, 光陽, 雲峯, 扶安, 長水, 咸悅, 鎮安, 礪山, 海珍 等  
官 地震

풀이

경상도 영산(靈山), 함안(咸安), 현풍(玄風), 합천(陝川), 김해, 의령(宜寧), 산음(山陰), 삼사(三嘉), 기장(機張), 고성(固城), 울산, 경주, 대구, 흥해(興海), 장기(長鬐), 안동, 연일(延日), 의성(義城), 영해(寧海), 영덕(盈德), 영천(榮川), 청하(清河), 의흥(義興), 진보(眞寶), 사천(泗川), 봉화(奉化), 청송(青松), 함양(咸陽), 진주(晉州), 곤남(昆南), 신령(新寧), 고령(高靈), 밀양(密陽), 안음(安陰), 창원(昌原), 칠원(漆原), 영천(永川), 청도(淸道), 김산(金山), 성주(星州), 인동(仁同), 개령(開寧), 양산(梁山), 진성(珍城), 진해(鎭海), 거창(居昌), 동래(東萊), 선산(善山), 언양(彦陽), 상주(尙州), 예천(醴泉), 지례(知禮), 경산(慶山), 하동(河東), 거제(巨濟), 하양(河陽), 군위(軍威), 창녕(昌寧), 전라도 남원(南原), 익산(益山), 남평(南平), 담양(潭陽), 보성(寶城), 동복(同福), 능성(綾城), 흥덕(興德), 고흥(高興), 강진(康津), 순천(順天), 장성(長城), 영암(靈巖), 고창(高敞), 무장(茂長), 나주(羅州), 정읍(井邑), 고산(高山), 태인(泰仁), 화순(和順), 낙안(樂安), 진원(珍原), 무주



(茂朱), 창평(昌平), 금구(金溝), 전주(全州), 임실(任實), 용안(龍安), 고부(古阜), 순창(淳昌), 구례(求禮), 곡성(谷城), 옥과(玉果), 용담(龍潭), 무진(茂珍), 광양(光陽), 운봉(雲峯), 부안(扶安), 장수(長水), 함열(咸悅), 진안(鎭安), 여산(礪山), 해진(海珍) 등 고을에 지진(地震)이 일었다.

● 세종 14년 6월 23일(경술)

雲峯, 長水, 鎭安, 龍潭 等縣 蝗

[풀이] —————

운봉(雲峯), 장수(長水), 진안(鎭安), 용담(龍潭) 등의 고을에 황충(蝗蟲)이 일었다.



## ● 세종 16년 2월 4일(임자)

壬子 江界節制使 池有容, 知瑞山郡事 朴芽生, 恩津縣監 琴淮, 漣川縣監 李君遇, 寧邊判官 康生敏, 知宜川郡事 金叔甫, 三嘉縣監 李珠, 聞慶縣監 李澤, 知平章郡事 金達成, 結城縣監 盧慎忠, 長水縣監 吳致行辭 引見曰 勸農桑 慎刑罰 賑飢民 以盡字牧

[풀이]

강계 절제사(江界節制使) 지유용(池有容),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박아생(朴芽生), 은진 현감(恩津縣監) 금회(琴淮), 연천 현감(漣川縣監) 이군우(李君遇), 영변 판관(寧邊判官) 강생민(康生敏), 지의천군사(知宜川郡事) 김숙보(金叔甫), 삼가 현감(三嘉縣監) 이주(李珠), 문경 현감(聞慶縣監) 이택(李澤), 지평장군사(知平章郡事) 김달성(金達成), 결성 현감(結城縣監) 노신충(盧慎忠), 장수 현감(長水縣監) 오치행(吳致行)이 사조(辭朝)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형벌을 삼가하며, 기민(飢民)을 구제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도리를 다하라.”

하였다.



## ● 세종 27년 7월 13일(을유)

乙酉 議政府據戶曹呈 申今田制 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一 前此各道之田 分屬京中各司及外軍資位田 以充恒貢之數 然逐年損實不同 故其不足者 以外軍資 推移充補 以此筭數甚煩 雖以貢法計之 筭數亦煩 今州郡驛館公衙公須等位田外 京中兩倉及各司位田 一皆除之 竝稱國用田 各其官 計京中各司所納恒數 分定民戶 使之輪納 其餘竝入其官國庫 如是則非徒筭數便易 民間米穀蜜蠟 布貨 難易苦歇 庶得均平矣 一, 考其前日各司位田 所納之數 如正布一匹 下田一結二十卜 計田所出 豆十九斗二升 白米十五斗精三斗并下 水田一結十二卜五束 所出米十八斗 油一斗 下田六十一卜 所出斗九斗七升六合 蠟一斤 下田一結二十一卜九束 所出斗十九斗五升四勺 他皆類此 至計合勺 甚爲煩瑣 合勺之數今除之. 一. 前此一結 定稅三斗 各品科田及外方各位私田 則一結二斗 今一結極數 改定二十斗 而稅米斗從本稅之數計除 其一結二斗仍舊. 一. 前此田品 限以三等 故山上山腰山下之田 比常田倍數計之 今三等之下 又加三等 假令以山上田爲六等 則以田十結五十五卜之地 今爲一結 其地甚闊 且下三道雖山上田 或不用倍數 其法不一 上項山田 今除倍數之法 從其田卜結元數隨其地品高下 以分其等 一. 今試貢法考其各驛位田盈縮之數 清安縣之時和驛田 本一百結 今盈二結八十八卜 咸安郡春谷巴水二驛田 本



一百六十結 今縮五結四十六卜盈縮如此各異 盈者移屬國用  
 田 縮者待八道地品改量後 當更續議 姑從元定卜結之數 推  
 移准給. 一. 鄉校位田無制 多寡不同 今酌前數 開城府二十  
 結 留守府 十五結 牧大都護府十結 都護府知官四結 縣官  
 二結折給. 一. 衙錄位田 今定留守府六十結 牧大護府五十  
 五結 都護府五十結 知官牧判官四十五結 縣官四十結. 一.  
 公須位田 今分大中小路 留守府 大都護府 牧官 大路則三  
 十結 中路二十五結 都護府知官 大路二十五結 中路二十結  
 小路十五結 縣官大路二十結中路十五結 小路十結折給 各  
 官任內公須位田 竝皆革除 除咸吉平安道外 六道州府郡縣  
 分爲大中小路全州, 清州, 忠州, 公州, 尙州, 星州, 黃州,  
 水原, 原平, 淮陽, 善山, 楊洲, 天安, 礪山, 鳳山, 龍仁, 竹  
 山, 振威, 金城, 金化, 咸昌, 聞慶, 開寧, 抱川爲大路.  
 慶州, 光州, 洪州, 羅州, 海州, 原州, 江陵, 安東, 晉州, 南  
 原, 平山, 瑞興, 春川, 昌原, 金海, 密陽, 潭陽, 古阜, 丹陽,  
 溫陽, 沃川, 淳昌, 茂珍, 載寧, 陝川, 清道, 榮川, 永川, 蔚  
 山, 梁山, 咸安, 金山, 大邱, 槐山, 靈巖, 永平, 果川, 衿川,  
 陰城, 鎭川, 新昌, 禮山, 全義, 筵岐, 永同, 黃澗, 文義, 海  
 美, 康津, 南平, 長城, 任實, 海南, 金構, 昌平, 泰仁, 井邑,  
 慶山, 東萊, 義城, 基川, 三嘉, 彥陽, 高靈, 軍威, 義興, 新  
 寧, 珍原, 高陽, 靈山, 陽智, 槐山, 延豐, 恩津, 尼山爲中  
 路. 南陽, 江華, 驪興, 利川, 順天, 延安, 三陟, 襄陽, 鐵元,  
 寧海, 順興, 長興, 豐德, 安山, 仁川, 安城, 朔寧, 楊根, 林  
 川, 清風, 泰安, 韓山, 舒川, 沔川, 瑞山, 益山, 珍島, 錦山,



珍山, 金提, 谷山, 安岳, 遂安, 豐川 白川, 平海, 通川, 旌善, 高城, 杆城, 寧越, 平昌, 咸陽, 草溪, 醴川, 興海, 青松, 昆陽, 寶城, 樂安, 靈光, 富平, 陽川, 金浦, 長湍, 砥平, 積城, 漣川, 川寧, 喬相, 臨津, 交河, 臨江, 麻田, 陰竹, 陽城, 加平, 通津, 鴻山, 堤川, 平澤, 懷仁, 定山, 青陽, 清安, 懷德, 鎭岑, 夫餘, 石城, 庇仁, 藍浦, 結城, 保寧, 唐津, 永春, 報恩, 青山, 木川, 龍潭, 連山, 臨陂, 萬頃, 綾城, 光陽, 龍安, 咸悅, 扶安, 咸平, 玉果, 高山, 沃溝, 興德, 高敞, 茂長, 務安, 求禮, 谷城, 雲峯, 長水, 鎭安, 茂朱, 同福, 和順, 興陽, 新恩, 甕津, 文化, 牛峰, 長連, 信川, 松禾, 長淵, 康翎, 江陰, 兔山, 殷栗, 蔚珍, 歙谷, 伊川, 平康, 洪川, 橫城, 楊口, 麟蹄, 安峽, 盈德, 固城, 巨濟, 南海, 居昌, 宜寧, 河陽, 龍宮, 奉化, 清河, 漆原, 鎭海, 河東, 仁同, 眞寶, 知禮, 安陰, 玄風, 山陰, 丹城, 比安, 禮安, 迎日, 長鬐, 昌寧, 泗川, 機長, 大興, 狼川, 德山, 牙山 爲小路. 二院位田, 洪武二十四年 十月 都評議司詳定, 大路每一院二結, 中路每一院一結五十卜, 小路每一院一結, 其後不分大中小路田之多寡不同. 今定大路院一結五十卜. 中路一結, 小路五十卜, 皆以院旁近田, 折給, 自京都抵竹山, 槐山, 開城府, 抱川爲大路, 自竹山, 抵尙州, 自鎭川, 抵星州, 自槐山, 抵礪山, 自開城府, 抵中和, 自抱川, 抵淮陽, 自京都, 抵光州, 渡迷津, 爲中路, 其餘院皆小路, 一. 漢江渡 三田渡, 路渡楊花渡, 臨津渡合, 廩給位田, 本皆八結五十卜, 今給八結津只位前, 漢江渡, 本三十二結, 今給二十結, 路渡本三十二結五十卜, 今給十五



結，三田渡，本十一結，今給十結，楊花島本十九結五十卜，臨津島，本二十二結，碧瀾渡，本三十三結，右三渡爲大路，今給十結，廣津洛河本三結，阻江，本十二結，錦江，本十二結，右四渡爲中路，今給三結，其餘津渡，爲小路，竝及一結，一. 水站水夫位田，本每一人二結，今以六等田，法改結卜，則必至咸縮，今給一結五十卜，一. 京中各司及外方田稅貢案，其道田品，畢分揀後，以九等年，田稅多寡，更加磨勘成籍，今秋等田品，導行帳及分類帳三秩，隨即成籍 分置其官及戶曹監司，一. 全州慶基殿祭位田，八結九十九卜六束，其餘諸道眞殿無之，今革位田以國庫供辦，一. 社稷 文宣王祭位田，例以雜祠給位田未便，且祀典所載嶽海瀆山川，城隍祭位田，或有或無，今竝革之，皆以國庫供辦，一. 京畿各官人吏位田，每一結稅二斗，納廣興倉 忠清，全羅，慶尙，江原，黃海道各官人吏位田，每五結內二結，屬廣興倉 三結爲口分 然廣興納二結之稅 六十斗，每年不足 以口分充之，位田，有名而無實 況他艱苦軍役之人，亦皆無位田，今悉革之，兵正倉正獄正客舍正國庫直及紙匠位田，亦竝革之，一. 京畿 水原，楊洲，振威，藥店位田，八結七十八卜一束，此他道所無亦竝革之，一. 東西窯瓦匠位田十七結，初以鷲頭傳習之功折給，其餘瓦匠及諸邑匠人皆無位田，今革之，一. 宗廟干，初以良民爲之，給位田十二結，今所屬奴婢甚多，以供其事 且奉常寺祭壇直位田，九結四十三卜，今壇直以都官奴爲之，上項位田，竝皆革之，一. 喬桐水軍口分田，四百二十八結五十二卜，江華水軍口分田 三百五十結二十五卜八



東, 初移全羅道民爲水軍, 故給田以恤之, 今安業已久 且他船軍, 亦不給田, 今革之, 一. 前此各司公廩田, 竝皆革之, 而惟駙馬附二百五十結, 致仕耆老所一百結, 圖書院三十結, 忠扈衛一百結, 惠民局二十結, 濟生院典醫監各三十結, 東活院二十五結, 西活院三十結, 司譯院八十結, 如舊凡各司點心, 皆分事務緊慢以國庫支給, 諸駙馬府耆老所外 上項各司公廩田革之, 一. 迎曙亭干位田 一結, 今革位田, 蠲其雜役 從之.

풀이

의정부에서 호조의 칙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이제 전제(田制)를 고쳐 상정(詳定)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고사(考査) 연구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1. 전에는 각 도의 전지(田地)를 경중(京中)의 각사(各司)와  
외군자(外軍資)의 위전(位田)에 나누어 붙여 항공(恒貢)의  
수량에 충당하였으나, 해마다 결손(缺損)과 실염(實稔)이 같  
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외군자(外軍資)로 추이(推  
移)하여 보충하게 되니, 이 때문에 산수(算數)가 심히 복잡  
하여, 비록 공법(貢法)으로 계산하여도 산수가 역시 복잡합  
니다. 이제는 주군(州郡)의 역관(驛館), 공아(公衙), 공수(公  
須) 등 위전(位田) 이외의 경중의 두 창(倉)과 각사(各司)의  
위전(位田)을 일체 모두 없애고, 아울러 국용전(國用田)이라



명칭하고는 각각 그 고을에서 경중의 각사(各司)에 바치던 일정한 수량을 계산하여, 민호(民戶)에 나누어 배정하여 수납(輸納)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 고을 국고(國庫)에 들이게 할 것. 이와 같이 하면 다만 산수(算數)가 편리하여 쉬울 뿐 아니라, 민간의 미곡(米穀), 밀랍(蜜蠟), 포화(布貨)의 어렵고 쉬운 것과 괴롭고 험(歎)한 것이 고르고 공평(公平)함을 얻을 것.

1. 전날의 각사(各司) 위전(位田)에서 바친 수량을 상고하여 보면, 정포(正布) 1필에 하전(下田)은 1결(結) 20복(卜)인데, 전지의 소출로 계산하면 콩은 19두(豆) 2승(升), 백미(白米)는 15두에 정미 3두를 병(并)하고, 하수전(下水田)은 1결(結) 12복(卜) 5속(束)에 소출이 쌀은 18두(斗), 기름은 1두이고, 하전(下田) 61복(卜)에 소출은 콩 9두 7승 6홉, 납(蠟) 1근(斤)이고, 하전(下田) 1결(結) 21복(卜) 9속(束)에 소출이 콩 19두 5승 4작(勺)인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아서, 홉(合), 작(勺)까지 계산하였으니 심히 번쇄하므로, 홉(合), 작(勺)의 수는 지금 없앨 것.
1. 전에는 1결에 대하여 정세(定稅)가 3두(斗)이고, 각품(各品) 과전(科田)과 외방(外方) 각위(各位)의 사전(私田)은 1결(結)에 2두(斗)이었는데, 지금 1결(結)의 극한(極限) 수를 20두(斗)로 개정하여, 세(稅)의 쌀, 콩은 본세(本稅)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除)하고, 그 1결에 대한 2두는 예전 그 대로 할 것.
1. 전에는 전품(田品)을 3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산위, 산



허리, 산밭의 밭을 보통 밭에 비하여 배수(倍數)로 계산하였는데, 지금은 3등 밭에 또 3등을 가하였으니, 가령 산위 밭으로 6등을 삼으면, 전의 10결 55복의 땅이 지금은 1결이 되어, 그 땅이 대단히 넓고, 또 하삼도(下三道)는 비록 산위의 밭이라도 혹은 배수(倍數)를 쓰지 않아서, 그 법이 한결 같지 않으니, 윗항의 산전(山田)은 지금 배수의 법을 없애고, 그 밭의 복(卜), 결(結) 원수(元數)에 따르고, 그 지품(地品)의 고하(高下)에 따라 그 품등을 나눌 것.

1. 지금 공법(貢法)을 시험함에 있어 각역(各驛) 위전의 영축(盈縮)하는 수를 상고하면, 청안현(淸安縣)의 시화역(時和驛) 밭은 본래 1백 결인데, 지금 2결 88복이 늘었고, 함안군(咸安郡)의 춘곡(春谷), 파수(巴水) 두 역전(驛田)은 본래 1백 60결인데, 지금 5결 46복이 줄어서, 늘고 준 것이 이와 같이 각각 다르니, 늘은 것은 국용전(國用田)에 옮겨 붙이고, 줄은 것은 8도(道)의 지품(地品)을 고쳐 측량한 뒤를 기다려서 마땅히 다시 잇대어 의논하고, 아직 원래 정한 복(卜), 결(結)의 수에 따라 추이(推移)해 준(准)하여 줄 것.
1. 향교(鄕校)의 위전(位田)이 제도가 없어,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지금 전의 수를 참작하여 개성부(開城府)는 20결, 유수부(留守府)는 15결, 목(牧), 대도호부(大都護府)는 10결, 도호부(都護府), 지관(知官)은 4결, 현관(縣官)은 2결을 절급(折給)할 것.
1. 아록 위전(衙祿位田)은 지금 유수부(留守府)는 60결, 목(牧), 대호부(大護府)는 55결, 도호부(都護府)는 50결, 지관



(知官), 목판관(牧判官)은 45결, 현관(縣官)은 40결로 정할 것.

1. 공수 위전(公須位田)은 지금 대, 중, 소로(小路)로 나누어 유수부(留守府), 대 도호부(大都護府), 목관(牧官)의 대로(大路)는 30결, 중로(中路)는 25결, 도호부(都護府), 지관(知官)의 대로는 25결, 중로는 15결, 소로는 10결을 절급(折給)하고, 각 고을 안의 공수전(公須田)은 모두 다 혁파(革罷)하여 없앨 것. 함길도(咸吉道), 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하고 6도(道)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을 대, 중, 소로 나누는데, 전주(全州), 청주(淸州), 충주(忠州), 공주(公州), 상주(尙州), 황주(黃州), 수원(水原), 원평(原平), 회양(淮陽), 선산(善山), 양주(楊州), 천안(天安), 여산(礪山), 봉산(鳳山), 용인(龍仁), 죽산(竹山), 진위(振威), 금성(金城), 금화(金化), 함창(咸昌), 문경(聞慶), 개령(開寧), 포천(抱川)은 대로(大路)로 하고, 경주(慶州), 광주(廣州), 홍주(洪州), 나주(羅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강릉(江陵), 안동(安東), 진주(晉州), 남원(南原), 평산(平山), 서흥(瑞興), 춘천(春川), 창원(昌原), 김해(金海), 밀양(密陽), 담양(潭陽), 고부(古阜), 단양(丹陽), 온양(溫陽), 옥천(沃川), 순창(淳昌), 무진(茂珍), 재령(載寧), 합천(闔川), 청도(淸道), 영천(榮川), 영천(永川), 울산(蔚山), 양산(梁山), 함안(咸安), 금산(金山), 대구(大丘), 괴산(槐山), 영암(靈巖), 영평(永平), 과천(果川), 금천(衿川), 음성(陰城), 진천(鎭川), 신창(新昌), 예산(禮山), 전의(全義), 연기(筵岐), 영동(永同), 황간(黃澗), 문의(文義), 해미(海美), 강진(康津), 남평



(南平), 장성(長成), 임실(任實), 해남(海南), 금구(金構), 창평(昌平), 태인(泰仁), 정읍(井邑), 경산(慶山), 동래(東萊), 의성(義城), 기천(基川), 삼가(三嘉), 언양(彦陽), 고령(高靈), 군위(軍威), 의흥(義興), 신령(新寧), 진원(珍原), 고양(高陽), 영산(靈山), 양지(陽智), 직산(稷山), 연풍(延豐), 은진(恩津), 이산(尼山)은 중로(中路)로 하고, 남양(南陽), 강화(江華), 여흥(驪興), 이천(利川), 순천(順天), 연안(延安), 삼척(三陟), 양양(襄陽), 철원(鐵元), 영해(寧海), 순흥(順興), 장흥(長興), 풍덕(豐德), 안산(安山), 인천(仁川), 안성(安城), 삭녕(朔寧), 양근(楊根), 임천(林川), 청풍(淸風),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서산(瑞山), 익산(益山), 진도(珍島), 금산(錦山), 진산(珍山), 김제(金堤), 곡산(谷山), 안악(安岳), 수안(遂安), 풍천(豐川), 배천(白川), 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영월(寧越), 평창(平昌), 함양(咸陽), 초계(草溪), 예천(醴川), 흥해(興海), 청송(靑松), 곤양(昆陽), 보성(寶城), 낙안(樂安), 영광(靈光), 부평(富平), 양천(陽川), 김포(金浦), 장단(長湍), 지평(砥平), 적성(積城), 연천(漣川), 천녕(川寧), 교동(喬桐), 임진(臨津), 교하(交河), 임강(臨江), 마전(麻田), 음죽(陰竹), 양성(陽城), 가평(加平), 통진(通津), 홍산(鴻山), 제천(堤川), 평택(平澤),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청안(靑安), 회덕(懷德), 진잠(鎭岑), 부여(扶餘), 석성(石成), 비인(庇仁), 남포(藍浦), 결성(結城), 보령(保寧), 당진(唐津), 영춘(永春), 보은(報恩), 청산(靑山), 목천(木川), 용담(龍潭), 연산(連山), 임피(臨陂), 만경(萬頃), 능성



(綾城), 광양(光陽), 용안(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옥과(玉果), 고산(高山), 옥구(沃溝), 흥덕(興德), 고창(高敞), 무장(茂長), 무안(務安), 구례(求禮), 곡성(谷城), 운봉(雲峰), 장수(長水), 진안(鎭安), 무주(茂朱), 동복(同福), 화순(和順), 흥양(興陽), 신은(新恩), 웅진(甕津), 문화(文化), 우봉(牛峰), 장련(長連), 신천(信川), 송화(松禾), 장연(長淵), 강령(康翎), 강음(江陰), 토산(兔山), 은율(殷栗), 울진(蔚珍), 흡곡(?谷), 이천(伊川), 평강(平康), 홍천(洪川), 횡성(橫城), 양구(楊口), 인제(麟蹄), 안협(安峽), 영덕(盈德), 고성(固城), 거제(巨濟), 남해(南海), 거창(居昌), 의령(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봉화(奉化), 청하(清河), 칠원(漆原), 진해(鎭海), 하동(河東), 인동(仁同), 진보(眞寶), 지례(知禮), 안음(安陰), 현풍(玄風), 산음(山陰), 단성(丹城), 비안(比安), 예안(禮安), 영일(迎日), 장기(長鬢), 창녕(昌寧), 사천(泗川), 기장(機長), 대흥(大興), 낭천(狼川), 덕산(德山), 아산(牙山)은 소로(小路)로 할 것.

1. 원위전(院位田)은 홍무 24년 10월에 도평의사(都評議司)의 상정(詳定)으로 실시 하였는데, 대로(大路)에는 매 1원(院)에 2결(結), 중로에는 매 1원에 2결 50복(卜), 소로에는 매 1원에 1결이었는데, 그 뒤에 대로, 중로, 소로를 구분하지 않아서 밭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지금 대로의 원에는 1결 50복, 중로의 원에는 1결, 소로의 원에는 50복으로 정하고, 모두 원 옆의 가까운 밭으로 절급하되, 경도(京都)로부터 죽산(竹山), 직산(稷山), 개성부(開城府), 포천(抱川)에



가는 것을 대로로 하고, 죽산으로부터 상주(尙州)까지, 진천(鎭川)으로부터 성주(星州)까지, 직산(稷山)으로부터 여산(礪山)까지, 개성부(開城府)로부터 중화(中和)까지, 포천(抱川)으로부터 회양(淮陽)까지, 경도(京都)로부터 광주(廣州), 도미진(渡迷津)까지를 중로로 하고, 그 나머지 원(院)은 모두 소로(小路)로 할 것.

1. 한강도(漢江渡), 삼전도(三田渡), 노도(路渡), 양화도(楊花渡), 임진도(臨津渡) 승(丞)의 늪급 위전(廩給位田)은 본래 모두 8결 50복인데, 지금 8결을 주고, 진척(津尺)의 위전(位田)은 본래 32결인데, 지금 20결을 주고, 노도는 본래 32결 50복인데, 지금 15결을 주고, 삼전도는 본래 11결인데 지금 10결을 주고, 양화도(楊花渡)는 본래 19결 50복이고, 임진도(臨津渡)는 본래 22결이고, 벽란도(碧瀾渡)는 본래 33결인데, 위의 3도(渡)는 대로로 하여 지금 10결을 주고, 광진(廣津), 낙하(洛河)는 본래 3결이고, 조강(阻江)은 본래 12결이고, 금강(錦江)은 본래 12결인데, 위의 4도(渡)는 중로로 하여 지금 3결을 주고, 그 나머지 진도(津渡)는 소로로 하여 모두 1결을 줄 것.
1. 수참(水站)의 수부 위전(水夫位田)은 본래 매양 한 사람에게 2결이었는데, 지금 육등전(六等田)법으로 결복(結卜)을 고치면 반드시 감축(減縮)이 될 것이니, 지금 1결 50복을 줄 것.
1. 서울 안의 각사와 외방(外方)의 전세(田稅) 공안(貢案)은 그 도(道)의 밭의 품등을 다 분간한 뒤에 9등급으로 전세(田稅)의 많고 적은 것을 다시 고사(考査)를 가하여 적(籍)



을 만들고, 이번 가을 등(等)의 전품(田品)의 도행장(導行帳)과 분류장(分類帳) 3질을 즉시 적(籍)을 만들어서 그 관(官)과 호조(戶曹), 감사(監司)에게 나누어 둘 것.

1. 전주(全州) 경기전(慶基殿)의 제위전(祭位田)은 8결 99복 6속이고,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진전(眞殿)에는 없는데, 지금 위전(位田)을 개혁하고 국고(國庫)에서 공판(供辦)할 것.
1. 사직(社稷)과 문선왕(文宣王)의 제위전(祭位田)은 잡사(雜祠)의 예(例)로 위전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또 사전(祀典)에 실려있는 악(嶽), 해(海), 독(瀆), 산천(山川), 성황(城隍)의 제위전도 혹은 있고 혹은 없으니, 지금 아울러 혁파하여 모두 국고에서 공판할 것.
1. 경기(京畿) 각 관(官)의 인리(人吏)의 위전(位田)이 매양 1결(結)에 대하여 세(稅) 2두(斗)를 광흥창(廣興倉)에 납부하고,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도 각 관(官)의 인리(人吏)의 위전(位田)은 매양 5결 내에, 2결은 광흥창(廣興倉)에 속하고 3결은 구분전(口分田)이 되나, 광흥창에 2결의 세(稅) 60두(斗)를 납부하면, 매년 부족이 되어 구분(口分)으로 보충하니, 위전(位田)이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고, 하물며 다른 군역(軍役)에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도 또한 모두 위전이 없으니, 지금 모두 혁파하고, 병정(兵正), 창정(倉正), 옥정(獄正), 객사정(客舍正), 국고직(國庫直), 지장(紙匠)의 위전(葦田)도 또한 아울러 혁파할 것.
1. 경기(京畿)의 수원(水原), 양주(楊州), 진위(振威)의 약점 위전(藥店位田) 8결 78복 1속은 이것은 다른 도의 없는 것이



니 또한 아울러 혁파할 것.

1. 동서요(東西窯)의 와장 위전(瓦匠位田) 17결은 처음에 망새[驚頭]를 전습(傳習) 하는 공(功)으로 절급(折給)하고, 그 나머지 와장(瓦匠)과 제색(諸色) 장인(匠人)은 모두 위전(位田)이 없으니 지금 혁파할 것.
1. 종묘간(宗廟干)은 처음에 양민(良民)으로 시키고 위전(位田) 12결을 주었는데, 지금 소속 노비(奴婢)가 심히 많아서 그 일에 이바지하고, 또 봉상시(奉常寺) 제단직(祭壇直)의 위전(位田)이 9결 43복인데, 지금 단직(壇直)을 도관노(都官奴)로 시키고, 윗 항의 위전을 모두 혁파할 것.
1. 교동(喬桐) 수군(水軍)의 구분전이 4백 28결 52복이고, 강화(江華) 수군(水軍)의 구분전이 3백 50결 25복 8속인데, 처음에 전라도 백성을 옮기어 수군을 삼았기 때문에 받을 주어 구출할 것인데, 지금 생업을 편안히 한 지가 이미 오래고, 또 다른 선군(船軍)은 또한 받을 주지 않으니, 지금 혁파할 것.
1. 이 앞서 각사(各司) 공해전(公廩田)을 모두 다 혁파하고 오직 부마부(駙馬府) 2백 50결,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 1백 결, 도화원(圖書院) 30결, 충호위(忠扈衛) 1백 결, 혜민국(惠民局) 20결, 제생원(濟生院), 전의감(典醫監) 각 30결, 동활인원(東活人院) 25결, 서활인원(西活人院) 30결, 사역원(司譯院) 80결은 예전과 같은데, 무릇 각사(各司)의 점심(點心)을 모두 일의 긴하고 한만한 것을 구분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부마부(駙馬府)와 기로소(耆老所)를 제한 외에는 윗



항 각 사(各司)의 공해전(公廩田)을 혁파할 것.

1. 영서정간(迎曙亭干)의 위전(位田)이 1결인데, 지금 위전을 혁파하고 그 잡역(雜役)을 덜어 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세종 30년 5월 21일(을사)

刑曹申 典獄囚尙衣院匠朱金 盜御府眞絲 長水縣囚強盜金  
有山 依律斬 從之

풀이

형조에서 상신하기를,

“전옥(典獄) 죄수 상의원(尙衣院) 장인(匠人) 주금(朱金)은 어부(御府)의 진사(眞絲)를 도둑질하였고, 장수현(長水縣) 죄수 김유산(金有山)은 강도질하였으니, 율에 의하여 베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세종150지리지 / 경상도 / 진주목 / 안음현

## • 안음현(安陰縣)

이안현(利安縣)은 본디 마리현(馬利縣)인데,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천령군(天嶺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감음현(減陰縣)은 본디 남내현(南內縣)인데, 경덕왕이 여만(餘萬)으로 이름을 고쳐서 거창군(居昌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현종 무오년에 모두 합주(陝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공양왕 경오년에 감음 감무(減陰監務)를 두고 이안(利安)을 이에 붙였는데, 본조 태종 17년 정유에 두 현의 이름을 따서 안음현(安陰縣)으로 고쳤다. 소(所)가 1이니, 가을산(加乙山)이다. [예전에는 함양(咸陽)에 붙였는데, 지금은 없어져 직촌(直村)이 되었다.]

지우산(知雨山)은 현 북쪽에 있고, 황석산(黃石山)은 현 서쪽에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거창(居昌)에 이르기 17리, 서쪽으로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이르기 41리, 남쪽으로 함양(咸陽)에 이르기 5리, 북쪽으로 거창(居昌)에 이르기 50리이다.

호수는 4백 81호, 인구가 7백 93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35명, 진군(鎭軍)이 34명, 선군(船軍)이 1백 88명이다.

이안(利安)의 성이 5이니, 조(曹), 임(林), 김(金), 표(表), 하(河)이요, 감음(減陰)의 성이 4이니, 공(孔), 황(黃), 서문(西門), 서(徐)이며, 내성(來姓)이 1이니, 이(李)이다. [우봉(牛峯)에서 왔다.] 가을산(加乙山)의 성이 4이니, 고(高), 윤(尹), 박(朴), 안(安)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송(宋)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서로 반반씩이며, 기후는 춥고, 간전(墾田)이 1천 7백 93결이다. [논이 약간 적다.] 토의(土宜)는 벼, 기장, 조, 감이요, 토공(土貢)은 꿀, 밀[黃蠟], 칠, 종이, 왕대, 곰가죽, 삶가죽, 노루가죽이며, 약재(藥材)는 안식향(安息香), 백급(白芨)이요, 토산(土産)은 은구어이다.

황석산 석성(黃石山石城)은 현 서쪽 25리에 있다. [둘레가 1천 87보인데, 안에 시내 1이 있고, 또 군창(軍倉)이 있고, 함양(咸陽) 군창에서도 아울러 들여다 둔다.] 역(驛)이 1이니, 신역(新驛)이다. [이안(利安)에 있다.] 험조처(險阻處)가 1이니, 육십현(六十峴)이 현(縣) 서쪽 41리에 있다.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으로 가는 지로(指路)인데, 그 험한 곳이 2리이다.

## ● 세종150지리지 / 경상도 / 경상도

### · 경상도(慶尙道)

삼한(三韓) 때에는 진한(辰韓) 땅이었고, 삼국(三國) 때에는 신라 땅이었는데, 고려 태조(太祖)가 신라와 백제를 병합함에 미쳐서 동남도 도부서사(東南道都部署使)를 설치하고, 사(司)를 경주(慶州)에 두었다가, 성종(成宗) 14년(995) 을미에 경내(境內)를 10도(道)로 나누어, 상주(尙州)의 관할은 영남도(嶺南道)로 하고, 경주(慶州), 금주(金州)의 관할은 영동도(嶺東道)로, 진주(晉州)의 관할은 산남도(山南道)로 하였었는데, 그 뒤에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나 합하여 경상도로 되었다. 지금 국사(國



史)를 상고하건대, 예종(睿宗) 원년(元年) 병술에 경상진주도(慶尙晉州道)라 일컬었고, 명종(明宗) 원년(元年) 신묘에는 나누어서 경상주도(慶尙州道), 진합주도(晉陝州道)로 만들었으며, 16년 병오에 이르러 비서승(秘書丞) 이계장(李桂長)을 동남해 도부서사(東南海都部署使) 겸 경상주도 안찰사(慶尙州道按察使)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경상도의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는가 싶다. 신종(神宗) 14년 갑자에 상진안동도(尙晉安東道)로 고치고, 그 뒤에 또 경상진안도(慶尙晉安道)로 고쳤으며, 충숙왕(忠肅王) 원년(元年) 갑인에 [원(元)나라 인종(仁宗) 연우(延祐) 원년(元年)] 도로 경상도로 하였는데, 본조(本朝)에서 그대로 따라 도관찰사(都觀察使)를 두고 사(司)를 상주(尙州)에 두었다.

그 땅이 동남쪽에는 큰 바다가 있고, 서쪽은 지리산(智異山)을 경계로 하여 감음현(減陰縣) 육십현(六十峴)에 이르고, 북쪽은 죽령(竹嶺)을 경계로 하여 문경현(聞慶縣) 초점(草岾)에 이르는데, 대구군(大丘郡)이 도(道) 중앙에 있다. 동서가 3백 76리, 남북이 4백 48리이다.

관할[所管]은 유수부(留守府)가 1, 대도호부(大都護府)가 1, 목(牧)이 3, 도호부(都護府)가 6, 군(郡)이 15, 현령(縣令)이 6, 현감(縣監)이 34이다.

명산(名山)이 5이니, 주흘산(主屹山)[문경(聞慶)에 있다.] , 태백산(太伯山)[봉화(奉化)에 있다.] , 지리산(智異山)[진주(晉州)에 있다.] , 사불산(四佛山)[상주(尙州)에 있다.] , 가야산(伽倻山)[성주(星州)에 있다.] 이다.

대천(大川)이 3이니, 첫째가 낙동강(洛東江)이다. 그 근원(根



源)이 셋인데, 하나는 봉화현(奉化縣) 북쪽 태백산(太伯山) 황지(黃池)에서 나오고, 하나는 문경현(聞慶縣) 북쪽 초점(草岾)에서 나오고, 하나는 순흥(順興) 소백산(小白山)에서 나와서, 물이 합하여 상주(尙州)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 선산(善山)에서 여차니진(餘次尼津), 인동(仁同)에서 칠진(漆津), 성주(星州)에서 동안진(東安津), 가리현(加利縣)에서 무계진(茂溪津)이 되고, 초계(草溪)에 이르러 합천(陝川)의 남강(南江) 물과 합하여 감물창진(甘勿倉津)이 되고, 영산(靈山)에 이르러 또 진주(晉州) 남강(南江)의 물과 합하여 기음강(岐音江)이 되며, 칠원(漆原)에서는 우질포(毘叱浦)가, 창원(昌原)에서는 주물연진(主勿淵津)이 되어 김해(金海)에 이르고, 밀양(密陽) 응천(凝川)을 지나 뇌진(磊津)이 [해양강(海陽江)이라고도 한다.] 되고, 양산(梁山)에서 가야진(伽倻津)이 되고, 황산강(黃山江)이 되어,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둘째는 진주(晉州) 남강(南江)이다. 그 근원(根源)이 둘이니, 하나는 지리산 북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지리산 남쪽에서 나와서, 진주 서편에서 합류하여 광탄(廣灘)이 되고, 의령(宜寧)에 이르러 정암진(定巖津)이 되어, 동쪽으로 흘러 기음강(岐音江)으로 들어간다. 셋째는 초계(草溪) 황둔진(黃菴津)이다. 그 근원(根源)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전라도 무주(茂朱) 초현(草峴)에서 나오고, 하나는 감음현(減陰縣) 황석산(黃石山)에서 나와서, 거창(居昌)에서 합류되어 합천(陝川)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감물창진(甘勿滄津)으로 들어간다.

호수는 4만 2천 2백 27호, 인구가 17만 3천 7백 59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2천 6백 30단(單) 1명, 영진군



(營鎮軍)이 3천 8백 76명, 선군(船軍)이 1만 5천 9백 34명이다.

간전(墾田)이 30만 1천 1백 47결(結)이다.

부세(賦稅)는 쌀[稻米][흰쌀[白米], 조미(糙米), 찹쌀[糯米], 좁쌀이 있다.], 콩[콩과 녹두가 있다.], 밀[小麥], 참깨[芝麻], 향유(香油), 차조기기름[蘇子油], 꿀, 밀[黃蠟], 명주[綿紬], 모시[苧布], 무명[綿布], 베[正布], 풀솜[雪綿子][품질이 가장 좋으며, 타도에는 없다. 또, 상면자(常綿子)가 있다.], 면화(綿花)이다.

공물(貢物)은 호랑이가죽[虎皮], 표범가죽[豹皮], 곰가죽[熊皮], 사슴가죽[鹿皮], 노루가죽[獐皮], 여우가죽[狐皮], 삵가죽[狸皮], 잘[山獺皮], 수달피(水獺皮), 말가죽[馬皮], 쇠가죽[牛皮], 돼지가죽[豬皮], 점찰피(占察皮), 어피(魚皮), 가죽줄[皮絃], 표범꼬리[豹尾], 여우꼬리[狐尾], 족제비털[黃毛], 돼지털, 늑(肋), 잡깃[雜羽], 쇠뿔[牛角], 마른 사슴고기[乾鹿], 마른 돼지고기[乾豬], 마른 노루고기[乾獐], 녹포(鹿脯), 사슴꼬리[鹿尾], 대구어(大口魚), 문어(文魚), 상어[沙魚], 마른 물고기[乾水魚], 백조(白條), 전포(全鮑), 홍합(紅蛤), 어교(魚膠), 곱(藿), 해모(海毛), 우무[牛毛], 참가사리[細毛], 오해조(吾海曹), 칠(漆), 송연(松煙), 송진[松脂], 밤, 대추, 홍시(紅柿), 곱감[乾柿], 모과[木瓜], 석류[石榴], 배개암[榛子], 잣, 송화(松花), 귤(橘), 호도(胡桃), 치자(梔子), 작설차(雀舌茶), 석이[石茸], 느타리[眞茸], 표고버섯, 겨자[芥子], 마른 죽순[乾竹筍], 지초(芝草), 홍화(紅花), 괴화(槐花), 뇌록[磊碌], 저마승색(苧麻繩索), 마의(馬衣), 지차(紙筍)[중국에 바치는 표지(表紙)와 나라에서 쓰는 표지, 도련지(搗鍊紙), 안지(眼紙), 백주지(白奏紙), 상주지(常奏紙), 장지(狀紙) 등이



있다.] , 유둔(油菴), 유기(柳器), 목기(木器), 자기, 초마선석(哨麼船席)[중국에 바치는 황화석(黃花席), 채화석(彩花席), 만화침석(滿花寢席), 만화석(滿花席), 염석(簾席), 방석(方席) 등이 있고, 타도에는 없다. 또 나라에서 쓰는 만화 각색석(滿花各色席), 별문상석(別文上席), 답석(踏席), 상문답석(常文踏席), 백문석(白文席), 초석(草席) 등이 있다.] , 죽피방석(竹皮方席), 가는대[篠][검은대[烏竹]와 살대[箭竹]가 있다.] , 왕대[篋][통대[全竹]와 쪽대[片竹]가 있다.] , 입초(笠草),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정철(正鐵)이다.

약재(藥材)는 쇠슬개[牛膽], 곰슬개[熊膽], 사향(麝香), 소유(酥油), 돼지슬개[猪膽], 수달피슬개[獺膽], 고슴도치슬개[猬膽], 고슴도치가죽[猬皮], 우황(牛黃), 아교(阿膠), 선달토끼머리[臘兔頭], 녹각(鹿角), 녹용(鹿茸), 녹각교(鹿角膠)[또 녹각상(鹿角霜)이 있다.] , 선달여우간[臘狐肝], 영양뿔[羚羊角], 범의 정강이뼈[虎脛骨], 도아조유(島阿鳥油), 상말벌집[霜蜂房], 원잠아(元蠶娥)[또 만잠아(晚蠶娥)가 있다.] , 누에허물[馬鳴退], 오어골(烏魚骨), 가뢰[班猫], 자라껍데기[鼈甲], 매미허물[蟬脫皮], 거북껍데기[龜甲], 뽕나무벌레[桑蠶蛸], 잉어슬개[鯉膽], 굴조개껍질[牡蠣], 등에[虻蟲], 백화사(白花蛇), 뱀허물[蛇脫皮], 오가피(五加皮), 필등(葦箆), 가(茄), 황경나무껍질[黃蘗皮], 뽕나무껍질[桑白皮], 느릅나무속껍질[榆白皮], 고염[小柿], 탕자[枳殼], 무이(蕪荑), 산이스랏씨[郁李仁], 복숭아씨[桃仁], 살구씨[杏仁], 괴각(槐角), 조피나무열매[川椒], 뽕나무 겨우살이[桑寄生], 모란껍질[牡丹皮], 오배자(五倍子), 산조인(酸棗仁), 조협(皂莢), 울설(栗



楔), 오수유(吳茱萸), 산수유(山茱萸), 오미자(五味子), 후박(厚朴), 오매(烏梅), 염매(鹽梅), 백매실(白梅實), 청피(靑皮), 진피(陳皮), 두충(杜冲), 비자(榧子), 팔각(八角), 해동피(海東皮), 자석(磁石), 감꼭지[柿帶], 담죽엽(淡竹葉), 초목(椒目), 촉수자(蜀隨子), 적복령(赤伏苓), 백복령(白伏苓), 복신(茯神), 복나무진[安息香], 산골[自然銅], 새삼씨[兔絲子], 고무딸기열매[覆盆子], 겨우살이꽃[金銀花], 선복화(旋覆花), 사상자(蛇床子), 질려자(蒺藜子), 백부자(白附子), 결명자(決明子), 천선자(天仙子), 인삼, 백합(百合), 검화뿌리껍질[白鮮皮], 병풍나물뿌리[防風], 두여미조자기[天南星], 창포말(菖蒲末), 마기령(馬夔零), 쇠비름[馬齒莧], 매자기뿌리[京三稜], 제니(薺萁), 포황(蒲黃), 택사(澤瀉), 감데뿌리[虎杖根], 여우오줌풀뿌리[鶴虱], 탕알[紫莞], 대소 계초(大小薊草), 수자해좃뿌리[天麻], 수자해좃싹[赤箭], 두릅뿌리[獨活], 가희톱[白斂], 검산풀뿌리[續斷], 절국대뿌리[漏蘆], 족도리풀뿌리[細辛], 유향(茱香), 외나물뿌리[地榆], 당귀(當歸), 버들옷[大戟], 활석(滑石), 연꽃술[蓮花藥], 연방(蓮房)[또 연밥이 있다.], 검인(芡仁), 으름[林下婦人], 동초(冬草), 독주근(獨走根), 파고지(破古紙), 작약(芍藥)[백(白), 적(赤)이 있다.], 박색[藜蘆], 구기자(枸杞子), 지골피(地骨皮), 석위(石葦), 호라비좃뿌리[天門冬], 만형자(蔓荊子), 향부자(香附子), 영릉향(荅陵香), 현호색(玄胡索), 택란(澤蘭), 등심(燈心), 맥문동(麥門冬), 쇠무릎[牛膝], 자호(紫胡), 전호(前胡), 끼절가리뿌리[升麻], 호본(蒿本), 백지(白芷), 반하(半夏), 백급(白芨), 현삼(玄蔘), 쓴너삼뿌리[苦蔘], 더위지기[茵陳], 진봉(蓁芩), 속서근풀[黃芩], 단너삼뿌리[黃耆], 으름덩굴



[木通], 지모(知母), 회초미뿌리[貫衆], 수취나물뿌리[葳靈仙], 바  
 곶[草烏頭], 쪽[藍], 칠(漆), 여여(蘭茹), 저실(楮實), 두고(豆鼓),  
 초해(草薺), 낭아(狼牙)[낭아자(狼牙子)도 있다.] , 인동초(忍冬  
 草), 구맥(瞿麥), 침정력(恬葶藶), 청호(靑蒿), 수평(水萍), 해조  
 (海藻), 용담(龍膽), 서장경(徐長卿), 충위자(菴蔚子), 목적(木賊),  
 사간(射干), 원지(遠志), 석곡(石斛), 수포석(水包石), 하수오(何  
 首烏), 자하거(紫荷藁) 등이다. [이상의 잡공(雜貢) 및 약재는,  
 지금의 토산이 희귀한 것은 각 고을의 밑에 기록하고, 그 각  
 고을마다 생산되는 것은 그 일반 물건만 여기에 기록해 두고  
 다시 새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재배하는 약재(藥材)는 적소두(赤小豆), 두화(豆花), 대맥(大  
 麥), 백변두(白扁豆), 흑변두(黑扁豆), 양귀비[鴛粟], 차조기[紫  
 蘇], 영생이[薄荷], 소야기[香薷], 회향(茴香), 악실(惡實), 생지  
 황(生地黃)[또 건지황(乾地黃)과 숙지황(熟地黃)이 있다.] , 장  
 군풀[大黃], 청목향(靑木香), 형개(荊芥), 해바라기씨[葵子], 맨드  
 라미꽃[鷄冠花], 감국(甘菊), 흑대두(黑大豆), 궁궁이[芎藭], 울무  
 [薏苡], 청대(靑黛), 호유(胡荽), 호로(胡蘆), 순무우씨[蔓菁子],  
 생강[薑], 심황(深黃), 견우자(牽牛子)[검은 것과 흰 것 두 가지  
 가 있다.] , 자리공뿌리[商陸]이다.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사(司)를 창원(昌原)에 두었다.  
 [군관(軍官)이 5백 명, 수성군(守城軍)이 4백 38명이다.] 병마 첨  
 절제사(兵馬僉節制使)의 수어(守禦)하는 곳이 다섯이니, 울산진  
 (蔚山鎭)[군관 3백 99명, 수성군 40명] , 영일진(迎日鎭)[군관 3  
 백 1명, 수성군 80명] , 동래진(東萊鎭)[군관 3백 명, 수성군 80



명] , 영해진(寧海鎭)[군관 3백 명, 수성군 80명] , 사천진(泗川鎭)[군관 3백 명, 수정군 49명] 이며, 좌도 수군 도안무처치사(左道水軍都安撫處置使)는 동래(東萊) 부산포(富山浦)에 있다. [병선(兵船) 33척, 군사 1천 7백 79명]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수어(守禦)하는 곳이 11이니, 염포(鹽浦) 울산에, [도만호(都萬戶)가 수어한다. 병선(兵船) 7척, 군사 5백 2명] 서생포(西生浦) 울산에, [3품은 만호(萬戶), 4품은 부만호(副萬戶), 5품은 천호(千戶), 6품은 부천호(副千戶)라 일컫는다. 아래에도 이와 같다. 병선 20척, 군인 7백 67명] 축산포(丑山浦) 영해(寧海)에, [병선 12척, 군사 4백 29명] 오포(烏浦) 영덕(盈德)에, [병선 8척, 군사 3백 53명] 통양포(通洋浦) 흥해(興海)에, [지금은 두모적포(豆毛赤浦)에 있다. 병선 8척, 군사 2백 18명] 포이포(包伊浦) 장기(長鬐)에, [지금은 가엄포(加嚴浦)에 있다. 병선 8척, 군사 5백 89명] 감포(甘浦) 경주(慶州)에, [병선 6척, 군사 3백 87명] 개운포(開雲浦) 울산에, [병선 12척, 군사 4백 20명] 두모포(豆毛浦) 기장(機張)에, [병선 16척, 군사 8백 43명] 해운포(海雲浦) 동래(東萊)에, [병선 7척, 군사 5백 89명] 다대포(多大浦) 동래에 [병선 9척, 군사 7백 23명] 있다. 우도 수군 도안무처치사(右道水軍都安撫處置使)는 거제(巨濟) 오아포(吾兒浦)에 있다. [병선 28척, 군사 2천 6백 1명이다. 예전에는 제포(薺浦)에 있었는데, 금상(今上) 원년 기해에 대마도(對馬島)를 쳐서 파하고 처치사를 이곳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또 가배량(加背梁), 견내량(見乃梁) 등지의 만호로 하여금 옥포(玉浦)로 옮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른바 그 목구멍을 틀어막은 것이었다.]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수어



하는 곳이 여덟이니, 가배량(加背梁) 고성(固城)에, [지금은 거제(巨濟) 옥포(玉浦)에 있으니, 도만호가 수어한다. 병선 22척, 군사 1천 1백 22명] 제포(薺浦) 김해(金海)에, [병선 9척, 군사 8백 82명] 영등포(永登浦) 거제(巨濟)에, [병선 8척, 군인 7백 20명] 견내량(見乃梁) 고성(固城)에, [지금은 거제(巨濟) 옥포(玉浦)에 있으니, 병선 20척, 군사 9백 40명] 번계(樊溪) 고성(固城)에, [지금은 당포(唐浦)에 있으니, 병선 15척, 군사 7백 22명] 구량량(仇良梁) 진주(晉州)에, [지금은 고성(固城) 사포(蛇浦)에 있으니, 병선 16척, 군사 7백 48명] 적량(赤梁) 진주(晉州)에, [지금은 가을곶(加乙串)에 있으니, 병선 13척, 군사 7백 20명] 노량(露梁) 진주(晉州)에 [지금은 평산포(平山浦)에 있으니, 병선 8척, 군사 5백 68명] 있다.

감목관(監牧官)이 1인, 염장관(鹽場官)이 3인, 역승(驛丞)이 10인이다.

사근도승(沙近道丞)의 관할하는 역(驛)이 15, [금양(金陽), 권빈(勸賓), 유린(有隣), 삼가신역(三嘉新驛), 무촌(茂村), 성기(星奇), 성초(省草), 초계 신역(草溪新驛), 함양신역(咸陽新驛), 안음신역(安陰新驛), 신안(新安), 단계 신역(丹溪新驛), 전곡(戢穀), 신번 신역(新繁新驛), 소남(召南)] 성현도 승(省峴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14, [용가(龍駕), 수안(水安), 수산 신역(守山新驛), 무흘이(無訖伊), 동음 신역(冬音新驛), 풍각 신역(豐角新驛), 온정(溫井), 내야(內也), 일문(一門), 쌍산(雙山), 서지(西之), 청도 신역(淸道新驛), 매전(買田), 유천(榆川)] 김천도 승(金泉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16, [답계(踏溪), 안언(安偃), 무계(茂溪), 설화



(舌化), 팔거 신역(八莒新驛), 안림(安林), 추풍(秋豊), 부쌍(扶雙), 김산 신역(金山新驛), 양천(楊川), 범어(凡於), 하빈 신역(河濱新驛), 인동 신역(仁同新驛), 약목 신역(若木新驛), 작내(作乃), 장곡(長谷)] 창라도 승(昌樂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7, [창보(昌保), 평은(平恩), 유동(幽洞), 안교(安郊), 통명(通明), 도심(道深), 순흥 신역(順興新驛)] 장수도 승(長水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16, [청통(淸通), 영천 신역(永川新驛), 아화(阿火), 모량(毛良), 사리(沙里), 경역(鏡驛), 조역(朝驛), 인비(仁庇), 의곡(義谷), 육역(六驛), 압량(押梁), 흥해 신역(興海新驛), 대송(大松), 송라(松羅), 장기 신역(長鬐新驛), 하양 신역(河陽新驛)] 황산도 승(黃山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13, [잉보(仍甫), 노곡(奴谷), 구어(仇於), 부평(富平), 굴화(屈火), 간곡(肝谷), 운산(輪山), 위천(渭川), 덕천(德川), 아월(阿月), 성산(省山), 기장 신역(機張新驛), 동래 신역(東萊新驛)] 유곡도 승(幽谷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20, [요성(聊城), 덕통(德通), 낙양(洛陽), 낙동(洛東), 낙원(洛源), 낙서(洛西), 장림(長林), 청리 신역(靑里新驛), 공성 신역(功城新驛), 상평(常平), 구며(仇旆), 영향(迎香), 안곡(安谷), 상림(上林), 쌍계(雙溪), 안계(安溪), 수산(守山), 용궁 신역(龍宮新驛), 지보(知保), 소계(召溪)] 소촌도 승(召村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22, [진주 신역(晉州新驛), 말문 신역(末文新驛), 평거(平居), 부다(富多), 정수(正守), 평사(平沙), 금량 신역(金良新驛), 영선 신역(永善新驛), 상령(常令), 춘곡(春谷), 함안 신역(咸安新驛), 지남(知南), 송도(松道), 배둔(背屯), 춘원(春原), 횡포(橫浦), 울원(栗原), 마전(馬田), 관울(官栗), 사천 신역(泗川新驛), 완사



(浣沙), 오양(烏壤)] 안계도 승(安溪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16, [옹천(瓮泉), 일직 신역(一直新驛), 금소(琴召), 송제(松蹄), 우곡(牛谷), 청로(靑路), 철과(鐵破), 병곡(柄谷), 석보 신역(石保新驛), 영덕 남역(盈德南驛), 주등(酒登), 예안 신역(禮安新驛), 용안(龍安), 문거(文居), 화목(和睦), 진보 신역(眞寶新驛)] 자여도 승(自如道丞)의 관할하는 역이 12이다. [근주(近珠), 신평(新豊), 안민(安民), 창인(昌仁), 영포(靈浦), 김해 신역(金海新驛), 대산 신역(大山新驛), 남역(南驛), 금곡(金谷), 덕산(德山), 성법(省法), 적항(赤項)]

도내(道內)의 공부(貢賦)는 각각 가까운 곳에 따라, 김해(金海)의 불암창(佛巖倉), 창원(昌原)의 마산창(馬山倉), 사천(泗川)의 통양창(通洋倉) 등으로 나누어 수송하여 바다를 따라 전라, 충청도 해로(海路)를 지나서 서울에 이르는데, 수로(水路)가 험악하여 매양 파선하여 침몰되므로, 태종 3년 갑신에 조선(漕船)을 폐하고 각각 농민들로 하여금 충청도의 충주(忠州) 경원창(慶源倉)으로 바로 바치게 하였다. 그 가운데 낙동강 하류의 연강(沿江) 각 고을은 [김해(金海), 창원(昌原), 밀양(密陽), 양산(梁山), 함안(咸安), 초계(草溪), 창녕(昌寧), 칠원(漆原), 진해(鎭海), 의령(宜寧)] 삼가세(三價稅)를 [배 값[船價], 사람 값[人價], 말 값[馬價]을 이른다.] 거두어서 사람을 모집해 배에 싣고 [배 값과 사람 값을 준다.] 거슬러 올라와 상주(尙州)에 이르러서, 육로(陸路)로 운반하여 문경(聞慶) 초점(草岾)을 지나 [사람 값과 말 값을 준다.] 경원창에 바치면, 참선(站船)으로 서울에 이른다.



## ● 세종151지리지 / 전라도 / 전라도

全羅道 本百濟之地 至義慈王十九年 庚申 新羅太宗王與唐將蘇定方 滅百濟.逐併其地 景德王分爲全武二州都督府,眞聖王五年壬子 西面都統甄萱 悉據舊地 稱爲後百濟王 高麗太祖十九年丙申 親征百濟克之,成宗十四年乙未 全州瀛州淳州馬州等州縣爲江南道, 羅州光州靜州昇州貝州潭州朗州等州縣 爲海陽道, 顯宗九年戊午 改全羅道, 今因之. 道觀察使置司全州 東至慶尙道咸陽郡 西南際海 北至忠清道 恩津縣 東西二百三十三里, 南北四百五里 所管留守一, 牧二, 都護府四, 郡十二, 縣三十九, 界首官四, 全州羅州南原長興名山曰智異山在南原 其東晉州昆南 北咸陽山陰 西求禮南光陽 穹隆高大 峻極于天 山腰或有雲雨雷電 其上晴朗如常秋涼 鷹隼集羅取而貢進 諺傳太乙 居其上群仙之所會衆龍之所居也 杜甫詩所謂方丈三韓外 註及通鑑輯覽云 方丈在帶方郡之南是也 新羅爲南嶽中祀 高麗及本朝 皆仍爲中祀春秋降香祝 令觀察使致祭 錦城山在羅州 祭例與智異山同 無等山在武珍 豐厚高大 新羅爲小祀高麗致國祭 本朝令州官行祭 天冠山在長興 高險豐厚 往往瑞氣觸天如白炯人頗異之 祭禮無等山同 月出山在靈巖 石峰峻層竦立 其最高峯上 有岩屹立 高可二丈餘 旁有一穴 僅容一人 從其穴而上其嶺 可坐二十人 其平處有凹 而貯水如盆者九 號九井峯 雖旱不渴 諺傳九龍所在也 其下有動石 獨立層岩之上 高可丈餘 周可十圍 西連山骨 東臨無底之壑一人搖之則欲



崩不崩 如此石者 又有二焉 裳山在茂朱 四面壁立層層峻截 如人之裳 故稱裳山 古人因嶮爲城 僅有二路可上 其中平坦 寬曠泉水四出 合爲大川流注東壑 邊山在扶安 重疊高大岩 谷深邃 戰艦之才 多出於此 馬耳山在鎮安 兩峯竦立 東西 相對 形如削成高可千仞 其頂樹木森蔚 諺傳東山之頂 有小 池然可望 不可到我 太宗十三年癸巳 次于山下 遣官致祭 大川曰南浦津在羅州 其源有三其一潭陽秋月山之水 過昌平 縣 入茂珍之北 與昌平縣南水合 又與茂珍城西水交 轉西 而流 其一長城葦嶺之水 過珍原縣西 羅州北境歷古內廂城 南 至生鴨津 與茂珍北境水合 經羅州之東 其一綾城雙峰之 水 過南平縣北 又合于羅州東境水 南轉而西流爲南浦津 置 船渡人 至務安縣東 爲大堀浦 又西流過靈巖郡雲積山之麓 爲木浦入于海 下道漕運由此達于 京滌水津在求禮 其源有 二 其一鎮安中臺山之水 西南流過任實淳昌 轉而東流至南 原南境爲鶉子津 其一智異山西北諸壑之水 過南原入于鶉子 津 其下爲鴨祿津 又寶城亭子川水經福城古縣 北流爲洛水 津 東北流過古谷城入于鴨綠津 合而東流 至求禮縣南順天 北境 是爲滌水津 過智異山南麓 至慶尙道晉州古任內花開 縣西爲龍王淵 潮水之焉 東南流過光陽縣之南爲蟾津入于海 新倉津在全州 其源流三 其一府南礪峴之水 繞城南 西轉而 北流 與府西南母山諸壑之水 合至于蔘禮驛之南 又與高山 雲梯之水交 西流爲回浦爲飛良藏津 潮水至焉 至利城古城 北 爲新倉津 有舟子焉 西流萬頃臨陂至沃溝爲古沙浦 入海 東津在扶安縣 泰仁井邑兩縣之水 合于金堤碧骨水 西流至



興德東 與古阜訥堤水交爲東津 潮水之焉 作橋以通行人 過  
 萬頃縣西南入于海 戶二萬四千七十三 口九萬四千二百四十  
 八 軍丁侍衛軍一千一百六十七 營鎮軍 二千四百二十四 騎  
 船軍一萬一千七百九十三 墾田二十七萬七千五百八十八結  
 厥賦稻米豆 小麥芝麻蘇子苧布 厥貢 蜂蜜黃蠟虎皮豹皮熊  
 皮牛皮熟鹿皮熟獐皮 狐皮狸皮山獺皮水獺皮弓絃豹尾狐尾  
 黃毛鹿猪兔卿猪乾鹿乾獐乾猪丁香脯鹿尾猪毛牛角鹿角阿膠  
 筋雜羽斑猫玳瑁天鵝沙魚乾水魚全鮑生鮑乾紅蛤落地石花甘  
 蛤生蛤銀口魚紅大蝦引鮑條鮑烏賊魚玉頭魚昆鮑魚膠漆芥子  
 黃栗棗乾柿子紅柿子木瓜石榴梨榛實芡仁柚子柑子榧子乳柑  
 洞庭橘金橘青橘山橘菱仁粉藿常藿早藿海毛牛毛海角黃角莓  
 山伊海衣甘苔烏海子松茸石茸眞茸葉菁薑蕨芝草槐花梔子雀  
 舌茶松花松煙松脂綿花苧麻麻索各色紙筍席竹皮方席篠烏竹  
 箭竹土藤箱子竹皮乾筍磁器木器柳器 藥材牛黃牛膽虎骨蝟  
 皮熊膽鹿茸鹿角霜鹿角膠兔頭鹿角獺膽羚羊角島阿烏油蟾蛛  
 桑螵蛸鼈甲烏魚骨乾鯉鯉膽蜈蚣虻虫蟬脫皮龜甲石決明人蔘  
 零陵香藿香舶上茴香鷄頭實蓮花藥金銀花芍藥牽牛子木通天  
 門冬麥門冬瞿麥穗天麻澤瀉兔緣子紫莞紫莞根蓮子貫衆破古  
 紙蒼朮藍漆虎杖根當歸旋覆花括婁芍藥半夏浦黃升麻桔梗馬  
 蔞花細辛葛花大戟白蟬皮天南星牛膝射干苦參白芷前胡草烏  
 頭鷄蘇防風蒿本商陸昆布茅香忍冬草遠志蘆根苧蘆莞蔚子稀  
 簽酸醬續斷白頭翁香附子鬱金赤前子蘭香紫草玄蔘柴胡京三  
 稜白附子澤漆白斂白芨五味子蒼耳地榆菖蒲紫荷蘗水萍甘菊  
 花茵陳漏蘆蔑靈仙薄荷續隨子茜草根葶藶子黃耆蔓荊子馬兜



苓薺芫大小薊草蓑荷芭蕉徐長卿益貫草決明子白芍藥芋葉石  
 薺草薺蒴藿山藥獨活蜀有子川練子石榴皮白梅烏梅枳殼枸杞  
 子鹽梅實茯苓牧丹皮楮實竹茹地骨皮竹瀝黃蘗皮川椒白茯苓  
 胡桃五加皮淡竹葉躑躅花皂莢皂角刺郁李仁乾木瓜杏仁五倍  
 子桃仁蚤休側柏葉棠梨松子仁陳皮海桐皮青皮厚朴杜仲松實  
 八角茯神 種藥生地黃大黃乾薑白朮豆黑朮豆惡實深黃香薷  
 漕倉二 榮山倉在羅州木浦 德成倉在咸悅縣西皮浦 關防守  
 禦兵馬都節制使營在康津縣 鎮四沃溝扶安茂長兆陽 水軍處  
 置使營在務安縣大堀浦 左道都萬戶船泊處在寶城郡東呂島  
 梁掌內萬戶八 內禮在順天附南旆浦 突山在順天府南龍門浦  
 築頭在高興縣南高興浦 鹿島在長興府東鹿島梁 會寧浦在長  
 興府南周浦 馬島在康津縣南垣浦 達梁在靈巖郡南 於蘭在  
 海珍郡南三寸浦 右道都萬戶船泊處在咸平縣西垣串 掌內萬  
 戶五 木浦在務安縣南 多慶浦在務安縣西瓦浦 法聖浦在靈  
 光郡北 黔毛浦在扶安縣南熊淵 群山在沃溝縣北鎮浦 監牧  
 官三人 驛丞七人 昌活道所管驛十一人 鶯谷道所管驛五 濟  
 原道所管驛二 碧沙道所管驛九 參禮道所管驛六 青巖道所  
 管驛九 景陽道所管驛八

• 전라도(全羅道)

본래 백제의 땅이다. 의자왕(義慈王) 19년 경신에 [당나라 고  
 종(高宗) 현경(顯慶) 5년] 신라 태종왕(太宗王)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과 더불어 백제를 멸하고 드디어 그 땅을 합쳤  
 는데,景德왕(景德王)이 전주(全州), 무주(武州) 두 도독부(都督



府)로 나누었다. 진성왕(眞聖王) 5년 임자 [당나라 소종(昭宗) 경복(景福) 원년] 에 서면 도통(西面都統) 견훤(甄萱)이 백제의 옛 땅을 모두 차지하여 후백제왕(後百濟王)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19년 병신 [후진(後晉) 고조(高祖) 원복(元福) 원년] 에 친히 후백제를 쳐서 이기고, 성종(成宗) 14년 을미 [송나라 태종(太宗) 지도(至道) 원년] 에 전주(全州), 영주(瀛州), 순주(淳州), 마주(馬州) 등 고을을 강남도(江南道)로 하고, 나주(羅州), 광주(光州), 정주(靜州), 승주(昇州), 패주(貝州), 담주(潭州), 낭주(朗州) 등 고을을 해양도(海陽道)로 하였다가, 현종(縣宗) 9년 무오 [송나라 진종(眞宗) 천희(天禧) 2년] 에 전라도로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도관찰사(都觀察使)의 관청을 두고 있다.

동쪽은 경상도(慶尙道) 함양군(咸陽郡)에 이르고, 서, 남쪽은 바다에 닿으며, 북쪽은 충청도(忠淸道) 은진현(恩津縣)에 이르는데, 동, 서가 2백 33리요, 남, 북이 4백 5리이었다.

관할은 유수(留守)가 1이요, 목(牧)이 2이요, 도호부(都護府)가 4이요, 군(郡)이 12이요, 현(縣)이 39이며, 계수관(界首官)이 4이니, 전주(全州), 나주(羅州), 남원(南原), 장흥(長興)이다.

명산(名山)은 지리산(智異山)[일명 지리(地理), 또는 방장(方丈), 또는 두류(頭流)라 한다.] 인데 남원(南原)에 있으니, 그 동쪽은 진주(晉州), 곤남(昆南)이요, 북쪽은 함양(咸陽), 산음(山陰)이요, 서쪽은 구례(求禮)요, 남쪽은 광양(光陽)이다. 웅장하게 높이가 하늘에 우뚝 치솟아, 산허리에 간혹 구름이 머물고,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그 위는 맑게 개어 평상시와 같으며,



가을철 서늘하면 매떼[鷹]가 모여들므로 잡아다가 나라에 바친다. 속설에 전하기를, “태을(太乙)이 그 위에 살고, 여러 신선(神仙)이 모여, 여러 용(龍)이 살고 있다.”고 한다. 두보(杜甫)의 시에 소위 “방장은 삼한 밖이라[方丈三韓外].” 한 주(註)와 《통감집람(通鑑輯覽)》에 이르기를,

“방장(方丈)은 대방군(帶方郡) 남쪽에 있다.” 한 것은 이 산을 말하는 것이다. 신라에서 남악(南嶽), 중사(中祀)로 하였고, 고려와 본조(本朝)에서도 모두 그대로 따라 중사(中祀)로 하여서, 봄, 가을에 향, 축(香祝)을 내리어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한다. 금성산(錦城山)은 나주(羅州)에 있는데, 제례(祭例)는 지리산과 같다. 무등산(無等山)은 [일명 무진악(武珍岳), 또는 서석산(瑞石山)이라 한다.] 무진(武珍)에 있는데, 풍후하고 높고 커서, 신라에서는 소사(小祀)로 하였고, 고려에서는 나라 제사[國祭]를 지냈고, 본조(本朝)에서는 주(州)의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한다. 천관산(天冠山)은 장흥(長興)에 있는데, 높고 험하고 풍후하여, 가끔 서기(瑞氣)가 흰 연기같이 하늘을 찢어서, 사람들이 자못 이상히 여기며, 제례는 무등산과 같다. 월출산(月出山)은 [일명 월내악(月柰岳)이라 한다.] 영암(靈岩)에 있는데, 바위 봉우리가 층층이 치솟아 섰고, 그 가장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바위가 우뚝 솟아있어, 높이가 두 길이 넘으며, 곁에 한 구멍이 있는데,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하며, 그 구멍을 따라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20명이 앉을 만하고, 그 평평한 곳에 오목하게 패어서 물이 담기기를 동이같이 된 것이 아홉이므로, 구정봉(九井峯)이라 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



하므로, 속설에 전하기를,

“아홉 용[九龍]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아래에 움직이는 돌이 있는데, 홀로 층바위 위에 서서 높이가 한 길이나 넘고, 둘레가 열 아름이나 되며, 서쪽으로는 산골에 연하고, 동쪽으로는 밑없는 구렁에 임하였는데, 한 사람이 흔들면 무너질 듯하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같은 바위가 또 돌이 있었다. 상산(裳山)은 무주(茂朱)에 있는데, 사면(四面)이 벽처럼 서서 층층히 끊어져 사람의 치마처럼 되었으므로, 상산이라 한다. 옛사람이 험한 것을 이용하여 성을 만들었는데, 겨우 두 길이 있어서 올라다니며, 그 가운데는 평탄하고 넓으며, 샘물이 사방에서 나와 합하여 큰 냇가 되어 동쪽 구렁으로 흘러 들어간다. 변산(邊山)은 [일명 영주산(瀛洲山)이라 한다.] 부안(扶安)에 있는데, 여러 겹으로 높고 크며, 바위로 된 골짜기가 깊고 으늑하며, 전함(戰艦)의 재목이 많이 이곳에서 난다. 마이산(馬耳山)은 진안(鎭安)에 있는데, 두 봉우리가 우뚝 솟아 동서로 마주 서서 모양이 깎아 세운 듯하며, 높이가 천 길이나 되고, 그 꼭대기에 나무가 울창하며, 속설에 전하기를, “동쪽산 꼭대기에 작은 못이 있다.” 하나, 바라만 보일 뿐이요, 올라갈 수는 없다. 우리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임금이 산 아래에 행차(行次)하여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대천(大川)은 남포진(南浦津)이 나주(羅州)에 있는데, 그 수원이 3이 있으니, 그 하나는 담양(潭陽) 추월산(秋月山)의 물이 창평현(昌平縣)을 지나 무진(茂珍)의 북쪽으로 들어가 창평현(昌平縣)의 남쪽 물과 합하고, 또 무진성(茂珍城) 서쪽 물과 어울



러 서쪽으로 흐르고, 그 하나는 장성(長城) 위령(葦嶺)의 물이 진원현(珍原縣) 서쪽과 나주 북쪽 경계를 지나 옛 내상성(內廂城) 남쪽을 거쳐서 생압진(生鴨津)에 이르러 무진 북쪽 경계의 물과 합하여 나주의 동쪽을 지나고, 그 하나는 능성(綾城) 쌍봉(雙峯)의 물이 남평현(南平縣) 북쪽을 지나 또 나주의 동쪽 경계의 물과 합하여 남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흘러서 남포진(南浦津)이 되어 나룻배로 사람을 건너게 되고, 무안현(務安縣) 동쪽에 이르러 대굴포(大堀浦)가 되고, 또 서쪽으로 흘러서 영암군(靈岩郡) 운적산(雲積山)의 기슭을 지나 목포(木浦)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하도(下道)의 조운(漕運)이 이곳을 경유하여 서울에 이른다. 잔수진(澗水津)은 구례(求禮)에 있는데, 그 수원이 2가 있으니, 그 하나는 진안(鎭安) 중대산(中臺山)의 물이 서남쪽으로 흘러 임실(任實), 순창(淳昌)을 지나 돌아서 동쪽으로 흘러 남원 남쪽 경계에 이르러 순자진(鶉子津)이 되며, 그 하나는 지리산 서북쪽 여러 골짜기의 물이 남원을 지나 순자진으로 들어가서, 그 하류가 압록진(鴨綠津)이 되며, 또 보성 정자천(寶城亭子川)의 물이 북성(福城) 옛 현(縣)을 지나 북쪽으로 흘러서 낙수진(洛水津)이 되고, 동북쪽으로 흘러 옛 곡성(谷城)을 지나 압록진으로 들어가서 합하여 동쪽으로 흘러, 구례현 남쪽과 순천(順天) 북쪽 경계에 이르러 잔수진이 되고, 지리산 남쪽 기슭을 지나서 경상도 진주(晉州)의 옛 임내(任內) 화개현(花開縣) 서쪽에 이르러 용왕연(龍王淵)이 되는데, 조수가 이르며, 동남쪽으로 흘러 광양현(光陽縣)의 남쪽을 지나 섬진(蟾津)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신창진(新倉津)은 전주(全州)에 있는데, 그 수원이



3이 있으니, 그 하나는 부(府)의 남쪽 여현(礪峴)의 물이 성(城) 남서쪽을 돌아서 북쪽으로 흘러 부(府)의 서남쪽 모산(母山) 여러 골짜기의 물을 합하고, 삼례역(蔘禮驛) 남쪽에 이르러 또 고산(高山)과 운제(雲梯)의 물과 어울려서 서쪽으로 흘러 회포(回浦)가 되고, 비간장진(飛良藏津)이 되는데, 조수가 이르며, 이성(利城)의 옛 성(城) 북쪽에 이르러 신창진(新倉津)이 되는데, 나룻배가 있으며, 서쪽으로 흘러 만경(萬頃)과 임피(臨陂)를 지나 옥구(沃溝)에 이르러 고사포(古沙浦)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동진(東津)은 부안현(扶安縣)에 있는데, 태인(泰仁)과 정읍(井邑) 두 현(縣)의 물이 김제(金堤) 벽골(碧骨)의 물과 합하여 서쪽으로 흘러서 흥덕(興德) 동쪽에 이르러 고부(古阜) 늘제(訥堤)의 물과 어울려 동진이 되는데, 조수가 이르므로 다리를 놓아 행인을 다니게 하고, 만경현 서남쪽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

호수[戶]는 2만 4천 73호요, 인구[口]는 9만 4천 2백 48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천 1백 67명이고, 영진군(營鎭軍)이 2천 4백 24명이고, 기선군(騎船軍)이 1만 1천 7백 93명이다.

간전(墾田)이 27만 7천 5백 88결(結)이다.[논이 10분의 4이다.]

그 부세(賦稅)는 범쌀[참쌀, 멍쌀], 콩[누령콩, 팥, 녹두], 밀[小麥], 참깨[芝麻], 차조기씨[蘇子], 모시[苧布]요, 그 공물(貢物)은 꿀, 밀[黃蠟], 범가죽[虎皮], 표범가죽[豹皮], 곰가죽, 쇠가죽, 말가죽, 이진 사슴가죽[熟鹿皮], 이진 노루가죽[熟獐皮], 여



우가죽, 삶팽이가죽, 잘[山獺皮], 물개가죽[水獺皮], 활줄[弓絃], 표범꼬리[豹尾], 여우꼬리[狐尾], 족제비털[黃毛], 사슴, 돼지, 토끼, 산돼지, 말린 사슴, 말린 노루, 말린 돼지, 정향(丁香), 포(脯), 사슴꼬리[鹿尾], 돼지털, 쇠뿔, 녹각(鹿角), 갓풀[阿膠], 힘줄[筋], 잡깃[雜羽], 가뢰[斑猫], 대모(玳瑁), 고니[天鵝], 상어, 말린 송어, 전복, 생복[生鮑], 말린 홍합, 낙지, 굴, 감합(甘蛤), 대합조개, 은어, 붉은 큰새우, 인포(引鮑), 조포(條鮑), 오징어, 옥등어[玉頭魚], 다시마, 부레, 칠(漆), 겨자, 황밤[黃栗], 대추, 곱감, 연감[紅柿子], 모과, 석류, 배[梨], 개암, 가시연밥[芡仁] 유자(柚子), 감자나무열매, 비자[榧子], 유감(乳柑), 동정굴(洞庭橘), 금굴(金橘), 푸른굴[靑橘], 산굴(山橘), 마름[菱仁], 분곽(粉藿), 상곽(常藿), 올떡[早藿], 해모(海毛), 우무, 해각(海角), 황각(黃角), 매산이(莓山伊), 김[海衣], 감태(甘筍), 오해자(烏海子), 송이, 석이, 느타리, 표고, 새앙, 고사리, 지초, 회화나무꽃, 치자, 작설차[雀舌茶], 송화(松花), 소나무그을음[松煙], 송진[松脂], 목화, 모시, 삼[麻], 삼노, 각색 종이 [표전지(表箋紙), 자문지(咨文紙), 부분단자지(副本單子紙), 주본지(奏本紙), 피봉지(皮封紙), 서계지(書契紙), 축문지(祝文紙), 표지(表紙), 도련지(擣鍊紙), 중폭지(中幅紙), 상표지(常表紙), 갑의지(甲衣紙), 안지(眼紙), 세화지(歲畫紙), 백주지(白奏紙), 화약지(火藥紙), 장지(狀紙), 상주지(常奏紙), 유둔지(油菴紙), 유둔(油菴)] , 자리[席][별무늬돛자리[別紋踏席], 보통무늬돛자리[常紋踏席], 흰무늬돛자리[白紋席], 왕골 자리[草席]] , 대껍질방석[竹皮方席], 가는 대[篠], 오죽(烏竹), 화살대[箭竹], 바닷대[海竹], 등상자[土藤箱子],



대껍질[竹皮], 말린 죽순[乾筍], 자기(磁器), 나무그릇[木器], 버들고리[柳器]이다. 약재(藥材)는 우황(牛黃), 쇠쓸개[牛膽], 범의 뼈[虎骨], 고슴도치가죽[蝟皮], 곰쓸개[熊膽], 녹용, 녹각상(鹿角霜), 토끼머리[兔頭], 녹각(鹿角), 담비쓸개[獺膽], 산양이뿔[羚羊角], 도아조기름[島阿烏油], 두꺼비[蟾蛛], 뽕나무벌레[桑蝶蛸], 자라껍데기[鼈甲], 오징어뼈[烏魚骨], 말린 잉어[乾鯉], 잉어쓸개[鯉膽], 자네[蜈蚣], 등에[虻虫], 매미허물[蟬脫皮], 거북껍데기[龜甲], 결명초[石決明], 인삼(人蔘), 영릉향(零陵香), 곽향(藿香), 박상(舶上), 회향(茴香), 가시연밥[鷄頭實], 연꽃[蓮花藥], 겨우살이꽃[金銀花], 궁궁이[芎藭], 나팔꽃씨, 으름덩굴[木通], 호라비쭈뿌리[天門冬], 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 패랭이꽃이삭[瞿麥穗], 수자해쭈뿌리[天麻], 택사(澤瀉), 새삼씨[免綠子], 탕알[紫莞], 탕알뿌리, 연밥[蓮子], 회초미뿌리[貫衆], 파고지(破古紙), 삼주뿌리[蒼朮], 쪽[藍], 칠[漆], 감제뿌리[虎杖根], 당귀(當歸), 하국[旋覆花], 하늘타리[括婁], 작약(芍藥), 끼무릇뿌리[半夏], 부들꽃[蒲黃], 끼절가리뿌리[升麻], 도라지[桔梗], 꽃창포[馬藺花], 족두리풀뿌리[細辛], 칩꽃[葛花], 버들옷[大戟], 검화뿌리껍질[白蘇皮], 두여머조자기[天南星], 쇠무릎지기[牛膝], 범부채[射干], 쓴너삼뿌리[苦參], 구리때뿌리[白芷], 사양채뿌리[前胡], 바곳[草烏頭], 계소(鷄蘇), 병풍나물뿌리[防風], 송나물[蒿本], 자리공뿌리[商陸], 다시마[昆布], 흰띠[茅香], 겨우살이덩굴[忍冬草], 아기풀[遠志], 갈뿌리[蘆根], 박새[菖蘆], 암눈바앗씨[蔚子], 진득찰[稀簽], 짜리[酸醬], 검산풀뿌리[續斷], 할미씨개비[白頭翁], 향부자(香附子), 심황[鬱金], 수자해쭈씨[赤前子], 난향[蘭香], 지치[紫草], 현



삼(玄蓼), 멧미나리[柴胡], 매자기뿌리[京三稜], 흰바곳[白附子], 등대풀삭[澤漆], 가위톱[白斂], 대왕풀[白芨], 오미자(五味子), 창이(蒼耳), 외나물뿌리[地榆], 창포(菖蒲), 자주연꽃[紫荷蕖], 개구리밥[水萍], 감국화(甘菊花), 더위지기[茵陳], 절국대[漏蘆], 수취나물[蔑靈仙], 영생이[薄荷], 속수자[續隨子], 꼭두서니뿌리[茜草根], 두루미냉이씨[葶瀝子], 단너삼[黃耆], 순비기나무열매[蔓荊子], 쥐방울[馬兜苓], 게로기뿌리[薺萆], 향가새[大薊草], 조방가새[小薊草], 사하(蓑荷), 파초, 산해박[徐長卿], 익관초(益貫草), 초결명씨[決明子], 백작약(白芍藥), 모시잎[苧葉], 석골풀[石], 골풀[草], 말오줌나무[蒴藿], 마뿌리[山藥], 두릅뿌리[獨活], 속수자[蜀有子], 소태나무열매[川練子], 석류겍질[石榴皮], 흰매화[白梅], 매화열매[烏梅], 탕자겍데기[枳殼], 괴죯나무열매[枸杞子], 흰매화열매[鹽梅實], 복령(茯苓), 모란겍데기[牡丹皮], 닥나무열매[楮實], 솜대속겍질[竹茹], 괴죯나무뿌리겍질[地骨皮], 죽력(竹瀝), 황경나무겍데기[黃蘗皮], 조피나무열매[川椒], 백복령(白茯苓), 호도(胡桃), 오갈피[五加皮], 솜대잎[淡竹葉], 철쭉꽃[躑躅花], 쥐엄나무열매[皂莢], 쥐엄나무가시[皂角刺], 산이스랏씨[郁李仁], 말린 모과[乾木瓜], 살구씨[杏仁], 오배자(五倍子), 복숭아씨[桃仁], 샷갓나물[蚤休], 측백나무잎[側栢葉], 아가위[棠], 배[梨], 잣[松子仁], 묵은 굴겍질[陳皮], 엄나무겍질[海桐皮], 푸른 굴겍질[靑皮], 후박(厚朴), 두충(杜沖), 솔씨[松實], 담배[八角], 복신(茯神)이다.

심는 약[種藥]은 생지황(生地黃), 장군풀[大黃], 건강(乾薑), 백편두(白篇豆), 검은 변두[黑篇豆], 우영[惡實], 심황(深黃), 소야



기[香藿]이었다.

조운창[漕倉]이 2이니, 영산창(榮山倉)이 나주(羅州) 목포(木浦)에 있고, [나주, 순천(順天), 장흥(長興), 담양(潭陽), 낙안(樂安), 보성(寶城), 해진(海珍), 영암(靈岩), 영광(靈光), 무진(茂珍), 강진(康津), 고흥(高興), 광양(光陽), 능성(綾城), 남평(南平), 화순(和順), 동복(同福), 곡성(谷城), 옥과(玉菓), 창평(昌平), 진원(珍原), 장성(長城), 흥덕(興德), 무장(茂長), 함평(咸平), 무안(務安) 등의 조세를 이곳에 바친다.] 덕성창(德成倉)이 함열현(咸悅縣) 서피포(西皮浦)에 있다. [함열, 전주(全州), 남원(南原), 익산(益山), 고부(古阜), 김제(金堤), 금산(錦山), 진산(珍山), 순창(淳昌), 임피(臨陂), 옥구(沃溝), 만경(萬頃), 부안(扶安), 정읍(井邑), 금구(金溝), 태인(泰仁), 임실(任實), 구례(求禮), 운봉(雲峯), 장수(長水), 진안(鎭安), 용담(龍潭), 무주(茂朱), 고산(高山), 여산(礪山), 용안(龍安) 등의 조세를 이곳에 바친다.]

관방(關防)의 수어(守禦)는 병마 도절제사 영(兵馬都節制使營)이 강진현(康津縣)에 있고 [정군(正軍)이 4백 98명, 수성군(守城軍)이 51명, 조역군(助役軍)이 1백 63명, 장인(匠人)이 1백 41명이다.], 진(鎭)이 4이니, 옥구(沃溝), 부안(扶安), 무장(茂長), 조양(兆陽)이요 [정군이 각각 3백명이다.], 수군 처치사 영(水軍處置使營)이 무안현(務安縣) 대굴포(大堀浦)에 있고 [대선(大船) 8척, 중선(中船) 16척, 군사 1천 8백 95명, 뱃사공[梢工] 21명을 거느린다.], 좌도 도만호 선박처(左道都萬戶船泊處)가 보성군(寶城郡) 동쪽 여도량(呂島梁)에 있는데 [중선 6척, 맹선(孟船) 12척과 군사 1천 12명과 뱃사공 19명을 거느린다.], 관내의 만



호(萬戶)가 8이니, 내례(內禮)가 순천부(順天府) 남쪽 며포(旆浦)에 있으며[중선 6척, 별선(別船) 6척과 군사 7백 66명과 뱃사공 6명을 거느린다.], 돌산(突山)이 순천부 남쪽 용문포(龍門浦)에 있으며[중선 8척과 군사 5백 18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축두(築頭)가 고흥현(高興縣) 남쪽 고흥포(高興浦)에 있으며[중선 6척, 별선 2척과 군사 5백 12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녹도(鹿島)가 장흥부(長興府) 북쪽 녹도량(鹿島梁)에 있으며[중선 6척, 별선 2척과 군사 4백 83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회령포(會寧浦)가 장흥부 남쪽 주포(周浦)에 있으며, [중선 4척, 별선 4척과 군사 4백 72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마도(馬島)가 강진현(康津縣) 남쪽 원포(垣浦)에 있으며[중선 8척과 군사 5백 10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달량(達梁)이 영암군(靈岩郡) 남쪽에 있으며[중선 7척, 맹선(孟船) 2척과 군사 5백 19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어란(於蘭)이 해진군(海珍郡) 남쪽 삼촌포(三寸浦)에 있다. [중선 4척과 군사 4백 80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우도 도만호 선박처(右道都萬戶船泊處)는 함평현(咸平縣) 서쪽 원관(垣串)에 있는데[중선 8척, 별선 10척과 군사 1천 55명과 뱃사공 9명을 거느린다.], 관내 만호(萬戶)가 5이니, 목포(木浦)가 무안현(務安縣) 남쪽에 있으며[중선 6척, 별선 2척과 군사 4백 98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다경포(多慶浦)가 무안현 서쪽 와포(瓦浦)에 있으며[중선 4척, 별선 4척과 군사 4백 79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법성포(法聖浦)가 영광군(靈光郡) 북쪽에 있으며[중선 6척, 별선 2척과 군사 4백 93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금모포(黔毛浦)



가 부안현(扶安縣) 남쪽 웅연(熊淵)에 있으며[중선 4척, 별선 4척과 군사 4백 55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군산(群山)이 옥구현(沃溝縣) 북쪽 진포(鎭浦)에 있다. [중선 4척, 별선 4척과 군사 4백 61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감목관(監牧官)이 3인이요[도(道)안에 1인이요, 제주(濟州)에 2인이다.], 역승(驛丞)이 7인이니, 창활도(昌活道)의 관할 역(驛)이 11이요[잔수(潺水), 갈담(葛潭), 오수(獒樹), 은령(銀嶺), 통도(通道), 인월(引月), 익신(益申), 섬거(蟾居), 양률(良栗), 낙수(洛水), 지신(知申)], 앵곡도(鶯谷道)의 관할 역이 5이요[거산(居山), 천원(川原), 부흥(扶興), 내재(內才), 영원(瀛原).], 제원도(濟原道)의 관할 역이 2이요[달계(達溪), 소천(所川)], 벽사도(碧沙道)의 관할역이 9이요[파청(波淸), 진원(鎭原), 통로(通路), 낙신(樂新), 영보(永保), 별진(別珍), 녹산(祿山), 양강(陽江), 가신(可申)], 삼례도(參禮道)의 관할 역이 6이요[반석(半石), 양재(良才), 오원(烏原), 재곡(才谷), 소안(蘇安), 옥포(玉包).], 청엄도(靑嚴道)의 관할 역이 9이요[단엄(丹嚴), 선엄(仙嚴), 신안(新安), 녹사(祿沙), 청송(靑松), 영신(永申), 청연(淸淵), 경신(慶新), 가리(街里)], 경양도(景陽道)의 관할 역이 8이다. [덕기(德基), 가림(加林), 인물(人物), 창신(昌新), 대부(大富), 금부(黔富), 오림(烏林), 광리(廣里)]



## ● 세종151지리지 / 전라도 / 남원 도호부

南原都護府使一人 本百濟古龍郡後漢建安中爲帶方郡 曹魏時爲南帶方郡 新羅并百濟 文武王二年癸亥 唐高宗詔劉仁軌檢校帶方州刺史 神文王四年乙酉 置小京 景德王改爲南原小京 高麗太祖二十三年庚子 改南原府 忠宣王二年庚戌 復爲帶方郡後改爲南原郡 恭愍王九年庚子陞爲南原府 本朝 太宗十三年癸巳例爲都護府古屬縣一 居寧鄉十 寶有居利德城白波守道阿仁道知京徒南安末阿所十所火尺申內河豆加金城龍峯熊陰岐於淺 置等保陽川興福部曲四 原川金岸山洞古丁 鎮山蛟龍名山地異 鶉子津四境 東距雲峯二十二里 西距淳昌二十八里 南距求禮四十里 北距任實三十一里 戶一千三百 口四千九百十二 軍丁 侍衛軍一百十七 鎮軍八十六 順天守護軍六十三 船軍五百六十七 土姓十一 梁鄭晉尹楊甄皇甫廉裴柳黃 續姓三 李林宋 居寧姓五 白張韓李黃厥土肥十分之二俗尙輕華 墾田一萬二千五百八結 土宜五穀桑麻木綿楮柿木瓜漆 土貢豹狐狸皮黃毛漆石榴棗柿梨芝草表箋止席 藥材 薑皂莢鹿角霜大黃茯苓熊膽梅實當歸黃蠟蓮房麥門冬瞿麥穗牧丹皮深黃人蔘 土產 銀口魚磁器所一 陶器所二 蛟龍山石城驛四 通道銀嶺檠樹昌活 萬福寺越境 玉果縣東省坪之地 越大川入于府西所嶺郡一 淳昌縣九 龍潭求禮任實雲峯長水茂朱鎮安谷城光陽.



• 남원 도호부(南原都護府)

사(使) 1인.

본래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이었는데, 후한(後漢) 건안(建安) 때 대방군(帶方郡)이 되었고, 조위(曹魏) 때에 남대방군(南帶方郡)이 되었다. 신라에서 백제를 병합하고 문무왕(文武王) 2년 계해[당나라 용삭(龍朔) 3년]에, 당(唐)나라 고종(高宗)이 명하여 유인궤(劉仁軌)를 검교 대방주 자사(檢校帶方州刺史)로 삼았고, 신문왕(神文王) 4년 을유[당나라 측천후(則天后) 수공(垂拱) 원년]에 소경(小京)을 두었다가 경덕왕(景德王)이 남원 소경(南原小京)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太祖) 23년 경자[후진(後晉) 고조(高祖) 천복(天福) 5년]에 남원부(南原府)로 고쳤고, 충선왕(忠宣王) 2년 경술[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3년]에 다시 대방군(帶方郡)으로 하였다가 뒤에 남원군으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9년 경자[원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20년]에 남원부(南原府)로 승격하였다.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명나라 태종(太宗) 영락(永樂) 11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를 삼았다. 옛 속현(屬縣)이 1이니, 거령(居寧)이요[본래 백제의 거사물현(居斯勿縣)이었는데, 신라에서 청웅현(靑雄縣)으로 고쳐서 임실(任實)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에서 거령현(居寧縣)으로 고쳤다.], 향(鄉)이 10이니, 보유(寶有), 거리(居利), 덕성(德城), 백파(白波), 수도(守道), 아인(阿仁), 도지(道知), 경도(京徒), 남안(南安), 미아(未阿)요, 소(所)가 10이니, 소화척(所火尺), 신내하(申內河), 두가(豆加), 금성(金城), 용봉(龍峯), 응음(熊陰), 기어천(岐於淺), 치등보(置等保), 양천(陽川), 흥복(興福)



이요, 부곡(部曲)이 4이니, 원천(原川), 금안(金岸), 산동(山洞), 고정(古丁)이다.

진산(鎭山)은 교룡(蛟龍)이요【부의 서북쪽에 있다.】, 명산(名山)은 지리(地異)이다. 【부의 동쪽에 있다.】 순자진(鶉子津)【부의 서남쪽에 있는데, 그 남북 언덕에 층루(層樓)가 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운봉(雲峯)에 이르기 22리, 서쪽으로 순창(淳昌)에 이르기 28리, 남쪽으로 구례(求禮)에 이르기 40리, 북쪽으로 임실(任實)에 이르기 31리이다.

호수가 1천 3백 호요, 인구가 4천 9백 12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백 17명이요, 진군이 86명이요, 순천 수호군(順天守護軍)이 63명이요, 선군이 5백 67명이다.

토성(土姓)이 11이니, 양(梁), 정(鄭), 진(晉)【아전[人吏]의 성이 되었다.】, 윤(尹), 양(楊), 견(甄), 황보(皇甫), 염(廉), 배(裨), 유(柳), 황(黃)이요【백성(百姓)의 성(姓)이다.】, 속성(續姓)이 3이니, 이(李), 임(林), 송(宋)이다. 【모두 향리(鄉吏)이다.】 거령(居寧)의 성이 5이니, 백(白), 장(張), 한(韓), 이(李), 황(黃)이다.

땅이 10분의 2가 기름지며, 풍속이 경박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숭상한다. 간전(墾田)이 1만 2천 5백 8결이요【논이 조금 많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 삼, 목화, 닥나무, 감, 모과, 칠(漆)이다. 토공(土貢)은 표범가죽, 여우가죽, 삿갓이가죽, 족제비털[黃毛], 칠, 석류, 대추, 감, 배[梨], 지초, 표전지(表箋紙), 자리요, 약재(藥材)가 새양, 쥐엄나무열매[皂莢], 녹각상(鹿角霜), 장군풀[大黃], 복령(茯苓), 곰쓸개[熊膽], 매화열매[梅實], 당귀(當歸), 밀[黃蠟], 연밥송이[蓮房], 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 패랭이



꽃이삭[瞿麥穗], 모란뿌리껍질[牧丹皮], 심황(深黃), 인삼(人蔘)이다. 토산(土産)은 은어[銀口魚]다. 자기소가 1이요[부의 북쪽 아산리(阿山里)에 있는데, 중품이다.], 도기소가 2이다. [하나는 부의 서쪽 초랑리(草狼里)에 있고, 하나는 부의 동쪽 은령리(銀嶺里)에 있다.]

교룡산 석성(蛟龍山石城)[서북쪽에 있는데, 둘레가 1천 1백 25보이며, 성안에 샘이 6이 있고, 또 작은 시내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군창이 있다.] 역(驛)이 4이니, 통도(通道), 은령(銀嶺), 오수(獒樹), 창활(昌活)이다. 만복사(萬福寺)[부의 서남쪽에 있다. 그 동쪽에 오층전(五層殿)이 있고, 서쪽에 이층전(二層殿)이 있으며, 전각 안에 철불(鐵佛)이 있는데, 길이 35척, 무게 1만 3천 근이며, 그 전각의 제도가 이상하다. 어느 시대에 창건한 것인지 모른다.]

월경(越境)은 옥과현(玉果縣)의 동성평(東省坪)의 땅이 큰 내를 건너서 부의 서쪽에 들어와 있다.

관할[所領]은 군(郡)이 1이니, 순창(淳昌)이요, 현(縣)이 9이니, 용담(龍潭), 구례(求禮), 임실(任實), 운봉(雲峯), 장수(長水), 무주(茂朱), 진안(鎭安), 곡성(谷城), 광양(光陽)이다.



## ● 세종151지리지 / 전라도 / 남원 도호부 / 장수현

長水縣 本百濟雨坪縣 新羅改高澤縣爲長溪領縣 高麗改長水縣爲南原府任內 本朝 太祖元年 壬申復分爲長水縣 與長溪郡兼監務 太宗十四年 甲午置長水縣監 革長溪來屬古屬縣一 長溪本百濟伯伊郡 新羅改壁溪郡 高麗改長溪縣爲南原任內 後來屬所三 天蠶陽岳利方 四境 東距慶尙道安陰三十七里 西距鎮安二十三里 南距南原十四里 北距錦山四十六里 戶三百二十 口八百十二 軍丁侍衛軍九 鎮軍十七 船軍一百五十九 防規一 土姓三李井高 亡姓一吳 屬姓一黃 長溪姓五白裴柳吳玄 屬姓一金 陽岳姓二李崔 利方姓一裴 厥土瘠風氣寒 墾田一千七百七十三結 土宜五穀桑麻楮莞 土貢狐狸皮 黃毛漆柿棗梨五味子石茸人蔘芝草蜂蜜黃蠟席 藥材牧丹皮 白茯苓茯神白芍藥前胡白附子當歸獺膽乾薑麥門冬 陶器所一 要害一 六十峴 越境錦山郡安城所之地 入于縣北伊迄音里及陽岳所之間

## • 장수현(長水縣)

본래 백제의 우평현(雨坪縣)이었는데, 신라에서 고택현(高澤縣)으로 고쳐서 장계(長溪)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에서 장수현으로 고쳐서 남원부(南原府)의 임내(任內)로 하였고, 본조 태조(太祖) 원년 임신에 다시 나누어서 장수현으로 하여, 장계군(長溪郡)과 함께 감무(監務)를 겸하게 하였다가 태종(太宗) 14년 갑오에 장수 현감(長水縣監)을 두고 장계(長溪)를 혁파하여



내속(來屬)시켰다. 옛 속현(屬縣)이 1이니, 장계(長溪)는 본래 백제의 백이군(伯伊郡)이었는데【일명 해군(海郡)이라 한다.】, 신라에서 벽계군(壁溪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장계현(長溪縣)으로 고쳐서 남원의 임내(任內)로 하였다가 뒤에 내속(來屬)시켰다. 소(所)가 3이니 천잠(天蠶), 양악(陽岳), 이방(利方)이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경상도 안음(安陰)에 이르기 37리, 서쪽으로 진안(鎭安)에 이르기 23리, 남쪽으로 남원에 이르기 14리, 북쪽으로 금산(錦山)에 이르기 46리다.

호수가 3백 20호요, 인구가 8백 12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9명이고, 진군이 17명이고, 선군이 1백 59명이고, 방패(防牌)가 1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이(李), 정(井), 고(高)요, 망성(亡姓)이 1이니, 오(吳)요, 속성(續姓)이 1이니, 황(黃)이다. 장계(長溪)의 성이 5이니, 백(白), 배(裴), 유(柳), 오(吳), 현(玄)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김(金)이며【향리(鄉吏)이다.】, 양악(陽岳)의 성이 2이니, 이(李), 최(崔)요, 이방(利方)의 성이 1이니, 배(裴)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춥다. 간전(墾田)이 1천 7백 73결이요,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 삼, 닥나무, 왕골이다. 토공(土貢)이 여우가죽, 삿갓이가죽, 족제비털, 칠(漆), 감, 대추, 배[梨], 오미장(五味子), 석이, 인삼, 지초, 꿀, 밀[黃蠟], 자리요, 약재(藥材)는 모란뿌리껍질[牧丹皮], 백복령(白茯苓), 복신(茯神), 백작약(白芍藥), 바다나물뿌리[前胡], 흰바곳[白附子], 당귀(當歸), 담비쓸개[獺膽], 건강(乾薑), 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이다. 도기소가 1이다. 【현의 북쪽 판둔리(板菴里)에 있다.】



요해(要害)가 1이니, 육십현(六十峴)이다. [현의 동쪽에서 경상도 안음(安陰)으로 가는 지로(指路)이다.]

월경(越境)은 금산군(錦山郡)의 안성소(安城所)의 땅이 현의 북쪽 이흘음리(伊迄音里)와 양악소(楊岳所) 사이에 들어와 있다.

### ● 세종151지리지 / 전라도 / 남원 도호부 / 진안현

#### · 진안현(鎭安縣)

본래 백제의 난진아현(難珍阿縣)이었는데, 신라에서 진안현으로 고쳐서 장계군(長溪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전주(全州)의 임내(任內)로 하였다가 본조 태조(太祖) 원년 임신에 비로소 진안 감무(鎭安監務)를 두어 마령현(馬靈縣)을 겸하게 하였고, 태종(太宗) 12년 임진에 마령을 혁파하여 속현(屬縣)으로 하였다. 옛 속현(屬縣)이 1이니, 마령은 본래 백제의 마돌현(馬突縣)이었는데, 신라에서 마령현으로 고쳐서 임실군(任實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전주의 임내(任內)로 하였다. 소(所) 1이니, 강주(剛朱)이다.

명산(名山)은 마이(馬耳)이다. [현의 남쪽에 있는데, 신라 때에는 서다산(西多山)이라 하여 소사(小祀)에 실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장수(長水)에 이르기 20리, 서쪽으로 전주(全州)에 이르기 25리, 남쪽으로 임실(任實)에 이르기 36리, 북쪽으로 용담(龍潭)에 이르기 18리다.

호수가 1백 69호요, 인구가 7백 22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3



명이요, 진군이 33명이요, 선군이 95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이(李), 전(全), 백(白), 한(韓), 유(庾)요, 마령(馬靈)의 성이 4이니, 한(韓), 송(宋), 장(張), 가(價)[어떤 본에는 가(賈)로 되었다.]요, 망성(亡姓)이 1이니, 김(金)이요, 속성(續姓)이 2이니, 전(全), 이(李)[향리(鄉吏)]이다.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일찍 춥다. 간전(墾田)이 2천 7백 72결이요[논이 4분의 1이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 삼[麻], 닥나무, 왕골이다. 토공(土貢)은 족제비털[黃毛], 칠(漆), 대추, 석이, 꿀, 밀[黃蠟], 가뢰[斑猫], 여우가죽, 삶팽이가죽, 자리요, 약재(藥材)는 백복령(白茯苓), 녹각상(鹿角霜), 복신(茯神), 바다나물뿌리[前胡], 당귀, 백작약(白芍藥), 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이다. 자기소가 1이요[마령현 남쪽 두언리(豆彦里)에 있다.], 도기소가 1이다. [마령현 동쪽 동림리(東林里)에 있는데, 모두 하품이다.]

역(驛)이 1이니, 단령(丹嶺)이다.





● 문종 원년 9월 19일(경신)

議政府據兵曹呈啓 軍器監焰焔煮取之法 前此於各道 置都會定爲常所 非唯都會之邑 每年受弊 所屬郡縣 道途遙隔 凡焰焔土及供用雜物 輸轉之際合境騷擾民弊多端 請自今各以附近 分置都會 每年春秋一道一都會煮取 周以復始更迭休息 京畿則陽川金浦通津江華喬桐 漕輸便易果川衿川仁川 高陽富平安山 道路不遠皆輸土于司豹局 水原府一都會 以南陽振威陽城竹山龍仁陽智陰竹屬之 廣州爲一都會以驪興楊根加平川寧砥平利川屬之 楊州府爲一都會 以抱川永平漣川朔寧臨江及江原道鐵原屬之 原平府爲一都會 以交河臨津長湍積城麻田屬之 開城府則依舊例 每年煮取 以附近豐德郡屬之 江原道則三陟府爲一都會 以蔚珍平海江陵屬之 襄陽府爲一都會 以杆城高城通川歙谷屬之 原州任內酒泉縣爲一都會 以旌善平昌寧越原州橫城洪川屬之 春川府爲一都會 以楊口狼川麟蹄淮陽金城平康金化屬之 忠清道則公州爲一都會 以尼山恩津鎮岑連山夫餘石城林川舒川韓山鴻山青陽庇仁屬之 忠州爲一都會 以槐山延豐陰城永春丹陽鎮川堤川



淸風屬之 淸州爲一都會 以文義懷德青安燕岐全義木川沃川  
 永同黃澗青山懷仁報恩槐山天安屬之 藍浦縣爲一都會 以保  
 寧泰安沔川瑞山唐津德山平澤溫陽牙山定山大興結城海美新  
 昌禮山洪州屬之 全羅道則高山縣爲一都會 以全州錦山珍山  
 茂朱龍潭鎮安礪山扶安金溝沃溝臨陂咸悅龍安益山井邑興德  
 古阜金堤泰仁萬頃屬之 茂珍郡爲一都會 以南平靈巖務安咸  
 平長城高敞靈光茂長潭陽昌平珍原和順羅州屬之 南原府爲  
 一都會 以淳昌任實雲峯求禮谷城玉果同福長水屬之 長興府  
 爲一都會 以綾城康津海南珍島光陽樂安寶城順天興陽屬之  
 慶尙道則慶州任內慈仁縣爲一都會 以迎日興海永川河陽慶  
 山新寧義興梁山機張東萊蔚山長鬐彦陽靈山密陽清河慶州屬  
 之 安東府爲一都會 以奉化禮安榮川順興豐基龍宮比安義城  
 醴泉軍威寧海盈德眞寶青松屬之 星州爲一都會 以聞慶咸昌  
 善山開寧金山仁同尙州玄風居昌高靈陝川草溪知禮大丘昌寧  
 淸道屬之 晉州爲一都會 以咸陽河東丹城安陰南海山陰三嘉  
 昆陽巨濟固城泗川昌原漆原金海咸安宜寧鎮海屬之 黃海道  
 則平山府爲一都會 以免山牛峯江陰白川江原道伊川安峽等  
 官屬之 瑞興府爲一都會 以谷山遂安新溪鳳山黃州屬之 海  
 州爲一都會 以載寧延安康翎瓮津長淵松化信川屬之 安岳郡  
 爲一都會 以豐川殷栗文化長連等官屬之 令都會之官 預辦  
 大釜大槽木桶瓢篩之類 以供煮爇之用 如有不曾備辦臨時奪  
 民器用者啓聞科罪 且取土除公廨及寺社院館外毋令取於民  
 戶其燒木臨時分定猝辦輸納 不無民弊 自今軍器監預報兵曹  
 移文當次都會 於農隙令所屬各官依數輸納若都會所守令 不



能預先措置則亦啓聞科斷 又取土匠謀欲受贈假公侵民 貽弊多端居民亦憚於轉輸 投棄焰焯土至都會所 以無用雜土詐謀納之者頗多 請於各官擇魯經顯任剛明品官 令親監取土封緘押送都會所 其作弊匠人及不能考察品官亦皆罪之 役限春則始正月十五日 訖于三月晦日秋則始八月十五日 訖于十月晦日 焰焯多少 照驗各道所煮及 前此所煮之數 其中最多者加資勸勵最少者劾聞科罪 從之.

풀이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焯)를 구워 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各道)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常所]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都會)의 읍(邑)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郡縣)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焰焯)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雜物)을 수송 운반하는 즈음에는 온 경내(境內)가 소요(騷擾)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端)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都會)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 가을에 1도(道)의 1도회(都會)에서 염초(焰焯)를 구워 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休息)하도록 하소서.



경기(京畿)는 양천(陽川), 김포(金浦), 통진(通津), 강화(江華), 교동(喬桐)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이(便易)하고, 과천(果川), 금천(衿川), 인천(仁川), 고양(高陽), 부평(富平), 안산(安山)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표국(司豹局)에 흠을 운반하게 하고, 수원부(水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양(南陽), 진위(振威), 양성(陽城), 죽산(竹山), 용인(龍仁), 양지(陽智), 음죽(陰竹)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광주(廣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여흥(驪興), 양근(楊根), 가평(加平), 천녕(川寧), 지평(砥平), 이천(利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주부(楊州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포천(抱川), 영평(永平), 연천(漣川), 삭녕(朔寧), 임강(臨江)과 강원도(江原道)의 철원(鐵原)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평부(原平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교하(交河), 임진(臨津), 장단(長湍), 적성(積城), 마전(麻田)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개성부(開城府)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염초(焰硝)를 구워 내게 하고, 부근에 있는 풍덕군(豐德郡)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강원도(江原道)에서는 삼척부(三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울진(蔚珍), 평해(平海), 강릉(江陵)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양부(襄陽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간성(杆城), 고성(高城), 통천(通川), 흡곡(歙谷)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주(原州) 임내(任內)의 주천현(酒泉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정선(旌善), 평창(平昌), 영월(寧越), 원주(原州), 횡성(橫城), 홍천(洪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춘천부(春川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양구(楊口), 낭청(狼川), 인제(麟蹄), 회양(淮陽), 금성(金城), 평강(平康),



금화(金化)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충청도(忠淸道)에서는 공주(公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이산(尼山), 은진(恩津), 진잠(鎭岑), 연산(連山), 부여(扶餘), 석성(石城), 임천(林川), 서천(舒川), 한산(韓山), 홍산(鴻山), 청양(靑陽), 비인(庇仁)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충주(忠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괴산(槐山), 연풍(延豐), 음성(陰城), 영춘(永春), 단양(丹陽), 진천(鎭川), 제천(堤川), 청풍(淸風)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청주(淸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문의(文義), 회덕(懷德), 청안(靑安), 연기(燕岐), 전의(全義), 목천(木川), 옥천(沃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회인(懷仁), 보은(報恩), 직산(稷山), 천안(天安)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남포현(藍浦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보령(保寧), 태안(泰安), 면천(沔川), 서산(瑞山), 당진(唐津), 덕산(德山), 평택(平澤), 온양(溫陽), 아산(牙山), 정산(定山), 대흥(大興), 결성(結城), 해미(海美), 신창(新昌), 예산(禮山), 홍주(洪州)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전라도(全羅道)에서는 고산현(高山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전주(全州), 금산(錦山), 진산(珍山), 무주(茂朱), 용담(龍潭), 진안(鎭安), 여산(礪山), 부안(扶安), 금구(金溝), 옥구(沃溝), 임피(臨陂), 함열(咸悅), 용안(龍安), 익산(益山), 정읍(井邑), 흥덕(興德), 고부(古阜), 김제(金堤), 태인(泰仁), 만경(萬頃)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무진군(茂珍郡)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평(南平), 영암(靈巖), 무안(務安), 함평(咸平), 장성(長城), 고창(高敞), 영광(靈光), 무장(茂長), 담양(潭陽), 창평(昌平), 진원(珍原), 화순(和順), 나주(羅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남원부(南原府)를 1도회



(都會)로 삼아서 순창(淳昌), 임실(任實), 운봉(雲峰), 구례(求禮), 곡성(谷城), 옥과(玉果), 동복(同福), 장수(長水)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장흥부(長興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능성(綾城), 강진(康津), 해남(海南), 진도(珍島), 광양(光陽), 낙안(樂安), 보성(寶城), 순천(順天), 흥양(興陽)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경상도(慶尙道)에서는 경주(慶州) 임내(任內)의 자인현(慈仁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영일(迎日), 흥해(興海), 영천(永川), 하양(河陽), 경산(慶山), 신녕(新寧), 의흥(義興), 양산(梁山), 기장(機張), 동래(東萊), 울산(蔚山), 장기(長鬐), 언양(彦陽), 영산(靈山), 밀양(密陽), 청하(清河), 경주(慶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안동부(安東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봉화(奉化), 예안(禮安), 영천(榮川), 순흥(順興), 풍기(豊基), 용궁(龍宮), 비안(比安), 의성(義城), 예천(醴泉), 군위(軍威), 영해(寧海), 영덕(盈德), 진보(眞寶), 청송(靑松)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성주(星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문경(聞慶), 함창(咸昌), 선산(善山), 개령(開寧), 금산(金山), 인동(仁同), 상주(尙州), 현풍(玄風), 거창(居昌), 고령(高靈), 함천(陝川), 초계(草溪), 지례(知禮), 대구(大丘), 창녕(昌寧), 청도(淸道)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진주(晉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함양(咸陽), 하동(河東), 단성(丹城), 안음(安陰), 남해(南海), 산음(山陰), 삼가(三嘉), 곤양(昆陽), 거제(巨濟), 고성(固城), 사천(泗川), 창원(昌原), 칠원(漆原), 김해(金海), 함안(咸安), 의령(宜寧), 진해(鎭海)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황해도(黃海道)에서는 평산부(平山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토산(兔山), 우봉(牛峯), 강음(江陰), 백천(白川)과 강원도(江原道)



의 이천(伊川), 안협(安峽) 등의 고을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서흥부(瑞興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곡산(谷山), 수안(遂安), 신계(新溪), 봉산(鳳山), 황주(黃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해주(海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재령(載寧), 연안(延安), 강령(康翎), 웅진(瓮津), 장연(長淵), 송화(松化), 신천(信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안악군(安岳郡)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풍천(豐川), 은율(殷栗), 문화(文化), 장련(長連) 등의 고을로써 이에 소속시키고는 도회(都會)의 고을로 하여금 큰 가마[大釜], 큰 구유통[大槽], 나무통[木桶], 바가지[瓢], 체[篩] 등류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염초(焰硝)를 굽는데 쓰도록 하고, 만약 일찍이 준비하지 않고서 시기에 임하여 백성의 그릇을 빼앗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흙을 가져올 적엔 공해(公廩)와 사사(寺社), 원관(院館)을 제외하고는 민호(民戶)에게서 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소목(燒木)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비하여 운반해 바치게 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軍器監)에서 미리 병조(兵曹)에 보고하고는 차례에 당한 도회(都會)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농한기(農閑期)에 소속된 각 고을로 하여금 수량에 의하여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都會所)의 수령(守令)이 미리 먼저 조치(措置)하지 못하여도 또한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取土匠)이 선물(膳物)을 받고자 공무(公務)를 핑계하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다단(多端)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들도 또한 흙을 운반하는 일을 꺼려서 염초(焰硝)에 소용되



는 흙을 던져 버리고는 도회소(都會所)에 와서 쓸모가 없는 잡토(雜土)를 가지고 속여서 바치려고 꾀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각 고을에서 일찍이 높은 직임(職任)을 지낸 강직(剛直)하고 명민(明敏)한 품관(品官)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친히 취토(取土)를 감독하여 봉함(封緘)해서 도회소(都會所)로 압송(押送)하도록 하고, 그 작폐(作弊)한 장인(匠人)과 능히 고찰(考察)하지 못한 품관(品官)도 또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사(役事)의 기한은 봄에는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며, 염초(焰黼)의 많고 적은 것은 각도(各道)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을 비교 징험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품계(品階)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고, 가장 적은 사람은 핵문(劾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문종 1년 6월 19일(병술)

忠淸道懷仁 全羅道茂朱長水等縣人 嘗上言願以傍邑犬牙相入之地 割屬本邑 至是議政府據戶曹呈啓 不可聽理 右參贊安崇善 獨以爲臣 嘗啓犬牙相入 土地不均 民瘼至重之由 庭議以爲事巨難行 姑待豐年遂寢不行 臣切憾焉 世宗朝臣父純爲忠淸道賑恤使 具犬牙相入之弊以啓 下教云 片片越入之地



各道監司巡行之際 審定以聞於是遂多改正 若別遣朝臣分行  
諸道 一時舉行則果事巨難行 必待豐年 然後爲之可也 若監  
司巡行時漸次審定則何難改正 民弊至重而遷延不行人皆憤怨  
伏惟 聖裁 上曰崇善之議亦然更議以啓 僉曰 崇善之議然矣  
然前此不割屬之時 別無巨弊 且一開其端則申訴者蜂起 雖或  
隨其所言 一一改正亦有呂前之弊 終復無益矣 上曰宜如僉議

【풀이】

충청도 회인(懷仁)과 전라도 무주(茂朱), 장수(長水) 등 고을  
사람들이 일찍이 상언(上言)하여 이웃 고을의 견아상입(犬牙相  
入)한 땅을 갈라서 제 고을에 붙여 주기를 바랐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리(聽理)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우참찬(右參贊) 안숭선(安崇善)이 홀로,

“신(臣)이 일찍이 견아상입(犬牙相入 : 개의 이빨처럼 서로 들  
쭉날쭉한 땅을 일컬음)하여 토지가 고르지 않으므로 민폐가 아주  
심하다는 연유를 아뢰었으나, 조정의 의논이 사목(事目)이 시행  
되기 어려우니 아직 풍년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여, 드디어  
그만두고 시행하지 않으므로 신은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세종조  
(世宗朝)에 신의 아버지 안순(安純)이 충청도 진휼사(忠淸道賑恤  
使)가 되어 견아상입의 폐단을 갖추어 아뢰었는데, 하교(下敎)에



이르기를, ‘조각조각으로 넘어 들어간 땅은 각도의 감사(監司)가 순행(巡行)할 즈음에 심정(審定)하여 아뢰라.’ 하니, 그래서 드디어 많이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따로 조신(朝臣)을 보내어 여러 도로 나누어 가서 일시에 거행하게 한다면, 과연 일이 커서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풍년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하는 것이 옳겠으나, 만약 감사가 순행할 때에 점차로 심정(審定)한다면 개정하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민폐가 아주 심한데도 늦추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분하고 원통해합니다. 엎드려 성재(聖裁)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승선의 의논도 또한 옳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안승선의 의논은 옳습니다. 그러나, 앞서 갈라붙이지 않았을 때에 별로 큰 폐단이 없었고, 또 한번 그 꼬투리를 열면 신소(申訴)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비록 그 말하는 바에 따라 모조리 개정하더라도 전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것이니, 마침내 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 문종 2년 2월 8일(임신)

壬申領議政府事 仍令致仕黃喜卒 喜長水縣人 字懼夫判江陵府事君瑞之子 生而神氣異凡兒 高麗末登第補成均學官 我太祖開國被選兼世子右正字俄直藝文春秋館 轉司憲監察右拾遺以事貶慶源教授官 太宗定社復以拾遺召還以言事罷 尋拜右補闕又以言忤旨罷 歷刑禮兵吏諸曹正郎 時朴錫命以知申事久掌機密屢請免 太宗曰卿進如卿者 乃可代 錫命以喜薦驟都評議司經歷兵曹議郎 其丁父憂也 太宗以承樞府掌軍務 且國家多故權從武官百日起復之制 除大護軍兼承樞府經歷 陞右司諫大夫未幾擢左副代言 遂代錫命知申事眷待無比 專摠機務 雖一二日不見 必召賜見 嘗曰此事予與卿獨知之 若泄 非卿即予勳舊大臣不悅 或有言其奸者時閔無咎無疾等權勢大熾謀害宗支 喜與李叔蕃李膺趙英茂柳亮等承密旨圖之 太宗嘗謂曰若不慎密噬臍無及諸閔竟敗 戊子睦仁海之變作 喜適在家 太宗急召喜曰 平壤君謀反戒嚴待變喜曰誰爲謀主 太宗曰趙庸也 喜對曰庸之爲人弑父與君 必不爲也 及平壤就獄 喜請并下仁海獄置對 太宗從之 果仁海之謀也 其後金科得罪庸亦辭連 太宗會大臣親辨之直在庸 太宗爲喜曰昔仁海之變 卿云趙庸弑父與君必不爲也果然矣 庸始知其言 退而感激不能言 己丑秋擢喜嘉靖參知議政府事 冬又擢刑曹判書 明年三月知議政府事遷大司憲 又明年遷兵曹判書移禮曹判書得疾甚劇 太宗命內醫金慥曹聽等治疾 問候



者日至三四病愈 太宗爲慥等曰此人忠直眞宰相也 汝輩能療治予甚喜焉 遂厚賞之 尋以事罷 乙未拜吏曹判書歷議政府參贊戶曹判書復吏曹判書 丙申世子褫失德 太宗召喜及李原言世子無禮狀 喜以爲國儲不可輕動 乃曰世子年少致然非大過也 太宗以喜嘗主議除諸閔欲附世子解冤閔氏爲後日地大怒浸疎之 除工曹判書明年出爲平安道巡問使 戊戌以判漢城府事召還 及世子廢 廢喜爲庶人貶于交河許母子同居 大臣臺諫請罪不已 太宗遣喜甥吳致善于貶所曰卿雖非功臣予待以功臣 一二日不見則必召見之不欲使一日離左右 今大臣臺諫請卿罪以爲不可居兩京間故移置卿鄉貫南原卿其與母任便俱往 又命憲府勿押行致善復命 太宗問喜何言致善啓喜言皮骨則父母生之 衣食僕從皆 上恩臣敢背德實無他心 遂涕泣罔知所爲 太宗曰業已行之無及也喜至南原杜門謝客雖同年親舊罕得見其面 太宗知其非實 壬寅二月召還京師喜謁 太宗謝恩 世宗侍側 太宗曰予在豐壤每言卿事於主上今日乃卿 來京之日也命厚饋之 還給科田告身囑 世宗用之 十月拜議政府參贊轉禮曹判書 江原道饑觀察使李明德救荒失策以喜代之喜盡心賑恤 世宗嘉之 進拜崇政判右軍都摠制府事 仍爲觀察使 明年六月徵拜議政府贊成兼大司憲遷吏曹判書遂拜議政府右議政兼判兵曹事 世宗一日召喜議事謂喜曰卿之在貶也 太宗嘗謂予曰黃喜卽漢之史丹有何罪焉陞左議政世子師喜之巡問平安也 行臺李長孫抗禮辱喜與喜互上章論覈 太宗兩和之及喜執政長孫以通津守當代 喜曰此人居官有聲薦爲獻納又薦爲舍人喜丁母憂不作佛事一從家禮適 上以世子



將朝京起喜爲輔行 再三辭 不允憲府劾喜受東坡驛吏賂遺喜又眈 不允冬爲平安道都體察使定藥山城基 喜以藥山在要衝 置寧邊大都護府爲都節制使本營 喜患下血難治 世宗遣內醫盧重禮賚布往遼東問于名醫 庚戌十二月以太石釣之事罷 辛亥九月起拜領議政府事 壬子以年滿七十 上箋乞退 不允 賜几杖 又以冬暖無冰燮理無狀辭 不允 戊午冬又以雷變辭 不允 辛酉世宗以喜老命只朝朔望喜乞罷 不允癸亥冬又乞骸 不允 己丑又命大事外常行庶務 勿以相煩 己巳以本職致仕命給二品祿以終其身國有大事則就而問之 至是以微恙卒 輟朝三日官庀葬事朝野莫不驚歎相弔吏胥及諸司僕隸 皆設奠以祭前古所無也嘗作遺書示子孫曰吾死之後喪葬之禮一依家禮若本土難行之事不必強從 力分所及稱家有無而已 虛文之事 一切勿行家禮飲食一節 恐致疾病不待尊長之命勉強食粥依已行家法不作佛事在殯七日澆奠 家禮所無佞佛者用智自私不可行喜寬喜煩更 世宗中年以後多立新制喜以爲 祖宗舊制不可輕變獨駁議雖不能盡從多所止遏有古大臣風 議獄以寬爲主嘗謂人曰寧失於輕不可枉刑 雖老手不釋卷 常互閉一眼以養目力 雖細字亦讀之不憚爲相二十四年 中外仰望皆曰賢宰相也 老而氣力剛健紅顏白髮望之如神仙 世比宋之文潞公云然性過於寬短於齊家乏廉改之操久典政柄頗有簞簋之誚 妻兄弟楊修楊治不法事發 喜以出於風聞土書營救又欲易其子致身沒官科田 亦上書請之又以黃仲生者爲孽子出入於家及仲生犯死罪 乃以爲非己子變姓爲趙人多惜之卒之五日上遣都承旨姜孟卿議于政府曰欲以喜配享 世宗廟庭何如金



宗瑞鄭萃許詡等曰 喜爲首相二十餘年 雖無汗馬之勞贊襄之功甚大得大臣體配享 先王足人聽聞命配享 世宗廟庭諡翼成 思慮深遠翼爲相克終成子致身保身守身.

[풀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서 그대로 치사(致仕)한 황희(黃喜)가 졸(卒)하였다. 황희는 장수현(長水縣) 사람인데, 자(字)는 구부(懼夫)이며,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아들이다. 출생해서 신기(神氣)가 보통 아이와 달랐는데, 고려(高麗) 말기에 과거(科擧)에 올라서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에 보직(補職)되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개국(開國)하시매 선발되어 세자 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무하고, 조금 후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을 맡았다가 사헌 감찰(司憲監察)과 우습유(右拾遺)에 전직(轉職)되었는데, 어떤 일로써 경원 교수관(慶源教授官)으로 폄직(貶職)되었다. 태종(太宗)이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니 다시 습유(拾遺)의 벼슬로써 불러 돌아왔는데, 어떤 일을 말하였다가 파면되었는데, 조금 후에 우보궐(右補闕)에 임명되었으나 또 말로써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파면되었다. 형조(刑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이조(吏曹) 등 여러 조(曹)의 정랑(正郎)을 역임(歷任)하였다. 이때 박석명(朴錫命)이 지신사(知申事)로서 오랫동안 기밀(機密)을 관장(管掌)하고 있었는데, 여러번 사면(辭免)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경(卿)이 경과 같은 사람을 천거해야만 그제야 대체(代遞)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박석명이 황희를 천거하여서 갑자기 도평의사 경력(都評議司經歷)과 병조 의랑(兵曹議郎)으로 천직(遷職)되었다. 그가 아버지 상사(喪事)를 만나니, 태종은 승추부(承樞府)가 군무(軍務)를 관장하고, 또 국가에 사고가 많은 이유로써 무관(武官)의 백일(百日)에 기복 출사(起復出仕)시키는 제도를 권도(權道)로 따르게 하여 대호군(大護軍)에 임명하고, 승추부 경력(承樞府經歷)을 겸무하게 하였다.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승진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좌부대언(左副代言)에 발탁되고 마침내 박석명(朴錫命)을 대신하여 지신사(知申事)에 임명되었다. 후하게 대우함이 비할 데가 없어서 기밀 사무(機密事務)를 오로지 다하고 있으니, 비록 하루이틀 동안이라도 임금을 뵈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러서 뵈도록 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나와 경(卿)만이 홀로 알고 있으니, 만약 누설된다면 경(卿)이 아니면 곧 내가 한 짓이다.”

하였다. 훈구 대신(勳舊大臣)들이 좋아하지 아니하여 혹은 그 간사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다. 이 때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등이 권세(權勢)가 크게 성하여 종지(宗支)를 모해(謀害)하니, 황희는 이숙번(李叔蕃), 이응(李膺), 조영무(趙英茂), 유양(柳亮) 등과 더불어 밀지(密旨)를 받아 이들을 도모하였는데, 태종이 일찍이 이르기를,

“만약 신중히 하여 빈틈이 없지 않으면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여러 민씨(閔氏)들이 마침내 실패하였다. 무자년에 목인해(睦仁海)의 변고가 일어나니 황희가 마침 집에 있었으므로, 태종이 급히 황희를 불러 말하기를,

“평양군(平壤君)이 모반(謀反)하니, 계엄(戒嚴)하여 변고에 대비(待備)하라.”

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누구가 모주(謀主)입니까?”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조용(趙庸)이다.”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조용의 사람된 품이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弒害)하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후에 평양군(平壤君)이 옥(獄)에 나아가므로 황희가 목인해(睦仁海)를 아울러 옥에 내려 대질(對質)하도록 청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는데, 과연 목인해의 계획이었다. 그 후에 김과(金科)가 죄를 얻으니, 조용(趙庸)도 또한 공사(供辭)에 관련되었다. 태종이 대신(大臣)들을 모아 놓고 친히分辨하니 정직한 것이 조용에게 있었다. 태종이 황희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목인해의 변고에 경(卿)이 말하기를, ‘조용은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弒害)하는 짓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더니, 과연 그렇다.”

하니, 조용이 비로소 그 말뜻을 알고 물러가서는 감격하여 능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기축년 가을에 가정 대부(嘉靖大夫) 참지



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에 발탁되고, 겨울에는 또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발탁되었다. 다음해 3월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고 대사헌(大司憲)에 천직(遷職)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천직(遷職)되었다가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옮겨졌으나 병을 얻어 매우 위급하니, 태종이 내의(內醫) 김조(金慄), 조청(曹聽) 등에게 명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고, 안부(安否)를 물은 것이 하루에 3, 4번이나 이르게 되어 병이 나았었다. 태종이 김조(金慄) 등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니 참으로 재상(宰相)이다. 그대들이 능히 병을 치료했으니,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긴다.”

하고는, 마침내 후하게 상을 주었다. 얼마 후에 어떤 일로써 파면되었다가 을미년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으며,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과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역임(歷任)하고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병신년에 세자(世子) 이제(李裨)가 덕망을 잃어서, 태종이 황희와 이원(李原)을 불러서 세자(世子)의 무례(無禮)한 실상을 말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세자(世子)는 경솔히 변동시킬 수 없다고 여겨, 이에 아뢰기를,

“세자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큰 과실은 아닙니다.”

하였다. 태종은 황희가 일찍이 여러 민씨(閔氏)들을 제거할 의논을 주장하였으므로 세자에게 붙어서 민씨에게 분풀이하고 후일의 터전을 삼으려 한다는 이유로써 크게 성내어 점점 멀리하여서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임명하였다가 다음해에는 평안도



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로 내보내었다. 무술년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불러서 돌아왔으나, 세자가 폐위(廢位)되니 황희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교하(交河)에 폄출(貶黜)시키고는 모자(母子)를 함께 거처하도록 허가하였다. 대신(大臣)과 대간(臺諫)들이 죄 주기를 청하여 그치지 않으니, 태종이 황희의 생질(甥姪) 오치선(吳致善)을 폄소(貶所)에 보내어 말하기를,

“경(卿)은 비록 공신(功臣)이 아니지마는 나는 공신으로 대우하므로, 하루이틀 동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 보아서 하루라도 나의 좌우에서 떠나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신(大臣)과 대간(臺諫)들이 경(卿)에게 죄 주기를 청하여 양경(兩京) 사이에는 거처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경(卿)을 경의 향관(鄉貫)인 남원(南原)에 옮겨 두니, 경(卿)은 어미와 더불어 편리할대로 함께 가라.”

하고는, 또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압송(押送)하지 말도록 하였다. 오치선(吳致善)이 복명(復命)하므로, 태종이 묻기를,

“황희가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오치선이 아뢰기를,

“황희의 말이, ‘살가죽과 뼈는 부모(父母)가 이를 낳으셨지마는, 의식(衣食)과 복종(僕從)은 모두 성상의 은덕이니, 신(臣)이 어찌 감히 은덕을 배반하겠는가? 실상 다른 마음은 없었다.’고 하면서, 마침내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니, 태종이,

“이미 시행하였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황희가 남원(南原)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고 빈객(賓客)



을 사절(謝絶)하니 비록 동년(同年) 친구일지라도 그 얼굴을 보기가 드물었다. 태종이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서 임인년 2월에 불러서 서울에 돌아오게 하였다. 황희가 태종을 알현(謁見)하고 사은(謝恩)하니, 세종(世宗)이 곁에 되시고 있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풍양(豊壤)에 있을 적에 매양 경(卿)의 일을 주상(主上)에게 말하였는데, 오늘이 바로 경(卿)이 서울에 오는 날이로다.” 하고는,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고, 과전(科田)과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고, 세종(世宗)에게 부탁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10월에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명되고, 예조 판서에 전직(轉職)되었다. 강원도(江原道)에서 기근(饑饉)이 있었는데, 관찰사(觀察使) 이명덕(李明德)이 구황(救荒)의 계책을 잘못 썼으므로 황희로써 이를 대체(代遞)시켰더니, 황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휼(賑恤)하였다. 세종(世宗)이 이를 가상(嘉尙)히 여겨 승정대부(崇政大夫) 판우군 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에 승진 임명하고 그대로 관찰사(觀察使)로 삼았다. 다음해 6월에 불러 와서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에 임명하고 대사헌(大司憲)을 겸무하게 하였으며, 이조 판서로 천직(遷職)하였다가 마침내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임명되고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무하게 하였다. 세종이 어느날 황희를 불러 일을 의논하다가, 황희에게 이르기를,

“경(卿)이 폄소(貶所)에 있을 적에 태종(太宗)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황희는 곧 한(漢)나라의 사단(史丹)과 같은 사람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셨다.”



하고는, 좌의정(左議政)과 세자사(世子師)에 승진시켰다. 황희가 평안도(平安道)의 순문사(巡問使)가 되었을 적에 행대(行臺) 이장손(李長孫)이 대등(對等)한 예(禮)로써 황희를 모욕하고, 황희와 더불어 서로 글장을 올려 논핵(論覈)하므로 태종(太宗)이 양편을 화해(和解)시켰었는데, 후에 황희가 정권을 잡으니 이장손(李長孫)은 통진 수령(通津守令)으로서 교대(交代)를 당하게 되었다. 황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서 명성(名聲)이 있었다.”

하고는, 천거하여 헌납(獻納)으로 삼았고, 또 천거하여 사인(舍人)으로 삼았었다. 황희는 어머니 상사(喪事)를 당하여 불사(佛事)를 행하지 않고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랐다. 때마침 임금이, 세자(世子)를 장차 북경(北京)에 입조(入朝)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황희를 기복(起復)시켜 보행(輔行)을 삼으려고 하므로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황희가 동산 역리(東山驛吏)의 뇌물 주는 것을 받았다고 탄핵하므로 황희가 또 사양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겨울에 평안도 도체찰사(平安道都體察使)가 되어 약산(藥山)의 성터[城基]를 정했는데, 황희는 약산(藥山)이 요충(要衝)에 있으므로 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를 설치하여 도절제사(都節制使)의 본영(本營)으로 삼았다. 황희가 하혈(下血)하는 병을 앓아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자 세종은 내의(內醫) 노중례(盧重禮)를 보내어 포백(布帛)을 가지고 요동(遼東)으로 가서 명의(名醫)에게 문도록 하였다. 경술년 12월에 태석균(太石鈞)의 일로써 파면되었으나, 신해년 9월에 이르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에 임명되었다. 임자



년에는 나이 70세가 되자 전문(箋文)을 올려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 있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고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또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얼음이 얼지 않아, 음양(陰陽)을 조화시키는 직책에 면목(面目)이 없다는 이유로써 사직(辭職)하였으니,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무오년 겨울에는 또 천둥이 일어난 변고로써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신유년에는 세종께서 황희가 연로하니, 다만 초하루와 보름에만 조회(朝會)하도록 명하니, 황희가 파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고, 계해년 겨울에 또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을축년에는 또 큰 일 외에 보통 행하는 서무(庶務)는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기사년에 본직(本職)으로써 치사(致仕)하니, 명하여 2품의 봉록(俸祿)을 주어 그 평생을 마치도록 하고,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가서 묻도록 하였다. 이 때에 와서 대단치 않은 병으로 졸(卒)하니, 조회를 3일동안 폐지하고 관청에서 장사(葬事)를 다스렸다. 조정과 민간에서 놀라 탄식하여 서로 조문(弔問)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이서(吏胥)와 여러 관사(官司)의 복레(僕隸)들도 모두 전(奠)을 베풀어 제사를 지냈으니, 전고(前古)에 없었던 일이었다. 일찍이 유서(遺書)를 지어 자손(子孫)들에게 보이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상장(喪葬)의 예절은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거하되, 본토(本土)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능력과 분수의 미치는 대로 집의 형세(形勢)에 따라 알맞게 할 뿐이며, 허식(虛飾)의 일은 일체 행하지 말라. 가례(家禮)의 음식(飲食)에 관한 절차는 질병(疾病)을 초래



할까 염려되니, 존장(尊長)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죽을 먹도록 하라. 이미 시행한 가법(家法)에 따라 불사(佛事)는 행하지 말고, 빈소(殯所)에 있는 지 7일 동안은 요전(澆奠)하는 것은 《가례(家禮)》에 없는 바인데, 부처에게 아침하는 사람이 피를 내어 사사로이 하는 것이니 행할 수 없다.”

하였다.

황희는 관후(寬厚)하고 침중(沈重)하여 재상(宰相)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풍후(豐厚)한 자질이 크고 훌륭한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일을 의논할 적엔正大(正大)하여 대체(大體)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세종(世宗)이 중년(中年)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많이 제정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조종(祖宗)의 예전 제도를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

하고, 홀로 반박하는 의논을 올렸으니, 비록 다 따르지 않았으나, 중지시켜 막은 바가 많았으므로 옛날 대신(大臣)의 기풍(氣風)이 있었다. 옥사(獄事)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관용(寬容)으로써 주견(主見)을 삼아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차라리 형벌을 경(輕)하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상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視力)을 기르고, 비록 잔 글자라도 또한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 재상(宰相)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宰相)이라 하였다. 늙었는데도 기력(氣力)이 강건(剛健)하여 홍안 백발(紅顏白髮)을 바라다보면 신선(神仙)과 같았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송(宋)나라 문 노공(文潞公)에 비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寬大)하여 제가(齊家)에 단점(短點)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政權)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처(妻)의 형제(兄弟)인 양수(楊修)와 양치(楊治)의 법에 어긋난 일이 발각되자 황희는 이 일이 풍문(風聞)에서 나왔다고 글을 올려 변명하여 구(救)하였다. 또 그 아들 황치신(黃致身)에게 관청에서 몰수(沒收)한 과전(科田)을 바꾸어 주려고 하여 또한 글을 올려 청하기도 하였다. 또 황중생(黃仲生)이란 사람을 서자(庶子)로 삼아서 집안에 드나들게 했다가, 후에 황중생이 죽을 죄를 범하니, 곧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고는 변성(變姓)하여 조(趙)라고 하니,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졸(卒)한 지 5일 만에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을 보내어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기를,

“황희를 세종(世宗)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김종서(金宗瑞), 정분(鄭本), 허후(許詡) 등이 아뢰기를,

“황희는 수상(首相)이 된 지 20여년 동안에 비록 전쟁에서 세운 공로[汗馬之勞]는 없지만, 임금을 보좌한 공로는 매우 커서 대신(大臣)의 체통(體統)을 얻었으니 선왕(先王)에게 배향(配享)시킨다면 사람들의 청문(聽聞)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시키게 하고 익



성(翼成)이란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사려(思慮)가 심원(深遠)한 것이 익(翼)이고 재상(宰相)이 되어 종말까지 잘 마친 것이 성(成)이다. 아들은 황치신(黃致身), 황보신(黃保身), 황수신(黃守身)이다.





● 단종 1년 6월 9일(갑오)

甲午議政府兵曹呈啓 全羅慶尙江原忠清諸道 都會造作軍器  
 不定額數 從監鍊官所爲其造作或有過多弊及於民請自今每  
 一年 慶尙道左道內廂都會則密陽蔚山清道彥陽長鬐靈山等六  
 邑 共造甲四部胃四頂角弓二十張 長片箭弓倍羅韜筒兒 各  
 二十部 右道內廂都會則金海昌原咸安宜寧漆原鎭海等六邑  
 甲五部胃五頂角弓二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 各二十五  
 部 慶州都會則本部及永川興海慶山新寧義興迎日河陽等八  
 邑 甲六部胃六頂角弓三十張 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三十部  
 尙州都會則本州及善山金山開寧聞慶咸昌仁同等七邑 甲四  
 部胃四頂角弓二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部 星州都會  
 則本州及大丘陝川草溪昌寧玄風居昌高靈知禮等九邑 甲五部  
 胃五頂角弓二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 各二十五部寧海  
 都會則本部及盈德青松眞寶等四邑 甲三部胃三頂角弓十五  
 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 各十五部 東萊都會則本縣及梁山機  
 張等三邑 甲二部胃二頂角弓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  
 部 安東都會則本部及 順興榮州醴泉龍宮義城軍威比安豐基



禮安奉化等十一邑 甲五部胃五頂角弓二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五部 晉州都會則本州及咸陽三嘉南海河東安陰山陰丹城等八邑 甲五部胃五頂角弓二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五部 泗川都會則本縣及固城昆陽巨濟等四邑 甲二部胃二頂角弓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部 忠清道忠州都會則本州及鎭川丹陽清風槐山堤川永春陰城延豐等九邑 甲四部胃四頂角弓二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 各二十部 沃川都會則本郡及清州報恩文義永同懷德全義木川清安燕岐黃澗青山懷仁等十三邑 甲四部胃四頂角弓二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部 公州都會則本州及林川恩津夫餘連山石城尼山鎭岑等八邑 甲三部胃三頂角弓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五部 藍浦都會則本縣及舒川保寧韓山鴻山庇仁青陽等七邑 甲三部胃三頂角弓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五部 泰安都會則本郡及瑞山沔川唐津等四邑 甲二部胃二頂角弓十張 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部 內廂都會則洪州德山牙山海美大興定山新昌平澤結城禮山溫陽稷山天安等十三邑 甲五部胃五頂角弓二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五部 全羅道 全州都會則本州及錦山礪山高山珍山茂州龍潭鎭安長水等九邑 甲五部胃五頂角弓二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五部 南原都會則本州及光州潭陽淳昌任實谷城求禮昌平同福和順珍原雲峯玉果等十三邑 甲五部胃五頂角弓二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五部 羅州都會則本州及靈巖務安咸平南平長城等六邑 甲四部胃四頂角弓二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部 順天都會則本州及



樂安寶城興陽光陽等五邑 甲三部胃三頂角弓十五張長片箭  
 弓倍羅韜筒兒各十五部 沃溝都會則本縣及益山臨陂咸悅金  
 溝龍安等六邑 甲二部胃二頂角弓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  
 各十部 扶安都會則本縣及金堤古阜泰仁井邑萬頃等六邑 甲  
 二部胃二頂角弓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部 茂長都會  
 則本縣及靈光高敞興德等四邑 甲二部胃二頂角弓十張長片  
 箭弓倍羅韜筒兒各十部 內廂都會則長興康津綾城海南珍島  
 等五邑 甲三部胃三頂角弓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  
 五部 江原道原州都會則本州及平昌橫城洪川寧越等五邑 江  
 陵都會則本部及襄陽旌善等三邑 甲三部胃三頂角弓十五張  
 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五部 三陟都會則本部及平海蔚珍  
 等三邑 甲二部胃二頂角弓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部  
 杆城都會則本郡及高城通川歙谷麟蹄楊口淮陽等七邑 甲四  
 部胃四頂角弓二十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二十部 春川都  
 會則本部及金化金城狼川伊川平康安峽鐵原等八邑 甲三部  
 胃三頂角弓十五張長片箭弓倍羅韜筒兒各十五部 以爲常額  
 令觀察使考軍器監常定式例分定諸邑及都會 依法製造如有  
 不堅緻者 則工匠該吏及監造守令監鍊官 並依律科罪從之

[풀이]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여러 도(道)의 도회소(都  
 會所)에서 만드는 군기(軍器)가 일정한 액수가 없어서 감련관(監



鍊官)의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므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폐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매 1년에 경상도(慶尙道) 좌도(左道)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밀양(密陽), 울산(蔚山), 청도(淸道), 언양(彦陽), 장기(長鬐), 영산(靈山) 등 6개 고을이 함께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이고, 우도(右道)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김해(金海), 창원(昌原), 함안(咸安), 의령(宜寧), 칠원(漆原), 진해(鎭海) 등 6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경주 도회소(慶州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영천(永川), 흥해(興海), 경산(慶山), 신녕(新寧), 의흥(義興), 영일(迎日), 하양(河陽) 등 8개 고을이 갑(甲) 6부(部), 주(胄) 6정(頂), 각궁(角弓) 3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30부(部)요, 상주 도회소(尙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선산(善山), 금산(金山), 개령(開寧), 문경(聞慶), 함창(咸昌), 인동(仁同) 등 7개 고을이 갑(甲) 4부,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張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성주 도회소(星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대구(大邱), 합천(陝川), 초계(草溪), 창녕(昌寧), 현풍(玄風), 거창(居昌), 고령(高靈), 지례(知禮) 등 9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영해 도회소(寧海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영덕(盈德), 청송(靑松), 진보(眞寶) 등 4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동래 도회소(東萊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양산(梁山), 기장(機長) 등 3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안동 도회소(安東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순흥(順興), 영천(永川), 예천(醴泉), 용궁(龍宮), 의성(義城), 군위(軍威), 비안(比安), 풍기(豊基), 예안(醴安), 봉화(奉化)등 11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진주 도회소(晋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함양(咸陽), 삼가(三嘉), 남해(南海), 하동(河東), 안음(安陰), 산음(山陰), 단성(丹城) 등 8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사천 도회소(泗川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고성(固城), 곤양(昆陽), 거제(巨濟) 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는 각각 10부(部)입니다.

충청도(忠淸道)는 충주 도회소(忠州都會所)에서 본주와 진천(鎭川), 단양(丹陽), 청풍(淸風), 괴산(槐山), 제천(堤川), 영춘(永春), 음성(陰城), 연풍(延豊)등 9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옥천 도회소(沃川都會所)에서 본군(本郡)과 청주(淸州), 보은(報恩), 문의(文義), 영동(永同), 회



덕(懷德), 전의(全義), 목천(木川), 청안(淸安), 연기(燕岐), 황간(黃澗), 청산(靑山), 회인(懷仁) 등 13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공주 도회소(公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임천(林川), 은진(恩津), 부여(扶餘), 연산(連山), 석성(石城), 이산(尼山), 진잠(鎭岑) 등 8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남포 도회소(藍浦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서천(舒川), 보령(保寧), 한산(韓山), 홍산(鴻山), 비인(庇仁), 청양(靑陽) 등 7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태안 도회소(泰安都會所)에서 본군과 서산(瑞山), 면천(沔川), 당진(唐津) 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홍주(洪州), 덕산(德山), 아산(牙山), 해미(海美), 대흥(大興), 정산(定山), 신창(新昌), 평택(平澤), 결성(結城), 예산(禮山), 온양(溫陽), 직산(稷山), 천안(天安) 등 13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岱),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입니다.

전라도(全羅道)는 전주 도회소(全州都會所)에서 본주와 금산(錦山), 여산(礪山), 고산(高山), 진산(珍山), 무주(茂朱), 용담(龍潭), 진안(鎭安), 장수(長水) 등 9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



(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남원 도회소(南原都會所)에서 본부와 광주(光州), 담양(潭陽), 순창(淳昌), 임실(任實), 곡성(谷城), 구례(求禮), 창평(昌平), 동복(同福), 화순(和順), 진원(珍原), 운봉(雲峯), 옥과(玉果) 등 13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나주 도회소(羅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영암(靈巖), 무안(務安), 함평(咸平), 남평(南平), 장성(長城) 등 6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 20장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순천 도회소(順天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낙안(樂安), 보성(寶城), 흥양(興陽), 광양(光陽)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옥구 도회소(沃溝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익산(益山), 임피(臨陂), 함열(咸悅), 금구(金溝), 용안(龍安) 등 6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부안 도회소(扶安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김제(金堤), 고부(古阜), 태인(泰仁), 정읍(井邑), 만경(萬頃) 등 6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무장 도회소(茂長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영광(靈光), 고창(高敞), 흥덕(興德) 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장흥(長興), 강진(康津), 능성(綾城), 해남(海南), 진도(珍島)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입니다.

강원도(江原道)는 원주 도회소(原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평창(平昌), 횡성(橫城), 홍천(洪川), 영월(寧越)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강릉 도회소(江陵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양양(襄陽), 정선(旌善) 등 3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삼척 도회소(三陟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평해(平海), 울진(蔚珍) 등 3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간성 도회소(杆城都會所)에서 본군(本郡)과 고성(高城), 통천(通川), 흡곡(歙谷), 인제(麟蹄), 양구(楊口), 회양(淮陽) 등 7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춘천 도회소(春川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김화(金化), 금성(金城), 낭천(浪川), 이천(伊川), 평강(平康), 안협(安峽), 철원(鐵原) 등 8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袋), 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입니다.



이로써 상액(常額)을 정하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군기감(軍器監)에서 상정(商定)한 식례(式例)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과 도회소(都會所)에 나누어 정하고, 법에 의하여 제조(製造)하게 하소서, 만약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장(工匠)과 해당 관리와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수령(守令)과 감련관(監鍊官)을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단종 2년 12월 28일(갑진)

地震于慶尙道草溪善山興海 全羅道全州益山龍安興德茂長高  
 敞靈光咸平務安羅州靈巖海南珍島康津長興寶城興陽樂安順  
 天光陽求禮雲峯南原任實谷城長水淳昌金溝咸悅濟州大靜旌  
 義垣屋頽毀 人多壓死降香祝行解怪祭

[풀이]

경상도 초계(草溪), 선산(善山), 흥해(興海)와 전라도 전주(全州), 익산(益山), 용안(龍安), 흥덕(興德), 무장(茂長), 고창(高敞), 영광(靈光), 함평(咸平), 무안(務安), 나주(羅州), 영암(靈巖), 해남(海南), 진도(珍島), 강진(康津), 장흥(長興), 보성(寶城), 흥양(興陽), 낙안(樂安), 순천(順天), 광양(光陽), 구례(求禮), 운봉(雲峯), 남원(南原), 임실(任實), 곡성(谷城), 장수(長水), 순창(淳昌), 금구



(金溝), 함열(咸悅) 및 제주(濟州)의 대정(大靜), 정의(旌義)에 지진(地震)이 일어나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으며,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으므로,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해괴제(解怪祭)를 행하였다.

● 단종 3년 4월 24일(기해)

己亥 隕霜于全羅道雲峯玉果興陽長水淳昌光州長城礪山鎮安  
珍山泰仁任實

[풀이]

전라도(全羅道) 운봉(雲峯), 옥과(玉果), 흥양(興陽), 장수(長水), 순창(淳昌), 광주(光州), 장성(長城), 여산(礪山), 진안(鎭安), 진산(珍山), 태인(泰仁), 임실(任實)에 서리가 내렸다.





● 세조 1년 9월 11일(계미)

兵曹啓 諸道沿海要害之處 皆設鎮置將以固戍禦腹裏州縣未嘗設鎮 若寇賊竊發邊鎮莫敢枝梧則必將闌入 如蹈無人之境不可不慮請於內地 量置巨鎮以旁近諸邑 分屬爲中左右翼其分翼諸邑及節目 具錄于後 一. 京畿廣州道 中翼廣州利川楊根陽智 左翼驪興川寧砥平陰竹 右翼安城振威陽城龍仁竹山 楊州道 中翼楊州原平抱川積城加平 左翼朔寧麻田永平漣川 右翼豐德長湍臨津臨江 富平道 中翼富平仁川陽川衿川高陽 左翼水原南陽安山果川 右翼金浦交河通津獨鎮喬桐江華開城府

忠清道忠州道 中翼忠州清風延豐 左翼丹陽永春堤川 右翼槐山陰城 清州道 中翼清州鎮川文義燕岐懷仁報恩清安 左翼沃川黃澗永同青山 右翼天安溫陽全義平澤牙山木川稷山 洪州道 中翼洪州青陽大興 左翼新昌禮山 右翼沔川德山 公州道 中翼公州定山尼山 左翼懷德鎮岑連山 右翼夫餘石城恩津泰安鎮 中翼泰安 左翼瑞山海美 右翼唐津藍浦鎮 中翼藍浦庇仁鴻山 左翼韓山舒川木川 右翼保寧結城 黃海道 中



翼黃州 左翼鳳山 右翼安岳長連 海主道 中翼海州載寧 左翼延安 右翼文化信川殷栗松禾 平山道 中翼平山白川 左翼牛峯兔山 右翼江陰 遂安道 中翼遂安 左翼谷山新溪 右翼瑞興獨鎮豐川長淵瓮津康翎 江原道 江陵道 中翼江陵 左翼襄陽 右翼三陟平海蔚珍 原州道 中翼原州橫城 左翼寧越平昌旌善 右翼春川楊口洪川麟蹄狼川 鐵原道 中翼鐵原安峽 左翼伊川 右翼平康 淮陽道 中翼淮陽 左翼金化 右翼金城高城道 中翼高城 左翼通川歙谷 右翼杆城 慶尙道 慶州道 中翼慶州永川 左翼梁山彥陽 右翼密陽 尙州道 中翼尙州開寧 左翼善山金山 右翼聞慶咸昌 星州道 中翼星州高靈 左翼陝川草溪 右翼居昌知禮安陰 晉州道 中翼晉州丹城三嘉 左翼宜寧 右翼咸陽山陰 安東道 中翼安東義城義興眞寶禮安青松龍宮比安 左翼奉化 右翼順興醴泉豐基永川 大丘道 中翼大丘河陽慶山 左翼清道寧山昌寧玄風 右翼仁同軍威新寧寧海鎮 中翼寧海 左翼清河 右翼盈德 迎日鎮 中翼迎日 左翼長鬢 右翼興海 東萊鎮 中翼東萊 左翼機張 右翼蔚山 熊川進 中翼熊川 左翼金海 右翼昌原咸安漆原 泗川鎮 中翼泗川 左翼固城鎮海 右翼昆陽河東獨鎮巨濟南海

全羅道 全州道 中翼全州礪山益山金溝 左翼錦山珍山茂朱龍潭高山 右翼金堤萬頃泰仁井邑 南原道 中翼南原任實求禮谷城 左翼鎮安雲峯長水 右翼淳昌玉果同福 順天鎮 中翼順天 左翼光陽 右翼樂安 羅州道 中翼羅州光州南平綾城靈巖 左翼潭陽昌平和順珍原 右翼高敞長城 興陽鎮 中翼興陽 左翼寶城 右翼長興海南康津 沃溝鎮 中翼沃溝 左翼咸悅龍



安 右翼臨陂 扶安鎮 中翼 扶安 左翼古阜 右翼興德 茂長  
鎮 中翼茂長 左翼務安 右翼靈光咸平獨鎮珍島 濟州道 中  
翼濟州 左翼旌義 右翼大靜

咸吉道 咸興道 中翼咸興 左翼北青洪原 右翼定平 永興道  
中翼永興高原 左翼預原龍津 右翼安邊德源文川 吉州道 中  
翼吉州 左翼利城 右翼端川 慶源道 中翼慶源 左翼穩城慶  
興 右翼會寧富寧鍾城獨鎮鏡城甲山

平安道 平壤道 中翼平壤三登順安 左翼中和祥原 右翼江  
西龍岡三和咸從甑山 安州道 中翼安州肅川永柔 左翼慈山  
右翼定州 寧邊道 中翼寧邊嘉山 左翼熙川雲山 右翼泰川博  
川 价川道 中翼价川成川 左翼德川孟山陽德 右翼順川殷山  
義州道 中翼義州麟山 左翼定寧鐵山龍川 右翼郭山隨川宣  
川 朔州道 中翼朔州龜城 左翼碧潼 右翼昌城 江界道 中翼  
江界 左翼慈城 右翼渭原理山. 一. 中翼守令職銜稱某道某  
鎮 中翼兵馬節制使 非堂上官則稱僉節制使其餘左右翼守令  
職銜 稱某道某鎮某翼 兵馬團練使副詞判官, 一. 甲士別侍  
衛銃筒衛近仗攝六十防牌別軍侍衛 諸營諸鎮諸浦軍士及司  
饗司僕忠扈衛尙衣院等諸員鷹師 皆屬於翼當番則入番屬散  
人及已抄諸邑驍勇鄉吏守城軍雜色軍 亦屬於翼 緊關事變外  
司饗以下軍 諸習陣. 一. 都城衛居鄉者大半 依甲士例番上  
春秋衣甲點閱亦依舊例上京逢點. 一. 諸邑軍士番上 中翼節  
制使點閱 報都節制使都節制使勿更點移牒兵曹. 一. 翼屬軍  
士軍案三件成籍 一件臧中翼節制使. 一件都節制使. 一件兵  
曹. 一. 除諸科 肄業外 欲入成衆官及甲士別侍衛銃筒衛 近



仗防牌攝六十 司饗司僕忠扈衛尙衣院等諸員 奉常齋郎樂生舞工諸司吏典皂隸義禁府螺匠百戶都府外 皆屬於翼例 當取才者皆令中翼節制使掌之 入格者報都節制使 移牒兵曹 更試叙用其入銃筒衛防牌攝六十司饗司僕忠扈衛尙衣院等諸員者 受中翼節制使文牒呈兵曹 其入吏典者亦受中翼節制使文牒呈吏典. 一. 凡取才入格無闕未叙者. 一. 應去官屬散者皆屬其鄉之翼待闕叙用. 一. 每二月十八日 十月十八日聚中翼習陣兼點衣甲 十一月二十二日. 正月二十二日. 各於其翼爲首官習陣. 一. 兩界沿海諸邑守禦取緊軍士不可輕離 本邑中翼將各其中翼習陣時 親到諸邑習陣. 一. 凡諸號令中翼兵馬節制使請於都節制使諸翼聽於中翼兵馬節制使 若沿海諸鎮有變 徵聚其翼兵且報都節制使及期應變從之.

【풀이】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연해(沿海)의 요해지(要害地)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近方)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 좌익(左翼), 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1. 경기(京畿)의 광주도(廣州道)는 그 중익(中翼)을 광주(廣州), 이천(利川), 양근(楊根), 양지(陽智)로 하고, 좌익(左翼)은 여흥(驪興), 천녕(川寧), 지평(砥平), 음죽(陰竹)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안성(安城), 진위(振威), 양성(陽城), 용인(龍仁), 죽산(竹山)으로 합니다. 다음 양주도(楊州道)는 그 중익을 양주(楊州), 원평(原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가평(加平)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朔寧), 마전(麻田), 영평(永平), 연천(漣川)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豐德), 장단(長湍), 임진(臨津), 임강(臨江)으로 합니다. 다음 부평도(富平道)는 그 중익을 부평(富平), 인천(仁川), 양천(陽川), 금천(衿川), 고양(高陽)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水原), 남양(南陽), 안산(安山), 과천(果川)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金浦), 교하(交河), 통진독진(通津獨鎭), 교동(喬桐), 강화(江華), 개성부(開城府)로 합니다.

충청도(忠淸道)의 충주도(忠州道)는 그 중익을 충주(忠州), 청풍(淸風), 연풍(延豐)으로 하고, 좌익은 단양(丹陽), 영춘(永春), 제천(堤川)으로 하며, 우익은 괴산(槐山), 음성(陰城)으로 합니다. 다음 청주도(淸州道)는 그 중익을 청주(淸州), 진천(鎭川), 문의(文義), 연기(燕甞), 회인(懷仁), 보은(報恩), 청안(淸安)으로 하고, 좌익은 옥천(沃川), 황간(黃澗), 영동(永同), 청산(靑山)으로 하며, 우익은 천안(天安), 온양(溫陽), 전의(全義), 평택(平澤), 아산(牙山), 목천(木川), 직산(稷山)으로 합니다. 다음 홍주도(洪州道)는 그 중익을 홍주(洪州), 청양(靑陽), 대흥(大興)으로 하고, 좌익은 신창(新昌), 예산(禮山)으로 하며, 우익은 면천(沔川), 덕산(德山)



으로 합니다. 다음 공주도(公州道)는 그 중익을 공주(公州), 정산(定山), 니산(尼山)으로 하고, 좌익은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으로 하며, 우익은 부여(扶餘), 석성(石城), 은진(恩津)으로 합니다. 다음 태안진(泰安鎭)은 그 중익을 태안(泰安)으로 하고, 좌익은 서산(瑞山), 해미(海美)로 하며, 우익은 당진(唐津)으로 합니다. 다음 남포진(藍浦鎭)은 그 중익을 남포(藍浦), 비인(庇仁), 홍산(鴻山)으로 하고, 좌익은 한산(韓山), 서천(舒川), 임천(林川)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보령(保寧), 결성(結城)으로 합니다.

황해도(黃海道)의 황주도(黃州道)는 그 중익(中翼)을 황주(黃州)로 하고, 좌익(左翼)은 봉산(鳳山)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안악(安岳), 장연(長連)으로 합니다. 다음 해주도(海州道)는 그 중익을 해주(海州), 재령(載寧)으로 하고, 좌익은 연안(延安)으로 하며, 우익은 문화(文化), 신천(信川), 은율(殷栗), 송화(松禾)로 합니다. 다음 평산도(平山道)는 그 중익을 평산(平山), 배천(白川)으로 하고, 좌익은 우봉(牛峰), 토산(兔山)으로 하며, 우익은 강음(江陰)으로 합니다. 다음 수안도(遂安道)는 그 중익을 수안(遂安)으로 하고, 좌익은 곡산(谷山), 신계(新溪)로 하며 우익은 서흥독진(瑞興獨鎭), 풍천(豐川), 장연(長淵), 웅진(瓮津), 강령(康翎)으로 합니다.

강원도(江原道)의 강릉도(江陵道)는 그 중익을 강릉(江陵)으로 하고, 좌익은 양양(襄陽)으로 하며, 우익은 삼척(三陟), 평해(平海), 울진(蔚珍)으로 합니다. 다음 원주도(原州道)는 그 중익을 원주(原州), 횡성(橫城)으로 하고, 좌익은 영월(寧越), 평창(平昌),



정선(旌善)으로 하며, 우익은 춘천(春川), 양구(楊口), 홍천(洪川), 인제(麟蹄), 낭천(狼川)으로 합니다. 다음 철원도(鐵原道)는 그 중익을 철원(鐵原), 안협(安峽)으로 하고, 좌익은 이천(伊川)으로 하며, 우익은 평강(平康)으로 합니다. 다음 회양도(淮陽道)는 그 중익을 회양(淮陽)으로 하고, 좌익은 금화(金化)로 하며, 우익은 금성(金城)으로 합니다. 다음 고성도(高城道)는 그 중익을 고성(高城)으로 하고, 좌익은 통천(通川), 흠곡(歙谷)으로 하며, 우익은 간성(杆城)으로 합니다.

경상도(慶尙道)의 경주도(慶州道)는 그 중익을 경주(慶州), 영천(永川)으로 하고, 좌익은 양산(梁山), 언양(彦陽)으로 하며, 우익은 밀양(密陽)으로 합니다. 다음 상주도(尙州道)는 그 중익을 상주(尙州), 개령(開寧)으로 하고, 좌익은 선산(善山), 김산(金山)으로 하며, 우익은 문경(聞慶), 함창(咸昌)으로 합니다. 다음 성주도(星州道)는 그 중익을 성주(星州), 고령(高靈)으로 하고, 좌익은 합천(陝川), 초계(草溪)로 하며, 우익은 거창(居昌), 지례(知禮), 안음(安陰)으로 합니다. 다음 진주도(晉州道)는 그 중익을 진주(晉州), 단성(丹城), 삼가(三嘉)로 하고, 좌익은 의령(宜寧)으로 하며, 우익은 함양(咸陽), 산음(山陰)으로 합니다. 다음 안동도(安東道)는 그 중익을 안동(安東), 의성(義城), 의흥(義興), 진보(眞寶), 예안(禮安), 청송(靑松), 용궁(龍宮), 비안(比安)으로 하고, 좌익은 봉화(奉化)로 하며, 우익은 순흥(順興), 예천(醴泉), 풍기(豊基), 영천(榮川)으로 합니다. 다음 대구도(大丘道)는 그 중익을 대구(大丘), 하양(河陽), 경산(慶山)으로 하고, 좌익은 청도(淸道), 영산(靈山), 창녕(昌寧), 현풍(玄風)으로 하며, 우익은



인동(仁同), 군위(軍威), 신녕(新寧)으로 합니다. 다음 영해진(寧海鎭)은 그 중익을 영해(寧海)로 하고, 좌익은 청하(清河)로 하며, 우익은 영덕(盈德)으로 합니다. 다음 영일진(迎日鎭)은 그 중익을 영일(迎日)로 하고, 좌익은 장기(長鬐)로 하며, 우익은 흥해(興海)로 합니다. 다음 동래진(東萊鎭)은 그 중익을 동래(東萊)로 하고, 좌익은 기장(機張)으로 하며, 우익은 울산(蔚山)으로 합니다. 다음 웅천진(熊川鎭)은 그 중익을 웅천(熊川)으로 하고, 좌익은 김해(金海)로 하며, 우익은 창원(昌原), 함안(咸安), 칠원(漆原)으로 합니다. 다음 사천진(泗川鎭)은 그 중익을 사천(泗川)으로 하고, 좌익은 고성(固城), 진해(鎭海)로 하며, 우익은 곤양(昆陽), 하동독진(河東獨鎭), 거제(巨濟), 남해(南海)로 합니다.

전라도(全羅道)의 전주도(全州道)는 그 중익을 전주(全州), 여산(礪山), 익산(益山), 금구(金溝)로 하고, 좌익은 금산(錦山), 진산(珍山), 무주(茂朱), 용담(龍潭), 고산(高山)으로 하며, 우익은 김제(金堤), 만경(萬頃), 태인(泰仁), 정읍(井邑)으로 합니다. 남원도(南原道)는 그 중익을 남원(南原), 임실(任實), 구례(求禮), 곡성(谷城)으로 하고, 좌익은 진안(鎭安), 운봉(雲峯), 장수(長水)로 하며, 우익은 순창(淳昌), 옥과(玉果), 동복(同福)으로 합니다. 순천진(順天鎭)은 그 중익을 순천(順天)으로 하고, 좌익은 광양(光陽)으로 하며, 우익은 낙안(樂安)으로 합니다. 다음 나주도(羅州道)는 그 중익을 나주(羅州), 광주(光州), 남평(南平), 능성(綾城), 영암(靈巖)으로 하고, 좌익은 담양(潭陽), 창평(昌平), 화순(和順), 진원(珍原)으로 하고, 우익은 고창(高敞), 장성(長城)으로 합니다. 다음 흥양진(興陽鎭)은 그 중익을 흥양(興陽)으로 하고, 좌익은



보성(寶城)으로 하며, 우익은 장흥(長興), 해남(海南), 강진(康津)으로 합니다. 다음 옥구진(沃溝鎭)은 그 중익을 옥구(沃溝)로 하고, 좌익은 함열(咸悅), 용안(龍安)을 하며, 우익은 임피(臨陂)로 합니다. 다음 부안진(扶安鎭)은 그 중익을 부안(扶安)으로 하고, 좌익은 고부(古阜)로 하며, 우익은 흥덕(興德)으로 합니다. 다음 무장진(茂長鎭)은 그 중익을 무장(茂長)으로 하고, 좌익은 무안(務安)으로 하며, 우익은 영광(靈光), 함평독진(咸平獨鎭), 진도(珍島)로 합니다. 다음 제주도(濟州島)는 그 중익을 제주(濟州)로 하고, 좌익은 정의(旌義)로 하며, 우익은 대정(大靜)으로 합니다.

함길도(咸吉道)의 함흥도(咸興道)는 그 중익을 함흥(咸興)으로 하고, 좌익은 북청(北靑), 홍원(洪原)으로 하며, 우익은 정평(定平)으로 합니다. 다음 영흥도(永興道)는 그 중익을 영흥(永興), 고원(高原)으로 하고, 좌익은 예원(預原), 용진(龍津)으로 하며, 우익은 안변(安邊), 덕원(德原), 문천(文川)으로 합니다. 다음 길주도(吉州道)는 그 중익을 길주(吉州)로 하고, 좌익은 이성(利城)으로 하며, 우익은 단천(端川)으로 합니다. 다음 경원도(慶源道)는 그 중익을 경원(慶源)으로 하고, 좌익은 온성(穩城), 경흥(慶興)으로 하며, 우익은 회령(會寧), 부령(富寧), 종성독진(鍾城獨鎭), 경성(鏡城), 갑산(甲山)으로 합니다.

평안도(平安道)의 평양도(平壤道)는 그 중익을 평양(平壤), 삼등(三登), 순안(順安)으로 하고, 좌익은 중화(中和), 상원(祥原)으로 하며, 우익은 강서(江西), 용강(龍岡), 삼화(三和), 함중(咸從), 증산(甌山)으로 합니다. 다음 안주도(安州道)는 그 중익을 안주(安州), 숙천(肅川), 영유(永柔)로 하고, 좌익은 자산(慈山)으로



하며, 우익은 정주(定州)로 합니다. 다음 영변도(寧邊道)는 그 중익을 영변(寧邊), 가산(嘉山)으로 하고, 좌익은 희천(熙川), 운산(雲山)으로 하며, 우익은 태천(泰川), 박천(博川)으로 합니다. 다음 개천도(价川道)는 그 중익을 개천(价川), 성천(成川)으로 하고, 좌익은 덕천(德川), 맹산(孟山), 양덕(陽德)으로 하며, 우익은 순천(順川), 은산(殷山)으로 합니다. 다음 의주도(義州道)는 그 중익을 의주(義州), 인산(麟山)으로 하고, 좌익은 정녕(定寧), 철산(鐵山), 용천(龍川)으로 하며, 우익은 곽산(郭山), 수천(隨川), 선천(宣川)으로 합니다. 다음 삭주도(朔州道)는 그 중익을 삭주(朔州), 귀성(龜城)으로 하고, 좌익은 벽동(碧潼)으로 하며, 우익은 창성(昌城)으로 합니다. 다음 강계도(江界道)는 그 중익을 강계(江界)로 하고, 좌익은 자성(慈城)으로 하며, 우익은 위원(渭原), 이산(理山)으로 합니다.

1. 중익 수령(中翼守令)의 직함(職銜)은 모도 모진 중익 병마절제사(某道某鎭中翼兵馬節制使)라 일컫고, 당상관(堂上官)이 아니면 첨절제사(僉節制使)라고 일컬으며, 그 나머지의 좌, 우익 수령(左右翼守令)의 직함은 모도 모진 모익 병마단련사(某道某鎭某翼兵馬團鍊使), 부사(副使), 판관(判官)이라고 일컫습니다.

1. 갑사(甲士), 별시위(別侍衛), 총통위(銃筒衛), 근장(近仗), 섭육십(攝六十), 방패(防牌), 별군(別軍)의 시위(侍衛)와 제영(諸營), 제진(諸鎭), 제포(諸浦)의 군사(軍士)와 사옹원(司饗院), 사복시(司僕寺), 충호위(忠扈衛), 상의원(尙衣院) 등의 제원(諸員)과 응사(鷹師)는 모두 익(翼)에 속하여 당번(當番)이면



번(番)을 서며 속산(屬散)된 사람과 이미 초모(抄募)한 여러 고을의 효용 향리(驍勇鄉吏)와 수성군(守城軍), 잡색군(雜色軍)도 역시 익(翼)에 속하게 하고, 긴급한 사변(事變)을 제외하고는 사옹(司饗) 이하의 군사는 습진(習陣)을 면제합니다.

1. 도성위(都城衛)에는 시골에 살고 있는 자가 거의 반이나 되니, 갑사(甲士)의 예에 의하여 번상(番上)하고, 춘추(春秋)로 행하는 의갑(衣甲)의 점열(點閱)도 역시 구례에 의하여 서울에 올라와 점검을 받습니다.
1. 제색 군사(諸色軍士)의 번상(番上)은 중익 절제사(中翼節制使)가 점열(點閱)하여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보고하면, 도절제사는 다시 점열하지 말고, 이를 병조(兵曹)에 이첩(移牒)합니다.
1. 익속 군사(翼屬軍士)의 군안(軍案)은 3건을 성적(成籍)하여 1건은 중익 절제사(中翼節制使)가 보관하고 1건은 도절제사(都節制使)가, 1건은 병조(兵曹)에서 보관합니다.
1. 제과(諸科)의 이업(肄業)을 제외하고, 성중관(成衆官)으로 들어가려는 자 및 갑사(甲士), 별시위(別侍衛), 총통위(銃筒衛), 근장(近仗), 방패(防牌), 섭육십(攝六十), 사옹원(司饗院), 사복시(司僕寺), 충호위(忠扈衛), 상의원(上衣院) 등의 제원(諸員)과, 봉상시 재랑(奉常寺齋郎), 악생(樂生), 무공(舞工)과, 여러 관사(官司)의 이전(吏典), 조예(皂隸)는 의금부(義禁府)의 나장(螺匠), 백호(百戶), 도부(都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翼)에 속하게 하고, 으레 취재(取才)할 만한 자는 모두 중익 절제사(中翼節制使)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하여, 입격(入



格)한 자는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조(兵曹)에 이첩(移牒)하여 다시 시험하여 서용(叙用)하게 합니다. 그 총통위, 방패, 섭육십, 사옹원, 사복시, 충호위, 상위원 등의 제원으로 들어간 자는 중익 절제사의 문첩(文牒)을 받아서 병조(兵曹)에 바치고, 그 이전(吏典)으로 들어간 자도 역시 중익 절제사의 문첩을 받아서 이를 이조(吏曹)에 바칩니다.

1. 무릇 취재(取才)하여 입격(入格)하였으나 빈자리가 없어 아직 서용(擢用)하지 않은 자와 일단 거관(去官)되어 산관(散官)에 귀속된 자는, 모두 그 고을의 익(翼)에 예속케 하였다가 빈자리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합니다.

1. 매년 2월 18일과 10월 18일에 중익(中翼)을 모아 습진(習陣)하며, 겸하여서 의갑(衣甲)을 점열(點閱)하고, 11월 22일과 정월 22일에는 각각 그 익(翼)에서 수관(首官)이 되어 습진합니다.

1. 양계(兩界)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은 그 수비와 방어가 가장 긴중(緊重)하므로 군사들이 가볍게 본읍을 이탈하지 못하며, 중익장(中翼將)은 각기 그 중익(中翼)에서 습진(習陣)할 때 친히 여러 고을로 가서 습진하고, 겸하여서 의갑(衣甲)을 점열하며, 좌, 우익이 습진할 때에도 좌, 우익장(左右翼將)이 역시 각각 친히 그 고을로 가서 습진합니다.

1. 무릇 모든 호령(號令)은 중익 병마 절제사(中翼兵馬節制使)가 도절제사(都節制使)의 호령을 듣고, 모든 익(翼)은 중익 병마 절제사의 호령을 듣되, 만약 연해의 여러 진(鎭)에 사



변(事變)이 있을 경우, 그 익의 군병을 징집(徵集)하며, 또 도절제사에게 보고하여 시기에 맞추어 사변에 대응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조 2년 1월 10일(경진)

庚辰 全羅道觀察使李石亨啓 礪山郡事李堅義龍安縣監崔池  
長水縣監崔宗復文科考試官招致光州女妓引入棘圍 請罷職  
從之

[풀이]

전라도 관찰사 이석형(李石亨)이 아뢰기를,  
“여산 군사(礪山郡事) 이견의(李堅義), 용안 현감(龍安縣監) 최지(崔池), 장수 현감(長水縣監) 최종복(崔宗復)은 문과 고시관(文科考試官)이 되어서 광주(光州)의 여기(女妓)를 불러 과장[棘圍] 안까지 끌어 들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조 3년 10월 20일(경술)

兵曹啓 今奉 傳旨革諸道中左右翼量置巨鎮所屬諸邑磨勘具聞 平安道平壤鎮屬中和祥原順安三登成川陽德慈山 龍岡鎮三和咸從甑山江西 安州鎮永柔肅川順川 定州鎮隨川嘉山龜城鎮宣川郭山泰川雲山 義州鎮鐵山龍川 朔州鎮昌城碧潼寧邊鎮博川价川德川殷山孟山熙川 江界鎮理山渭原慈城咸吉道安邊鎮德川文川 永興鎮龍津高原預 咸興鎮定平洪原北青 吉州鎮利城端川 鏡城鎮富寧獨鎮甲山會寧鍾城慶源慶興穩城 慶尙道安東鎮豐基榮州奉化義城禮安眞寶青松軍威比安 慶州鎮寧海盈德清河興海迎日長髻永川密陽 蔚山鎮機長東萊梁山彦陽 昌原鎮金海固城熊川漆原咸安鎮海巨濟 大丘鎮靈山昌寧玄風仁同義興新寧河陽慶山清道 晉州鎮泗川昆陽河東南海丹城山陰宜寧咸陽三嘉安陰 星州鎮草溪陝川居昌高靈知禮 尙州鎮善山開寧金山咸昌龍宮聞慶醴泉 全羅道羅州鎮茂長高敞靈光咸平務安靈巖南平 長興鎮寶城康津海南珍島 光州鎮潭陽長城珍原昌平和順同福綾城 南原鎮任實長水淳昌雲峯玉果谷城求禮 扶安鎮臨陂沃溝萬頃金堤古阜井邑興德 順天鎮樂安興陽光陽 全州鎮礪山鏞安咸悅益山高山錦山茂朱龍潭鎮安金溝泰仁 忠清道公州鎮燕岐懷德鎮岑連山恩津尼山石城林川韓山夫餘定山 洪州鎮舒川庇仁藍浦鴻山保寧清陽大興德山結城 泰安鎮瑞山海美唐津沔川 天安鎮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木川全義 清州鎮鎮川文義懷



仁報恩青山黃澗永同沃川淸安 忠州鎮永春堤川丹陽淸風陰  
城槐山

京畿道水原鎮富平仁川衿川安山南陽振威安城陽城 廣州鎮  
楊根砥平川寧驪興陰竹竹山利川陽智龍仁 楊州鎮漣川麻田  
積城原平交河高陽永平抱川加平 江華鎮金浦陽川通津喬桐  
開城鎮朔寧臨津豐德

黃海道海州鎮江陰白川延安康翎瓮津長淵豐川松禾殷栗 黃  
州鎮瑞興平山鳳山載寧信川安岳文化長連 遂安鎮谷山兎山  
新溪牛峯

江原道江陵鎮襄陽旌善 三陟鎮蔚珍平海 杆城鎮高城通川  
歙谷 淮陽鎮金城平康伊川鐵原金化安峽 春川鎮狼川楊口麟  
蹄洪川 原州鎮平昌寧越橫城 從之

【풀이】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익(中翼), 좌익(左翼), 우익(右翼)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

평안도(平安道) 평양진(平壤鎭)에는 중화(中和), 상원(祥原), 순안(順安), 삼등(三登), 성천(成川), 양덕(陽德), 자산(慈山)을 속하게 하고, 용강진(龍岡鎭)에는 삼화(三和), 함종(咸從), 증산(甌山), 강서(江西)를 속하게 하며, 안주진(安州鎭)에는 영유(永柔), 숙천(肅川), 순천(順天)을 속하게 하며, 정주진(定州鎭)에는 수천(隨



川), 가산(嘉山)을 속하게 하고, 구성진(龜城鎭)에는 선천(宣川), 곽산(郭山), 태천(泰川), 운산(雲山)을 속하게 하며, 의주진(義州鎭)에는 철산(鐵山), 용천(龍川)을 속하게 하며, 삭주진(朔州鎭)에는 창성(昌城), 벽동(碧潼)을 속하게 하며, 영변진(寧邊鎭)에는 박천(博川), 개천(价川), 덕천(德川), 은산(殷山), 맹산(孟山), 희천(熙川)을 속하게 하고, 강계진(江界鎭)에는 이산(理山), 위원(渭原), 자성(慈城)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함길도(咸吉道)의 안변진(安邊鎭)에는 덕천(德川), 문천(文川)을 속하게 하고, 영흥진(永興鎭)에는 용진(龍津), 고원(高原), 예원(預原)을 속하게 하며, 함흥진(咸興鎭)에는 정평(定平), 홍원(洪原), 북청(北靑)을 속하게 하며, 길주진(吉州鎭)에는 이성(利城), 단천(端川)을 속하게 하며, 경성진(鏡城鎭)에는 부령독진(富寧獨鎭)과 갑산(甲山), 회령(會寧), 종성(鍾城), 경원(慶源), 경흥(慶興), 온성(穩城)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경상도(慶尙道)의 안동진(安東鎭)에는 풍기(豊基), 영천(榮川), 봉화(奉化), 의성(義城), 예안(禮安), 진보(眞寶), 청송(靑松), 군위(軍威), 비안(比安)을 속하게 하고, 경주진(慶州鎭)에는 영해(寧海), 영덕(盈德), 청하(淸河), 흥해(興海), 영일(迎日), 장기(長鬚), 영천(永川), 밀양(密陽)을 속하게 하고, 울산진(蔚山鎭)에는 기장(機張), 동래(東萊), 양산(梁山), 언양(彦陽)을 속하게 하며, 창원진(昌原鎭)에는 김해(金海), 고성(固城), 웅천(熊川), 칠원(漆原), 함안(咸安), 진해(鎭海), 거제(巨濟)를 속하게 하며, 대구진(大丘鎭)에는 영산(靈山), 창녕(昌寧), 현풍(玄風), 인동(仁同), 의흥(義興), 신녕(新寧), 하양(河陽), 경산(慶山), 청도(淸道)를 속하게 하



며, 진주진(晉州鎭)에는 사천(泗川), 곤양(昆陽), 하동(河東), 남해(南海), 단성(丹城), 산음(山陰), 의령(宜寧), 함양(咸陽), 삼가(三嘉), 안음(安陰)을 속하게 하며, 성주진(星州鎭)에는 초계(草溪), 합천(陝川), 거창(居昌), 고령(高靈), 지례(知禮)를 속하게 하며, 상주진(尙州鎭)에는 선산(善山), 개령(開寧), 금산(金山), 함창(咸昌), 용궁(龍宮), 문경(聞慶), 예천(醴泉)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전라도(全羅道) 나주진(羅州鎭)에는 무장(茂長), 고창(高敞), 영광(靈光), 함평(咸平), 무안(務安), 영암(靈巖), 남평(南平)을 속하게 하고, 장흥진(長興鎭)에는 보성(寶城), 강진(康津), 해남(海南), 진도(珍島)를 속하게 하며, 광주진(光州鎭)에는 담양(潭陽), 장성(長城), 진원(珍原), 창평(昌平), 화순(和順), 동복(同福), 능성(綾城)을 속하게 하며, 남원진(南原鎭)에는 임실(任實), 장수(長水), 순창(淳昌), 운봉(雲峰), 옥과(玉果), 곡성(谷城), 구례(求禮)를 속하게 하며, 부안진(扶安鎭)에는 임피(臨陂), 옥구(沃溝), 만경(萬頃), 김제(金堤), 고부(古阜), 정읍(井邑), 흥덕(興德)을 속하게 하며, 순천진(順天鎭)에는 낙안(樂安), 흥양(興陽), 광양(光陽)을 속하게 하며, 전주진(全州鎭)에는 여산(礪山), 용안(龍安), 함열(咸悅), 익산(益山), 고산(高山), 금산(錦山), 무주(茂朱), 용담(龍潭), 진안(鎭安), 금구(金溝), 태인(泰仁)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충청도(忠淸道)의 공주진(公州鎭)에는 연기(燕岐),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 은진(恩津), 이산(尼山), 석성(石城), 임천(林川), 한산(韓山), 부여(扶餘), 정산(定山)을 속하게 하고, 홍주진(洪州鎭)에는 서천(舒川), 비인(庇仁), 남포(藍浦), 홍산(鴻山), 보령(保寧), 청양(靑陽), 대흥(大興), 덕산(德山), 결성(結城)을 속



하게 하며, 태안진(泰安鎭)에는 서산(瑞山), 해미(海美), 당진(唐津), 면천(沔川)을 속하게 하며, 천안진(天安鎭)에는 직산(稷山), 평택(平澤), 아산(牙山), 온양(溫陽),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를 속하게 하며, 청주진(淸州鎭)에는 진천(鎭川), 문의(文義), 회인(懷仁), 보은(報恩), 청산(靑山), 황간(黃澗), 영동(永同), 옥천(沃川), 청안(淸安)을 속하게 하며, 충주진(忠州鎭)에는 영춘(永春), 제천(堤川), 단양(丹陽), 청풍(淸風), 음성(陰城), 괴산(槐山), 연풍(延豐)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경기(京畿)의 수원진(水原鎭)에는 부평(富平), 인천(仁川), 금천(衿川), 안산(安山), 남양(南陽), 진위(振威), 안성(安城), 양성(陽城)을 속하게 하고, 광주진(廣州鎭)에는 양근(陽根), 지평(砥平), 천녕(川寧), 여흥(驪興), 음죽(陰竹), 죽산(竹山), 이천(利川), 양지(陽智), 용인(龍仁)을 속하게 하며, 양주진(楊州鎭)에는 연천(漣川), 마전(麻田), 적성(積城), 원평(原平), 교하(交河), 고양(高陽), 수평(水平), 포천(抱川), 가평(加平)을 속하게 하며, 강화진(江華鎭)에는 김포(金浦), 양천(陽川), 통진(通津), 교동(喬桐)을 속하게 하며, 개성진(開城鎭)에는 삭녕(朔寧), 임진(臨津), 풍덕(豐德)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황해도(黃海道)의 해주진(海州鎭)에는 강음(江陰), 배천(白川), 연안(延安), 강령(康翎), 웅진(瓮津), 장연(長淵), 풍천(豐川), 송화(松禾), 은율(殷栗)을 속하게 하고, 황주진(黃州鎭)에는 서흥(瑞興), 평산(平山), 봉산(鳳山), 재령(載寧), 신천(信川), 안악(安岳), 문화(文化), 장련(長連)을 속하게 하며, 수안진(遂安鎭)에는 곡산(谷山), 토산(兔山), 신계(新溪), 우봉(牛峰)을 속하게 할 것입니



다.

강원도(江原道)의 강릉진(江陵鎭)에는 양양(襄陽), 정선(旌善)을 속하게 하고, 삼척진(三陟鎭)에는 울진(蔚珍), 평해(平海)를 속하게 하며, 간성진(杆城鎭)에는 고성(高城), 통천(通川), 흡곡(歙谷)을 속하게 하며, 회양진(淮陽鎭)에는 김성(金城), 평강(平康), 이천(伊川), 철원(鐵原), 김화(金化), 안협(安峽)을 속하게 하며, 춘천진(春川鎭)에는 낭천(狼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홍천(洪川)을 속하게 하며, 원주진(原州鎭)에는 평창(平昌), 영월(寧越), 횡성(橫城)을 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세조 12년 7월 12일

兵曹詳之軍器以啓 軍器寺鄉角弓七百四十張鹿角弓五百張  
錯箭八百八十部 磨箭一千五百部 筒箭五百部 神機箭一千  
四百部 中箭七千二百 細箭四千八百 弓弦六千箇 鐵甲十六  
領 大諍十二 中錚小錚各二十 大將麾五 衛將麾二十五 鼓  
二十 大角二十小角十大將標旗一 衛將標旗五 部將標旗二  
十五 統將標旗一百 旅帥標旗一百五十 隊正標旗二百五 長  
標旗二百五十 遊軍將標旗五 領將標旗二十五 彎强壯勇破  
敵控弦雜類獅子 射隊標旗各一 雜類統將標旗五 大將招搖  
旗一 衛將招搖旗五 部將招搖旗二十五 遊軍將招搖旗五 部



將令下旗一百 統將令下旗一百五十 旅帥令下旗二百 隊正令下旗二百五十 遊軍將領將令下旗各二十五 大發火四百八十 中發火一千二百 小發火六千 地火一千二百 開城府忠州 洪州慶州安東晉州尙州星州金海密陽全州羅州濟州光州南原 長興順天海州江陵咸興吉州鍾城穩城會寧慶源平壤安州義州 各鄉角弓五十七張 磨箭二十九部 筒箭二十八部 長槍二十二柄 中槍三十三柄 環刀五十七把 弓弦一百十四箇 鐵甲五領 大諍一 中小錚各三 鼓二 大小各角三 水原江華南陽公州清州泰安蔚山咸陽豐基陝川永川興海清道寧海迎日熊川善山昌原扶安茂長靈巖靈光樂安錦山興陽黃州延安長淵平山原州三陟永興定平鏡城安邊定州成川肅川寧邊 各鄉角弓四十六張 磨箭筒箭各二十三部 長槍十八柄中槍二十六柄環刀四十六把弓弦九十二箇 鐵甲三領大諍一 中錚小錚各二 鼓二 大小各角二 廣州楊州驪興韓山舒川沔川瑞山林川天安沃川青松草溪鎮川報恩醴川永川梁山咸安金山昆陽大丘義城宜寧盈德昌寧泗川居昌巨濟南海彥陽河東長鬐固城古阜珍島淳昌金堤務安咸平沃溝光陽海南瑞興白川谷山遂安安岳豐川瓮津襄陽平海杆城北青慶興德源富寧文川瑞川江界昌城朔州慈山宣川順川泰川熙川价川 各鄉角弓三十六張 磨箭筒箭各十八部 長槍十五柄 中槍二十一柄 環刀三十六把 弓弦七十二箇 鐵甲二領 大諍一 中小錚各二 鼓二 大小各角二 長湍交桐富平仁川利川楊根豐德安山安城槐山鴻山堤川德山平澤稷山恩津夫餘庇仁結城保寧藍浦永同溫陽丹陽清風慶山開寧三嘉河陽漆原仁同知禮安陰高寧玄風軍威比安義興靈山機張綾城



龍安咸悅高山泰仁興德井邑高敞求禮谷城長城任實長水鎮安  
 茂朱同福大靜旌義潭陽益山康津新溪信川鳳山載寧康翎鐵原  
 通川寧越淮陽春川蔚珍洪原利城高原江西龍岡三水咸從永柔  
 甑山三登殷山祥原中和德川嘉山郭山鐵山龍川碧潼理山龜城  
 各鄉角弓二十六張 磨箭筒箭各十三部 長槍八柄 中槍十八  
 柄 環刀二十六把 弓弦五十二箇 坡州交河高陽通津金浦陽  
 智朔寧麻田永平龍仁振威陽川砥平抱川積城衿川川寧連川陰  
 竹陰城加平竹山果川文義懷仁定山清陽延豐陰城清安懷德鎮  
 岑連山尼山大興石城海美康津新昌禮山木川全義燕岐永春黃  
 澗青山牙山咸昌聞慶禮安清河奉化鎮海鎮寶丹城龍宮山陰新  
 寧臨陂萬頃金溝龍潭玉果礪山南平珍山昌平珍原雲峯和順兎  
 山文化牛峯長連松禾殷栗江陰伊川平康金化狼川洪川楊口麟  
 蹄安峽高城平昌金城歙谷旌善橫城三水甲山博川雲山渭原順  
 安孟山陽德 各鄉角弓十七張 磨箭九部 筒箭八部 長槍七柄  
 中槍十柄 環刀十七把 弓弦三十四箇 已上軍器 一年一造 旗  
 麾則二年一造 上貢數外皆藏巨鎮 甲冑錚鼓角則唯於巨鎮造  
 納.

[풀이]

병조(兵曹)에서 군기(軍器)를 상정(詳定)하여 아뢰기를,  
 “군기시(軍器寺)에는 향각궁(鄉角弓) 7백 40장(張), 녹각궁(鹿  
 角弓) 5백 장(張), 착전(錯箭) 8백 80부(部), 마전(磨箭) 1천 5백  
 부(部), 통전(筒箭)[1부(部)마다 통(筒)이 1구(具)이다.] 5백 부



(部), 신기전(神機箭) 1천 4백 부(部), 중전(中箭) 7천 2백, 세전(細箭) 4천 8백, 궁현(弓弦) 6천 개, 철갑(鐵甲)[두구(頭具)도 갖추었다.] 16령(嶺), 대쟁(大錚)[망치[槌]도 갖추었다.] 12개, 중쟁(中錚), 소쟁(少錚)[망치도 갖추었다.] 각 20개, 대장휘(大將麾) 5개, 위장휘(衛將麾) 25개, 고(鼓) 20개, 대각(大角) 20개, 소각(小角) 10개, 대장표기(大將標旗) 1개, 위장 표기(衛將標旗) 5개, 부장 표기(部將標旗) 25개, 통장 표기(統將標旗) 1백 개, 여수 표기(旅帥標旗) 1백 50개, 대정 표기(隊正標旗) 2백 5개, 장표기(長標旗) 2백 50개, 유군장 표기(遊軍將標旗) 5개, 영장 표기(領將標旗) 25개, 만강 표기(彎强標旗), 장용 표기(壯勇標旗), 과적 표기(破敵標旗), 공현 표기(控弦標旗), 잡류표기(雜類標旗), 사자 표기(獅子標旗), 사대 표기(射隊標旗) 각 1개, 잡류 통장 표기(雜類統將標旗) 5개, 대장 초요기(大將招搖旗) 1개, 위장 초요기(衛將招搖旗) 5개, 부장 초요기(部將招搖旗) 25개, 유군장 초요기(遊軍將招搖旗) 5개, 부장 영하기(部將令下旗) 1백 개, 통장 영하기(統將令下旗) 1백 50개, 여수 영하기(旅帥令下旗) 2백 개, 대정 영하기(隊正令下旗) 2백 50개, 유군장 영하기(遊軍將令下旗), 영장 영하기(領將令下旗) 각 25개, 대발화(大發火) 4백 80개, 중발화(中發火) 1천 2백 개, 소발화(小發火) 6천 개, 지화(地火) 1천 2백 개이고 개성부(開城府), 충주(忠州), 홍주(洪州), 경주(慶州), 안동(安東), 진주(晉州), 상주(尙州), 성주(星州), 김해(金海), 밀양(密陽), 전주(全州), 나주(羅州), 제주(濟州), 광주(光州), 남원(南原), 장흥(長興), 순천(順天), 해주(海州), 강릉(江陵), 함흥(咸興), 길주(吉州), 종성(鐘



城), 온성(穩城), 회령(會寧), 경원(慶源), 평양(平壤), 안주(安州), 의주(義州)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57장(張), 마전(磨箭) 29부(部), 통전(筒箭) 28부(部), 장창(長槍) 22자루[柄], 중창(中槍) 33자루, 환도(環刀) 57과(把), 궁현(弓弦) 1백 14개, 철갑(鐵甲) 5령(領), 대쟁(大錚) 1개, 중쟁(中錚), 소쟁(小錚) 각 3개, 고(鼓) 2개, 대각(大角), 소각(小角) 각 3개이고, 수원(水原), 강화(江華), 남양(南陽), 공주(公州), 청주(淸州), 태안(泰安), 울산(蔚山), 함양(咸陽), 풍기(豊基), 합천(陝川), 영천(永川), 흥해(興海), 청도(淸道), 영해(寧海), 영일(迎日), 웅천(熊川), 선산(善山), 창원(昌原), 부안(扶安), 무장(茂長), 영암(靈巖), 영광(靈光), 낙안(樂安), 금산(錦山), 흥양(興陽), 황주(黃州), 연안(延安), 장연(長淵), 평산(平山), 원주(原州), 삼척(三陟), 영흥(永興), 정평(定平), 경성(鏡城), 안변(安邊), 정주(定州), 성천(成川), 숙천(肅川), 영변(寧邊)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46장(張), 마전(磨箭), 통전(筒箭) 각 23부(部), 장창(長槍) 18자루, 중창(中槍) 26자루, 환도(環刀) 46과(把), 궁현(弓弦) 92개, 철갑(鐵甲) 3령(領), 대쟁(大錚) 1개, 중쟁(中錚), 소쟁(小錚) 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 소각(小角) 각 2개이고, 광주(廣州), 양주(楊州), 여흥(驪興),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서산(瑞山), 임천(林川), 천안(天安), 옥천(沃川), 청송(靑松), 초계(草溪), 진천(鎭川), 보은(報恩), 예천(禮川), 영천(榮川), 양산(梁山), 함안(咸安), 금산(金山), 곤양(昆陽), 대구(大丘), 의성(義城), 의령(宜寧), 영덕(盈德), 창녕(昌寧), 사천(泗川), 거창(居昌), 거제(巨濟), 남해(南海), 언양(彦陽), 하동(河東), 장기(長



鬢), 고성(固城), 고부(古阜), 진도(珍島), 순창(淳昌), 김제(金堤), 무안(務安), 함평(咸平), 옥구(沃溝), 광양(光陽), 해남(海南), 서흥(瑞興), 배천(白川), 곡산(谷山), 수안(遂安), 안악(安岳), 풍천(豊川), 웅진(襄津), 양양(襄陽), 평해(平海), 간성(杆城), 북청(北靑), 경흥(慶興), 덕원(德源), 부령(富寧), 문천(文川), 단천(端川), 강계(江界), 창성(昌城), 삭주(朔州), 자산(慈山), 선천(宣川), 순천(順川), 태천(泰川), 희천(熙川), 개천(价川)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36장(張), 마전(磨箭), 통전(筒箭) 각 18부(部), 장창(長槍) 15자루, 중창(中槍) 21자루, 환도(環刀) 36과(把), 궁현(弓弦) 72개, 철갑(鐵甲) 2령(領), 대쟁(大錚) 1개, 중쟁(中錚), 소쟁(小錚) 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 소각(小角) 각 2개이고, 장단(長湍), 교동(交桐), 부평(富平), 인천(仁川), 이천(利川), 양근(楊根), 풍덕(豊德), 안산(安山), 안성(安城), 괴산(槐山), 홍산(鴻山), 제천(堤川),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은진(恩津), 부여(扶餘), 비인(庇仁), 결성(結城), 보령(保寧), 남포(藍浦), 영동(永同), 온양(溫陽), 단양(丹陽), 청풍(淸風), 경산(慶山), 개령(開寧), 삼가(三嘉), 하양(河陽), 칠원(漆原), 인동(仁同), 지례(知禮), 안음(安陰), 고령(高靈), 현풍(玄風), 군위(軍威), 비안(比安), 의흥(義興), 영산(靈山), 기장(機張), 능성(綾城), 용안(龍安), 함열(咸悅), 고산(高山), 태인(泰仁), 흥덕(興德), 정읍(井邑), 고창(高敞), 구례(求禮), 곡성(谷城), 장성(長城), 임실(任實), 장수(長水), 진안(鎭安), 무주(茂朱), 동복(同福), 대정(大靜), 정의(旌義), 담양(潭陽), 익산(益山), 강진(康津), 신계(新溪), 신천(信川), 봉산(鳳



山), 재령(載寧), 강령(康翎), 철원(鐵原), 통천(通川), 영월(寧越), 회양(淮陽), 춘천(春川), 울진(蔚珍), 홍원(洪原), 이성(利城), 고원(高原), 강서(江西), 용강(龍岡), 삼수(三水), 함종(咸從), 영유(永柔), 증산(甌山), 삼등(三登), 은산(殷山), 상원(祥原), 중화(中和), 덕천(德川), 가산(嘉山), 곽산(郭山), 철산(鐵山), 용천(龍川), 벽동(碧潼), 이산(理山), 귀성(龜城)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26장(張), 마전(磨箭), 통전(筒箭) 각 13부(部), 장창(長槍) 8자루, 중창(中槍) 18자루, 환도(環刀) 26과(把), 궁현(弓絃) 52개이고, 파주(坡州), 고양(高陽), 교하(交河), 통진(通津), 김포(金浦), 양지(陽智), 삭녕(朔寧), 마전(麻田), 영평(永平), 용인(龍仁), 진위(振威), 양천(陽川), 지평(砥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금천(衿川), 천녕(川寧), 연천(漣川), 음죽(陰竹), 음성(陰城), 가평(加平), 죽산(竹山), 과천(果川), 문의(文義),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연풍(延豐), 음성(陰城), 청안(淸安),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 이산(尼山), 대흥(大興), 석성(石城), 해미(海美), 강진(康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영춘(永春), 황간(黃澗), 청산(靑山), 아산(牙山), 함창(咸昌), 문경(聞慶), 예안(禮安), 청하(淸河), 봉화(奉化), 진해(鎭海), 진보(眞寶), 단성(丹城), 용궁(龍宮), 산음(山陰), 신녕(新寧), 임피(臨陂), 만경(萬頃), 금구(金溝), 용담(龍潭), 옥과(玉果), 여산(礪山), 남평(南平), 진산(珍山), 창평(昌平), 진원(珍原), 운봉(雲峯), 화순(和順), 토산(兔山), 문화(文化), 우봉(牛峯), 장련(長連), 송화(松禾), 은율(殷栗), 강음(江陰), 이천(伊川), 평강(平



康), 김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안협(安峽), 고성(高城), 평창(平昌), 금성(金城), 흡곡(歙谷), 정선(旌善), 횡성(橫城), 삼수(三水), 갑산(甲山), 박천(博川), 운산(雲山), 위원(渭原), 순안(順安), 맹산(孟山), 양덕(陽德)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17장(張), 마전(磨箭) 9부(部), 통전(筒箭) 8부(部), 장창(長槍) 7자루, 중창(中槍) 10자루, 환도(環刀) 17파(把), 궁현(弓絃) 34개입니다.

이상의 군기(軍器)는 1년에 한 번 제조하는데, 기모(旗麾)는 2년만에 한 번 제조합니다. 상공(上貢)하는 수량 외에는 모두 거진(巨鎭)에 간수해 두고, 갑주(甲冑)와 쟁(鎗)과 고각(鼓角)은 다만 거진(巨鎭)에서만 제조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다.

● 세조 14년 1월 7일(무진)

戊辰兵曹據 全羅道長水縣住正兵李興順等 忠淸道恩津縣住正兵馬權奇等狀告啓曰 興順權奇等 去年九月番上 至今仍留若使至於今年四月則勞逸不均請放歸休息 從之

[풀이]

병조(兵曹)에서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사는 정병(正兵) 이흥순(李興順) 등과 충청도 은진현(恩津縣)에 사는 정병(正兵) 마



권기(馬權奇) 등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흥순, 마권기 등은 지난해 9월에 번상(番上)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금년 4월에 이르도록 부린다면 노고(勞苦)와 안일(安逸)이 균일하지 못하니, 청컨대 놓아 돌려 보내어 휴식(休息)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성종1년 2월 3일(기묘)

兵曹啓 今承傳旨國家昇平日久軍額漸耗 世祖爲國家大計遣大臣搜括閑散 以充軍額然於抄刷之時不免太詳民亦狃於安逸 或有逃避者由是軍保不充 番上頻數 無暇力農民甚若之 其汰去冗兵 更定番次以裕兵民以副 世祖足兵固國之意臣等參詳 諸色軍士 定額過多未易充數而竝令四番相遶 休日不多漸至疲敝 又乙酉年忠清全羅慶尙道籍兵時 以田五結准一丁 雇工白丁竝計作保其額雖多 名存實無不可不更張京畿江原黃海平安永安等道 其時軍案未及成籍 無田丁雇工白丁竝計之法 故軍數多寡適中 宜仍子 但上項諸道諸邑 軍無定額因此番上不齊 今將軍額及分番之數 三道軍丁減額之數並應行事件開錄以啓. 一. 別侍衛二千四百 今定一千五百 分五番每番三百 四朔相遶 甲士二萬 今定一萬分五番 每番二千 四朔相遶破敵衛三千 今定二千五百 分五番每番五百四朔相遶 隊卒三千四百四十 今定三千 分五番 每番一千 四朔相遶內禁衛二百 今定一百 長番鷹揚衛二百 今定一百長番親軍衛四十 依前數 分二番每番二十一年相遞 忠贊衛無定數



今分五番四朔相適 忠順衛無定數 今分五番四朔相適 族親  
 衛無定數 長番忠義衛無定數 長番彎強隊壯勇隊兵六百 長  
 番已曾入屬者外 今後勿許賤人入屬 正兵八萬六十 今定七  
 萬四千二百 分七番 每番一萬六百 二朔相適 外方各鎮留防  
 五千五百 番上五千一百 令節度使磨鍊 依前例成籍摠數啓  
 聞. 一. 甲士在前四番 今分五番 十六朔休息 正兵在前四番  
 今分七番 十二朔休息 二朔相適 並皆身役輕歇 其甲士奉足  
 七丁內 減二丁騎正兵奉足五丁內 減二丁 步正兵奉足三丁  
 內 減一丁. 一. 田丁雇工才白丁及諸色匠人則勿并許作保  
 一番上軍士點考시 戶首奉足 或不壯實戎器 或不精鍊 番上  
 留防 或非當次或闕到 或代立 或馬不實 或射御不能則隨所  
 犯輕重當身 決杖一百 執吏杖一百 全家徒邊 旅帥隊正 決  
 杖邊遠充軍 守令罷職不叙 節度使評事論罪罷黜. 一. 忠清  
 道 忠州諸色軍士 舊二千一百八十七 今定二千一百四十七  
 槐山三百三十 今定三百延豐八十二 今定四十 清風二百三  
 十二 今定一百九十 永春九十八 今定六十 陰城一百四十四  
 今定一百十 丹陽五十五 今定三十五 堤川二百七十一 今定  
 二百四十 清州一千九百九 今定一千八百六十九 鎭川四百  
 六十 今定四百三十 文義三百三十六 今定二百九十九 報恩  
 六百八十八 今定六百五十 青山三百一 今定二百七十 黃澗  
 二百四十九 今定二百十 永同三百九十五 今定三百六十 清  
 安三百十九 今定二百八十 稷山一百五十 今定一百二十五  
 木川二百九十八 今定二百六十 天安五百五十一 今定五百  
 二十 懷仁一百八十八 今定一百五十 全義二百二十五 今定



一百九十五 公州二千七百五十四 今定二千七百三十 定山  
 二百四十九 今定二百十 夫餘一百四十二 今定一百十 林川  
 三百九十六 今定三百六十七 韓山二百九 今定一百七十 石  
 城一百 今定七十 尼山二百八十四 今定二百五十 連山三百  
 九 今定二百七十 燕岐四百二十 今定三百九十 懷德三百一  
 今定二百六十六 鎭岑一百六十五 今定一百二十五 沃川五  
 百六十四 今定五百三十 恩津二百九十 今定二百五十五 洪  
 州一千五百八十 今定一千五百四十五 清陽三百五十五 今  
 定三百十 平澤八十九 今定四十 庇仁一百十四 今定八十  
 溫陽五百十五 今定四百六十 新昌二百七十四 今定二百三  
 十 沔川三百八十五 今定三百五十 結城四百十六 今定三百  
 八十 保寧三百八十三 今定三百五十 瑞舒山五百六十三 今  
 定五百三十 藍浦二百九十六 今定二百六十 舒川二百 今定  
 一百八十 鴻山九十五 今定六十 禮山二百八十五 今定二百  
 四十 牙山四百五十四 今定四百 德山四百七十一 今定四百  
 三十一 唐津二百九十 今定二百五十五 大興四百二十六 今  
 定三百八十 泰安二百六十七 今定二百三十七 海美二百七  
 十五 今定二百三十 總計舊二萬三千三百八十四. 減一千九  
 百五十四 今定二萬一千四百三十一. 全羅道昌平 諸色軍士  
 四百 今定三百七十 谷城四百四十一 今定四百十 咸平九百  
 十六 今定八百八十 茂長一千四十三 今定一千十 南平五百  
 二十一 今定四百八十 茂朱三百十七 今定二百七十 光陽二  
 百五十九 今定二百二十 和順三百三十七 今定三百 同福五  
 百二十九 今定五百 順天六百五十五 今定六百三十 高山五



百七十九 今定五百四十 務安三百五 今定二百八十 興陽五  
 百十九 今定四百七十一 珍島一百九十八 今定一百八十 海  
 南六百四十六 今定六百十 萬頃三百七十八 今定三百三十  
 臨陂七百六十九 今定七百二十 沃溝四百三十一 今定三百  
 九十 任實七百四十八 今定七百十 靈光一千一百八十三 今  
 定一千一百五十 金溝四百五十八 今定四百二十 雲峯四百  
 二十六 今定三百八十 長興八百八十一 今定八百六十 高敞  
 三百九十五 今定三百六十 樂安二百二十九 今定二百 泰仁  
 一千一百一十一 今定一千八十 光州九百二十九 今定九百 古  
 阜一千一百四十二 今定一千一百十二 珍山二百五十 今定  
 二百 淳昌九百三十 今定九百 寶城六百六 今定五百七十六  
 井邑四百九十二 今定四百五十 唐津一千七 今定九百八十  
 興德四百五十六 今定四百二十 求禮一百五十七 今定一百  
 二十 南原一千八百五十七 今定一千八百三十 羅州一千四  
 百十五 今定一千三百九十 靈巖二百七 今定一百七十 全州  
 一千八百九十一 今定一千八百六十五 潭陽八百十 今定七  
 百七十五 鎮安四百十八 今定三百八十四 咸悅四百三十六  
 今定三百九十 長城五百十四 今定四百七十 長水三百七十  
 八 今定三百三十 益山三百八十二 今定三百三十 錦山六百  
 二十四 今定五百九十 玉果四百二十九 今定三百九十 金堤  
 九百四十一 今定九百十 扶安一千一百六十一 今定一千一  
 百三十 龍潭一百十四 今定八十 龍安一百六十四 今定一百  
 十九 總計舊三萬三千六百三十九 減一千九百五十三 今定  
 三萬一千六百八十六 慶尙道彦陽諸色軍士六十九 今定四十



盈德二百五十七 今定二百三十 青松二百七十一 今定二百四十四 梁山七十四 今定五十 義城六百二十五 今定五百九十四 比安三百六十 今定三百三十 慶山一百五十五 今定一百二十四 醴泉七百八 今定六百八十 奉化八十五 今定五十五 密陽七百九十三 今定七百七十 玄風一百五十三 今定一百二十 清道四百四十六 今定四百二十 長鬢九十七 今定七十 新寧七十八 今定四十八 機長二百三十一 今定二百三 榮川三百十三 今定二百八十五 永川五百三十 今定五百 昌寧三百九十 今定三百六十五 大丘三百四十六 今定三百十六 興海一百九十五 今定一百六十五 河陽七十八 今定七十 禮安六十五 今定三十五 東萊二百六十三 今定二百三十 軍威二百八十四 今定二百五十 寧海三百三十 今定三百 慶州一千四百七十二 今定一千四百五十 仁同三百九十六 今定三百五十 龍宮二百六十二 今定二百二十 豐基三百九十七 今定三百六十 安東六百八十六 今定六百六十 蔚山一千三十 今定一千十 迎日二百二十九 今定二百五 義興一百五十二 今定一百二十 靈山二百十九 今定一百九十 巨濟二百二十 今定二百 草溪一百二十四 今定九十四 泗川九十一 今定七十 漆原九十八 今定七十 陝川一百六 今定七十六 金海五百六 今定四百八十 高城六百五十四 今定六百二十五 熊川六十九 今定五十 聞慶二百五十二 今定二百二十 咸安二百六十九 今定二百四十 昌原二百八十八 今定二百六十 星州一千五百九 今定一千四百八十 咸昌二百七十三 今定二百三十 宜寧五百四十一 今定五百십 知禮一百三十四 今



定一百 河東九十九 今定七十五 居昌四百二十 今定三百九十五 高寧一百三十 今定一百 安陰一百七十七 今定一百四十 尙州一千七百七十二 今定一千七百三十 金山五百六十五 今定五百三十五 晉州一千一百一 今定一千八十三 嘉一百四十一 今定一百十 善山七百六十五 今定七百三十五 昆陽一百八十八 今定二百六十 山陰一百七十三 今定一百五十 鎭海四十二 今定二十二 開寧四百五十一 今定四百二十四 咸陽二百二十八 今定二百四 丹城九十五 今定六十五 總計舊二萬三千八百七十 減一千九百五十三 今定二萬一千九百十七.

京畿砥平諸色軍士二十五 陽川二十一 永平二十一 金浦二十一 富平二百七 加平五十一 振威一百三十六 坡州一百七 竹山一百八十四 喬桐三十六 果川五十五 麻田十 龍仁一百七十二 楊州二百六十二 朔寧九十三 陽城二百十八 抱川八十九 仁川八十九 安城一百九十一 楊根五十九 安山五十五 水原二千二百四十九 陽智九十二 積城二十五 江華二百五十 陰竹一百四十七 漣川五十五 廣州二百四十五 豐德一百十七 南陽一百九十八 驪州二百三十一 利川二百五十七 通津一百一 交河一百二十七 開城七百二十八 高陽一百六十七 衿川五十五 長湍一百三十八 並仍舊總計六千三百七十三.

江原道淮陽諸色軍士一百九十二 高城三十四 杆城五十八 橫城八十一 狼川五十 楊口七十九 春川二百七十三 襄陽一百 歙谷二十五 旌善四十四 江陵四百五十三 平康四十一



寧越一百三十 通川四十四 蔚珍六十五 平海五十一 平昌五十一 金城一百八十五 鐵原一百四 三陟六十三 原州二百八十一 麟蹄三十三 洪川八十 金化五十五 伊川八十八 安峽七十八 並仍舊總計二千三百三十八

黃海道黃州諸色軍士二百八十一 海州一千一百四十二 延安六百二 平山五百十五 瑞興二百三十四 遂安二百三十一 谷山二百八十四 安岳四百二十四 載寧三百四十八 白川三百三十三 鳳山一百八十二 豐川二十二 長淵一百二十二 瓮津五十 康翎三十 牛峯二百十五 新溪一百五十七 殷栗六十六 松禾二百十二 文化九十六 長連八十 新川二百九十九 兔山一百三十六 江陰四十二 並仍舊總計六千一百三 平安道郭山諸色軍士六十六 宣川一百二十七 鐵山一百二十 龍川一百五十九 義州八百六十八 朔州一百四十 昌城二百三十六 龜城二百二十三 定州二百三十一 永柔三百八十 三和二百三十四 甑山九十四 咸從二百六十六 龍崗五百四十五 中和二百二十九 順安二百十一 肅川三百二十九 平康二千八百五十三 江西三百七十 安州二百八十八 嘉山六十 江界八百二十四 寧邊四百四十四 理山三百四十一 寧遠一百四十二 渭原一百四十八 雲山五十八 碧桐四百十五 慈山一百五十八 殷山二百八十五 德川二百四十 成川四百九十六 三登五百四十 陽德七十五 泰川六十四 博川七十一 熙川一百七十四 並仍舊總計一萬三千五百四 水安道古吉州諸色軍士二百六十七 右吉州分爲吉城明川後 軍丁分施行會計未到 端川二百七十二 利城一百十九 北青五百九十七 甲山三百二十一 三水一百八 洪原一百九十九 咸興六百二十 定乎二百二十八 永興五百三十一 高原一百四十一 文川一百十六 德原一百八 安邊三百二十四 鏡城四百二十一 富寧二百



八十九 懷寧七百三十五 鍾城一千五十二 穩城七百八十八  
慶源七百七十九 慶興三百七十六 並仍舊總計九千九十一  
兩界則其道赴防 無番上往來之弊 仍舊四番何如 從之 總計  
十一萬四百六十八.

[풀이]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를 받들건대, ‘국가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니, 군액(軍額)이 점점 줄어 들었다. 세조(世祖)께서 국가 대계를 위하여 대신을 보내어 한산(閑散)한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군액을 보충하게 하였으나 초쇄(抄刷)할 때에 너무 상세한 것을 면치 못하였고, 백성들도 안일한 데에 습관이 되어 혹 도피하는 자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군보(軍保)가 충실하지 못하고, 번상(番上)이 빈삭하여 농사에 힘쓸 틈이 없어서 백성이 매우 괴롭게 여기니, 쓸데 없는 군사는 도태하여 버리고, 번차(番次)를 다시 정하여 군사와 백성을 유족하게 함으로써 세조의 군사를 족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제색(諸色)의 군사가 정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액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고, 아울러 4번(番)으로 서로 교대하게 하니, 쉬는 날이 많지 않아서 점점 피폐(疲弊)하게 됩니다. 또 을유년에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의 군사를 병적에 올릴 때에 밭[田] 5결(結)로 한 정부(丁夫)에 준(准)하고, 고공(雇工), 백정



(白丁)을 아울러 계산하여 보(保)를 만들었으므로, 그 액수는 비록 많으나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京畿), 강원도(江原道), 황해도(黃海道), 평안도(平安道), 영안도(永安道) 등의 도는 그때 군안(軍案)을 미처 만들지 못하였는데, 전정(田丁), 고공(雇工), 백정(白丁)을 아울러 계산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이 알맞으니, 마땅히 예전 그대로 하소서. 다만 위의 항목에 제도(諸道), 제읍(諸邑)의 군사는 정한 액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번상(番上)이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지금 군액(軍額) 및 분번(分番)할 수와 3도(道) 군정(軍丁)의 감액(減額)할 수와 아울러 응당 행해야 할 사건을 가지고 개록(開錄)하여 아뢰입니다.

1. 별시위(別侍衛)는 2천 4백인데, 지금 1천 5백으로 정하고, 5번(番)으로 나누어 매번(每番)에 3백으로 하여 녉달에 서로 교대하고, 갑사(甲士)는 2만인데, 지금 1만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2천으로 하여 녉달에 서로 교대하고, 파적위(破敵衛)는 3천인데, 지금 2천 5백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5백으로 하여 녉달에 서로 교대하고, 대졸(隊卒)은 3천 4백 40인데, 지금 3천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6백으로 하여 녉달에 서로 교대하고, 팽배(彭排)는 6천인데, 지금 5천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1천으로 하여 녉달에 서로 교대하고, 내금위(內禁衛)는 2백인데, 지금 1백으로 정하여 장번(長番)으로 하고, 응양위(鷹揚衛)는 2백인데, 지금 1백으로 정하여



장번으로 하고 친군위(親軍衛)는 40인데, 전 수에 의하여 2번으로 나누고, 매번에 20으로 하여 1년에 서로 교대하고, 충찬위(忠贊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지금 5번으로 나누어 6달에 서로 교대하고, 충순위(忠順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지금 5번으로 나누어 6달에 서로 교대하고, 족친위(族親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장번으로 하고, 충의위(忠義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장번으로 하고, 만강대(彎強隊), 장용대(壯勇隊)는 아울러 6백인데, 장번으로 하고, 이미 일찍이 입속(入屬)한 자 외에는 이후로 천인(賤人)이 입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정병(正兵)은 8만 60인데, 지금 7만 4천 2백으로 정하고, 7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1만 6백으로 하여 두 달에 서로 교대하고, 외방(外方) 각진(各鎭)의 유방군(留防軍)은 5천 5백이고, 번상(番上)하는 군사는 5천 1백인데,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마련하여 전례에 의하여 성적(成籍)하게 하고, 총수(摠數)를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1. 갑사(甲士)는 전에는 4번(番)이었었는데, 지금 5번으로 나누어 16달[朔] 만에 휴식하고, 정병(正兵)은 전에는 4번이었었는데, 지금 7번으로 나누어 12달 만에 휴식하고, 두 달에 서로 교대하여 모두 신역(身役)을 가볍게 하여 쉬게 하며, 갑사(甲士)의 봉족(奉足)은 7정(丁) 가운데에서 2정을 줄이고, 기정병(騎正兵)의 봉족은 5정 가운데 2정을 줄이고, 보정병(步正兵)의 봉족은 3정 가운데 1정을 줄이소서.
1. 전정(田丁), 고공(雇工), 재백정(才白丁) 및 제색 장인(諸色匠人)은 아울러 계산하여 보(保)를 만들지 마소서.



1. 번상(番上)하는 군사를 점고(點考)할 때에 호수(戶首), 봉족(奉足)이 혹 튼튼하고 실하지 못하거나, 용기(戎器)가 혹 정련(精練)되지 못하였거나, 번상하는 군사와 유방군(留防軍)이 혹 당번이 아니거나, 혹 도(到)를 꺾하였거나, 혹 대신 세웠거나, 혹 말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혹 활쏘고 말타는 것이 능하지 못하면 범한 것의 경중에 따라 본인은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집리(執吏)도 장 1백 대를 때리고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고, 여수(旅帥), 대정(隊正)은 결장(決杖)하여 먼 변방에 충군(充軍)시키고, 수령(守令)은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절도사(節度使), 평사(評事)는 논죄하여 파출(罷黜)하소서.

1. 충청도(忠淸道)에 있어서 충주(忠州)는 제색 군사(諸色軍士)가 본래는 2천 1백 87인데 지금 2천 1백 47로 정하고, 괴산(槐山)은 3백 30인데 지금 3백으로 정하고, 연풍(延豐)은 82인데 지금 40으로 정하고, 청풍(淸風)은 2백 32인데 지금 1백 90으로 정하고, 영춘(永春)은 98인데 지금 60으로 정하고, 음성(陰城)은 1백 44인데 지금 1백 10으로 정하고, 단양(丹陽)은 55인데 지금 35로 정하고, 제천(堤川)은 2백 71인데 지금 2백 40으로 정하고, 청주(淸州)는 1천 9백 9인데 지금 1천 8백 69로 정하고, 진천(鎭川)은 4백 60인데 지금 4백 30으로 정하고, 문의(文義)는 3백 36인데 지금 2백 99로 정하고, 보은(報恩)은 6백 88인데 지금 6백 50으로 정하고, 청산(靑山)은 3백 1인데 지금 2백 70으로 정하고, 황간(黃澗)은 2백 49인데 지금 2백 10으로 정하고, 영동(永



同)은 3백 95인데 지금 3백 60으로 정하고, 청안(淸安)은 3백 19인데 지금 2백 80으로 정하고, 직산(稷山)은 1백 50인데 지금 1백 25로 정하고, 목천(木川)은 2백 98인데 지금 2백 60으로 정하고, 천안(天安)은 5백 51인데 지금 5백 20으로 정하고, 회인(懷仁)은 1백 88인데 지금 1백 50으로 정하고, 전의(全義)는 2백 25인데 지금 1백 95로 정하고, 공주(公主)는 2천 7백 54인데 지금 2천 7백 30으로 정하고, 정산(定山)은 2백 49인데 지금 2백 10으로 정하고, 부여(扶餘)는 1백 42인데 지금 1백 10으로 정하고, 임천(林川)은 3백 96인데 지금 3백 67로 정하고, 한산(韓山)은 2백 9인데 지금 1백 70으로 정하고, 석성(石城)은 1백인데 지금 70으로 정하고, 이산(尼山)은 2백 84인데 지금 2백 50으로 정하고, 연산(連山)은 3백 9인데 지금 2백 70으로 정하고, 연기(燕岐)는 4백 20인데 지금 3백 90으로 정하고, 회덕(懷德)은 3백 1인데 지금 2백 66으로 정하고, 진잠(鎭岑)은 1백 65인데 지금 1백 25로 정하고, 옥천(沃川)은 5백 64인데 지금 5백 30으로 정하고, 은진(恩津)은 2백 90인데 지금 2백 55로 정하고, 홍주(洪州)는 1천 5백 80인데 지금 1천 5백 45로 정하고, 청양(靑陽)은 3백 55인데 지금 3백 10으로 정하고, 평택(平澤)은 89인데 지금 40으로 정하고, 비인(庇仁)은 1백 14인데 지금 80으로 정하고, 온양(溫陽)은 5백 15인데 지금 4백 60으로 정하고, 신창(新昌)은 2백 74인데 지금 2백 30으로 정하고, 면천(沔川)은 3백 85인데 지금 3백 50으로 정하고, 결성(結城)은 4백 16인데 지금 3백 80으로 정



하고, 보령(保寧)은 3백 83인데 지금 3백 50으로 정하고, 서산(瑞山)은 5백 63인데 지금 5백 30으로 정하고, 남포(藍浦)는 2백 96인데 지금 2백 60으로 정하고, 서천(舒川)은 2백인데 지금 1백 80으로 정하고, 홍산(鴻山)은 95인데 지금 60으로 정하고, 예산(禮山)은 2백 85인데 지금 2백 40으로 정하고, 아산(牙山)은 4백 54인데 지금 4백으로 정하고, 덕산(德山)은 4백 71인데 지금 4백 31로 정하고, 당진(唐津)은 2백 90인데 지금 2백 55로 정하고, 대흥(大興)은 4백 26인데 지금 3백 80으로 정하고, 태안(泰安)은 2백 67인데 지금 2백 37로 정하고, 해미(海美)는 2백 75인데 지금 2백 30으로 정하였습니다. 총계가 예전에는 2만 3천 3백 84인데, 1천 9백 54를 줄이고, 지금 정한 것이 2만 1천 4백 31입니다.

전라도(全羅道)에 있어서, 창평(昌平)은 제색 군사가 4백인데 지금 3백 70으로 정하고, 곡성(谷城)은 4백 41인데 지금 4백 10으로 정하고, 함평(咸平)은 9백 16인데 지금 8백 80으로 정하고, 무장(茂長)은 1천 43인데 지금 1천 10으로 정하고, 남평(南平)은 5백 21인데 지금 4백 80으로 정하고, 무주(茂朱)는 3백 17인데 지금 2백 70으로 정하고, 광양(光陽)은 2백 59인데 지금 2백 20으로 정하고, 화순(和順)은 3백 37인데 지금 3백으로 정하고, 동복(同福)은 5백 29인데 지금 5백으로 정하고, 순천(順天)은 6백 55인데 지금 6백 30으로 정하고, 고산(高山)은 5백 79인데 지금 5백 40으로 정하고, 무안(務安)은 3백 5인데 지금 2백 80으로 정하고, 흥양(興陽)은 5백 19인데 지금 4백



71로 정하고, 진도(珍島)는 1백 98인데 지금 1백 80으로 정하고, 해남(海南)은 6백 46인데 지금 6백 10으로 정하고, 만경(萬頃)은 3백 78인데 지금 3백 30으로 정하고, 임피(臨陂)는 7백 69인데 지금 7백 20으로 정하고, 옥구(沃溝)는 4백 31인데 지금 3백 90으로 정하고, 임실(任實)은 7백 48인데 지금 7백 10으로 정하고, 영광(靈光)은 1천 1백 83인데 지금 1천 1백 50으로 정하고, 금구(金溝)는 4백 58인데 지금 4백 20으로 정하고, 운봉(雲峰)은 4백 26인데 지금 3백 80으로 정하고, 장흥(長興)은 8백 81인데 지금 8백 60으로 정하고, 고창(高敞)은 3백 95인데 지금 3백 60으로 정하고, 낙안(樂安)은 2백 29인데 지금 2백으로 정하고, 태인(泰仁)은 1천 1백 11인데 지금 1천 80으로 정하고, 광주(光州)는 9백 29인데 지금 9백으로 정하고, 고부(古阜)는 1천 1백 42인데 지금 1천 1백 12로 정하고, 진산(珍山)은 2백 50인데 지금 2백으로 정하고, 순창(淳昌)은 9백 30인데 지금 9백으로 정하고, 보성(寶城)은 6백 6인데 지금 5백 76으로 정하고, 정읍(井邑)은 4백 92인데 지금 4백 50으로 정하고, 강진(康津)은 1천 7인데 지금 9백 80으로 정하고, 흥덕(興德)은 4백 56인데 지금 4백 20으로 정하고, 구례(求禮)는 1백 57인데 지금 1백 20으로 정하고, 남원(南原)은 1천 8백 57인데 지금 1천 8백 30으로 정하고, 나주(羅州)는 1천 4백 15인데 지금 1천 3백 90으로 정하고, 영암(靈巖)은 2백 7인데 지금 1백 70으로 정하고, 전주(全州)는 1천 8백 91인데 지금 1천 8백 65로 정하고, 담양(潭陽)은 8백 10인데 지금 7백 75로 정하고, 진안(鎭安)은 4백 18인데 지금 3백 84로 정하고, 함열(咸



悅)은 4백 36인데 지금 3백 90으로 정하고, 장성(長城)은 5백 14인데 지금 4백 70으로 정하고, 장수(長水)는 3백 78인데 지금 3백 30으로 정하고, 익산(益山)은 3백 82인데 지금 3백 30으로 정하고, 금산(錦山)은 6백 24인데 지금 지금 5백 90으로 정하고, 옥과(玉果)는 4백 29인데 지금 3백 90으로 정하고, 김제(金堤)는 9백 41인데 지금 9백 10으로 정하고, 부안(扶安)은 1천 1백 61인데 지금 1천 1백 30으로 정하고, 용담(龍潭)은 1백 14인데 지금 80으로 정하고, 용안(龍安)은 1백 64인데 지금 1백 19로 정하였습니다. 총계가 예전에는 3만 3천 6백 39였는데, 1천 9백 53을 줄이고, 지금 정한 것이 3만 1천 6백 86입니다.

경상도(慶尙道)에 있어서, 언양(彦陽)은 제색 군사가 69인데 지금 40으로 정하고, 영덕(盈德)은 2백 57인데 지금 2백 30으로 정하고, 청송(靑松)은 2백 71인데 지금 2백 44로 정하고, 양산(梁山)은 74인데 지금 50으로 정하고, 의성(義城)은 6백 25인데 지금 5백 94로 정하고, 비안(比安)은 3백 60인데 지금 3백 30으로 정하고, 경산(慶山)은 1백 55인데 지금 1백 24로 정하고, 예천(醴泉)은 7백 8인데 지금 6백 80으로 정하고, 봉화(奉化)는 85인데 지금 55로 정하고, 밀양(密陽)은 7백 93인데 지금 7백 70으로 정하고, 현풍(玄風)은 1백 53인데 지금 1백 20으로 정하고, 청도(淸道)는 4백 46인데 지금 4백 20으로 정하고, 장기(長鬐)는 97인데 지금 70으로 정하고, 신녕(新寧)은 78인데 지금 48로 정하고, 기장(機長)은 2백 31인데 지금 2백 3으로 정하고, 영천(榮川)은 3백 13인데 지금 2백 2백 85로 정



하고, 영천(永川)은 5백 30인데 지금 5백으로 정하고, 창녕(昌寧)은 3백 90인데 지금 3백 65로 정하고, 대구(大丘)는 3백 46인데 지금 3백 16으로 정하고, 흥해(興海)는 1백 95인데 지금 1백 65로 정하고, 하양(河陽)은 78인데 지금 40으로 정하고, 진보(眞寶)는 1백 81인데 지금 1백 50으로 정하고, 청하(清河)는 1백인데 지금 70으로 정하고, 예안(禮安)은 65인데 지금 35로 정하고, 동래(東萊)는 2백 63인데 지금 2백 30으로 정하고, 군위(軍威)는 2백 84인데 지금 2백 50으로 정하고, 영해(寧海)는 3백 30인데 지금 3백으로 정하고, 경주(慶州)는 1천 4백 72인데 지금 1천 4백 50으로 정하고, 인동(仁同)은 3백 96인데 지금 3백 50으로 정하고, 용궁(龍宮)은 2백 62인데 지금 2백 20으로 정하고, 풍기(豐基)는 3백 97인데 지금 3백 60으로 정하고, 안동(安東)은 6백 86인데 지금 6백 60으로 정하고, 울산(蔚山)은 1천 30인데 지금 1천 10으로 정하고, 영일(迎日)은 2백 29인데 지금 2백 5로 정하고, 의흥(義興)은 1백 52인데 지금 1백 20으로 정하고, 영산(靈山)은 2백 19인데 지금 1백 90으로 정하고, 거제(巨濟)는 2백 20인데 지금 2백으로 정하고, 초계(草溪)는 1백 24인데 지금 94로 정하고, 사천(泗川)은 91인데 지금 70으로 정하고, 칠원(漆原)은 98인데 지금 70으로 정하고, 합천(陝川)은 1백 6인데 지금 76으로 정하고, 김해(金海)는 5백 6인데 지금 4백 80으로 정하고, 고성(固城)은 6백 54인데 지금 6백 25로 정하고, 웅천(熊川)은 69인데 지금 50으로 정하고, 문경(聞慶)은 2백 52인데 지금 2백 20으로 정하고, 함안(咸安)은 2백 69인데, 지금 2백 40으로 정하고, 창원(昌原)은



2백 88인데 지금 2백 60으로 정하고, 성주(星州)는 1천 5백 9인데 지금 1천 4백 80으로 정하고, 함창(咸昌)은 2백 73인데 지금 2백 30으로 정하고, 의령(宜寧)은 5백 41인데 지금 5백 10으로 정하고, 지례(知禮)는 1백 34인데 지금 1백으로 정하고, 하동(河東)은 99인데 지금 75로 정하고, 거창(居昌)은 4백 20인데 지금 3백 95로 정하고, 고령(高靈)은 1백 30인데 지금 1백으로 정하고, 안음(安陰)은 1백 77인데 지금 1백 40으로 정하고, 상주(尙州)는 1천 7백 72인데 지금 1천 7백 30으로 정하고, 금산(金山)은 5백 65인데 지금 5백 35로 정하고, 진주(晋州)는 1천 1백 1인데 지금 1천 80으로 정하고, 삼가(三嘉)는 1백 41인데 지금 1백 10으로 정하고, 선산(善山)은 7백 65인데 지금 7백 35로 정하고, 곤양(昆陽)은 1백 88인데 지금 1백 60으로 정하고, 산음(山陰)은 1백 73인데 지금 1백 50으로 정하고, 진해(鎭海)는 42인데 지금 22로 정하고, 개령(開寧)은 4백 51인데 지금 4백 24로 정하고, 함양(咸陽)은 2백 28인데 지금 2백 4로 정하고, 단성(丹城)은 95인데 지금 65로 정하였습니다. 총계가 예전에는 2만 3천 8백7십인데 1천9백53을 줄이고, 지금 정한 것이 2만 1천9백17입니다.

경기(京畿)에 있어서, 지평(砥平)은 제색 군사가 25이고, 양천(陽川)은 21이고, 영평(永平)은 21이고, 김포(金浦)는 21이고, 부평(富平)은 2백 7이고, 가평(加平)은 51이고, 진위(振威)는 1백 36이고, 파주(坡州)는 1백 7이고, 죽산(竹山)은 1백 84이고, 교동(喬桐)은 36이고, 과천(果川)은 55이고, 마천(麻田)은 10이고, 용인(龍仁)은 1백 72이고, 양주(楊州)는 2백 62이고, 삭녕



(朔寧)은 93이고, 양성(陽城)은 2백 18이고, 포천(抱川)은 89이고, 인천(仁川)은 89이고, 안성(安城)은 1백 91이고, 양근(陽根)은 59이고, 안산(安山)은 55이고, 수원(水原)은 1천 2백 49이고, 양지(陽智)는 92이고, 적성(積城)은 25이고, 강화(江華)는 2백 50이고, 음죽(陰竹)은 1백 47이고, 연천(漣川)은 55이고, 광주(廣州)는 2백 45이고, 풍덕(豐德)은 1백 17이고, 남양(南陽)은 1백 98이고, 여주(驪州)는 2백 31이고, 이천(利川)은 2백 57이고, 통진(通津)은 1백 1이고, 교하(交河)는 1백 27이고, 개성(開城)은 7백 28이고, 고양(高陽)은 1백 67이고, 금천(衿川)은 55이고, 장단(長湍)은 1백 38인데, 아울러 예전대로 하여 총계가 6천 3백 73입니다.



● 성종 2년 12월 26일(계사)

司憲府書啓 工曹參議韓權年少不學 不合六曹堂上 掌樂院  
 僉正鄭涵孱劣不堪職事 司饗院直長鄭叔墀狂妄不謹職事 安  
 東府使金守和懶慢無行 醴泉郡守成繼曾 長水縣監金永鼎  
 煩弊 利川府使權僩煩苛 懷仁縣監朴雲孫 庸鄙無行 皆不合  
 臨民 命罷成繼魯金永鼎權僩朴雲孫職.

풀이

사헌부(司憲府)에서 서계(書啓)하기를,  
 “공조 참의(工曹參議) 한환(韓權)은 나이가 젊고 배우지 못하  
 여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에 합당하지 못하고, 장악원 첨정(掌  
 樂院僉正) 정함(鄭涵)은 잔열(孱劣)한데다 직사(職事)를 감당하  
 지 못하며, 사옹원 직장(司饗院直長) 정숙지(鄭叔墀)는 광망(狂  
 妄)하여 직사를 삼가지 못하고, 안동 부사(安東府使) 김수화(金  
 守和)는 나태 만홀하여 행실이 없으며, 예천 군수(醴泉郡守) 성  
 계증(成繼曾), 장수 현감(長水縣監) 김영정(金永鼎)은 번거로운  
 폐단을 끼치고, 이천 부사(利川府使) 권한(權僩)은 몹시 잘고 까  
 다로우며, 회인 현감(懷仁縣監) 박운손(朴雲孫)은 용렬 비루하여  
 행실이 없으니, 모두 백성을 다스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명하여 성계증(成繼曾), 김영정(金永鼎), 권한(權僩), 박운  
 손(朴雲孫)을 파직(罷職)시켰다.



## ● 성종 3년 2월 1일(무진)

兵曹啓 頃承 傳旨諸道軍額猥多兵貴精不在多 其非試才軍士 量減其數 臣等參詳去庚寅年諸道正兵元額 八萬六十內 減下三道五千八百六十 除諸鎮留防軍一萬六千五百 以五萬七千七百 分七番 每番定爲八千二百四十 然作保不許 并計田丁雇工才白丁諸色匠人 故減數頗多今將上項五萬七千七百內 減九千七百於下三道各邑 隨其人物殘盛 均減錄啓 請令諸道兵馬節度使詳考 改作保成籍往者諸色軍士 率居人丁作保額外則皆定他役 故一家內父子兄弟 各有身役不能相救 誠爲可矜 請自今 軍士之同居子壻弟雖過保數限二丁毋定他役其大典 院主同居族親二人 毋定他役 然其所任甚苦請加一人毋定他役各鎮留防 舊分三番 一朔相違視他艱苦 今將番上正兵四萬八千內 除出五千五百名 移屬留鎮分爲四番更休 其餘正兵四萬二千五百名 分爲八番 每番五千三百十名 番上宿衛 大平簫馬上之兵 而例以步正兵給保 未便 請依騎正兵例給保

忠清道忠州各色軍士二千一百八十七內 前減正兵四十 定爲二千一百四十七 今減正兵六十七 定爲二千八十 槐山三百三十內 前減三十 定爲三百 今減五十 定爲二百五十 延豐八十二內 前減四十二 定爲四十 今減十五 定爲二十五 清風二百三十二內 前減四十二 定爲一百九十 今減五十 定爲一百四十 永春九十八內 前減三十八 定爲六十 今減二十五 定爲三十五 陰城一百四十四內 前減三十四定爲一百



十 又減三十五 今爲七十五 丹陽五十五內 前減二十 定爲三十五 今減十五 定爲二十 堤川二百七十一內 前減三十一 定爲二百四十 今減五十 定爲一百九十 清州一千九百九內 前減四十 定爲一千八百六十九 今減六十九 定爲一千八百 鎭川四百六十內 前減三十 定爲四百三十 今減六十定爲三百七十 文義三百三十六內 前減三十七 定爲二百九十九 今減六十九 定爲二百三十 報恩六百八十八內 前減三十八 定爲六百五十 今減七十 定爲五百八十 靑山三百一內 前減三十一 定爲二百八十 今減六十定爲二百十 黃澗二百四十九內 前減三十九 定爲二百十 今減五十 定爲一百六十 永同三百九十五內 前減三十五 定爲三百六十 今減六十 定爲三百 清安三百十九內 前減三十九 定爲二百八十 今減六十 定爲二百二十 稷山一百五十內 前減二十五 定爲一百二十五 今減三十五 定爲九十 木川二百九十八內 前減二十八 定爲二百七十 今減六十 定爲二百十 天安五百五十一內 前減三十一 定爲五百二十 今減六十 定爲四百六十 懷仁一百八十八內 前減三十八 定爲一百五十 今減五十 定爲一百 全義二百二十五內 前減三十 定爲一百九十五 今減五十五 定爲一百四十 公州二千七百五十內 前減二十 定爲二千七百三十 今減六十 定爲二千六百七十 定山二百四十九內 前減三十九 定爲二百十 今減六十 定爲一百五十 夫餘一百四十二內 前減三十二 定爲一百十 今減三十 定爲八十 林川三百九十六 前減二十九 定爲三百六十七 今減六十七 定爲三百 韓山二百九內 前減三十九 定爲一百七十 今減五十



定爲一百二十 石城一百內 前減三十 定爲七十 今減三十  
定爲四十 尼山二百八十四內 前減三十四 定爲二百五十 今  
減六十 定爲一百九十 連山三百九內 前減三十九 定爲二百  
七十 今減六十 定爲二百十 燕岐四百二十內 前減三十 定  
爲三百九十 今減六十二 定爲三百二十八 懷德三百一內 前  
減三十五 定爲二百六十六 今減六十 定爲二百六 鎮岑一百  
六十五內 前減四十 定爲一百二十五 今減五十五 定爲七十  
沃川五百六十四內 前減三十四 定爲五百三十 今減八十 定  
爲四百五十 恩津二百九十內 前減三十五 定爲二百五十五  
今減六十五 定爲一百九十 洪州一千五百八十內 前減三十五  
定爲一千五百四十五 今減五十五 定爲一千四百九十 清  
陽三百五十五內 前減四十五 定爲三百十 今減六十 定爲二  
百五十 平澤八十九內 前減四十九 定爲四十 今減十 定爲  
三十 庇仁一百十四內 前減三十四 定爲八十 今減二十 定  
爲六十 溫陽五百十五內 前減五十五 定爲四百六十 今減七  
十 定爲三百九十 新昌二百七十四內 前減四十四 定정정정  
爲二百三十 今減六十 定爲一百七十 沔川三百八十五內 前  
減三十五 定爲三百五十 今減六十 定爲二百九十 結城四百  
十六內 前減三十六 定爲三百八十 今減五十 定爲三百三十  
保寧三百八十四內 前減三十三 定爲三百五十一 今減六十  
一 定爲二百九十 瑞山五百六十三內 前減三十三 定爲五百  
三十 今減六十八 定爲四百六十二 藍浦二百九十六 前減三  
十六 定爲二百六十 今減五十 定爲二百十 舒川二百內 前  
減二十 定爲一百八十 今減五十 定爲一百三十 鴻山九十五



內 前減三十五 定爲六十 今減二十 定爲四十 禮山二百八十五內 前減四十五 定爲二百四十 今減六十 定爲一百八十 牙山四百五十四內 前減五十四 定爲四百 今減六十 定爲三百四十 德山四百七十一內 前減四十一 定爲四百三十 今減六十 定爲三百七十 唐津二百九十內 前減三十五 定爲二百五十五 今減六十五 定爲一百九十 大興四百二十六內 前減四十六 定爲三百八十 今減六十 定爲三百二十 泰安二百六十七內 前減三十 定爲二百三十七 今減六十七 定爲一百七十 海美二百七十五 前減四十五 定爲二百三十 今減五十 定爲一百八十

全羅道昌平各色軍士四百 前減正兵三十 定爲三百七十 今減八十 定爲二百九十 谷城四百四十一內 前減三十一 定爲四百十 今減八十 定爲三百三십 咸平九百十六內 前減三十六 定爲八百八十 今減八十 定爲八百 茂長一千四十三內 前減三十三 定爲一千十 今減八十 定爲九百三十 綾城七百六內 前減四十六 定爲六百六十 今減八十 定爲五百八十 南平五百二十一 前減四十一 定爲四百八十 今減八十 定爲四百 茂朱三百十七內 前減四十七 定爲二百七十 今減七十 定爲二百 光陽二百五十九內 前減三十九 定爲二百二十 今減七十 定爲一百五十 和順三百三十七內 前減三十七 定爲三百 今減七十 定爲二百三十 同福五百二十九內 前鑿二十九 定爲五百 今減七十 定爲四百三十 順天六百五十五 前減二十五 定爲六百三十 今減七十 定爲五百六十 高山五百七十九內 前減三十九 定爲五百四十 今減七十五 定爲四百



六十 務安三百五內 前減三十五 定爲二百七十 今減六十 定爲二百十 興陽五百十九內 前減四十三 定爲四百七十六 今減七十六 定爲四百 珍島一百九十八內 前減十八 定爲一百八十 今減六十 定爲一百二十 海南六百四十六內 前減三十六 定爲六百十 今減八十 定爲五百三十 萬頃三百七十八內 前減四十八 定爲三百三十 今減七十 定爲二百六十 臨陂七百六十九內 前減四十九 定爲七百二十 今減八十 定爲六百四十 沃溝四百三十一內 前減四十一 定爲三百九十 今減七十 定爲三百二十 任實七百四十八內 前減三十八 定爲七百十 今減八十 定爲六百三十 靈光一千一百八十三內 前減三十三 定爲一千一百五十 今減八十 定爲一千七十 金溝四百五十八內 前減三十八 定爲四百二十 今減八十 定爲三百四十 雲峯四百二十六內 前減四十六 定爲三百八十 今減八十 定爲三百 長興八百八十一內 前減二十一 定爲八百六十 今減八十 定爲七百八十 高敞三百九十五內 前減三十五 定爲三百六十 今減八十 定爲二百八十 樂安二百二十九內 前減二十九 定爲二百 今減六十 定爲一百四十 泰仁一千一百一十一 前減三十一 定爲一千八十 今減九十 定爲九百九十 光州九百二十九內 前減二十九 定爲九百 今減七十 定爲八百三十 古阜一千一百四十一內 前減三十一 定爲一千一百十 今減八十 定爲一千三十 珍山二百五十內 前減五十 定爲二百 今減六十 定爲一百四十 淳昌九百三十內 前減三十 定爲九百 今減九十 定爲八百十 寶城六百六內 前減三十 定爲五百七十六 今減八十六 定爲四百九十 井邑四百九十



二內 前減四十二 定爲四百五十 今減八十 定爲三百七十  
康津一千七內 前減二十七 定爲九百八十 今減八十 定爲九  
百 興德四百五十六內 前減三十六 定爲四百二十 今減八十  
定爲三百四十 求禮一百五十七內 前減三十七 定爲一百二  
十 今減五十 定爲七十 南原一千八百五十七內 前減二十七  
定爲一千八百三十 今減九十 定爲一千七百四十 羅州一千  
四百五十 前減二十五 定爲一千三百九十 今減九十 一千三  
百 靈巖二百七內 前減三十七 定爲一百七十 今減六十 定  
爲一百十 全州一千八百九十一 前減二十六 定爲一千八百  
六十五 今減九十五 定爲一千七百七十 潭陽八百十內 前減  
三十五 定爲七百七十五 今減八十九 定爲六百八十六 鎭安  
四百十八 前減三十四 定爲三百八十四 今減六十四 定爲三  
百二十 咸悅四百三十六內 前減四十六 定爲三百九十 今減  
七十 定爲三百二十 長城五百十四內 前減四十四 定爲四百  
七十 今減七十 定爲四百 長水三百七十八內 前減四十八  
定爲三百三十 今減七十 定爲二百六十 益山三百八十二內  
前減五十二 定爲三百三十 今減七十 定爲二百六十 錦山六  
百二十四內 前減三十四 定爲五百九十 今減八十 定爲五百  
十 玉果四百二十九內 前減三十九 定爲三百九十 今減七十  
定爲三百二十 金堤九百四十一內 前減三十一 定爲九百十  
今減七十 定爲八百四十 扶安一千一百六十一內 前減三十  
一 定爲一千一伯三十 今減八十 定爲一千五十 龍潭一百十  
四 前減三十四 定爲八十 今減二十 定爲六十 龍安一百六  
十四內 前減四十四 定爲一百二十 今減三十 定爲九十 礪



山二百九十五內 前減四十五 定爲二百五十 今減六十 定爲一百九十 珍原二百五十五內 前減四十五 定爲二百十 今減六十 定爲一百五十

慶尙道 彦陽各色軍士六十九內 前減正兵二十九 定爲四十 盈德二百五十七內 前減二十七 定爲二百三十 今減四十 定爲一百九十 青松二百七十一內 前減二十七 定爲二百四十四 今減四十四 定爲二百 義城六百二十五內 前減三十一 定爲五百九十四 今減七十四 定爲五百二十 梁山七十四內 前減二十四 定爲五十 比安三百六十內 前減三十 定爲三百三十 今減六十 定爲二百七十 慶山一百五十五內 前減三十一 定爲一百二十四 今減四十四 定爲八十 醴泉七百八內 前減二十八 定爲六百八十 今減六十 定爲六百二十 奉化八十五內 前減三十 定爲五十五 今減十五 定爲四十 密陽七百九十三內 前減二十三 定爲七百七十 今減七十 定爲七百 玄風一百五十三 前減三十三 定爲一百二十 今減二十 定爲一百 清道四百四十六內 前減二十六 定爲四百二十 今減六十 定爲三百六十 長鬐九十七內 前減二十七 定爲七十 今減二十 定爲五十 新寧七十八內 前減三十 定爲四十八 今減十八 定爲三十 機長二百三十二內 前減二十九 定爲二百三 今減四十三 定爲一百六十 榮川三百十三內 前減二十八 定爲二百八十五 今減五十五定爲二百三十 永川五百三十內 前減三十 定爲五百 今減六十 定爲四百四十 昌寧三百九十一內 前減二十五 定爲三百六十六 今減五十六 定爲三百十 大丘三百四十六 前減三十 定爲三百十六 今減五十六 定爲



二百六十 興海一百九十五 前減三十 定爲一百六十五 今減五十五 定爲一百十 河陽七十八內 前減三十八 定爲四十 今減十 定爲三十 眞寶一百八十一內 前減三十一 定爲一百五十 今減五十 定爲一百 清河一百內 前減三十 定爲七十 今減十 定爲六十 禮安六十五內 前減三十 定爲三十五 今減五 定爲三十 東萊二百六十三內 前減三十三 定爲二百三十 今減四十 定爲一百九十 軍威二百八十四內 前減三十四 定爲二百五十 今減五十 定爲二百 寧海三百三十內 前減三十 定爲三百 今減五十 定爲二百五十 慶州一千四百七十二內 前減二十二 定爲一千四百五十 今減七十 定爲一千三百八十 仁同三百九十六內 前減四十六 定爲三百五十 今減五十 定爲三百 龍宮二百六十二內 前減四十二 定爲二百二十 今減四十 定爲一百八十 豐基三百九十七內 前減三十七 定爲三百六十 今減六十 定爲三百 安東六百八十六內 前減二十六 定爲六百六十 今減六十 定爲六百 蔚山一千三十內 前減二十 定爲一千十 今減五十 定爲九百六十 延日二百二十九內 前減二十四 定爲二百五 今減三十五 定爲一百七十 義興一百五十二內 前減三十二 定爲一百二十 今減二十 定爲一百 靈山二百十九內 前減二十九 定爲一百九十 今減四十 定爲一百五十 巨濟二百二十內 前減二十 定爲二百 今減四十 定爲一百六十 草溪一百二十四內 前減三十 定爲九十四 今減三十四 定爲六十 泗川九十一內 前減二十一 定爲七十 今減十 定爲六十 漆原九十八內 前減二十八 定爲七十 今減二十 定爲五十 陝川一百六內 前減三十 定爲七



十六 今減二十六 定爲五十 金海五百六內 前減二十六 定爲四百八十 今減六十 定爲四百二十 南海六十六內 前減二十六 定爲四十 今減十七 定爲二十三 固城六百五十四內 前減二十九 定爲六百二十五 今減六十五 定爲五百六十 熊川六十九內 前減十九 定爲五十 今減十 定爲四十 聞慶二百五十二內 前減三十二 定爲二百二十 今減四十 定爲一百八十 咸安二百六十九內 前減二十九 定爲二百四十 今減四十 定爲二百 昌原二百八十八內 前減二十八 定爲二百六十 今減五十 定爲二百十 星州一千五百九內 前減二十九 定爲一千四百八十 今減七十 定爲一千四百十 咸昌二百七十三內 前減四十三 定爲二百三十 今減四十 定爲一百九十 宜寧五百四十一內 前減三十一 定爲五百十 今減六十 定爲四百五十 知禮一百三十四內 前減三十四 定爲一百 今減二十 定爲八十 河東九十九內 前減二十四 定爲七十五 今減二十五 定爲五十 居昌四百二十內 前減二十五 定爲三百九十五 今減五十五 定爲三百四十 高靈一百三十內 前減三十 定爲一百 今減二十 定爲八十 安陰一百七十七內 前減三十七 定爲一百四十 今減四十 定爲一百 尙州一千七百七十二內 前減四十二 定爲一千七百三十 今減二百四十 定爲一千四百九十 金山五百六十五內 前減三十 定爲五百三十五 今減五十五 定爲四百八十 晉州一千一百一內 前減二十一 定爲一千八十 今減六十 定爲一千二十 三嘉一百四十一內 前減三十一 定爲一百十 今減三十 定爲八十 善山七百六十五內 前減三十 定爲七百三十五 今減六十五 定爲六百七十 昆陽



一百八十八內 前減二十八 定爲一百六十 今減五十 定爲一百十  
 山陰一百七十三內 前減三十三 定爲一百四十 今減五十 定爲九十  
 鎭海四十二內 前減二十 定爲二十二 開寧四百五十一內 前減二十七 定爲四百二十四  
 今減六十四 定爲三百六十 咸陽二百二十八內 前減二十四 定爲二百四 今減三十四 定爲一百七十  
 丹城九十五內 前減三十 定爲六十五 今減十五定爲五十 忠淸道總計二萬一千四百四十一內 今減二千八百六十 定爲一萬八千五百八十一 全羅道總計三萬一千六百七十六內 今減三千九百四十五 定爲二萬七千七百三十一 慶尙道總計二萬一千九百十內 今減二千八百九十五 定爲一萬九千十五 從之

[풀이]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에 전지를 받으니, ‘제도의 군액(軍額)이 너무 많다. 병사는 많은 것보다 정한 것이 귀중하니, 재주를 시험하지 않은 군사는 그 수를 적당히 감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지난 경인년에 <정한> 제도의 정병(正兵)의 원액(元額)을 자세히 참고하여 보니, 총인원 8만 60가운데에서 하삼도(下三道)에는 5천 8백 60을 줄이고, 또 제진(諸鎭)의 유방군(留防軍) 1만 6천 5백을 제하고, <나머지> 5만 7천 7백을 가지고 7번(番)으로 나누어 번마다 8천 2백 40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인(保人)을 정함에 있어서 전정(田丁), 고공(雇工), 재인(才人), 백정(白丁)과



각종 장인(匠人)을 아울러 계산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감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위 항목의 5만 7천 7백 가운데에서 <전정, 고공 등> 9천 7백을 감하고, 하삼도(下三道) 각 고을의 인물의 쇠잔하고 성함을 따라 끌고루 줄여서 기록하여 아뢰니, 청컨대 제도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로 하여금 자세하게 상고하여 보인을 개정하고 군적(軍籍)을 만들게 하소서. 그런데 지난 번에 각종 군사[諸色軍士]의 거느리고 있는 인정(人丁)을 보인으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역사를 정한 까닭에 한 집안에 부자 형제(父子兄弟)가 각각 신역(身役)이 있어 서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가공(可矜)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군사가 동거하는 아들, 사위, 아우는 비록 보수(保數)보다 많다 하더라도 2정(丁)에 한하고, <나머지는>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게 하소서. 또 《대전(大典)》에는 원주(院主)와 동거하는 족친(族親) 2인(人)은 다른 역사를 정하지 못하도록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소임이 매우 괴로우니, 청컨대 1인을 더하여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게 하소서. 각진의 유방군(留防軍)은 옛날에는 3번(番)으로 나누어 한 달[一朔]만에 서로 체대(遞代)하게 되어 다른 군인보다 힘들고 괴로우니, 이제 번상(番上)하는 정병(正兵) 4만 8천 가운데에서 5천 5백명을 덜어서 유진군(留鎭軍)에 이속시켜 4번(番)으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쉬게 하고, 그 나머지 정병 4만 2천 5백 명은 8번(番)으로 나누어 번마다 5천 3백 10명씩 번상(番上)하여 숙위(宿衛)하게 하소서.

태평소(太平簫)는 마상병(馬上兵)인데 보정병(步正兵)의 예에 의하여 보(保)를 주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기정병(騎正兵)



의 예에 의하여 보를 주되, 충청도(忠淸道)에 있어서 충주(忠州)는, 각종 군사[各色軍士] 2천 1백 87 가운데에서 전에는 정병(正兵) 40을 줄여 2천 1백 47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정병 67을 줄여 2천 80으로 정하게 하고, 괴산(槐山)은 3백 30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3백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2백 50으로 정하게 하고, 연풍(延豐)은 82 가운데에서 전에는 42를 줄여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5를 줄여 25로 정하게 하고, 청풍(淸風)은 2백 32 가운데에서 전에는 42를 줄여 1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영춘(永春)은 9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5를 줄여 35로 정하게 하고, 음성(陰城)은 1백 44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1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5를 줄여 75로 정하게 하고, 단양(丹陽)은 55 가운데에서 전에는 20을 줄여 3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5를 줄여 20으로 정하게 하고, 제천(堤川)은 2백 7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2백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청주(淸州)는 1천 9백 9 가운데에서 전에는 40을 줄여 1천 8백 69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9를 줄여 1천 8백으로 정하게 하고, 진천(鎭川)은 4백 60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4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3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문의(文義)는 3백 36 가운데에서 전에는 37을 줄여 2백 99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9를 줄여 2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보은(報恩)은 6백 8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6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5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청산(靑山)



은 3백 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2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60을 줄여 2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황간(黃澗)은 2  
 백 4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2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50을 줄여 1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영동(永同)은 3백  
 95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3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  
 제는 60을 줄여 3백으로 정하게 하고, 청안(靑安)은 3백 19 가  
 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2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60을 줄여 2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직산(稷山)은 1백 50 가  
 운데에서 전에는 25를 줄여 1백 2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35를  
 줄여 90으로 정하게 하고, 목천(木川)은 2백 98 가운데에서 전  
 에는 28을 줄여 2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60을 줄여 2  
 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천안(天安)은 5백 51 가운데에서 전  
 에는 31을 줄여 2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60을 줄여 4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회인(懷仁)은 1백 8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1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50을 줄여 1백으로  
 정하게 하고, 전의(全義)는 2백 25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  
 여 1백 9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55를 줄여 1백 40으로 정하  
 게 하고, 공주(公州)는 2천 7백 50 가운데에서 전에는 20을 줄  
 여 2천 7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60을 줄여 2천 6백 70  
 으로 정하게 하고, 정산(定山)은 2백 4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  
 를 줄여 2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60을 줄여 1백 50으  
 로 정하게 하고, 부여(扶餘)는 1백 42 가운데에서 전에는 32를  
 줄여 1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 30을 줄여 80으로 정하  
 게 하고, 임천(林川)은 3백 96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3



백 67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7을 줄여 3백으로 정하게 하고, 한산(韓山)은 2백 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1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석성(石城)은 1백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0을 줄여 40으로 정하게 하고, 이산(尼山)은 2백 8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2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연산(連山)은 3백 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2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2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연기(燕岐)는 4백 20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2를 줄여 3백 28로 정하게 하고, 회덕(懷德)은 3백 1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2백 66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2백 6으로 정하게 하고, 진잠(鎭岑)은 1백 65 가운데에서 전에는 40을 줄여 1백 2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5를 줄여 70으로 정하게 하고, 옥천(沃川)은 5백 6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5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4백 50으로 정하게 하고, 은진(恩津)은 2백 90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2백 5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5를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홍주(洪州)는 1천 5백 80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1천 5백 4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5를 줄여 1천 4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청양(靑陽)은 3백 55 가운데에서 전에는 45를 줄여 3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2백 50으로 정하게 하고, 평택(平澤)은 89 가운데에서 전에는 49를 줄여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0을 줄여 30으로 정하게 하고, 비인(庇仁)은



1백 14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60으로 정하게 하고, 온양(溫陽)은 5백 15 가운데에서 전에는 55를 줄여 4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3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신창(新昌)은 2백 74 가운데에서 전에는 44를 줄여 2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면천(沔川)은 3백 85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3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2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결성(結城)은 4백 16 가운데에서 전에는 36을 줄여 3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3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보령(保寧)은 3백 84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3백 51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1을 줄여 2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서산(瑞山)은 5백 63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5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8을 줄여 4백 62로 정하게 하고, 남포(藍浦)는 2백 96 가운데에서 전에는 36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2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서천(舒川)은 2백 가운데에서 전에는 20을 줄여 1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홍산(鴻山)은 95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40으로 정하게 하고, 예산(禮山)은 2백 85 가운데에서 전에는 45를 줄여 2백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아산(牙山)은 4백 54 가운데에서 전에는 54를 줄여 4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3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덕산(德山)은 4백 71 가운데에서 전에는 41을 줄여 4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3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당진(唐津)은 2백 90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2백 5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5를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대흥(大興)은 4백 26 가운데에서 전에는 46을 줄여 3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3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태안(泰安)은 2백 67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2백 37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7을 줄여 1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해미(海美)는 2백 75 가운데에서 전에는 45를 줄여 2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 80으로 정하게 하소서.

전라도(全羅道)에 있어서, 창평(昌平)은 각종 군사[各色軍士] 4백 가운데에서 전에는 정병(正兵) 30을 줄여 3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2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곡성(谷城)은 4백 4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4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함평(咸平)은 9백 16 가운데에서 전에는 36을 줄여 8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8백으로 정하게 하고, 무장(茂長)은 1천 43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1천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9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능성(綾城)은 7백 6 가운데에서 전에는 46을 줄여 6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5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남평(南平)은 5백 21 가운데에서 전에는 41을 줄여 4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4백으로 정하게 하고, 무주(茂朱)는 3백 17 가운데에서 전에는 47을 줄여 2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으로 정하게 하고, 광양(光陽)은 2백 5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2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1백 50으로 정하게 하고, 화순(和順)은 3백 37 가운데에서 전에는 37을 줄여 3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동복(同福)은 5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5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4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순천(順天)은 6백 55 가운데에서 전에는 25를 줄여 6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5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고산(高山)은 5백 7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5백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5를 줄여 4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무안(務安)은 3백 5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2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2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흥양(興陽)은 5백 19 가운데에서 전에는 43을 줄여 4백 76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6을 줄여 4백으로 정하게 하고, 진도(珍島)는 1백 98 가운데에서 전에는 18을 줄여 1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해남(海南)은 6백 46 가운데에서 전에는 36을 줄여 6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5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만경(萬頃)은 3백 78 가운데에서 전에는 48을 줄여 3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임피(臨陂)는 7백 69 가운데에서 전에는 49를 줄여 7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6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옥구(沃溝)는 4백 31 가운데에서 전에는 41을 줄여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3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임실(任實)은 7백 4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7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6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영광(靈光)은 1천 1백 83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1천 1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1천 70으로 정하게 하고, 금구(金溝)는 4백 5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4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운봉(雲峯)은 4백 26 가운데에서 전에는 46을 줄여 3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으로 정하게 하고, 장흥(長興)은 8백 81 가운데에서 전에는 21을 줄여 8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7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고창(高敞)은 3백 95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3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2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낙안(樂安)은 2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2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태인(泰仁)은 1천 1백 1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천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0을 줄여 9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광주(光州)는 9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9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8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고부(古阜)는 1천 1백 4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천 1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1천 30으로 정하게 하고, 진산(珍山)은 2백 50 가운데에서 전에는 50을 줄여 2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순창(淳昌)은 9백 30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9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0을 줄여 8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보성(寶城)은 6백 6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5백 76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6을 줄여 4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정읍(井邑)은 4



백 92 가운데에서 전에는 42를 줄여 4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강진(康津)은 1천 7  
가운데에서 전에는 27을 줄여 9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9백으로 정하게 하고, 흥덕(興德)은 4백 56 가운데에  
서 전에는 36을 줄여 4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  
여 3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구례(求禮)는 1백 57 가운데에서 전  
에는 37을 줄여 1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70  
으로 정하게 하고, 남원(南原)은 1천 8백 57 가운데에서 전에는  
27을 줄여 1천 8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0을 줄여 1천  
7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나주(羅州)는 1천 4백 50 가운데에서  
전에는 60을 줄여 1천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0을  
줄여 1천 3백으로 정하게 하고, 영암(靈巖)은 2백 7 가운데에서  
전에는 37을 줄여 1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전주(全州)는 1천 8백 91 가운데에서  
전에는 26을 줄여 1천 8백 6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5를 줄  
여 1천 7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담양(潭陽)은 8백 10 가운데에  
서 전에는 35를 줄여 7백 7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9를 줄여  
6백 86으로 정하게 하고, 진안(鎭安)은 4백 18 가운데에서 전에  
는 34를 줄여 3백 84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4를 줄여 3백 20  
으로 정하게 하고, 함열(咸悅)은 4백 36 가운데에서 전에는 46  
을 줄여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3백 20으  
로 정하게 하고, 장성(長城)은 5백 14 가운데에서 전에는 44를  
줄여 4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4백으로 정하  
게 하고, 장수(長水)는 3백 78 가운데에서 전에는 48을 줄여 3



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익산(益山)은 3백 82 가운데에서 전에는 52를 줄여 3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금산(錦山)은 6백 2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5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5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옥과(玉果)는 4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3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김제(金堤)는 9백 4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9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8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부안(扶安)은 1천 1백 6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천 1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1천 50으로 정하게 하고, 용담(龍潭)은 1백 1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60으로 정하게 하고, 용안(龍安)은 1백 64 가운데에서 전에는 44를 줄여 1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0을 줄여 90으로 정하게 하고, 여산(礪山)은 2백 95 가운데에서 전에는 45를 줄여 2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진원(珍原)은 2백 55 가운데에서 전에는 45를 줄여 2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50으로 정하게 하소서.

경상도(慶尙道)에 있어서, 언양(彦陽)은 각종 군사[各色軍士] 69 가운데에서 전에 정병(正兵) 29를 줄여 40으로 정하였고, 영덕(盈德)은 2백 57 가운데에서 전에는 27을 줄여 2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청송(靑松)은 2백 71 가운데에서 전에는 27을 줄여 2백 44로 정하였



는데 이제는 44를 줄여 2백으로 정하게 하고, 의성(義城)은 6백 25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5백 94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4를 줄여 5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양산(梁山)은 74 가운데에서 전에 24를 줄여 50으로 정하였고, 비안(比安)은 3백 60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3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2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경산(慶山)은 1백 55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백 24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4를 줄여 80으로 정하게 하고, 예천(醴泉)은 7백 8 가운데에서 전에는 28을 줄여 6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6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봉화(奉化)는 85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5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5를 줄여 40으로 정하게 하고, 밀양(密陽)은 7백 93 가운데에서 전에는 23을 줄여 7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7백으로 정하게 하고, 현풍(玄風)은 1백 53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1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1백으로 정하게 하고, 청도(淸道)는 4백 46 가운데에서 전에는 26을 줄여 4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3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장기(長鬐)는 97 가운데에서 전에는 27을 줄여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50으로 정하게 하고, 신녕(新寧)은 78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48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8을 줄여 30으로 정하게 하고, 기장(機長)은 2백 32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2백 3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3을 줄여 1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영천(榮川)은 3백 13 가운데에서 전에는 28을 줄여 2백 8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5를 줄여 2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영천(永



川)은 5백 30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5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4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창녕(昌寧)은 3백 91 가운데에서 전에는 25를 줄여 3백 66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6을 줄여 3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대구(大丘)는 3백 46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3백 16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6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흥해(興海)는 1백 95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1백 6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5를 줄여 1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하양(河陽)은 7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0을 줄여 30으로 정하게 하고, 진보(眞寶)는 1백 8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으로 정하게 하고, 청하(淸河)는 1백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0을 줄여 60으로 정하게 하고, 예안(禮安)은 65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3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를 줄여 30으로 정하게 하고, 동래(東萊)는 2백 63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2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군위(軍威)는 2백 8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2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2백으로 정하게 하고, 영해(寧海)는 3백 30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3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2백 50으로 정하게 하고, 경주(慶州)는 1천 4백 72 가운데에서 전에는 22를 줄여 1천 4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1천 3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인동(仁同)은 3백 96 가운데에서 전에는 46을 줄여 3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3백으로 정하게 하고, 용궁(龍宮)은 2백 62 가운데에서 전에는 42를 줄여 2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1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풍기(豊基)는 3백 97 가운데에서 전에는 37을 줄여 3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3백으로 정하게 하고, 안동(安東)은 6백 86 가운데에서 전에는 26을 줄여 6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6백으로 정하게 하고, 울산(蔚山)은 1천 30 가운데에서 전에는 20을 줄여 1천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9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연일(延日)은 2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24를 줄여 2백 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5를 줄여 1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의흥(義興)은 1백 52 가운데에서 전에는 32를 줄여 1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1백으로 정하게 하고, 영산(靈山)은 2백 1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1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1백 50으로 정하게 하고, 거제(巨濟)는 2백 20 가운데에서 전에는 20을 줄여 2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1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초계(草溪)는 1백 24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94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4를 줄여 60으로 정하게 하고, 사천(泗川)은 91 가운데에서 전에는 21을 줄여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0을 줄여 60으로 정하게 하고, 칠원(漆原)은 98 가운데에서 전에는 28을 줄여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50으로 정하게 하고, 합천(陝川)은 1백 6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76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6을 줄여 50으로 정하게 하고, 김해(金海)는 5백 6 가운데에서 전에는 26을 줄여 4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4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남해(南海)는 66 가운데에서 전에는 26을 줄여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7을 줄여 23으로 정하게 하고, 고성(固城)은 6백 54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6백 2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5를 줄여 5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웅천(熊川)은 69 가운데에서 전에는 19를 줄여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0을 줄여 40으로 정하게 하고, 문경(聞慶)은 2백 52 가운데에서 전에는 32를 줄여 2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1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함안(咸安)은 2백 6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2백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2백으로 정하게 하고, 창원(昌原)은 2백 88 가운데에서 전에는 28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2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성주(星州)는 1천 5백 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1천 4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1천 4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함창(咸昌)은 2백 73 가운데에서 전에는 43을 줄여 2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의령(宜寧)은 5백 4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5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4백 50으로 정하게 하고, 지례(知禮)는 1백 3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1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80으로 정하게 하고, 하동(河東)은 99 가운데에서 전에는 24를 줄여 7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5를 줄여 50으로 정하게 하고, 거창(居昌)은 4백 20 가운데에서 전에는 25를 줄여 3백 9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5를 줄여 3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고령(高靈)은 1백 30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1백으



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80으로 정하게 하고, 안음(安陰)은 1백 77 가운데에서 전에는 37을 줄여 1백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40을 줄여 1백으로 정하게 하고, 상주(尙州)는 1천 7백 72 가운데에서 전에는 42를 줄여 1천 7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백 40을 줄여 1천 4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금산(金山)은 5백 65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5백 3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5를 줄여 4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진주(晉州)는 1천 1백 1 가운데에서 전에는 21을 줄여 1천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천 20으로 정하게 하고, 삼가(三嘉)는 1백 4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0을 줄여 80으로 정하게 하고, 선산(善山)은 7백 65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7백 3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5를 줄여 6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곤양(昆陽)은 1백 88 가운데에서 전에는 28을 줄여 1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산음(山陰)은 1백 73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1백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90으로 정하게 하고, 진해(鎭海)는 42 가운데에서 전에는 20을 줄여 22로 정하였고, 개령(開寧)은 4백 51 가운데에서 전에는 27을 줄여 4백 24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4를 줄여 3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함양(咸陽)은 2백 28 가운데에서 전에는 24를 줄여 2백 4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4를 줄여 1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단성(丹城)은 95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65를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15를 줄여 50으로 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충청도는 총계 2만 1천 4백 41 가운데에서 이제 2천



8백 60이 줄어 1만 8천 5백 81이 되고, 전라도는 총계 3만 1천 6백 76 가운데에서 이제 3천 9백 45가 줄어 2만 7천 7백 31이 되고, 경상도는 총계 2만 1천 9백 10 가운데에서 이제 2천 8백 95가 줄어 1만 9천 15가 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성종 7년 12월 9일(무인)

司憲府據 全羅左道行臺李諱啓本啓 告山縣監南鼎軍器不謹  
看守 長水縣監梁井明妾甥趙哲明 衙內許妾多般贈與 綾城  
縣令金博官中軍器遺失 康津縣監申礪還上濫數收納 樂安郡  
守金新進上物膳採取軍人 濫數加定 蛇渡僉節制使文俊 會  
寧浦萬戶李孟暄 鹿島萬戶曹繼唐 鉢浦萬戶李尙亨 內禮浦  
萬戶姜壽全等 船軍許代立 並事在赦前 不得追論請皆罷職  
從之

[풀이]

사헌부(司憲府)에서 전라좌도(全羅左道)의 행대(行臺) 이집(李諱)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산 현감(高山縣監) 남정(南鼎)은 군기(軍器)를 삼가서 간수(看守)하지 않았고, 장수 현감(長水縣監) 양정명(梁井明)은 첩의 오라비 조철명(趙哲明)을 관아(官衙) 안에 붙여 살게 하면서 여



러 가지를 증여(贈與)하였고, 능성 현령(綾城縣令) 김박(金博)은 고을 안의 군기(軍器)를 잃었고, 강진 현감(康津縣監) 신현(申璜)은 환상(還上)을 본래 수량보다 넘치게 거두어 들였고, 낙안 군수(樂安郡守) 김신(金新)은 진상(進上)할 물선(物膳)을 채취(採取)하는 군인을 본래 인원수보다 넘치게 더 정하였고, 사도 첨절제사(蛇渡僉節制使) 문준(文俊), 회령포 만호(會寧浦萬戶) 이맹훤(李孟暄), 녹도 만호(鹿島萬戶) 조계당(曹繼唐), 발포 만호(鉢浦萬戶) 이상형(李尙亨), 내례포 만호(內禮浦萬戶) 강수동(姜壽叄) 등은 선군(船軍)에게 대립(代立)을 허가 하였는데, 모두 사유(赦宥) 이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추론(追論)할 수 없으니, 청컨대 모두 파직(罷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성종 11년 3월 21일(신축)

御經筵講綱目續編 至二年三月親試舉人 試讀官李世匡啓曰 科舉乃朝廷公道 而諸道鄉試守令子弟 朝官出使者率皆中格 猥濫莫甚 請擇遣剛明朝士檢舉鄉圍 執義李德崇曰 世匡之言是矣 請立法 使守令子弟 朝士出使者不得赴鄉試 上顧問左右 領使金國光對曰 換道赴舉爲便 命議于政丞講訖 國光啓曰臣承命講舉人 有訓導權景溫者四書五經八通一略 國家新立明經科 此人年將七十 首應其選宜加褒獎 以勸後來 上



曰然 德崇曰下論州縣 以求明經之儒 如景溫者 輒應舉而來 山林之間 豈無抱村遺逸者乎 請令諸道 搜訪以聞 且景溫居 長水縣家世清寒絕意舉業 已三十餘年矣 若非郡縣 敦勸就 途 河以至此須加褒獎以勸之 上曰年齒衰邁而能通經學 豈 易哉 將加異數 國光曰世宗朝權安世者 能通四書五經而年 齒則少於景溫 世宗擢用之 已有古例矣 上曰安世初爲何職 乎 司諫李世弼曰 初爲監察矣 今應明經科而不中者 皆精熟 經學 請差訓導以示崇獎之意 上曰然

풀이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목속편(綱目續編)》을 강(講)하다가, ‘2년 3월에 거인(舉人)을 친시(親試)하였다.’고 한 데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이세광(李世匡)이 아뢰기를,

“과거는 곧 조정(朝廷)의 공도(公道)인데, 여러 도(道)의 향시(鄉試)에 있어서 수령(守令)의 자제(子弟)와 조관(朝官)으로서 출사(出使)한 자는 거의 모두가 합격[中格]시켰으니, 외람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청컨대 강명(剛明)한 조사(朝士)를 가려 보내어 향시의 과거장[鄉圍]을 검거(檢舉)하게 하소서.”

하니,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이 말하기를,

“이세광의 말이 옳습니다. 청컨대 법을 세워서 수령(守令)의 자제와 조사(朝士)로서 출사(出使)한 자는 향시(鄉試)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대답하기를,

“도(道)를 서로 바꾸어가며 과거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므로, 명하여 정승(政丞)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신(臣)이 명을 받들어 거인(舉人)을 강(講)하였는데, 훈도(訓導) 권경온(權景溫)이라는 자가 있어 사서 오경(四書五經)에 8통(通) 1약(略)을 맞았습니다. 국가(國家)에서 새로 명경과(明經科)를 세우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70세이니, 먼저 그 선발(選拔)에 응하게 하고 마땅히 포장(褒獎)을 가해서 후래(後來)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덕숭이 말하기를,

“주현(州縣)에 하유(下諭)하여 경학(經學)에 밝은 선비[儒]를 구(求)하게 되면 권경온과 같은 자는 바로 과거에 응하려 오겠지만, 산림(山林)의 사이에 어찌 재주를 지니고서도 빠져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여러 도로 하여금 찾아내어 아뢰게 하소서. 또 권경온은 장수현(長水縣)에 살면서 가세(家世)가 청한(淸寒)하고 과거보는 일에 뜻을 두지 않는 지가 이미 30여 년이 되었으니, 만약 군현(郡縣)에서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돈독히 권함이 없었던들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모름지기 포장(褒獎)을 더하여 이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年齒]가 늙고 쇠하였는데도 능히 경학(經學)을 통(通)하였으니,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장차 이수(異數)를 더하겠다.”

하였다. 김국광(金國光)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서는 권안세(權安世)란 자가 능히 사서 오경(四書五經)을 통하였는데, 나이로라면 권경온보다 젊습니다만, 세종(世宗)께서 탁용(擢用)한 것이 이미 옛 예(例)가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권안세는 처음에 무슨 벼슬로 삼았는가?”

하니, 사간(司諫) 이세필(李世弼)이 말하기를,

“처음에 감찰(監察)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명경과(明經科)에 응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라도 모두 경학(經學)에는 정숙(精熟)하니, 청컨대 훈도(訓導)를 차임(差任)하여 숭장(崇獎)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 ● 성종 13년 12월 12일(병자)

丙子 受常參 視事 都承旨盧公弼 將刑曹啓本啓 江華囚白  
丁趙檢山 作賊于李季倫家 射殺季倫等四人罪 律該斬不待  
時 同副承旨金礪石將刑曹啓本啓 通津囚趙順孫父喪期年內  
食肉 毆打親母罪律該斬不待時 長水囚良人金善同三犯竊盜  
罪 律該絞待時並 從之

[풀이]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都承旨) 노공필(盧公弼)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강화(江華) 죄수 백정(白丁) 조검산(趙檢山)이 이계륜(李季倫)의 집에 도둑질하고, 이계륜 등 네 사람을 쏘아 죽인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여석(金礪石)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통진(通津) 죄수 조순손(趙順孫)이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 기년(期年) 안에 고기를 먹고 친어미를 구타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장수(長水) 죄수 양인(良人) 김선동(金善同)이 절도를 세 번 범한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모두 그대로 따랐다.



● 성종 18년 5월 17일(병진)

全羅道觀察使馳啓 道內南原昌平淳昌長水等邑 雹大如雞卵  
禾麥十傷八九

[풀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치계(馳啓)하기를,  
“도내 남원(南原), 창평(昌平), 순창(淳昌), 장수(長水)등 고을  
에서는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계란과 같아서 벼와 보리가 10  
에 8, 9할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였다.

● 성종 22년 7월 4일(무인)

教開城府留守柳洵 京畿觀察使金悌臣 江原道觀察使金礪石  
忠清道觀察使洪興兵馬節度使曹淑沂 全羅道觀察使金克儉  
兵馬節度使辛鑄 慶尙道觀察使鄭崇祖 左道兵馬節度使河叔  
溥 右道兵馬節度使曹克治 永安南道節度使卞宗仁 北道節  
度使成俊曰 偃武修文 雖帝王之盛德禁暴除亂 乃聖人之義  
兵 若稽往猷可徵簡策 蠻荊爲讐 周宣有菜芑之師 頡利憑陵  
唐宗有漠北之討粵 我祖宗亦事武功己亥之東征 癸丑之西伐



庚辰之北征 是豈窮兵而黷武 皆爲生民之害 社稷之憂 不可  
 得已者 予自繼承基構 誕脩文教 豈欲興兵動衆專耀武威 交  
 隣事大罔不盡心 至於夷虜之接於我境者 無閒彼此撫以恩信  
 顧茲北虜 稔惡背恩負施 去年犯我撫夷堡 以爲鼠竊狗偷 不  
 足與較置而不問 今年又犯造山堡 殺害我鎮將虔劉我人民  
 搶奪我頭畜邊城之人 日夜切齒咸思一舉 薄示成靈予念此而  
 不討 國非其國以我堂堂之兵威 寧堪受屈於小醜宜興問罪之  
 舉 亟行干紀之誅 以許琮爲都元帥 成俊李季全副之 今年十  
 月 率兵二萬 直擣窟突勦殲乃已 今送兵符合驗

京畿南陽水原陽城振威龍仁安山陰竹驪州利川砥平楊根加  
 平永平抱川楊州廣州果川衿川竹山陽智麻田漣川仁川等官軍  
 士 九月初二日發程 同月二十四日到吉城

忠清道舒川林川韓山鴻山恩津尼山連山夫餘石城鎮岑定山  
 藍浦泰安瑞山沔川唐津牙山平澤稷山天安新昌全義木川保寧  
 結城洪州大興德山禮山海美溫陽等官軍士八月二十三日發程  
 九月二十三日到吉城 公州懷德黃澗永同青山沃川燕岐清州  
 文義延豐槐山清安報恩悔仁鎮川等官軍士 八月二十日發程  
 九月二十二日到吉城 丹陽堤川永春清風忠州陰城等官軍士  
 八月二十二日發程 九月二十三日到吉城

江原道原州寧越平昌旌善橫城春川麟蹄狼川洪川金化伊川  
 楊口淮陽金城安峽鐵原平康等官軍士 九月初八日發程 同月  
 二十五日到吉城 平海蔚珍三陟江陵襄陽杆城高城通川歙谷  
 等官軍士 九月初四日發程 同月二十一日到吉城

全羅道靈巖務安咸平珍原長城同福和順綾城南平光山潭陽



淳昌昌平玉果等官軍士 八月十二日發程 九月十八日到吉城  
 茂州雲峯長水鎮安龍潭錦山珍山高山南原任實求禮谷城等官  
 軍士 八月初九日發程 九月十八日到吉城 茂長興德古阜全  
 州礪山靈光高敞井邑扶安金堤萬頃沃溝臨陂咸悅龍安益山泰  
 仁金溝等官軍士 八月十四日發程 九月十九日到吉城

慶尙道咸陽山陰丹城安陰晉州居昌陝川三嘉草溪宜寧星州  
 開寧金山金海善山龍宮等官軍士 八月十五日發程 九月二十  
 日到吉城 慶州興海彥陽清河寧海榮川盈德新寧河陽密陽清  
 道慶山仁同大丘等官軍士 八月十七日發程 九月二十一日到  
 吉城 安東眞寶青松豐基永川奉化禮安義城醴泉義興軍威比  
 安等官軍士 八月十六日發程 九月二十一日到吉城

永安道軍士發程日時 則聽都元帥許琮節度噫兵旣出而有名  
 師當直而爲壯執訊獲醜予一人豈欲逞憤於伊吾 息馬休戈使  
 邊氓庸幾按堵於朔野

풀이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유순(柳洵)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제신(金悌臣)과 강원도 관찰사 김여석(金礪石)과 충청도 관찰사 홍흥(洪興)과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조숙기(曹淑沂)와 전라도 관찰사 김극검(金克儉)과 병마 절도사 신주(辛鑄)와 경상도 관찰사 정승조(鄭崇祖)와 좌도 병마 절도사(左道兵馬節度使) 하숙부(河叔溥)와 우도 병마 절도사(右道兵馬節度使) 조극치(曹克治)와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 변종인(卞宗



仁)과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 성준(成俊)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무기(武器)를 창고에 넣어 두고 학문을 닦아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비록 제왕(帝王)의 성덕(盛德)이기는 하나, 포악(暴惡)을 금지시키고 난당(亂黨)을 제거하는 것은 곧 성인(聖人)의 의병(義兵)이니 지난 시대의 계책을 상고한다면 간책(簡策)에서 증거할 수가 있다. 만형(蠻荊)이 원수가 되니 주(周)나라 선왕(宣王)에게 채기(采芑)의 군대가 있었고 힐리(頡利)가 업신여기니 당(唐)나라 태종(太宗)에게 막북(漠北)의 토벌(討伐)이 있었다. 우리 조종(祖宗)께서도 또한 무공(武功)을 힘쓰셨으니, 기해년에는 동방(東方) 정벌(征伐)이 있었고, 계축년에는 서방(西方) 정벌(征伐)이 있었으며, 경진년에도 정벌(征伐)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무력(武力)을 남용(濫用)한 것이었겠는가? 모두가 백성에게 해독이 되고 사직(社稷)에 근심이 되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다.

내가 기업(基業)을 계승함으로부터 문교(文教)를 크게 밝혔으니, 어찌 군사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動員)하여 오로지 무위(武威)만을 과시(誇示)하려고 하겠는가? 교린(交隣)하고 사대(事大)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오랑캐가 우리 국경(國境)에 인접(隣接)해 있는 것에 있어서도 피차(彼此)의 차별이 없이 은혜와 신의(信義)로써 무마(撫摩)했는데도 도리어 이 북쪽 오랑캐는 악한 일을 쌓아서 은혜를 저버리고서 지난해에 우리의 무이보(撫夷堡)를 침범하였다. 그러나 좀도둑은 대적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내버려 두고 문죄(問罪)하지 않았는



데, 금년에 또 조산보(造山堡)를 침범하여 우리의 진장(鎭將)을 살해하고, 우리의 백성을 죽이고 우리의 가축(家畜)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변성(邊城)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를 갈면서 모두가 한 번 군사를 일으켜 나라의 위광(威光)을 잠시 보이기를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이같이 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堂堂(堂堂)한 군대의 위세(威勢)로써 어찌 보잘것 없는 오랑캐에게 굴욕(屈辱)받는 것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죄를 묻는 군대를 일으켜 법을 범한 자에게 대한 형벌을 빨리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허종(許琮)을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성준(成俊)과 이계동(李季叟)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금년 10월에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바로 그 굴혈(窟穴)을 공격하여 무찔러 없애버리고야 말겠다.

지금 병부(兵符)를 보내니, 합해 조사하여 경기(京畿)의 남양(南陽), 수원(水原), 양성(陽城), 진위(振威), 용인(龍仁), 안산(安山), 음죽(陰竹), 여주(驪州), 이천(利川), 지평(砥平), 양근(楊根), 가평(加平), 영평(永平), 포천(抱川), 양주(楊州), 광주(廣州), 과천(果川), 금천(衿川), 죽산(竹山), 양지(陽智), 마전(麻田), 연천(漣川), 인천(仁川) 등의 고을의 군사는 9월 초 2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4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개성부(開城府)의 군사는 9월 초 3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4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충청도(忠淸道)의 서천(舒川), 임천(林川), 한산(韓山), 홍산(鴻山), 은진(恩津), 이산(尼山), 연산(連山), 부여(扶餘), 석성(石城), 진잠(鎭岑), 정산(定山), 남포(藍浦),



태안(泰安), 서산(瑞山), 면천(沔川), 당진(唐津), 아산(牙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천안(天安), 신창(新昌), 전의(全義), 목천(木川), 보령(保寧), 결성(結成), 홍주(洪州), 대흥(大興), 덕산(德山), 예산(禮山), 해미(海美), 온양(溫陽)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23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3일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공주(公州), 회덕(懷德), 황간(黃澗), 영동(永同), 청산(靑山), 옥천(沃川), 연기(燕甞), 청주(淸州), 문의(文義), 연풍(延豐), 괴산(槐山), 청안(淸安), 보은(報恩), 회인(懷仁), 진천(鎭川)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20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2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단양(丹陽), 제천(堤川), 영춘(永春), 청풍(淸風), 충주(忠州), 음성(陰城)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22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3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강원도(江原道)의 원주(原州), 영월(寧越), 평창(平昌), 정선(旌善), 횡성(橫城), 춘천(春川), 인제(麟蹄), 낭천(狼川), 홍천(洪川), 김화(金化), 이천(伊川), 양구(楊口), 회양(淮陽), 금성(金城), 안협(安峽), 철원(鐵原), 평강(平康) 등의 고을의 군사는 9월 초 8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5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평해(平海), 울진(蔚珍), 삼척(三陟), 강릉(江陵), 양양(襄陽), 간성(杆城), 고성(高城), 통천(通川), 흡곡(歙谷) 등의 고을의 군사는 9월 초 4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1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전라도(全羅道)의 영암(靈巖), 무안(務安), 함평(咸平), 진원(珍原), 장성(長城), 동복(同福), 화순(和順), 능성(綾城), 남평(南平), 광산(光山), 담양(潭陽), 순창(淳昌), 창평(昌平), 옥과(玉果)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12일에 길을 떠나서 9월 18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무주(茂朱), 운봉(雲峯), 장수(長水), 진안(鎭安), 용담(龍潭), 금산(錦山), 진산(珍山), 고산(高山), 남원(南原), 임실(任實), 구례(求禮), 곡성(谷城)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초 9일에 길을 떠나서 9월 18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무장(茂長), 흥덕(興德), 고부(古阜), 전주(全州), 여산(礪山), 영광(靈光), 고창(高敞), 정읍(井邑), 부안(扶安), 김제(金堤), 만경(萬頃), 옥구(沃溝), 임피(臨陂), 함열(咸悅), 용안(龍安), 익산(益山), 태인(泰仁), 금구(金溝)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14일에 길을 떠나서 9월 19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경상도(慶尙道)의 함양(咸陽), 산음(山陰), 단성(丹城), 안음(安陰), 진주(晉州), 거창(居昌), 합천(陝川), 삼가(三嘉), 초계(草溪), 의령(宜寧), 지례(知禮), 함안(咸安), 함창(咸昌), 상주(尙州), 문경(聞慶), 창원(昌原), 칠원(漆原), 영산(靈山), 창녕(昌寧), 현풍(玄風), 고령(高靈), 성주(星州), 개령(開寧), 금산(金山), 김해(金海), 선산(善山), 용궁(龍宮) 등 고을의 군사는 8월 15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0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경주(慶州), 흥해(興海), 언양(彦陽), 청하(清河), 영해(寧海), 영천(永川), 영덕(盈德), 신녕(新寧), 하양(河陽), 밀양(密陽), 청도(淸道), 경산(慶山), 인동(仁同), 대구(大丘)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17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1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안동(安東), 진보(眞寶), 청송(靑松), 풍기(豊基), 영천(榮川), 봉화(奉化), 예안(禮安), 의성(義城), 예천(醴泉), 의흥(義興), 군위(軍威), 비안(比安) 등 고을의 군사는 8월 16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1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영안도(永安道) 군



사의 길을 떠날 일시(日時)는 도원수(都元帥) 허종(許琮)의 절도(節度)를 듣도록 하라.

아아! 군사가 이미 나가는데 명분(名分)이 있고 군대가 마땅히 정직하매 웅장(雄壯)하게 된다. 죄인(罪人)을 잡아 신문하고 오랑캐를 잡는 것이 목적이니, 내 한사람이 어찌 이오로(伊吾廬)에 분심(憤心)을 풀려고 하겠는가? 말을 쉬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변방 백성을 북방 들에서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하였다.





● 연산 8년 5월 28일(기해)

義禁府都事李德亨拿 全羅道綾城錦山長水等處罪人來 命政  
丞等鞫問于賓廳

[풀이] —————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이덕형(李德亨)이, 전라도 능성(綾城), 금산(錦山), 장수(長水) 등지의 죄인을 잡아오니, 정승들에게 빈청(賓廳)에서 국문(鞫問)하도록 하였다.





● 증종 8년 4월 13일(신해)

命旌孝子泰仁居白丁允斤 長水居正兵張永孫之門

[풀이]

태인(泰仁)에 사는 효자 백정 윤근(允斤)과 장수(長水) 사는 정병(正兵) 장영손(張永孫)에게 정문을 내리라 명하였다. [윤근은 나이 10세였는데, 오래도록 병석에 있는 아버를 위해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약에 타 드리니 병이 곧 나았으며, 영손은 부모의 상사에 3년 동안 시묘(侍墓)를 살면서 염장(鹽醬)을 먹지 않았으며, 친히 제물(祭物)을 판비하여 그 효성을 극진히 하였다.]

\*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박곡마을에 비문이 전함.



## ● 중종 11년 9월 10일(무자)

臺諫啓前事 諫院 啓李鐵壽之事 上以謂推閱其所犯 然後可罷其所犯則鐵壽所素知守令 有不良之馬 勒令驛吏優償其價而買之 驛吏畏其令乃買之後 爲無用之馬 其守令乃前慶州府尹李塏也 賣其馬得布四百匹 又於長水道賣馬 得六百五十匹朝官安忍爲此事乎 前長水察訪安瑞龜 及李塏等 請並推考 命推塏及瑞龜餘皆不允

풀이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이철수(李鐵壽)의 일을, 상께서는 그가 범한 죄를 추열(推閱)한 뒤에 파직해야 한다고 여기시나 범한 죄는 철수 자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수령(守令)이 좋지 않은 말[馬]을 억지로 역리(驛吏)에게 값을 많이 내고 사게 하므로, 역리는 그 명령이 두려워 사들였으나 뒤에 쓸데 없는 말이 되고 말았는데, 그 수령은 곧 전 경주 부윤(慶州府尹) 이전(李塏)입니다. 그런 말을 팔아 배 4백 필을 받았고, 또 장수도(長水道)에서도 말을 팔아 6백 50필을 받았으니, 조관(朝官)으로서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장수 찰방(長水察訪) 안서구(安瑞龜) 및 이전 등을 아울러 추고(推考)하소서.” [塏이 경주 부윤 때에 분양(分養)받은 말이 고을 말과 빛같이 같았는데, 국마(國馬)가 더



좋았으므로 가만히 바꾸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었으나 말을 바꾼 일은 발각되지 않았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듣고서 이전의 요행이라고 했다.]

하니, 堦 및 瑞龜는 추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 ● 중종 12년 4월 1일(병오)

黃海道海州延安殷率江陰安岳信川 雨雪雨雹 江原道淮陽金城通川杆城平康金化歙谷雨雪 平安道朔州 雨雪川凍 全羅道珍山錦山長水雨雪 龍潭沃溝靈巖雨雹 慶尙道安陰咸陽雨雪

[풀이]

황해도 해주(海州), 연안(延安), 은율(殷栗), 강음(江陰), 안악(安岳), 신천(信川)에 눈이 오고 우박이 내렸으며, 강원도 회양(淮陽), 금성(金城), 통천(通川), 간성(杆城), 평강(平康), 금화(金化), 흡곡(歙谷)에 눈이 내렸고, 평안도 삭주(朔州)에 눈이 내리고 시내가 얼어붙었으며, 전라도 진산(珍山), 금산(錦山), 장수(長水)에 눈이 내렸고, 용담(龍潭), 옥구(沃溝), 영암(靈巖)에 우박이 내렸으며, 경상도 안음(安陰), 함양(咸陽)에 눈이 내렸다.



● 중종 13년 4월 27일(병신)

全羅道 長水南原錦山雨雹

[풀이] \_\_\_\_\_

전라도의 장수(長水), 남원(南原), 금산(錦山)에 우박이 내렸다.

● 중종 14년 10월 6일(병인)

全羅道谷城縣雷 錦山龍潭鎮安茂朱長水等邑地震 興陽縣梅花開

[풀이] \_\_\_\_\_

전라도 곡성현(谷城縣)에 천둥이 있고, 금산(錦山), 용담(龍潭), 진안(鎭安), 무주(茂朱), 장수(長水) 등의 고을에 지진(地震)이 있고, 흥양현(興陽縣)에 매화(梅花)가 피었다.



## ● 중종 15년 4월 8일(을축)

京畿仁川南陽江華富平陽川金浦衿川 忠淸道沔川地震 全羅  
道長水縣連七日隕霜 忠淸道大興縣 民家有牛生犢後脚大節  
之下 又生二足

[풀이] —————

경기 인천(仁川), 남양(南陽), 강화(江華), 부평(富平), 양천(陽川), 김포(金浦), 금천(衿川)과 충청도 면천(沔川)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7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의 민가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뒷다리의 큰 마디 아래에 두 다리가 더 났다.

## ● 중종 15년 4월 13일(경오)

京畿水原隕霜 全羅道和順縣雨雹 珍原任實長水縣下霜

[풀이] —————

경기 수원(水原)에 서리가 내리고, 전라도 화순현(和順縣)에 우박이 내리고, 진원현(珍原縣), 임실현(任實縣), 장수현(長水縣)



에 서리가 내렸다.

● 중종 17년 4월 7일(계미)

忠淸道林川鴻山雨雹大如鳥卵小如榛子 其積地或二寸三寸  
定山夫餘石城洪州公州溫陽稷山天安恩津全義木川牙山平澤  
及 全羅道長水縣雨雹

풀이

충청도 임천(林川), 홍산(鴻山)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 작은 것은 개암만하여 땅에 두세 치씩이나 쌓였고, 정산(定山), 부여(扶餘), 석성(石城), 홍주(洪州), 공주(公州), 온양(溫陽), 직산(稷山), 천안(天安), 은진(恩津), 전의(全義), 목천(木川), 아산(牙山) 평택(平澤) 및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도 우박이 내렸다.



● 중종 19년 4월 10일(갑진)

全羅道順天光陽南原興陽龍安長水雨雹

풀이

전라도 순천(順天), 광양(光陽), 남원(南原), 흥양(興陽), 용안(龍安), 장수(長水)에 우박이 내렸다.

● 중종 21년 7월 3일(갑신)

全羅道觀察使柳灌狀啓曰 道內各官孝行卓異者 潭陽府書員  
權福早歲失母慟未報恩朔望設祭 盡其誠敬事其父昏定晨省  
及歿晝夜號泣 三年後 忌日之月不食酒肉

長水縣幼學金敬孫父死不離殯側哀毀過禮漁獵養母 質供甘  
旨 母年過百歲而死 敬孫年亦七十而三年不離墓側啜粥哀毀  
家有急難足不到門

興德縣錄事吳俊 其父 腫疾或吮疽或嘗糞及歿 哀毀過禮不  
食塩醬菜果 羅州正兵崔致江妻良女能今夫亡 朝夕泣血 春  
秋製造衣服祭後燒焚 今至十九年不改初心 致哀盡禮又不食  
肉 扶安縣進士崔弼成其母患乳腫甚苦 藥餌無效吮腫得愈



父進士秀孫得惡疾彌留累月百藥無效 醫云蝙蝠可治 時當冬  
 月 求而不得號天而泣 蝙蝠自至和劑以進 厥疾乃廖 前直長  
 韓崇錫其母發癰幾死吮疽得全 及其歿守喪盡哀又遭父喪親  
 執奠饌 廬墓喪祭 一出至誠 康津別侍衛高守儉 父母之喪並  
 守墳三年 仍居墓側朝夕致祭 國忌日則不食酒肉 又以素饌  
 行 二十五年略無懈心一鄉共推爲孝子 古阜郡鄉吏李成浩妻  
 今伊爲夫所黜 其同生欲令改嫁誓師不從 逃入舅父家舅父哀  
 憐使其子成浩 復合同居及其夫死 日夜哭泣盡情行喪三年後  
 仍着喪服 堂中設靈座朝夕行祭衣服造置一依生時 別侍衛李  
 叔孫遭母喪哀毀過禮守墳 一不來家三年內 不飲酒 沃溝縣  
 別侍衛杜世俊 其母病臥五十餘日 須臾不離於側不解衣帶  
 嘗糞以驗死後 不與家人相話 其母所嗜之物 必盡力求得以  
 奠晝夜哭聲不絕 以終三年 長城縣丹巖驛吏車舜年事親至孝  
 如得異味必獻 每遇佳節獻壽父母 必邀鄉黨父老以樂其父仁  
 甫得淋疾 便澁不通氣絕 舜年抱持 籲天乞命吮其陽莖二月  
 水道自開小便通下 乃得復甦 全州府生員朴世直性本厚重  
 年十餘歲失母 哀慕三年不食羹醬 草屨茸杖不出同口 私奴  
 金千同其母患惡腫卽斷指燒和于酒饋之 病母卽愈 幼學朴衡  
 文妻金氏喪其夫 三年內不梳頭朝夕親奠 日夜哭泣喪畢後每  
 製衣 墳前哭祭移置神主前 節改則遞舊易新哭焚淨地返魂享  
 祀至今不怠 金堤郡私奴難金 其父母生時盡心孝養 母死後  
 廬墓二年 仍居墓側 又事主謹勤其主常患窮乏盡心救助 得  
 時新之物不獻於其主 則不忍先嘗 幼學尹師仁妻朴氏 年二  
 十五時 喪夫 今至十六年素服素饌而節日及忌祭時 親往墳



前哀痛如初 學生徐致明妻良女馬非 年三十歲喪夫後二十一年不脫喪服 設位版素帳冬夏衣服造置 朝夕設奠 萬頃縣崔致江妻 良女今伊年三十七歲 無子女 喪其夫今已十七年 衣白衣不食肉不茹葷奉神主 設床帳香爐瓶花朝夕上食 備時物製時服以進 燒舊易新 朔望俗節則疾病風雨外 必上墓以祭

#### 풀이

전라도 관찰사 유관(柳灌)이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내(道內) 각 고을에 효행(孝行)이 뛰어난 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담양부(潭陽府) 서원(書員) 권복(權福)은 일찍 어미를 여의었으므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을 매우 슬프게 여겨, 매달 1일과 15일에 정성을 다해 제사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를 섬길 적에는 아침 저녁으로 꼭꼭 문안했고, 아버가 죽어서는 밤낮으로 슬피 울었습니다. 삼년상(三年喪)을 치른 뒤에도 기일(忌日)이 든 달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장수현(長水縣) 유학(幼學) 김경손(金敬孫)은 아버가 죽자 빈소(殯所)를 떠나지 않고 몸이 바싹 여위어 예(禮)에 지나치게 슬퍼했습니다.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 팔아 어미를 봉양하면서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렸기 때문에 1백 살이 넘어서야 죽었습니다. 경손의 나이도 70이었지만 3년 동안 물만 마시고 슬피 울면서 여묘살이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집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흥덕현(興德縣) 녹사(錄事) 오준(吳俊)은 아버가 종기를 앓을 적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인분(人糞)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버가 죽어서는 예에 지나치게 슬피 울면서 양념 친 음식과 채과(菜果)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주(羅州) 정병(正兵) 최치강(崔致江)의 양녀(良女) 출신 아내인 능금(能今)은 남편이 죽자 아침 저녁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고, 봄 가을로 의복을 만들어서 제사 지낸 뒤 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19년이 되었는데도 처음 마음을 변치 않은 채 슬피 울면서 예(禮)를 끝까지 지키는 물론이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안현(扶安縣) 진사(進士) 최필성(崔弼成)은 어미가 유종(乳腫)을 앓아 심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자 입으로 종기를 빨아 치유시켰습니다. 아버지인 진사 최수손(崔秀孫)이 악질(惡疾)에 걸려 백약이 무효인 채 달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의원이 ‘박쥐를 잡아야 치유시킬 수 있다.’ 했으나 때마침 겨울이라서 아무리 잡으려 찾아보아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부르며 통곡하자 박쥐가 절로 날아왔으므로 이것으로 약을 만들어 먹이니,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전 직장(直長) 한승석(韓崇錫)은 어미가 악성 종기를 앓아 거의 죽게 되자 이를 입으로 빨아서 치유시켰고, 어미가 죽어서는 슬피하면서 극진히 삼년상을 치렀습니다. 또 아버 상(喪)을 당해서는 직접 제물을 마련했고, 여묘살이와 제사에 한결같이 지성을 다했습니다. 강진(康津) 별시위(別侍衛) 고수검(高守儉)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아울러



삼년 간 여묘살이를 했고, 이어 분묘 곁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국기일(國忌日)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니다. 또 검소한 음식으로 제사지내 온 지 25년이 되었지만 조금도 해이함이 없었기 때문에 온 고장이 효자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고부군(古阜郡) 향리(鄉吏) 이성호(李成浩)의 아내 금이(金伊)는 남편에게 쫓겨나자 그 동생이 개가(改嫁)시키려 했으나 죽기로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친정에서 도망하여 시집으로 다시 찾아가니, 이를 딱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아들 성호에게 다시 동거(同居)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주야로 통곡하면서 삼년상을 치른 뒤에도 그대로 상복을 입은 채 방에다 영좌(靈座)를 설치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냈습니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았을 때와 똑같이 의복을 철따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별시위(別侍衛) 이숙손(李叔孫)은 어미 상을 당하여 예(禮)에 지나치게 슬퍼했고 여묘살이를 하면서는 한 번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으며, 삼 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니다. 옥구현(沃溝縣) 별시위 두세준(杜世俊)은 그 어미가 병이 들어 50여 일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의대(衣帶)를 벗지 않은 채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면 인분(人糞)을 맛보아 병 증세를 증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미가 죽은 뒤에는 집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미가 즐기던 물건이면 힘껏 구해다 영전에 바쳤습니니다. 또 삼년상을 끝내도록 밤낮으로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장성현(長城縣) 단암 역리(丹巖驛吏) 차순년(車舜年)은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이를 섬겨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얼으면 반드시 어버이에게 바쳤습니다. 가절(佳節)을 맞을 때 마다 어버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헌수(獻壽)했으며, 반드시 고장의 부로(父老)를 초청해서 함께 즐기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 차인보(車仁甫)가 임질(淋疾)에 걸려 소변이 막혀 기절해서 쓰러지자, 순년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하느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양경(陽莖)을 2일간 입으로 빨자 요도(尿道)가 트였습니다. 이리하여 소변이 통하게 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주부(全州府) 생원(生員) 박세직(朴世直)은 타고난 성품이 충후해서 나이 10여 세에 어미를 여의자 3년 동안 애모(哀慕)했고, 늘 어미를 끝까지 섬기지 못한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기를 더욱 삼갔고, 음식물을 봉양함에 있어 아버지의 마음에 맞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삼 년 동안 죽만 마시고 양념 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짚신에 저장(葺杖)을 짚고 동구(洞口)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노(私奴) 김천동(金千同)은 어미가 악성 종기를 앓자 즉시 손가락을 잘라 태워서 이를 술에 타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의 병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유학(幼學) 박형문(朴衡文)의 처 김씨(金氏)는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머리를 빗지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직접 제물을 올렸으며, 밤낮으로 통곡하였습니다. 삼년상을 마친 뒤에도 철따라 옷을 만들어 분묘 앞에 가 곡제(哭祭)한 다음 이를 신주(神主) 앞에 놓아두었고, 철이 바뀌면 전의 옷을 치우고 새 옷으로 바꿔놓고는 깨끗한 곳을 가려 울면서 전의 옷을 태웠습니다. 반혼(返魂)하여 제사 지냄에 있어 지금까지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김제군(金提郡) 사노(私奴) 난금(難今)은 그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마음을 다해 효성으로 봉양했고, 어머니가 죽은 뒤에는 삼년 간의 여묘살이를 끝낸 다음 이어 분묘 곁에 살았습니다. 또 부지런히 주인(主人)을 섬겼으므로 주인이 늘 궁핍함을 우려해서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철따라 수확하는 물건도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는 차마 먼저 맛보지 않았습니다. 유학 윤사인(尹師仁)의 아내 박씨(朴氏)는 25세 때 남편을 여윈 뒤 지금까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흰 옷에 검소한 밥을 먹으면서 절일(節日)과 기제(忌祭) 때는 몸소 분묘 앞에 가 초상 때처럼 섰게 울었습니다. 학생(學生) 서치명(徐致明)의 양녀(良女) 출신 아내인 마비(馬非)는 30세 때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 뒤 21년 간 상복(喪服)을 벗지 않은 채 위판(位版)을 모시고 흰 장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겨울 여름으로 의복을 만들어 영전 앞에 가져다 놓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만경현(萬頃縣) 최치강(崔致江)의 양녀 출신 아내인 금이(今伊)는 37세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7년이 되도록 흰 옷을 입고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물론 양념 친 반찬도 먹지 않았습니다. 평상과 장막을 갖추어 신주(神主)를 모신 뒤 향로와 꽃병을 놓고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했고, 철따라 나는 새 음식물도 갖추어 올렸습니다. 또 철따라 옷을 만들어 영전에 가져다 놓는데, 전의 옷을 새옷으로 바꿀 때는 그 때마다 반드시 전의 옷을 불태웠습니다. 매달 1일이나 15일, 속절(俗節)에는 병을 앓거나 비바람이 치지 않는 한 반드시 분묘에 올라



갔습니다.”

● 중종 23년 4월 14일(을묘)

全羅道 錦山長興長水等邑霜

[풀이]

전라도 금산(錦山), 장흥(長興), 장수(長水) 고을 등에 서리가 내렸다.

● 중종 23년 8월 21일(경신)

禮曹以孝子節婦等公事 入啓曰前者 上教以爲季世有如此孝子節婦 其行可嘉其 褒賞節目 改磨鍊爲當云 臣等考其可以旌表者 盖斷指之事 特因一時誠激而爲之也 至於年久而孝行不替者 其孝行尤最焉斷指者 在古例爲旌表 故若干人當爲旌表也 往在趙光祖時 孝行尤異者 移文于各道 悉抄令報 今者此人等 其時未得顯著 恐其實有異也 然於見聞雖不高 有一事涉於孝行者 則所當賞物也 其中稍異者 復其戶 又其中不惜身體 而所行表著者 旌表其閭也 以文案見之則其中



特異者 雖載於三綱行實者 無以過矣 所當旌表之但自 上嘉賞節行之意 窮村僻巷之人 何得以知之 若以傳教之意判付於此公事而移文 則外方亦知 上意之所存而尤有所獎勵焉 傳曰 啓意知道其公事曰 全州私奴金千同 江陵幼學崔應祿 進士申命和妻李氏 咸從幼學盧仁碩 安州軍士朴好女子朴德 中部私婢末德 抱川閑良權居敬之於父母 价川良女莫時之於夫 不惜肌膚斷指燒饋 並得差病 忠州前惠民暑參奉河叔崙 既割其股又斷其指以療母疾 牛峯忠順衛李潤童妻洪氏 前以節行卓典 復戶勸獎 厥後二十餘全 誠敬不懈 志節益固此人等特異 雖三綱行實所載孝子烈婦 無以過也 潭陽書員權福 長水幼學金敬孫 興德錄事吳俊 扶安進士崔弼成 前直長韓崇錫 康津別侍衛高守儉 古阜別侍衛李叔孫 沃溝別侍衛杜世俊 長城驛吏車舜年 全州生員朴世直 陟幼學金崇孫 楊口戶長柳潭 咸從前旅帥劉仁達 順安前參奉朴蔓根 高原幼學徐尙仁 沃川校生林世華 結城幼學俞恒 金堤私奴難金 鴻山水軍金元孫 中部私奴朴達沃川驛吏梁老等 各爲父母生盡其孝死盡其禮 操行卓異

羅州良女能今 古阜良女今伊 金堤良女馬非 萬頃良女今伊 嘉山甲士方權妻尹氏 沃川驛吏梁祿妻莫藏 德山良女寶德 南部故府使崔季思妻南氏 金堤故幼學尹師任妻朴氏 全州幼學朴衡文妻金氏 沃川良女石乞今 西部故僉知鄭錫禧妾良女貞今 雲山故幼學俞諧妻良女中之等 夫亡後喪禮極盡其誠久而不衰節行可尙 潭陽正兵鄭利鄭漢鄭進鄭倫同居二場奉養其母 孝友之情 出於至誠 亦爲可嘉 前項金千同崔應祿河



叔崙申命和妻李氏 盧仁碩權居敬朴德末今莫時李潤童妻洪氏等則依大典旌門復戶 書員權福幼學金敬孫進士崔弼成別侍衛杜世俊 生員朴世直幼學俞恒錄事吳俊等則賞職 幼學徐尙仁良女能今 良女今伊良女馬非今伊私奴朴達 驛吏車舜年梁老等則復戶賞物 韓崇碩高守儉李叔孫金崇孫劉仁達朴蔓根林世華金元孫柳潭難金 朴衡文妻金氏尹師任妻朴氏俞諧妻中之 方權妻尹氏良女石乞今寶德貞今莫莊崔季思妻南氏鄭利鄭漢鄭進鄭倫則賞物勸獎何如

[풀이]

예조가 효자와 절부(節婦) 등에 관한 공사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전일에 상께서, 쇠퇴한 세상에 이런 효자와 절부가 있는 것은 그 행실이 가상한 일이니, 포상(褒賞)하는 절목(節目)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신들이 정표(旌表)할 만한 것을 고찰해 보건대, 대개 단지(斷指)를 한 것은 특히 일시적인 성의와 감격으로 인해 하는 것이고, 오랜 해가 되도록 효행이 변함 없는 사람이라야 그 효행이 더욱 높은 법인데, 단지한 사람을 옛적의 준례에도 정표했으므로 약간의 사람은 정표해야 합니다. 지난 조광조(趙光祖) 때에 효행이 더욱 특이한 사람을 각도에 이첩하여 모두 뽑아서 신보(申報)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의 이 사람들은 그때에 현저하지 못했었



으니 실적이 차이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기에 비록 특이하지는 않을망정 한 가지 일이라도 효행에 관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물품으로 상을 주고,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사람은 복호(復戶)하고, 또 그 중에 몸을 아끼지 않은 소행이 뚜렷한 사람은 정문(旌門)하여 표창해야 합니다. 문안(文案)으로 본다면, 이 중 특이한 사람은 비록 《삼강행실(三綱行實)》에 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할 것이 없으니 마땅히 정문하여 표창해야 합니다. 다만 상께서 절행(節行)을 아름답게 여겨 포상하시려는 뜻을 궁벽한 시골이나 향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교하신 뜻을 이 공사에다 판부(判付)하여 이문(移文)한다면, 외방에서 또한 상의 뜻이 있는 데를 알고 더욱 권면 장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하였다. 그 공사는 다음과 같다.

“전주(全州) 사노(私奴) 김천동(金千同), 강릉(江陵) 유학(幼學) 최응록(崔應祿), 진사(進士) 신명화(申命和)의 아내 이씨(李氏), 함중(咸從) 유학 노인석(盧仁碩), 안주(安州) 군사(軍士) 박호(朴好)의 딸 박덕(朴德), 중부(中部) 사비(私婢) 말덕(末德), 포천(抱川) 한량(閑良) 권거경(權居敬)은 부모를 위하고, 개천(价川) 양녀(良女) 막시(莫時)는 지아비를 위해 육신을 아끼지 않고 손가락을 끊어 태워서 약에 타먹었는데 모두 병에 차도가 있었습니다. 충주(忠州) 전(前) 혜민서 참봉(惠民署參奉) 하숙륜(河叔崙)은 다리의 살을 베고 또한 손가락을 끊어 어미의



병을 치료하였고, 우봉(牛峯) 충순위(忠順衛) 이윤동(李潤童)의 아내 홍씨(洪氏)는 전에 절행이 특이한 때문에 복호(復戶)하여 권장했는데, 그 뒤에도 20여 년이나 정성과 공경이 나태해지지 않고 지절(志節)이 더욱 굳었습니다. 이들의 특이한 행실은 비록 《삼강행실》에 실린 효자나 열부(烈婦)라 하더라도 이들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담양(潭陽) 서원(書員) 권복(權福), 장수(長水) 유학 김경손(金敬孫), 흥덕(興德) 녹사(錄事) 오준(吳俊), 부안(扶安) 진사(進士) 최필성(崔弼成), 전 직장(直長) 한승석(韓崇錫), 강진(康津) 별시위(別侍衛) 고수검(高守儉), 고부(古阜) 별시위 이숙손(李叔孫), 옥구(沃溝) 별시위 두세준(杜世俊), 장성(長城) 역리(驛吏) 차순년(車舜年), 전주(全州) 생원(生員) 박세직(朴世直), 삼척(三陟) 유학 김승손(金崇孫), 양구(楊口) 호장(戶長) 유담(柳潭), 함중 전 여수(旅帥) 유인달(劉仁達), 순안(順安) 전 참봉(參奉) 박만근(朴蔓根), 고원(高原) 유학 서상인(徐尙仁), 옥천(沃川) 교생(校生) 임세화(林世華), 결성(結城) 유학 유항(俞恒), 김제(金堤) 사노 난금(難金), 홍산(鴻山) 수군(水軍) 김원손(金元孫), 중부 사노 박달(朴達), 옥천 역리 양노(梁老) 등은 각기 부모를 위하여 생전에는 효도를 다하고 사후에는 예법을 다해 조행이 특이했습니다.

나주(羅州) 양녀(良女) 능금(能今), 고부 양녀 금이(今伊), 김제 양녀 마비(馬非), 만경(萬頃) 양녀 금이, 가산(嘉山) 갑사(甲士) 방권(方權)의 아내 윤씨(尹氏), 옥천 역리 양녹(梁祿)의 아내 막장(莫藏), 덕산(德山) 양녀 보덕(寶德), 남부(南部) 고부



사(府使) 최계사(崔季思)의 아내 남씨(南氏), 김제 고 유학 윤사임(尹師任)의 아내 박씨(朴氏), 전주 유학 박형문(朴衡文)의 아내 김씨(金氏), 옥천 양녀 석을금(石乙今), 서부(西部) 고 첨지(僉知) 정석희(鄭錫禧)의 첩 양녀 정금(貞今), 운산(雲山) 고 유학 유해(兪諧)의 첩 양녀 중지(中之) 등은 지아버가 죽은 뒤에 상례(喪禮)를 거행하기에 정성이 극진하였는데, 오래도록 달라지지 않아 절행이 가상했습니다. 담양 정병(正兵) 정이(鄭利), 정한(鄭漢), 정진(鄭進), 정윤(鄭倫)은 함께 한 장내(場內)에서 살면서 어미를 봉양하되, 효도하고 우애하는 정이 지성에서 나와 또한 가상했습니다.

전향의 김천동, 최응록, 하숙륜, 신명화의 아내 이씨, 노인 석, 권거경, 박덕, 말덕, 막시, 이운동의 아내 홍씨 등은 《대전》대로 정문하고 복호하며, 서원 권복, 유학 김경손, 진사 최필성, 별시위 두세준, 생원 박세직, 유학 유항, 녹사 오준 등은 관직으로 상주고, 유학 서상인, 양녀 능금, 양녀 금이, 양녀 마비와 금이, 사노 박달, 역리 차순년과 양노 등은 복호하고 물품으로 상주며, 한승석, 고수검, 이숙손, 김승손, 유인달, 박만근, 임세화, 김원손, 유담, 난금, 박형문의 아내 김씨, 윤사임의 아내 박씨, 유해의 아내 중지, 방권의 아내 윤씨, 양녀 석을금, 보덕, 정금, 막장, 최계사의 아내 남씨, 정이 정한 정진 정윤은 물품으로 상을 주어 권장함이 어떻겠습니까?”



● 중종 25년 8월 19일(병자)

平安道龍川 軍人朴成孫震死 全羅道寶城飛虫害穀 樂安興  
 陽和順地震屋宇搖動  
 長水雲峯鎮安茂朱下霜損穀

[풀이] \_\_\_\_\_

평안도 용천(龍川)의 군인(軍人) 박성손(朴成孫)이 벼락맞아 죽고, 전라도 보성(寶城)에서는 날벌레[飛虫]가 곡식을 해쳤다. 낙안(樂安), 흥양(興陽), 화순(和順)에서는 지진으로 집이 흔들렸고, 장수(長水), 운봉(雲峰), 진안(鎭安), 무주(茂朱)에서는 서리가 내려 곡식을 손상시켰다.

● 중종 37년 7월 3일(신해)

全羅道長水縣地震

[풀이] \_\_\_\_\_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지진이 있었다.



## ● 증종 37년 12월 22일(정유)

全羅道 全州珍山茂朱高山等官地震 金堤古阜益山興德扶安  
長城井邑錦山金溝長水任實等官及 忠淸道沃川石城等官雷

[풀이] —————

전라도 전주(全州), 진산(珍山), 무주(茂朱), 고산(高山)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했고, 김제(金堤), 고부(古阜), 익산(益山), 흥덕(興德), 부안(扶安), 장성(長城), 정읍(井邑), 금산(錦山), 금구(金溝), 장수(長水), 임실(任實) 등 고을 및 충청도 옥천(沃川), 석성(石城) 등 고을에 천둥이 쳤다.



● 중종 39년 2월 3일 (임신)

京畿道竹山 江原道淮陽通川歙谷 全羅道南原長水鎮安錦山  
 珍山高山 慶尙道尙州義城醴泉星州開寧聞慶咸陽安陰居昌  
 豐基義興龍宮咸昌 忠清道石城鎮岑沃川文義公州鎮川全義  
 清安青山清州燕岐連山永同報恩懷仁槐山懷德木川清風丹陽  
 延豐陰城 黃海道瑞興等官 同日地震

[풀이]

경기 죽산(竹山), 강원도 회양(淮陽), 통천(通川), 흡곡(歙谷), 전라도 남원(南原), 장수(長水), 진안(鎭安), 금산(錦山), 진산(珍山), 고산(高山), 경상도 상주(尙州), 의성(義城), 예천(醴泉), 성주(星州), 개령(開寧), 문경(聞慶), 함양(咸陽), 안음(安陰), 거창(居昌), 풍기(豐基), 의흥(義興), 용궁(龍宮), 함창(咸昌), 충청도 석성(石城), 진잠(鎭岑), 옥천(沃川), 문의(文義), 공주(公州), 진천(鎭川), 전의(全義), 청안(淸安), 청산(靑山), 청주(淸州), 연기(燕岐), 연산(連山), 영동(永同), 보은(報恩), 회인(懷仁), 괴산(槐山), 회덕(懷德), 목천(木川), 청풍(淸風), 단양(丹陽), 연풍(延豐), 음성(陰城), 황해도 서흥(瑞興) 등 고을에 같은 날 지진이 일어났다.





● 명종 2년 4월 19일(경자)

京城雨雹 京畿廣州雷動雨雹 楊根下霜 清洪道保寧 慶尙道  
 安陰開寧星州知禮居昌三嘉咸陽善山雨雹 大丘隕霜 江原道  
 襄陽雪嶽山高城金剛山下雪 旌善雨雹 全羅道臨陂沃溝咸平  
 靈光鎮安長水雨雹 平安道江界雨雹

[풀이]

서울에 우박이 내렸다. 경기의 광주(廣州)에 우뢰가 진동하고 우박이 내렸으며, 양근(楊根)에는 서리가 내렸다. 청홍도(清洪道) 보령(保寧)과 경상도 안음(安陰), 개령(開寧), 성주(星州), 지례(知禮), 거창(居昌), 삼가(三嘉), 함양(咸陽), 선산(善山)에 우박이 내리고 대구(大丘)에는 서리가 왔다. 강원도 양양(襄陽), 설악산(雪嶽山), 고성(高城), 금강산(金剛山)에 눈이 내리고 정선(旌善)에 우박이 내렸다. 전라도 임피(臨陂), 옥구(沃溝), 함평(咸平), 영광(靈光), 진안(鎭安), 장수(長水)에 우박이 내렸다. 평안도 강계(江界)에 우박이 내렸다.



● 명종 2년 7월 5일(갑인)

諫院啓曰 長水縣監閔繼點 鎮安縣監姜世仁當問弊使閔莖入境之時 遍諭民間 深鎖門戶 禁不服得田于畝使奉命使臣 無由詢問 其用心旨爲狀 請並罷職 答曰如啓

[풀이]

간원이 아뢰기를,

“장수 현감(長水縣監) 민계점(閔繼點)과 진안 현감(鎮安縣監) 강세인(姜世仁)은 문폐사(問弊使) 민전(閔莖)이 그 지역에 들어갈 적에, 문을 굳게 닫고 밭에 나가 일을 하지 말도록 민간(民間)에 널리 효유하여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하여금 실태를 물어볼 길이 없게 하였으니, 그 마음 씀이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아울러 파직(罷職)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 명종 11년 9월 29일(갑신)

京城地震 江原道高城雨雪雷動 黃海道載寧延安安岳瓮津松  
 禾豐川牛峯瑞興雷動 京畿南陽農人及耕牛各一 雷震死清洪  
 道牙山新昌瑞山天安全義槐山惟新大雷雨 全羅道礪山益山  
 古阜雲峯長水雷

[풀이]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강원도 고성(高城)에 눈이 오고 우뢰가 쳤다. 황해도 재령(載寧)·연안(延安)·안악(安岳)·옹진(瓮津)·송화(松禾)·풍천(豊川)·우봉(牛峯)·서흥(瑞興)에 천둥이 쳤다. 경기 남양(南陽)에 농부 한 사람과 밭갈던 소가벼락맞아 죽었다. 충청도 아산(牙山)·신창(新昌)·서산(瑞山)·천안(天安)·괴산(槐山)·유신(惟新) 등에 크게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전라도 여산(礪山)·익산(益山)·고부(古阜)·운봉(雲峯)·장수(長水)에 천둥이 쳤다.



## ● 명종 12년 11월 30일(기묘)

前長水縣監趙昱卒 昱字景陽爲人清虛恬澹不慕榮利 博覽經史工於詩律初以公薦 除參奉旋得心疾不仕遂卜居于龍門山下 放情丘壑以吟 自遣朝廷舉以遺逸 授長水縣監復以病棄官而歸 尋卒其兄晟成寬厚和易精於醫藥如音律算學天文 無不通曉俱有名當世

[풀이]

전 장수 현감(長水縣監) 조욱(趙昱)이 졸하였다. 욱의 자(字)는 경양(景陽)인데, 사람됨이 허심탄회하고 담박하여 영리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경사(經史)를 많이 읽고 시율(詩律)에 능하였다. 처음에 공천(公薦)으로 참봉을 제수하였는데 바로 심질(心疾)을 얻어 벼슬에 나서지 않았다. 드디어 용문산(龍門山) 아래에 살 곳을 정하고는 산속에 노닐면서 즐겼고 시를 읊으며 회포를 풀었다. 조정에서 유일(遺逸)로 천거하여 장수 현감을 제수했는데 다시 병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서 이내 죽었다. 그의 형 조성(趙晟)도 성품이 너그럽고 온화했는데, 의약(醫藥)에 정통했으며, 음률(音律)·산학(算學)·천문(天文) 같은 것을 환하게 알지 못한 게 없어 동생과 함께 당세에 유명했다.



## ● 명종 21년 7월 19일(무신)

戊申 吏曹參判鄭宗榮參議朴應男啓曰 前日傳教以爲王孫有可教者 生員進士中經明行修純正勤謹老成溫和者 本曹與禮曹同議于大臣擇定師傅 而又以無前例還停 但使本曹聞見用之 若六條俱備則乃 才全德備之人 固不易得 若於物情有可用之人 則當擇而用之 但自 上特命之事異於常時泮宮公薦之類 前者經筵官所啓成守琛李希顏曹植成悌元趙昱五人 以遺逸薦拔 六品 用 當依此例爲之而前日六人書啓之時 未及詳盡啓達 故今此等人每以六條俱備稱號 非但其人 不敢自當 物情亦以爲未穩 請改俱備之名 只以經明行修捧承傳

[풀이]

이조 판서 민기(閔箕), 참판 정종영(鄭宗榮), 참의 박응남(朴應男)이 아뢰기를,

“전일 전교에서 ‘왕손 중에 가르칠 만한 자가 있으니, 생원·진사 중에서 경학에 밝고·행실이 착하고·순정(純正)하고·근근(勤謹)하고·노성하고·온화한 자를 본조와 예조가 함께 대신과 의논하여 골라서 사부(師傅)로 정하라.’ 하시더니, 또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하여 도로 정지시키고 다만 본조로 하여금 물색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육조가 구비된다면 바로 재덕을 겸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본시 얻기 어렵고



만일 여론에서 쓸만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골라 써야 하겠습니까만, 단, 위에서 특명하신 일이라서 여느 때 반궁(泮宮)에서 공천(公薦)하는 것[나라의 법전에 ‘생원·진사 중에서 재행(才行)은 탁이한데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되지 못한 자를 천거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이 지금도 행하여 이를 공천이라 하는데, 근래에는 사습(士習)이 해이해져서 더러는 분경으로 얻기도 한다.]과는 다릅니다. 전에 경연관(經筵官)이 아뢰 성수침(成守琛)[자는 중옥(仲玉)이고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고(故) 대사헌 성세순(成世純)의 아들인데, 그 아우 성수종(成守琮)과 함께 높은 이름이 있었다. 수종은 영발 상특(英發爽特)하고 수침은 혼후 천성(渾厚天成)하며, 그 용모와 사기가 평후 관완하므로 바라보면 그가 성덕 군자(成德君子)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효우(孝友)의 절의와 순실(純實)한 덕은 한 세상에 높았으므로 조야가 그를 우러러 보았고, 어진이나 어리석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를 마치 태산 북두(泰山北斗)를 보듯 하였다. 소시에는 과업(科業)에 독실히 마음을 기울여 당세에 출세할 뜻을 가지더니, 기묘년에 착한 사람들이 일망 타진되는 것을 보고서 다시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모친을 시봉(侍奉)하며 파평(坡平)의 산 밑에서 뜻을 길렀다. 중종조에서 일찍이 참봉(參奉)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 때 주부(主簿)로써 초빙하니 조정에 와서 사은하였고 두 고을의 원을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에 상이 또 특별히 불렀으나 나이는 많고 병은 깊어서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72세에 죽었다.] 이희안(李希顔)[기묘 명사(己卯名士)로서 이희증(李希曾)·이희민(李希閔)의 아우인데, 초계(草溪)에서 살았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에 우애하였고 또한 의리를 행하니 온 고을 사람이 복종하였으므로 본디부터 명예가 있었다. 사마시(司馬試)에만 합격하고 대과(大科)는 보지 않았다. 중종조에서 일찍이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사은만 하고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다. 이 때 초빙을 받았고 고령 현감(高靈縣監)에서 끝났다.] 조식(曹植)[방정(方正)하고 엄결(廉潔)하였으며, 세속을 벗어나 은둔하였으며 추상(秋霜) 같은 지기(志氣)가 있었다. 늙어 갈수록 더욱 엄격하여 남의 과오를 용서하지 않았다. 세상을 너무 깔보고 항시 하는 말은 거의가 풍자였으니, 대개 은거하여 방담하는 자였다.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항상 객기(客氣)에 사역을 당한 적이 많다.’ 하였다. 중종조에서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사은하지 않았고, 이 때 6품 관직을 누차 제수하였으나 상소만 올리고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 매우 준격(峻激)하였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편지를 하여 나오기를 권하였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일찍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이희안(李希顔)에게 부쳤다. ‘산해정 속을 꿈에 몇 번 왔었나[山海亭中夢幾回] 황강의 노한 흰머리 가득 하다네 … (원문 1자 불명) … [黃江老漢雪盈○] 반평생 동안 세 번이나 임금 뵈러 갔더니[半生三度朝天去] 군왕 면목보지도 못하고 왔다네[不見君王面目來]’ 산해는 조식의 정자 이름이고 황강은 이희안이 사는 곳이다. 역시 기롱한 것이다. 그



정자는 김해(金海)의 해구에 있었다. 자호를 남명 처사(南溟處士)라 하였고, 만년에는 두류산(頭流山)의 깊은 골짜기 속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자주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태연하였다.] 성제원(成悌元) [자는 자경(子敬), 본관은 역시 창녕이다. 자품이 활달하고 출중하게 호매(豪邁)하여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았다. 그러나 속절에 구애되지 않고 꽤 세상을 얽보고 불공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며, 효도와 우애는 천성적으로 타고 난 것이었다. 친상을 당해서는 예절을 다하였고 모친이 죽어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자기 몫을 모두 형제들에게 돌리고, 거침 없이 표연하게 돌아다니며 산수를 아주 좋아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유발승(有髮溼)’이라 하였다. 보은 현감(報恩縣監)에 제수하니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다.] 조욱(趙昱) [자는 경양(景陽)으로 병자년에 합격된 생원이었다. 타고난 자품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말이 적었다 소시에 과거 공부를 전업으로 하였는데, 매우 재명(才名)이 있었다. 중년에 음직(蔭職)에 보임되었으나 병으로 출사하지 못하였다. 시를 지으면 품조(品調)가 매우 높았다. 그의 형 조성(趙晟)과 함께 학행으로 일컬어졌는데, 논자들은 대부분 그 형을 낮게 여겼다. 장수 현감(長水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다시 병으로 관직을 버렸다. 향시 산수를 즐겨서 명산을 두루 찾아 노닐었으니, 발자취 안닿은 곳이 거의 없었다. 만년에는 용문산(龍門山) 밑에 정사(精舍)를 지어 놓고 자연을 즐긴지 10여 년이 넘으며 자호를 용문 거사라 하였고 지은 시문



은 5~6권이 되었다.] 등 다섯 사람은 유일(遺逸)로서 추천에 의해 뽑혀서 6품에 서용되었었으니, 마땅히 이 예에 따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전일 여섯 사람[이항(李恒) 등]을 적어 아뢴 때에 미처 다 자세하게 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매양 육조가 구비된 것으로 칭호하게 되니 단지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그 제도를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경학에 밝고[經明] 행실이 착한 것[行修]’ 두 조목만을 가지고 승전을 받들게 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육조가 구비된 사람으로 말하면 당초 상의 전교를 범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적어서 아뢴 사람이 모두 한 때 유명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실력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뒤에 그들에 대한 임금의 대우가 극진하고, 공론에서는 또한 그들이 육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조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대저 육조가 구비된 사람이면 바로 성현(聖賢)에서 한 등급 낮은 것이니, 천하를 통틀어 구하더라도 쉽게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비록 경명(經明)·행수(行修)만을 칭한다 하더라도 그 아래의 네 조목 역시 자동적으로 그 속에 들어 있으니, 이름은 비록 약해졌다 하지만 실상은 동일한 것이다. 대개 사람에 따라 그 행실을 상고하지 않고 먼저 이름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공론이 있게 된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는 뜻이 온당하다. 지금 같은 말세에서 육조가 구비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만일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허위적인 일이 되고 마니, 아뢰는 대로 하라.” 하였다.





● 선조 6년 9월 20일(정유)

院 啓廣興守李命生人物悖戾用心無狀奪其妻同生奉祀 奸謀譎計 無所不至當其妻父神主自外返魂時 躬自下去于中路杖其神主擔持人 而奪其神主 身爲漢城庶尹而構造妻 無形之罪發狀而謀陷 請罷職不齒仕版 前參議洪淵本以貪鄙之性濟以 悍之習 趨赴權姦得 堂上 至今士林唾鄙 猶恐得志而爲他日之患 其畏之如虎者 非獨南民然也 大抵用舍 不可不嚴也 失節權門者 若又得志於清時則朝廷好惡顛倒已甚 士趨何以定 人心安所懲哉 今之懲一淵者 乃所以戒百淵於後也 請 命罷職長水縣監慎友善 自到任之後 然行貪濁之事無所不至 人皆唾鄙且縱其妻亦貪虐聚斂 一邑之人無不怨憤 請 命罷職不 答曰按此所論李沈事發於公論洪之爲人善惡著白 雖有爲政猛悍之病 決不至爲他日士林之患 諫院之論不亦過乎



[풀이]

간원이 아뢰기를,

“광흥수(廣興守) 이명생(李命生)은 인물이 패려스럽고 마음 쓰는 것이 무례하여 제 아내의 동생의 봉사(奉祀)를 빼앗느라 간사한 꾀를 못할 짓이 없이 다 부렸습시다. 제 처부(妻父)의 신주(神主)를 외방(外方)에서 반혼(返魂)할 때 몸소 중도에 내려가서는 신주를 멘 사람을 매질하여 그 신주를 빼앗았고, 자신이 한성 서윤(漢城庶尹)으로서 처남을 형적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발장(發狀)하여 모함하였으니, 파직시키고 사판(仕版)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전 참의 홍연은 본디 탐오한 성품인데다가 사나운 버릇을 더하였습니다. 권간에게 빌붙어 당상에 올랐으므로 지금 까지도 사림(士林)이 타기하고 있음을 물론 그가 뜻을 얻으면 뒷날 환란을 야기시킬까 염려하고 있으니 범처럼 무서워하는 것은 남쪽 백성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대저 용사(用捨)는 엄하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권문(權門)에 실절(失節)한 자가 또 청명한 시대에 뜻을 얻게 되면 조정의 호오(好惡)가 너무도 전도되는 것이니, 선비의 추향이 어떻게 정해지겠으며 인심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홍연을 징계하는 것은 곧 뒷날 1백의 홍연을 징계하는 것이니, 파직시키게 하소서. 장수 현감(長水縣監) 신우선(愼友善)은 부임한 뒤부터 탐오한 일을 자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아내까지도 탐학(貪虐)을 부려 거두어들이므로 온 고을 사람이 누구나 다 원망하고 울분해 하니, 파직시키



고 서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기에 논한 것을 살피건대 이명생·신우선의 일은 공론(公論)에서 나왔다. 그러나 홍연의 사람됨은 선악이 명백하므로 정사가 사나운 병통이 있기는 하나 결코 뒷날 사람의 환란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간원이 논한 것이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다.

● 선조 11년 3월 28일(기묘)

府 啓長水縣監趙希顏昏懦 陽城縣監金虎秀童驗無識 請并  
罷職 上從之

[풀이] \_\_\_\_\_

헌부가 아뢰기를,

“장수 현감(長水縣監) 조희안(趙希顏)은 아둔하고 나약하며 양성 현감(陽城縣監) 김호수(金虎秀)는 경험이 적고 무식하니,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經略移咨 大概本國八道之中 某道某邑倭奴盡數占據 某道上犯 某道未犯 某處某道 全未入境 逐一備細開寫明白 咨復施行 回咨曰 如平安道平壤府城中和祥原等郡 俱經焚蕩 占住 寧邊肅川成川定州安州龜城朔州昌城義州江界等府鎮 德川順川熙川雲山嘉山郭山宣川鐵山龍川渭原碧潼博川理山寧遠慈山价川等郡 甑山咸從江西永柔龍崗三和順安江東三登陽德孟山泰川殷山等縣 俱賊未入境 黃海道黃州海州瑞興平山豐川等府鎮 鳳山谷山遂安信川安岳載寧白川等郡 新溪牛峯文化松禾長淵瓮津康翎殷栗江陰長連兎山等縣 俱經焚蕩占住 只延安府一城 守臣固守奮勇拒敵 賊遂大挫而去 京畿廣州驪州坡州楊州水原富平利川仁川長端南陽等府鎮 楊根豐德加平安山朔寧安城麻田高陽等郡 龍仁振威永平陽川金浦砥平抱川積城果川衿川通津交河漣川陰竹陽城陽智竹山等縣

俱經焚蕩亦有占據 江華喬桐等府縣 俱賊未入境 江原道原州淮陽襄陽春川三陟江陵鐵原等府鎮 通川平海旌善高城杆城寧越平昌等郡 金城蔚珍 谷伊川平康金化狼川洪川楊口橫城麟蹄安峽等縣 俱經賊患亦有占住 慶尙道慶州星州安東昌原金海密陽善山大丘東萊等處府鎮 草溪蔚山梁山清道醴泉永川興海金山咸安陝川等郡 慶山固城巨濟義城泗川鎮海開寧三嘉高靈宜寧河陽龍宮彦陽漆原仁同聞慶咸昌知禮玄風軍威比安義興新寧靈山昌寧機長熊川等縣 俱經焚蕩占住青



松寧海等府 榮川豐基咸陽等郡 南海盈德居昌奉化河東清河  
 安陰丹城禮安迎日長 眞寶等縣 俱賊未入境 只晉州一城本  
 鎮官固守拒賊斬殺甚衆賊遂遁歸 咸鏡道安邊德原鍾城慶興  
 等府鎮 文川高原三水端川等郡 洪原利城明川等縣 俱經賊  
 患亦有占住去處 忠清道忠州清州等鎮 清風丹陽槐山等郡  
 文義堤川懷德延豐陰城清安鎮川永春報恩永同黃澗等縣 俱  
 境焚蕩亦有占住 公州洪州等鎮 林川泰安韓山舒川沔川天  
 安瑞山沃川溫陽等郡 鴻山德山平澤稷山定山清陽恩津懷仁  
 鎮岑連山尼山大興夫餘石城庇仁藍浦結城保寧海美唐珍新昌  
 禮山木川全義燕岐青山牙山等縣俱賊未入  
 境 全羅道珍山錦山等郡龍潭茂朱等縣 俱被焚掠外 羅州光  
 州南原長興順天潭陽濟州等府鎮 寶城益山古阜靈巖珍島淳  
 昌金堤礪山靈光樂安等郡 昌平臨陂萬頃金溝綾城光陽龍安  
 咸悅扶安咸平康津玉果高山泰仁沃溝南平興德井邑高敞茂  
 長務安同福和順興陽海南求禮谷城長城珍原雲峯任實長水鎮  
 安大靜旌義等縣 俱賊未入境 只全州府一城 賊至城外 望見  
 守備完固 不犯而退

[풀이]

경략이 이자(移咨)하였는데 대략에,  
 “본국의 팔도 중에 어느 도 어느 읍은 모두 왜노가 점거하였  
 고, 어느 도는 침범당하였으며, 어느 도는 아직 침범받지 않았  
 고, 어느 곳 어느 도는 전혀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



실을 세세히 갖추어 기록하여 자복(咨復)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는데, 회자(回咨)하기를,

“평안도 평양부성(平壤府城) 및 중화(中和), 상원(祥原) 등의 군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겪었고, 영변(寧邊), 숙천(肅川), 성천(成川), 정주(定川), 안주(安州), 구성(龜城), 삭주(朔州), 창성(昌城), 의주(義州), 강계(江界) 등의 부진(府鎭)과 덕천(德川), 순천(順川), 희천(熙川), 운산(雲山), 가산(嘉山), 곽산(郭山), 선천(宣川), 철산(鐵山), 용천(龍川), 위원(渭原), 벽동(碧潼), 박천(博川), 이산(理山), 영원(寧遠), 자산(慈山), 개천(价川) 등의 군과 증산(甌山), 함종(咸從), 강서(江西), 영유(永柔), 용강(龍崗), 삼화(三和), 순안(順安), 강동(江東), 삼등(三登), 양덕(陽德), 맹산(孟山), 태천(泰川), 은산(殷山) 등 현은 모두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황해도 황주(黃州), 해주(海州), 서흥(瑞興), 평산(平山), 풍천(豐川) 등 부진과 봉산(鳳山), 곡산(谷山), 수안(遂安), 신천(信川), 안악(安岳), 재령(載寧), 배천(白川) 등의 군과 신계(新溪), 우봉(牛峯), 문화(文化), 송화(松禾), 장연(長湍), 웅진(瓮津), 강령(康翎), 은율(殷栗), 강음(江陰), 장련(長連), 토산(兔山) 등 현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겪었고, 단지 연안부(延安府) 한 성만은 수신(守臣)이 굳게 지켜 용전 분투하여 적의 사기가 크게 꺾인 채 도주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廣州), 여주(驪州), 파주(坡州), 양주(楊州), 수원(水原), 부평(富平), 이천(利川), 인천(仁川), 장단(長湍), 남양(南陽) 등 부진과 양근(楊根), 풍덕(豐德), 가평(加平), 안산(安山), 삭령(朔寧), 안성(安城), 마전(麻田), 고양(高陽) 등의 군, 그리고



용인(龍仁), 진위(振威), 영평(永平), 양천(陽川), 김포(金浦), 지평(砥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과천(果川), 금천(衿川), 통진(通津), 교하(交河), 연천(漣川), 음죽(陰竹), 양성(陽城), 양지(陽智), 죽산(竹山)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화(江華), 교동(喬桐) 등의 부현은 아직 적이 지경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강원도 원주(原州), 회양(淮陽), 양양(襄陽), 춘천(春川), 삼척(三陟), 강릉(江陵), 철원(鐵原) 등 부진과 통천(通川), 평해(平海),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영월(寧越), 평창(平昌) 등의 군과 금성(金城), 울진(蔚珍), 흙곡(?谷), 이천(伊川), 평강(平康), 금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횡성(橫城), 인제(麟蹄), 안협(安峽) 등 현은 모두 적변을 겪었고 또한 점거도 당하였습니다.

경상도 경주(慶州), 성주(星州), 안동(安東), 창원(昌原), 김해(金海), 밀양(密陽), 선산(善山), 대구(大丘), 동래(東萊) 등의 부진과 초계(草溪), 울산(蔚山), 양산(梁山), 청도(淸道), 예천(醴泉), 영천(永川), 흥해(興海), 금산(金山), 함안(咸安), 합천(陝川) 등의 군과 경산(慶山), 고성(固城), 거제(巨濟), 의성(義城), 사천(泗川), 진해(鎭海), 개령(開寧), 삼가(三嘉), 고령(高寧), 의령(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언양(彦陽), 칠원(漆原), 인동(仁同), 문경(聞慶), 함창(咸昌), 지례(知禮), 현풍(玄風), 군위(軍威), 비안(比安), 의흥(義興), 신령(新寧), 영산(靈山), 창녕(昌寧), 기장(機張), 웅천(熊川) 등 현은 모두 분탕과 점거를 겪었고, 청송(靑松), 영해(寧海) 등의 부와 영천(榮川), 풍기(豊基), 함양(咸陽) 등의 군과 남



해(南海), 영덕(盈德), 거창(居昌), 봉화(奉化), 하동(河東), 청하(清河), 안음(安陰), 단성(丹城), 예안(禮安), 영일(迎日), 장기(長鬐), 진보(眞寶) 등 현은 모두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고, 단지 진주(晋州)성에만 침범이 있었으나 본진 수관이 고수하여 항거하였으며 참살한 것도 매우 많아 적은 마침내 패주하였습니다.

함경도 안변(安邊), 덕원(德原), 종성(鍾城), 경흥(慶興) 등 부진과 문천(文川), 고원(高原), 삼수(三水), 단천(端川) 등 군과 홍원(洪原), 이성(利城), 명천(明川) 등 현은 적변을 겪었고 또한 점거하였다가 물러간 곳도 있습니다.

충청도 충주(忠州), 청주(淸州) 등 진과 청풍(淸風), 단양(丹陽), 괴산(槐山) 등 군과 문의(文義), 제천(堤川), 회덕(懷德), 연풍(延豐), 음성(陰城), 청안(淸安), 진천(鎭川), 영춘(永春), 보은(報恩), 영동(永同), 황간(黃澗)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고 또한 점거당하였던 곳도 있으며, 공주(公州), 홍주(洪州) 등 진과 임천(林川),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천안(天安), 서산(瑞山), 옥천(沃川), 온양(溫陽) 등의 군과 홍산(鴻山),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정산(定山), 청양(淸陽), 은진(恩津), 회인(懷仁), 진잠(鎭岑), 연산(連山), 이산(尼山), 대흥(大興),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청산(靑山), 아산(牙山) 등 현은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진산(珍山), 금산(錦山) 등 군과 용담(龍潭), 무주(茂州)



등 현은 모두 분탕과 노략을 겪었고, 그 외에 나주(羅州), 광주(光州), 남원(南原), 장흥(長興), 순천(順天), 담양(潭陽), 제주(濟州) 등 부진과 보성(寶城), 익산(益山), 고부(古阜), 영암(靈岩), 진도(珍島), 순창(淳昌), 김제(金堤), 여산(礪山), 영광(靈光), 낙안(樂安) 등 군과 창평(昌平), 임피(臨陂), 만경(萬頃), 금구(金溝), 능성(綾城), 광양(光陽), 용안(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강진(康津), 옥과(玉果), 고산(高山), 태인(泰仁), 옥구(沃溝), 남평(南平), 흥덕(興德), 정읍(井邑), 고창(高敞), 무장(茂長), 무안(務安), 동복(同福), 화순(和順), 흥양(興陽), 해남(海南), 구례(求禮), 곡성(谷城), 장성(長城), 진원(珍原), 운봉(雲峯), 임실(任實), 장수(長水), 진안(鎭安), 대정(大靜), 정의(旌義) 등 현은 모두 적이 침입하지 않았고, 다만 전주부(全州府)만이 적이 성 밑에 왔다가 수비가 완고함을 보고 침범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였다.



## ● 선조 26년 7월 20일(임신)

鄭崑壽李德馨等馳 啓曰昨昏都元帥權慄 本月初五月在雲峯傳通 今七月初三日賊徒分運 一運向求禮 一運已到雲峯縣界 駱參將宋遊擊 已向求禮巡邊使李蒼 把截于雲峯八良峙 全羅兵使宜居怡把截于雲峯實相洞 防禦使李福男 駐割于長水縣 賊勢浩大 我軍孤弱急急告 於提督府 機速援事 馳報而臣等即進提督下處 令通事林春發傳告 則提督曰沈遊擊云 倭必不犯全羅道 今將何出反覆論議有若玩辭 今朝查總兵 差人李清來說 慶尙道軍民 前日投順倭賊 到晉州招降城中人而城中人出降 故城遂陷云傳說 提督招春發 問詰再三 其爲情狀極爲痛憤 查總兵自在東坡每諱進戰 張遑無據無理之說馳稟于提督府所謂李清云者 爲其心腹而大軍駐聞慶時 傳報許多瞞說 撓動軍情 今又飭虛行詐如此之甚 臣等不勝痛 卽具稟帖 呈于提督府提督與沈遊擊 從容講話 覽帖訖謂曰何如是辯論乎 我今下去自當知之 時提督招謂通事等曰 我明明日早爲發行陪臣一員先往 前路檢飭糧餉船隻等事 臣崑壽明日早朝 先爲發行提督爲臣等曰 弓箭經 盡破价 國好弓箭多數取來以充戰用 累次丁寧說道矣

풀이

정곤수(鄭崑壽), 이덕형(李德馨) 등이 치계하였다.

“어제 저녁에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이달 5일 운봉현



(雲峰縣)에서 보낸 전통(傳通)을 받았는데, 그 전통에 ‘7월 3일에 적의 무리가 운(運)을 나누어 1운은 구례(求禮)로 향했고 1운은 이미 운봉현의 경계에까지 왔다. 낙 참장(駱參將)과 송유격(宋遊擊)은 이미 구례를 향하여 떠났고, 순변사(巡邊使) 이빈(李贛)은 운봉 팔랑치(八良峙)에서 지키고 있으며, 전라 병사(全羅兵使) 선거이(宣居怡)는 운봉 실상동(實相洞)에서 지키고 있고, 방어사(防禦使) 이복남(李福男)은 장수현(長水縣)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적세는 호대(浩大)하고 아군(我軍)은 고약(孤弱)하니 서둘러 제독부에 고하여 시기에 맞추어 속히 구원해 주기를 청할 일로 치보(馳報)한다’고 하였으므로 신들이 즉시 제독의 하처(下處)로 가서 통사(通事) 이춘발(李春發)을 시켜 전고(傳告)하게 하였더니, 제독이 말하기를 ‘심 유격은 왜적이 반드시 전라도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찌하여 마치 농담하듯이 반복하여 말하는가? 오늘 아침 사 총병(查摠兵)의 차인(差人) 이청(李清)이 와서 말하기를 「전일에 왜적에게 투항(投降)했던 경상도 군민(軍民)이 진주로 와서 성 안 사람들을 항복하도록 불러내 성 안 사람들이 나와서 항복했기 때문에 마침내 성이 함락된 것이다.」 하더라.’고 전하면서 제독이 춘발(春發)을 불러 재삼 힐문(詰問)했다고 하니, 그 정상이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사 총병은 동파(東坡)에 있을 때부터 매양 진격(進擊)을 꺼려 근거 없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 놓아 제독부(提督府)에 치품(馳稟)하였고, 이청이란 자는 그의 심복으로서 대군이 문경(聞慶)에 주둔하고 있을 때에도 허다한 거짓말을 전보(傳報)하



여 군정(軍情)을 동요시키더니, 지금 또 거짓말을 꾸며 속임이 이처럼 심합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통분함을 이길 수 없어 바로 품첩(禀帖)을 갖추어 제독부에 올렸습니다. 제독은 심 유격과 조용히 담화하다가 품첩을 다 보고서는 말하기를 ‘어찌 이처럼 변론하는가. 내가 곧 내려갈 것이니 자연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물녘에 통사(通事)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모레 일찍 출발할 것이니 배신(陪臣) 한 사람이 먼저 출발하여 가는 길의 양향(糧餉)과 선척(船隻) 등의 일을 검칙(檢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 곤수(崑壽)가 내일 이른 아침에 먼저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독이 신들에게 이르기를 ‘궁전(弓箭)이 토우(土雨)로 인하여 다 파손 되었으니 그대 나라의 좋은 궁전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전용(戰用)에 충당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간곡하게 누차 말하였습니다.”



## ● 선조 26년 11월 9일(기축)

全羅監司李廷穉狀 啓臣伏見備邊司行移 因臣妄 啓光陽蟾  
 津求禮石柱關雲峯八良峙長水六十峙等處 新設僉使萬戶事  
 一邊料理規營 以爲明春遮截之地 而以本縣監兼任萬戶便否  
 更爲商度 啓聞云臣之妄意嘗觀各浦鎮將 其所衣食倚辦無路  
 除出入防軍卒以收代糧 此一 也 浦所傍近居民役 屬于鎮將  
 與本邑守令相爭 例生嫌隙此二 也 若以本邑守令兼任則除  
 此二 而略設軍營及守備廳 分置軍器軍糧有變則率入防及境  
 內兵民 把截守禦無事則以戍卒分付軍官 還于本邑料理官事  
 則官屬不必移居也 人民往來不出其境內 恐爲無妨以此言之  
 雖他官已差鎮將往往以守令兼任 未爲不可別設與兼任便否  
 朝廷熟議施行 且蟾津石柱八良峙六十峙 皆置陸軍僉使萬戶  
 屬于兵使爲當 石柱萬戶則若合求禮於南原而使前縣監李元  
 春仍差萬戶宜當 若不合屬則三邑縣監等 兼萬戶差下 新除  
 授蟾津僉使以有才略傷鍊人 十分擇差星火赴任然後築城設  
 營等事可以相與經畫處  
 置矣

[풀이]

전라 감사 이정암이 장계하였다.

“신이 비변사의 행이(行移)를 보건대, 신이 아뢴 것으로 말미  
 암아 광양(光陽), 섬진(蟾津), 구례(求禮), 석주관(石柱關), 운봉



(雲峰), 팔랑치(八良峙), 장수(長水), 육십치(六十峙) 등에 새로 첨사(僉使), 만호(萬戶)를 두는 일은 한편으로 계획하고 경영하여 내년 봄에 파수처로 삼을 것이며, 본현감(本縣監)으로 만호를 겸임시키는 것이 온당한 지의 여부는 다시 헤아려서 아뢰라고 하였는데, 신의 망령된 생각은 이러합니다. 일찍이 각포(各浦)의 진장(鎭將)을 보건대 그 의식(衣食)을 장만할 길이 없으므로 입방(入防)한 군졸을 털어내어 대량(代糧)을 거두고 있으니 이것이 첫째 폐단이며, 포소(浦所) 근방의 주민이 진장(鎭將)에게 투속(投屬)하므로 그 고을의 수령(守令)과 서로 다투어 으레 혐극(嫌隙)을 일으키니 이것이 둘째 폐단인데, 만일 고을의 수령으로 겸임시킨다면 이 두 가지 폐단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군영(軍營)과 수비청(守備廳)을 간략하게 설치하고 군기(軍器), 군량(軍糧)을 나누어 두어, 사변이 있으면 입방한 군졸과 경내의 병민(兵民)을 거느려 지키고 막으며, 사변이 없으면 수졸(戍卒)을 군관(軍官)에게 나누어 부치고 그 고을로 돌아와 관사(官事)를 처리한다면 관속(官屬)을 이거(移居)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백성이 왕래하되 그 경내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니, 무방할 듯합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타관(他官)이 이미 진장으로 차출되었더라도 이따금 수령으로 겸임시켜도 안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로 두는 것과 겸임시키는 것의 편부(便否)는 조정에서 숙의(熟議)하여 시행하소서. 또 섬진, 석주관, 팔랑치, 육십치에는 육군(陸軍)을 두고 첨사, 만호는 병사(兵使)에게 예속시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석주 만호(石柱萬戶)는 구례(求禮)를 남원(南原)에 병합시킨다면 전 현감(縣監) 이원춘(李元春)을 그대로



만호로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나 병합하지 않는다면 세 고을의 현감들은 만호를 겸임해 차출하고, 새로 제수(除授)하는 섬진첨사(蟾津僉使)는 재략(才略)이 있고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십분 가려 차출하여 바빠 부임시키소서. 그런 뒤에야 성을 쌓고 군영을 설치하는 따위의 일들을 새로 함께 계획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선조 29년 3월 4일(신미)

辛未 上御別殿引見都元帥權慄 上謂權慄曰 今卿下去討平兇賊 使國家安寧邊圉不聳 慄再拜而對曰 臣之駑劣國人所知而再受重任 將必有 事之患 但體察使既已南下 當一從其指揮矣 國家所恃惟在兩湖而列邑蕩破 人戶流亡 抄軍等事不能成形 器械城郭 一至虛惟南原山城形勢險要 可以把守而本府人心暴悍 素稱難治之邑 猝然有警民必瓦解 不能入守山城 以是爲虞喪亂之後 天將供億 凡百 役專責於兩湖故稍完之邑 反不如經變之處 兩湖之民 皆踰於嶺南 故徵發之際 侵其族屬族屬不堪其苦 又從而逃 以是軍丁虛漏 漸不如前矣 且金德齡所薦崔聃齡者 身長於人 且有英氣 七息之程 一日步往 此真不易得之才也 上曰人言聃齡如土塊信乎 慄曰不然土塊者頑人之稱 此人則不如是耳 上曰能文乎 慄曰 問於聃齡化舍人則聃齡於平日 袖藏而兵書云 問于聃



齡 答曰不知一字云 而言語上 多用文字矣 上曰人或有 晦而不知者矣 惟在用之 金德齡予欲一見 渠已先往矣 幸州之戰 卿之麾下士 今在何處 慄曰 或散在外方 或屬諸陣而南邊勇士 自兵曹列名招來 多至百餘 當此對 疊之時 京城雖重 外藩當固 上曰李忠吉於幸州之役 或云多功或云 毀譽相半 莫適所從卿必知之 慄曰幸州之戰 忠吉爲北門將 終日力戰 頗有其功而至昏飢渴 氣有不平其少弟來告于臣曰 吾兄氣絕 願得清心元 臣與之藥而以他人代北門之將 同列笑之 小臣亦笑曰 寇在氣絕寇退氣蘇眞勇將也 上曰臺評信歟 慄曰臺評豈無所據而亦出於一時嘲弄耳 豈眞 士哉北門劇賊 忠吉防之 斬 多矣 烏得無功 上曰大將者三軍司命其任極重 金應瑞高彦伯之爲人 予未嘗一見面目矣 李福男金敬老何等人也 慄曰福男將種也 年少有勇力 且有文筆曾爲羅州通判以清白名 但氣 太過 蔑視在上之人 是其病痛處也 上曰熊峙之戰身先退北云 果乎 慄曰熊峙之戰鄭潭死之 臣以光州牧把截於 長水任實之間李洸把截於全 而矢盡之故 不得已退舍矣 上曰國事至此 皆由於予 卿其往哉 獎率三軍 討平兇醜 仍以太僕馬及馬粧 賜之 慄再拜而出

[풀이]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을 인견하였다. 상이 권율에게 이르기를,

“지금 경이 내려가거든 흉적을 토평하여 국가로 하여금 안녕



을 누리며 변방이 소란하지 않게 하라.”

하니, 율이 재배(再拜)하고 아뢰기를,

“신의 용렬함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또다시 중임을 받으니, 장차 일을 그르치는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찰사가 이미 남하하였으니 한결같이 그의 지휘를 따르겠습니다. 국가가 믿을 만한 곳은 오직 양호(兩湖)에 있는데 열읍이 탕진하고 인호(人戶)가 유산하여 초군(抄軍) 등의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기계와 성곽도 한결같이 허술합니다. 오직 남원(南原)의 산성(山城)은 그 형세가 험요(險要)하여 수비할 만하나, 본부는 인심이 사나와서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동할 사태가 있게 되면 백성이 반드시 와해되어 산성에 들어가 지키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상란(喪亂)을 겪은 후 천장(天將)의 공대와 온갖 부역을 양호에 전담시키므로, 약간 완전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변란을 겪은 곳만 못합니다. 양호의 백성들이 모두 영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징발할 때 그 족속을 침해하게 되며 그 족속은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또 따라서 몸을 피합니다. 그러므로 군정(軍丁)이 비고 빠져서 점점 전과 같지 못합니다. 또 김덕령(金德齡)이 천거한 최담령(崔聃齡)이란 자는 체구가 남보다 크고 또 영기(英氣)가 있으며 7식(息)이나 되는 길을 하루에 가니, 이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인재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의 말이 최담령은 흙덩이와 같다고들 하는데 사실이 그러한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흠덩이와 같다는 것은 완인(頑人)을 일컫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장에 능한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담령의 측근에게 물으니, 담령은 평소에 옷소매 속에다 병서(兵書)를 넣고 다닌다고 하였는데, 정작 담령에게 물었더니, 담령은 ‘한 글자도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어에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 중에는 자기 재주를 감추어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오직 등용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김덕령을 내가 한번 보고자 했으나 그는 먼저 내려 갔다. 행주(幸州)의 싸움 때 경의 휘하에 있던 군사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혹은 흩어져 외방에 있고, 혹은 다른 진영에 소속되어 있는데, 남변(南邊)의 용사를 병조로부터 열명(列名)하여 불러온 결과 1백여 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적과 대치하고 있는 때를 당해서 경성이 비록 중요하나 외번(外藩)도 견고히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충길(李忠吉)이 행주의 싸움에서 공로가 많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겁장이라고도 말하여 비방과 칭찬이 상반되니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경은 필시 알 것이다.”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행주 싸움에서 충길이 북문장(北門將)이 되었습니다. 종일 역전하여 자못 공로가 있었는데, 날이 어두울 때 이르러 기갈이 들고 기운이 불편하였습니다. 이 때 그의 소제(少弟)가 신에게 와서 고하기를 ‘우리 형이 기절하였으니 청심원(淸心元)을 얻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약을 주어 보내고 다른 사람으로 북문장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동열(同列)이 조소하기에 소신 역시 조소하여 말하기를 ‘적병이 있으면 기절하고 적병이 물러가면 소생하니 참으로 용장(勇將)이군!’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간의 평이 사실인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대간의 평이 어찌 근거가 없겠습니까마는, 또한 한때의 조롱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어찌 참으로 겁장이겠습니까. 북문에 침입한 강적을 충길이 방어하면서 참획한 것이 많았습니다. 어찌 공로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장(大將)이란 삼군(三軍)의 목숨을 맡은 사람이니,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다. 김응서(金應瑞)와 고언백(高彦伯)의 사람됨을 내가 일찍이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 이복남(李福男)과 김경로(金敬老)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복남은 장수의 후예입니다. 연소하고 용력이 있는 데다가 문필(文筆)도 갖추었습니다. 일찍이 나주 통판(羅州通判)이 되어



청백함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다만 기세가 너무 지나쳐 웃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그의 병통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웅치(熊峙)의 싸움에서 자신이 먼저 퇴패(退北)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웅치의 싸움에서 정담(鄭潭)이 죽자 신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장수(長水)와 임실(任實) 사이를 수비하고, 이광(李洸)은 전주(全州)를 수비하였는데 화살이 다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물러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사가 이에 이른 것은 모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경은 어서 내려가서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흉적을 토평하라.”

하고, 이어 태복마(太僕馬) 및 마장(馬粧)을 하사하니, 권율이 재배하고 나갔다.



## ● 선조 30년 10월 13일(경오)

全羅觀察使黃愼狀 啓道內守令等 棄官奔竄者滔滔皆是 亦不無先後遠近之分 而道路阻梗聲聞不通 故近處各官爲先隨所聞別錄以 啓其餘各邑守令則隨後聞見馳 啓計料沿海各官則非如陸路之比 倉庫穀物或可預爲措置 毋致散失而率皆虛棄 以資亂民或多乘時偷竊以爲避亂之資 極爲痛憤姑待查覈馳 啓計料 珍山郡守申澤終始在官奮力討賊 軍散力屈 隱伏林藪爲賊所害 妻子俱被擄 極爲矜惻自 朝廷參酌以示勸懲事 啓下備邊司 驪山郡守李頤棄官避寓 今始還官 全州府尹朴慶新棄城出避 賊勢犯境往他道避亂 全州判官朴瑾棄城出避不知據處 益山郡守李光吉棄官來在巡察使陣 同向錦山 中路遇賊奔避他道 今已還官 金堤郡守高鳳祥遇賊奔避 今已還官 萬頃縣令趙應瑞 最先棄官 避寓境內今始還官 臨陂縣令李山輝最先棄官避寓境內 往助防將陣 今已還官 龍安縣監丁至避寓境內賊勢犯境不知去處 咸悅縣監朴廷吉 自全州失守避寓境內 今已還官 沃溝縣監金希溫避寓境內在助防將陣 今已還官 扶安縣監權省避寓境內今已還官 茂長縣監李覽避寓境內 倭賊入縣後避亂島中 靈光郡守田浹避寓境內 倭賊犯境後避亂島中 高敞縣監文希凱倭賊來犯本道 南原未陷之前棄官還家 今不知所在 井邑縣監李軫棄官來在巡察使陣下 已爲還官 古阜郡守李廷立避寓境內賊勢來逼 避亂島中 金溝縣監韓守性他道避亂今始還官 泰仁縣監朴知述



往他道避亂 今不知所在處 高山縣監崔鐵剛 境內避亂今已  
 還官 錦山郡守洪昌世 倭賊犯境 往他道避亂 今始還官 茂  
 州縣監金百秋往他道避亂今始還官 鎮安縣監吳長往他道避  
 亂今始還官 長水縣監姜復誠往他道避亂今始還官 玉果縣監  
 洪堯佐往他道避亂今始下來 珍原縣監沈倫棄官來在巡察使  
 陣下 賊勢衝斥 未得還官昌平縣令白惟恒倭賊入境最後奔避  
 爲賊所擄僅得逃還 今在道內

【풀이】

전라도 관찰사 황신이 장계하기를,  
 “도내에 관아를 버리고 도망한 수령들이 많지만 선후와 원근  
 의 차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길이 막혀 소식이 불통하므로 근  
 처에 있는 각 고을만 우선 소문에 의해 기록해서 아뢰고, 나머  
 지 각 고을 수령들은 뒤에 듣고 보는 대로 아뢰까 생각합니다.  
 바닷가의 각 관아는 육로(陸路)와 같지 않아서 창고의 곡식을  
 미리 조치해 산실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대개 다 헛되이  
 버려서 난민들이 차지하게 하거나 기회를 틈타 도적질을 해서  
 피란하는 자산을 삼기도 하니, 극히 분통합니다. 우선 더 조사  
 하여 아뢰까 생각합니다. 진산 군수(珍山郡守) 신태(申澤)은 처  
 음부터 끝까지 관아에 남아 분발해 왜적을 쳤는데 군사가 흠  
 어지고 힘이 다해 숲 속에 숨었다가 왜적에게 살해되었고 처  
 자는 모두 사로잡혔으니, 매우 측은합니다. 조정에서 참작해



권징(勸懲)을 보이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관아를 버리고 도망한 수령에 대하여 황신이 아뢰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산 군수(礪山郡守) 이빈(李鰲)은 관아를 버리고 피신했다가 이제야 관아로 돌아왔고, 전주 부윤(全州府尹) 박경신(朴慶新)은 성을 버리고 피신했다가 왜적이 경내에 이르자 타도로 피란갔으며, 전주 판관 박근(朴瑾)은 성을 버리고 피신하여 간 곳을 알 수 없고, 익산 군수(益山君守) 이광길(李光吉)은 관아를 버리고 순찰사의 진중으로 갔다가 함께 금산(錦山)으로 가는 도중 왜적을 만나 타도로 달아났었는데 지금은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김제 군수(金堤郡守) 고봉상(高鳳祥)은 적을 만나 피신했다가 지금은 관아로 돌아왔고, 만경 현령(萬頃縣令) 조응서(趙應瑞)는 가장 먼저 관아를 버리고 경내에 피신했다가 지금 비로소 관아로 돌아왔으며, 임피 현령(臨陂縣令) 이산휘(李山輝)는 가장 먼저 관아를 버리고 경내에 피신했다가 조방장(助防將)의 진중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용안 현감(龍安縣監) 정지(丁至)는 경내에 피신했는데 적이 경내를 침범한 뒤에는 간 곳을 알 수 없고, 함열 현감(咸悅縣監) 박정길(朴廷吉)은 전주가 함락되자 경내에 피신했다가 지금은 관아로 돌아왔으며, 옥구 현감(沃溝縣監) 김희온(金希溫)은 경내에 피신했다가 조방장의 진중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부안 현감(扶安縣監) 권성(權省)은 경내에 피신했다가 지금은 돌아왔고, 무장 현감(茂長縣監) 이남(李覽)은 경내에 피신했다가 적이 고을에 들어온 후에는 섬 속으로



피란했으며, 영광 군수(靈光郡守) 전협(田浹)은 경내에 피했다가 왜적이 경내에 침범한 후에는 섬 속으로 피란했고, 고창 현감(高敞縣監) 문희개(文希凱)는 왜적이 본도에 침범하자 남원이 함락되기 전에 관아를 버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읍 현감(井邑縣監) 이진(李軫)은 관아를 버리고 순찰사의 진아래에 와 있다가 이미 관아로 돌아갔고,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 정립(李廷立)은 경내에 피신했다가 적세가 뿔근해 오자 섬 속으로 피란했으며, 금구 현감(金溝縣監) 한수성(韓守性)은 타도로 피란했다가 이제 비로소 관아로 돌아왔고, 태인 현감(泰仁縣監) 박지술(朴知述)은 타도로 피란하였는데 지금도 있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고산 현감(高山縣監) 최철강(崔鐵剛)은 경내에 피란했다가 지금은 관아로 돌아왔고, 금산 군수(錦山郡守) 홍창세(洪昌世)는 왜적이 경내에 들어오자 타도로 피란했다가 지금 비로소 관아에 돌아왔으며, 무주 현감(茂朱縣監) 김백추(金百秋)는 타도에 가서 피란하다가 지금 비로소 관아로 돌아왔고, 진안 현감(鎭安縣監) 오장(吳長)은 타도에 가서 피란하다가 지금 비로소 관아로 돌아왔으며, 장수 현감(長水縣監) 강복성(康復誠)은 타도에 가서 피란하다가 지금 비로소 관아로 돌아왔고, 옥과 현감(玉果縣監) 홍요좌(洪堯佐)는 타도에 가서 피란하다가 지금 비로소 내려왔으며, 진원 현감(珍原縣監) 심론(沈倫)은 벼슬을 버리고 순찰사 진하에 있는데 왜적이 고을에 가득하여 관아로 돌아오지 못하고, 평창 현령(平昌縣令) 백유항(白惟恒)은 왜적이 경내에 들어올 때 최후에 피신했다가 적에게 사로잡혔었는데



가까스로 도망해서 지금은 도내(道內)에 있습니다.”

● 선조 30년 10월 21일(무인)

十月十二日成貼 全羅道觀察使黃愼狀 啓長水縣監姜復誠牒  
呈內 南原之賊欲爲勦捕率其軍人 初五日進去同日夜半 賊  
已撤去欲爲隱伏於鄉校後峯與 天兵合勢追逐而 天兵生擒一  
斬二級 所率軍李凡年斬一級 倭頭倭衣小劔 並爲輸送又倭  
賊四五百名過去谷 城我 國之人分邊呼唱 無數亂射 一名則  
奴春乞先射 訓練主簿鄭鶴次中顛仆 我國被擄之人十三名率  
來各願歸家並爲放送 倭頭二級割耳 倭衣二件並爲上送事  
啓下備邊司軍功廳回 啓曰黃愼狀 啓軍功人依事目磨鍊後  
令該曹 照例施行何如 啓依允

[풀이]

10월 12일에 성첩(成貼)한 전라도 관찰사 황신(黃愼)의 장계에,

“장수 현감(長水縣監) 강복성(康復誠)의 첩청(牒呈)에 의하면 ‘남원(南原)의 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군인을 거느리고 5일 쳐들어갔는데, 그 날 밤중에 적은 이미 철수하여 향교 뒷산에 숨으려고 하였다. 중국군과 합세하여 추격해 중국군은 1명을 생포하고 2명을 참획하였으며,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인 이범년(李



凡年)이 1명을 참획하였기에 왜적의 수급, 의복, 소검(小劍)을 모두 보낸다.’ 하였습니다. 또 왜적 4백~5백 명이 곡성(谷城)을 지나갈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양쪽에서 함성을 지르고 화살을 무수히 난사하였는데, 왜적 1명을, 노(奴) 춘걸(春乞)이 먼저 쏘고 뒤에 훈련 주부(訓練主簿) 정학(鄭鶴)이 재차 쏘아 넘어뜨렸습니다. 사로잡힌 우리 나라 사람 1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여 모두 놓아보냈습니다. 왜적 두 수급에서 자른 귀와 왜의(倭衣) 두 벌을 모두 올려 보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 군공청(備邊司軍功廳)에 계하하였다. 회계하기를,

“황신이 장계한, 군공이 있는 사람을 사목에 따라 마련한 뒤에 해조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 선조 30년 11월 2일(기축)

正言李爾瞻來 啓曰長水縣監嚴思敬 前爲唐津縣監時罪犯賊汚屢次拿鞠 今不可復擬臨民之官 請 命罷職不叙朝報 注書專爲謄書秘密而近來怠慢日甚 凡係關秘密 全然脫漏或日脯書送 不職甚矣 請 命推考湖南自被兵火 已經數月而未聞有倡義聚兵爲 國家討賊者誠可寒心 近年以來道內士人專不收用 以致人心之疑阻 士氣之推沮者多矣 大湖千里 固人材府庫而當此 國事之危急 顧無一箇忠義底人耶 頃因 下書諭而甄接收

攬之意 且令本道監司 隨材開錄 已爲 啓下而終歸於文具之末 極爲未便 請依已定公事 本道人材隨器錄用 道內守令亦或填差以爲慰悅振澈之舉 上曰依啓

[풀이]

정언 이이첨(李爾瞻)이 와서 아뢰기를,

“장수 현감(長水縣監) 엄사경(嚴思敬)은 전에 당진 현감(唐津縣監)으로 있을 때 장오죄(賊汚罪)를 범하여 여러 차례 나국을 당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임민(臨民)의 관원으로 의망하여서는 안되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조보(朝報)는 주서(注書)가 비밀히 등서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근래 태만함이 날로 심해져 비밀에 관계된 일을 거리낌없이 탈락시키는가 하면, 더러는 날이 저물어서야 등서하여 보내니, 직무를 태만히 함이 너무 심합니다. 추고를 명하소서.



호남은 병화를 입은 지가 이미 여러 달인데도 아직 창의(倡義) 군사를 모아 국가를 위하여 적을 토벌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근년 이래 도내의 사인(士人)이 전혀 등용되지 않아서 인심의 의혹과 사기의 추락을 불러 일으킨 것이 많습니다. 넓은 호남의 천리 땅은 본디 인재의 부고(府庫)인데, 이처럼 나라일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충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저번에 하서(下書)하신 것에 따라 선발하여 수용하라는 뜻으로 하유하였고 또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인재가 있는대로 개록(開錄)하도록 이미 계하하셨는데, 끝내 형식에 불과하게 되고 말았으니, 너무도 미편합니다. 이미 결정한 공사(公事)대로 본도의 인재를 재간에 따라 녹용(錄用)하고 도내의 수령도 더러 전보시켜서 위로하고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하소서.”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 선조 30년 12월 16일(임신)

全羅監司黃愼馳 啓曰雲峯縣監南侃馳報內 縣監以單騎 向  
 荒山碑殿前路 卒遇兇賊四十餘名進退爲難 忘身發射 兩倭  
 中箭目前倒斃 衆賊畏宿奔遑之際 縣監乘隙走避 南原自募  
 將朴景春率軍十五名 自南原追蹤此賊或自南原肩川 或自  
 長水地出設東西 忿意橫行 縣監接戰目覩則我 國之人爲半  
 相難矣 鎮安縣監吳長馳報內 長水縣入據之賊 仍留縣內晝  
 則奔蕩夜則潛伏 放砲一柄諸處以烟火相應 村民逃散無復  
 人烟 倉庫所捧之穀不能守直諸色軍糧正當督捧之時 有此  
 事變 罔知所爲事咸陽之賊 踰入長水諸處作賊官穀所積處  
 已爲灰燼兩班黃子堅等十餘人 逢賊被害云 大概此賊僅至百  
 餘名 晝則登山夜則掩襲 些小零賊留連搶掠而雲峯南原守令  
 每挖孤軍 一不追捕 兵使李光岳 防禦使元愼 方在南原而亦  
 不能合力截殺 致令人物多數被擄 極爲痛憤 南原府使李德  
 弼 雲峯縣監南侃 已爲從輕重決杖而督責兵使以下諸將 使  
 之分病把守 嚴飭待變而長水縣監姜復誠賊犯本縣 至於焚掠  
 官倉而誘以已適 不爲行公使軍務之事 委諸留衛將 賊徒去  
 留亦不馳報極爲駭愕 自 朝廷處置何如

[풀이]

전라도 관찰사 황신(黃愼)이 치계하였다.

“운봉 현감(雲峯縣監) 남간(南侃)의 치보에 ‘현감이 단기(單



騎)로 황산(荒山)의 비전(碑殿) 앞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흉적 40여 명을 만나 진퇴 양난이 되었는데, 자신을 생각치 않고 활을 쏘아 두 명의 왜적을 맞혀 눈앞에서 쓰러뜨렸더니 적들이 위축되어 경황 없이 달아나므로 현감이 이 틈을 타서 도피를 하였다. 이 때 남원에서 자원한 장수 박경춘(朴景春)이 군사 15명을 거느리고 남원에서부터 이 적을 추격하였다. 이 적들은 남원 견천(肩川)이나 장수(長水) 일대에서 동서로 출몰하며 몇대로 종횡하는데, 현감이 접견을 하며 직접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반이나 섞여 있었다.’ 하였고, 진안 현감(鎭安縣監) 오장(吳長)의 치보에는 ‘장수현에 들어와 있는 적이 고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낮에는 분탕질하고 밤에는 잠복하고 있다. 대포 한 발을 쏘면 여러 곳의 적이 연화(烟火)로 서로 응답하는데 촌민이 도망쳐 흩어져 인연(人烟)이 없으므로 창고에 저장한 곡식도 지킬 도리가 없다. 제색(諸色)의 군량을 마침 독촉하여 받아들여야 할 때에 이러한 사변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함양(咸陽)의 적도 장수로 넘어 들어가 여러 곳에서 노략질하므로 관곡(官穀)을 저장해 둔 곳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 양반 황자견(黃子堅) 등의 10여 인도 적에게 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적은 겨우 1백여 명으로서 낮에는 산에 올라가 있고 밤에는 기습해옵니다. 사소한 영적(零賊)이 그칠줄 모르고 노략질하는데도, 운봉과 남원의 수령은 매번 고군(孤軍)이라 핑계하면서 한번도 추격하지 않았고, 병사 이광악(李光岳)과 방어사 원신(元愼)이 현재 남원에 있으면서도 힘을 합쳐 무찌



르지 않으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매우 통분합니다. 남원 부사 이덕필(李德弼)과 운봉 현감 남간은 이미 경중에 따라 결장(決杖)하였으며, 병사 이하 제장을 독책하여 군병을 나누어 파수하고 경계를 삼엄히 펴서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장수 현감 강복성(康復誠)은 적이 본현을 침범하여 관창(官倉)을 노략질하고 불지르는데도 체직되었다는 핑계로 행공(行公)을 하지 않고 군무를 유위장(留衛將)에게 일임하는가 하면 적들의 거류(去留)조차 치보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조정에서 처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 ● 선조 32년 8월 19일(을미)

掌令崔東立來啓豐德郡守趙應祿性本迂拙 年且衰耗 大小官務 悉委下吏到任數月 民怨日深請 命罷職本郡介於兩都之間 其殘弊比他邑 尤重而近因守宰匪人 蘇復無期文官門蔭中一 慈祥勤幹之人 各別擇遣長水縣監都與國 爲人無狀起復居官 飲酒食肉無異平日凡在見聞 莫不唾鄙如此敗倫傷風之人 不可齒諸衣冠之列請 命罷職不叙 南方雖曰賊退足以吹蠶 凡防備之事所當急急措置 以爲善後之策而今者兵曹以湖南陸軍 依平時使之上番 爲今之計 湖南陸軍則莫如仍留本道 以沿海之軍屬舟師 以山郡之卒屬兵營 各使操練以備緩急 則事甚便



當 當初兵曹 啓請之意以其既罷束伍軍則派定 幫子不足故也  
而目今唐將幾盡撤還 雖除此一道之軍似無不足之理 而湖南  
之事方爲上緊 不可一日而忘南 顧之憂請兵曹公事 勿爲舉行

[풀이]

장령 최동립이 와서 아뢰고 [윤두수의 일임]이어 아뢰었다.

“풍덕 군수(豐德郡守) 조응록(趙應祿)은 성품이 본래 오활하고 나이 또한 쇠모하여 크고 작은 직무를 모두 하리(下吏)에게 위임함으로 인해 도입한 지 두어 달 만에 백성들의 원망이 날로 깊어가니, 파직시키소서. 본 고을은 양도(兩都)의 사이에 끼여 그 잔폐함이 다른 고을에 비해 더욱 극심한데, 근래 수재(守宰)가 적격자가 아니어서 소복시킬 기대가 없습니다. 문관이나 문음(門蔭) 중에 자상하고 근실한 사람 하나를 각별히 선임해 보내소서.

장수 현감(長水縣監) 도여국(都與國)은 위인이 무상(無狀)하여 상중(喪中)에서 기복(起復)되어 군수가 되었는데 술마시고 고기 먹는 것을 평일과 다름 없이 하고 있으므로 보고 듣는 사람이 모두 침뱉으며 비루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윤리를 무시하고 예속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의관(衣冠)의 반열에 둘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 것을 명하소서.

남방(南方)에 왜적이 물러갔다고는 하나 전철을 염려하여 방비하는 일을 급급히 조치함으로써 선후책(善後策)을 삼아야 하



는데, 지금 병조(兵曹)에서는 호남의 육군을 평시와 같이 번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세를 보면 호남의 육군은 그대로 본토에 머물러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연해의 군사는 주사(舟師)에 분속시키고 산군(山郡)의 군사는 병영(兵營)에 분속시켜 각각 조련하면서 위급할 때에 대비하게 하면 일이 매우 타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병조가 계청(啓請)한 뜻은, 이미 속오군(束伍軍)을 파함으로 해서 파정(派定)한 방자(幫子)가 부족하기 때문이나 지금은 중국 장수가 거의 다 철수해 돌아갔으니, 이 한 도(道)의 군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남의 사세가 지금 제일 긴급하니 하루라도 남방을 돌아보는 걱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조의 공사를 거행하지 마소서.”



● 선조 34년 8월 5일(경자)

諫院 啓曰前啓柳塗事長水縣監尹景男 性本愚妄 濟以苛虐  
民不堪其苦 蕩敗殘縣 漸就無形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請  
命罷職 答曰允柳塗不須違

[풀이]

간원이 아뢰기를,

“유도(柳塗)의 일은 전에 아뢰었습니다. 장수 현감(長水縣監) 윤경남(尹景男)은 성품이 본디 우망(愚妄)한 데가 가혹한 정사를 하여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탕패하고 잔약한 고을이 점차 형편없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희한다. 유도는 체직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 ● 선조 39년 11월 28일(계사)

備邊司行移兵曹節該 啓下教軍器寺副正金得光 上疏內節該  
 京中都城之設 所以衛內捍外以備不虞而今則視同一尋常之  
 垣籬 凡城頭發立之具專廢不舉極爲寒心 臣之愚意以爲都城  
 內 別設中左右三廂大將自白岳 至南山東則稱左廂西則稱右  
 廂又於城上 其緊歇 或十堞爲一格臺 或十五堞爲一格臺 或  
 二十堞爲一格臺 各有護統明其界限 城外內烟家諸色軍士  
 有不足之數 使京畿各官抄出丁壯前期分部 每於春秋農隙  
 列立城頭習以爲常 使人人知其所屬之處 必無臨變不赴之患  
 各其格臺 列置弓矢戰具 且積紫于規堞之前 多備釜鼎呂有  
 逼迫之勢 沸水直注於賊頭 又多積石塊隨上隨下 則前者難  
 進 後者自退取勝之期 坐可見矣 畿內各官守令 亦皆聞變領  
 軍一齊馳到于所屬之地 並力合協加守則守 可攻則攻 中廂  
 則亦審機量敵 率其精銳急到犯城之處 協力擊之 則雖百萬  
 強賊豈有攔入之理乎 壬辰之事不忍更陳 不教是習 此其已  
 經之驗也 其時錦山之賊 龍潭鎮安等官 盡數焚蕩而直下南  
 原之日 臣以長水伏兵將據隱積石等事如前所陳連續放下 賊  
 不得南下還遁慶尙道 此臣已驗者也 上疏據司 啓目粘連 啓  
 下京城守禦之策 比外處尤爲緊重疎內陳不無意見 但以今物  
 力城池器械 恐難卒備 令該司商量緊歇經重 別議施行何如  
 啓依允以此移關



## [풀이]

비변사가 병조에 행이(行移)하였다.

“계하 하신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김득광(金得光)의 상소에 ‘서울에 도성(都城)을 설치한 까닭은 대내(大內)를 호위하고 외적을 막아 뜻밖의 사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의 담장과 동일하게 여겨 성 위에 설치하였던 모든 전구(戰具)들이 전부 낡아서 쓸모 없이 되었으니 매우 한심스럽다. 신의 의견에는, 도성 내에 중, 좌, 우(中左右) 삼상(三廂)을 별도로 설치하여 백악산(白岳山)에서 남산까지의 동쪽 부분은 좌상(左廂)이라 하고 서쪽은 우상(右廂)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성 위에는 요긴하고 덜한 정도를 헤아려 10첩(堞)을 격대(格臺)로 삼거나 혹은 15첩을 1격대로 하거나 혹은 20첩을 1격대로 삼아 각기 통할하는 임무를 주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성 내외의 연가(烟家)와 제색(諸色)의 군사에 부족된 숫자가 있으면, 경기의 각 고을로 하여금 장정들을 뽑아 내게 하고 기일에 앞서 부서(部署)를 나누어서, 항상 봄 가을의 농한기에 성 위에 늘어 세워 연습하게 하는 것을 상법(常法)으로 삼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자신들의 소속된 부서를 알고 있게 한다면, 사변에 임하여 나오지 않는 근심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격대에는 궁시(弓矢)와 전구(戰具)를 갖추어 두고 규첩(規堞) 앞에는 나뭇단을 쌓아 둘 것이며 가마솥을 많이 준비하여 두었다가 사세가 급박하게 되었을 때는 물을 끓여 적의 머리에 쏟아 붓게 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돌맹이를 쌓아 두었



다가 아래 위에서 던지게 하면 앞선 자는 진격하기 어렵게 되고 뒤에 있던 자는 저절로 물러나게 될 것이니, 기필코 승리하게 될 것은 앞서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경기의 각 고을 수령들도 모두 사변을 듣게 되면, 일제히 군사를 거느리고 소속된 곳으로 달려가 힘을 합하여 지킬 만하면 지키고 공격할 만하면 공격하게 해야 한다. 중상(中廂)에서도 사기(事機)를 살피고 적을 헤아려 정예군을 거느리고 침범당한 곳으로 급히 달려가 협력하여 공격하게 한다면, 백만 명의 강적이라고 한들 어찌 마구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임진년의 일을 차마 다시 진달할 수는 없으나, 그 때는 가르치지 않았어도 익숙하게 해 내었으니 이것은 이미 경험하였던 일이다. 그 당시 금산(錦山)에 있던 왜적들이 용담(龍潭), 진안(鎭安) 등의 고을을 모두 분탕질하고 곧바로 남원(南原)으로 내려올 때 신이 장수(長水)의 복병(伏兵)으로 있으면서 숨은 곳에다 돌을 모아두는 등의 일을 앞서 진달한 방법과 같이 하여 연속 돌을 내려던졌더니, 왜적이 더 남하하지 못하고 도로 경상도로 도망하였다. 이것은 신이 경험하였던 일이다'라고 하였다. 상소에 의거한 본사의 계목(啓目)에 '계하 하신 것을 점련하였다. 경성을 수어하는 대책은 다른 곳에 비하여 매우 긴요한 일이므로 상소에 진달한 바가 의견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물력으로는 성지(城池)와 기계들을 줄지에 갖추기에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해사로 하여금 긴요한 정도의 경중을 잘 헤아려 별도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그대로 윤허하시었다. 이에 의거하여 병조에 이관(移關)하는 바이다.”



● 선조수정실록 25년 7월 1일(무오)

南原判官 盧從齡聞賊兵自龍潭向長水縣 棄陣而走 府使尹安性遁入山谷 李由義 軍亦潰亂 入城中搶掠官庫 一時蕩盡 既而賊不至府使還府斬亂民數人 曉諭安集而府藏已失 監司追盧從齡

【풀이】

남원 판관 노종령(盧從齡)이 적병이 용담(龍潭)에서 장수현(長水縣)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영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부사 윤안성(尹安性)은 산골짜기로 도망하여 숨어버리자 이유의(李由義)의 군사도 무너졌는데 성중(城中)으로 난입하여 관고(官庫)를 노략질하여 일시에 탕진되었다. 얼마 뒤에 적이 오지 않자 부사가 본부로 돌아와 난민(亂民) 몇 사람의 목을 베고 안집(安集)하도록 효유했으나 본부에 보관했던 재물은 이미 탕진되었다. 감사가 추후로 노종령을 결장(決杖)하고 환임(還任)시켰다.





● 광해 1년 2월 12일(갑자)

持平任章啓曰 李覺削去仕版李承業定配 禁府堂上郎廳推考  
 長水縣監奇蘭爲人武狀加以貪鄙前爲平市暑直長時凡差役之  
 事 與市民分割聞者眞不唾罵 今授本職專事 剝割托以天使時  
 雜物濫徵民間 公然馱輸於其家如此之人 不可在官請命罷職  
 我國用人不廣文武之外蔭才入仕 非生進則必以取才擬確有  
 寸學表著者 銓曹選同無路抱才者屈而不售庸雜先登仕路之  
 混濁 亦由於此京外顯有才學之人不拘常規爲擇用 今吏曹擇  
 承傳施行 慶州爲府物衆地大素稱雖治府尹吳滢年旣衰怠  
 棄官事專不坐衙 民受其弊 請命罷職其代以有聲望人各別擇  
 送 答曰李覺旣罷其職不須至於削版 禁府堂上郎廳李承業事  
 已諭不允 他餘事伏啓

[풀이]

지평 임장이 아뢰기를,  
 “이각(李覺)은 사판에서 삭제하고, 이승업(李承業)은 정비하고,  
 금부(禁府)의 당상과 낭청은 추고하소서. 장수 현감(長水縣監)



기란(奇蘭)은 사람됨이 무례한데다가 탐욕스럽고 비루하기까지 합니다. 전에 평시서(平市署) 직장(直長)으로 있을 때 차역(差役)의 일을 부정하게 처리하여 거기에서 생긴 이익을 시민(市民)과 나누어 먹었는데 듣는 이들이 모두 침을 뱉고 욕하였습니다. 지금 본직에 제수되어서는 오로지 가렴주구만을 일삼아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사용할 잡물(雜物)이란 핑계로 법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민간에서 징수해서 공공연하게 제 집으로 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관직에 있어서는 안되니, 파직하소서.

우리 나라는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넓지 못하여 문, 무과(文武科) 이외에 음보(蔭補)나 재능(才能)으로 입사(入仕)하는데, 생원, 진사가 아니면 반드시 취재(取才)로써 의망(擬望)해 임명하므로 비록 재능과 학식이 드러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조(銓曹)가 선발해 등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가진 자는 막힌 채 뜻을 펴지 못하고 용렬하고 잡된 자들이 먼저 벼슬에 오르니, 사로(仕路)의 혼탁함이 또한 이에서 연유합니다. 그러니 경외(京外)의 재능과 학식이 드러난 사람은 상규(常規)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골라 등용하되, 이조로 하여금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경주부(慶州府)는 사람이 많고 땅이 넓어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윤 오운(吳漙)은 나이가 이미 노쇠하여 관사를 게을리하여 내버려두고서 전혀 관아에 앉아 있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파직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골라 그 대신으로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각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사관에서 삭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금부 당상과 낭청 및 이승업의 일은 이미 유지하였다. 윤희하지 않는다. <그 밖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 광해 2년 12월 28일(기해)

命賜靈光郡守 尹煌, 淳昌郡守沈宗道 臨陂縣令朴顏賢 南平縣監趙維韓 長水縣監李繼祉 靈巖郡守申景澄 海南縣監洪植 綾城縣令尹燧 潭陽府使李安訥 務安縣監 白興南 各表裏一襲以 本道觀察使尹暉褒啓也

[풀이]

영광 군수(靈光郡守) 윤황(尹煌), 순창 군수(淳昌郡守) 심종도(沈宗道), 임피 현령(臨陂縣令) 박안현(朴顏賢), 남평 현감(南平縣監) 조유한(趙維韓), 장수 현감(長水縣監) 이계지(李繼祉), 영암 군수(靈巖郡守) 신경징(申景澄), 해남 현감(海南縣監) 홍직(洪植), 능성 현령(綾城縣令) 윤수(尹燧), 담양 부사(潭陽府使) 이안눌(李安訥), 무안 현감(務安縣監) 백흥남(白興南)에게 각각 옷감 한 벌씩을 하사하라고 명하니, 본도 관찰사 윤휘(尹暉)가 포상할 것을 아뢴 때문이었다.



● 광해 6년 7월 3일(계축)

以柳希亮爲典翰 任碩嶺掌令 南以俊弼善 柳孝立兵曹正郎  
 俞晉曾兵曹正郎 曹明晶鄭文翼副校理 朴來章修撰 朴自凝  
 李大燁司書 李益燁修撰 安弘量注書 李弘燁說書 朴樾刑曹  
 判書 南以恭兵曹參判

【풀이】

<도목정이 있었다. 이극신(李克信)을 우통례로, 이구징(李久澄)을 종부시 정으로, 윤황(尹滉)를 예빈시 정으로, 남벌(南拔)을 제용감 정으로,> 유희량(柳希亮)을 전한으로, <윤수(尹燧)를 상례로, 황여일(黃汝一)을 사예로,> 임석령(任碩齡)을 장령으로, 남이준(南以俊)을 필선으로, 유효립(柳孝立)을 병조 정랑으로, 유진증(俞晉曾)을 병조 정랑으로, <오환(吳煥)을 직강으로, 이경여(李敬興)를 직강으로,> 조명정(曹明晶)을 <부교리로,> 정문익(鄭文翼)을 부교리로, <한명욱(韓明旭)을 예조 좌랑으로, 임성지(任性之)를 예조 좌랑으로,> 박내장(朴來章)을 수찬으로, 윤지경(尹知敬)을 전적으로, <오여온(吳汝穩)을 전적으로,> 박자응(朴自凝)을 사서로,李大燁(李大燁)을 사서로, 이익엽(李益燁)을 수찬으로, 안홍량(安弘量)을 주서로, 이홍엽(李弘燁)을 설서로, <이이침(李爾瞻)을 예조 판서로, 유희분(柳希奮)을 문창 부원군(文昌府院君)으로,> 박건(朴樾)을 형조 판서로, 남이공(南以恭)을 병조



참판으로, <현집(玄楫)을 제주 목사로, 이충(李忠)을 수원 부사로, 이정표(李廷彪)를 강화 부사로, 정호서(丁好恕)를 해운 판관(海運判官)으로, 이윤우(李潤雨)를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홍명형(洪命亨)을 북청 판관(北靑判官)으로, 박승길(朴升吉)을 예산 현감(禮山縣監)으로, 하성(河性)을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삼았다.

● 광해 10년 3월 25일 (갑신)

假都事李垓龍潭罪人黃大勳等 十四名拿來 都事李吉元長水罪人韓應祺等 十四名 全州罪人得龍等四名 拿來名出於匿名書者也

[풀이] —————

가도사(假都事) 이해(李垓)가 용담(龍潭)의 죄인 황대훈(黃大勳) 등 14명을 잡아 왔다. 도사 이길원(李吉元)이 장수(長水)의 죄인 한응기(韓應祺) 등 14명과 전주(全州)의 죄인 득룡(得龍) 등 4명을 잡아 왔다. 이들은 모두 익명서에 이름이 나온 자들이었다.



● 광해 10년 3월 28일(정해)

假都事鄭克岫長水罪人兪繼尙等二十九名拿來 名出匿名書者也

[풀이] \_\_\_\_\_

가도사(假都事) 정연수(鄭克岫)가 장수(長水)의 죄인 유계상(兪繼尙) 등 29명을 잡아 왔는데, 이는 익명서에 이름이 나온 자들이었다.

● 광해 10년 4월 19일(무신)

全羅監司李弘胄狀啓祇受有旨內 湖南兇書愛春供稱處仁作之云 果如是言兩安是真兇逆卿何不枚舉啓聞乎 處仁等懷嫌一鄉作書謀陷固不無此理同道及他道許多人亦 皆有嫌情乎 卿其密啓事下諭矣 愛春招辭據安處仁情迹可疑之狀已爲馳啓更加詳問則道內各官被拿之人皆是干連於長水一鄉 今此兇書似是專爲長水而發干連長水之人并入於名錄中懷嫌一鄉之說道內同然云



【풀이】

전라 감사 이홍주(李弘胄)가 장계(狀啓)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받은 유지(有旨) 안에 ‘호남의 흉서(凶書)를 안처인(安處仁)이 지었다고 애춘(愛春)이 공초(供招)하였다는데, 과연 이 말대로라면 두 안가(安哥)야말로 흉악한 역적이라 할 것인데, 경은 어찌하여 하나하나 들어서 계문하지 않았는가? 처인 등이 한 고을 모두에 원한을 품고서 흉서를 만들어 모함할 이치도 진정 없지 않으니, 같은 도내 및 다른 도의 허다한 사람들 역시 모두 원망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지 경은 밀계(密啓)하도록 하라’고 하유하셨습니다.

애춘의 초사(招辭)에 의거하여 안처인의 정적(情迹)이 의심스러운 정상에 대해서는 이미 치계(馳啓)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자세히 물어본 결과 도내 각 고을에서 잡혀 온 사람들 모두가 장수(長水) 한 고을과 관련이 있었으니, 이번의 흉서는 전적으로 장수 사람들 때문에 나온 것인 듯합니다. 장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명록(名錄)에 기입하였는데, 온 고을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내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 때 안처인이 스스로 흉서를 지어내어 장수 한 고을을 무함하는 바람에 호남과 영남 사이에 파급되어 체포된 자들이 1백 수십 인이나 되었는데 국청을 설치한 몇 달 동안 구속된 사람들이 감옥에 가득하였다. <이때의 추안 문서(推案文書)는 없어졌으므로 기록하지 못한다.>]



## ● 광해 10년 4월 27일(병진)

討捕使趙纘韓狀啓 臣到全州分付軍官變服微行遍搜智異山  
大小寺刹及庵子窟穴可疑處皆已搜覓 又差他軍官出入淳昌  
等七郡表表山寺無不譏察事分付後 臣自全州至南原 又今會  
知朴賊樣子梁元男率一人 仍向德裕山使之出入譏察行 求禮  
逢着會見軍官則已盡搜察無可疑處云故 臣還到全州矣 大概  
因長水匿名書之獄人心洶洶 情私嫌謀陷之蹟朝廷方爲查處  
云故 近來則民情稍乏專意農作更無詳察之事然待他軍官濟  
到後卽 向公洪道矣 啓下備邊司

[풀이]

토포사(討捕使) 조찬한이 장계를 올리기를,

“신이 전주(全州)에 도착한 뒤 군관(軍官)에게 분부하여 복장을 바꿔 입고 미행(微行)해서 지리산(智異山)의 크고 작은 사찰 및 암자, 굴혈(窟穴) 등 의심할 만한 곳을 수색케 하여 모두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군관을 차출하여 순창(淳昌) 등 일곱 고을의 잘 알려진 산사(山寺)를 드나들면서 빠짐 없이 기찰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신이 전주에서 남원(南原)으로 가서 또 박적(朴賊)의 용모를 아는 양원남(梁元男)으로 하여금 한 사람을 대동하고 곧장 덕유산(德裕山)으로 가서 그 곳을 드나들며 기찰하게 하였습니다. 또 구례(求禮)로 가서 저번에



보았던 군관을 만났더니 ‘모조리 수색해 보았지만 의심할 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기에 신이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대개 장수(長水)의 익명서(匿名書)로 인한 옥사(獄事) 때문에 인심이 흉흉하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모함한 흔적을 조정이 바야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백성이 조금 안정되어 오로지 농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필 일이 없기에 우선 다른 군관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공홍도(公洪道)로 향할까 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 하였다. [안처인(安處仁)과 안후인(安厚仁) 등이 ‘박치익(朴致毅)가 호남에 몸을 숨기고 패거리를 모아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무고하였기 때문에 조찬한을 보내 산골짜기의 사찰, 암자, 굴혈 등을 두루 수색하는 일이 있었다.]

### ● 광해 14년 8월 15일(무인)

捕獲在逃逆賊仇景祿于長水地

[풀이]

도망 가있던 역적 구경록(仇景祿)을 장수(長水) 땅에서 체포하였다. [경록은 장수 사람으로 처음에는 어보(御寶)를 위조한 것 때문에 포도청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박경신(朴敬信), 박경립(朴敬立)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것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하였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이첨 부자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세 마리의 용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른바 경립과 경신은 바로 이이첨과 그의 아들 이원엽(李元燁)과 친한 사이인데 <근자에 경립과 경신의 이름이 이미 역적의 공초에서 나왔으므로> 이첨 부자는 여기에 연루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때에 경록은 거둬 고문을 당해 정강이뼈가 다 부러졌는데, 이첨은 자신의 노비인 보남(甫男)을 시켜 공공연하게 의금부의 옥에 들어가서 그에게 썩은 칼과 족쇄를 벗긴 후 업고 옥문을 나와 원엽의 집에 숨겨 두었다가 곧 달아나게 하였다. <당시> 입직했던 도사 홍종해(洪宗海)는 바로 원엽과 동서간이고, 서리(書吏) 백경진(白景珍)은 이첨을 모시고 다니는 아전이였기 때문에 서로 짜고 죄수를 탈옥시킨 것이다. 종해 등은 잡아 가두었다가 얼마 지나서 석방하였다. 그리고 경록은 선산(善山) 땅에 숨어 있으면서 장수(長水)에 왕래하였다. 이 때에 이이첨 부자가 역적 구경록을 탈출시켰다는 말이 중외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으나 흉악한 자들의 기세가 한창 성했으므로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이첨은 자신들의 형적을 가리기 위하여 자신의 가신(家臣)인 이정신(李鼎臣)을 장수 현감으로 임명하고 이원엽과 이대엽으로 하여금 먼저 상소하여 경록이 장수에 숨어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또 정신으로 하여금 글을 올려 원엽 등의 지휘를 받아 잡았다고 말하게 하였다. 마침내 경록을 잡아 보고하였는데, 경록의 공초에서 비록 이첨 부자가 연루되었지만 상소하여 체포하게 한 혐의 때문에 경록이 보복하려 한 것이라고 하여 심리하지 않았으니, 그 계책이 교묘하



다 하겠다. 그리고는 관례에 따라 신문은 하면서도 끝까지 다스리지 않고 오랫동안 가두어두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계해년 반정이 일어난 뒤에 또 옥에서 도망하였으나, 뒤에 붙잡혀 처형당하였다.]

● 광해 14년 8월 26일(기축)

長水縣監李鼎臣以仇景祿捕捉事上疎自陳 刑房承旨朴弘道啓曰李鼎臣前後不捕仇賊之罪 臣據獄體啓請拿囚 而此答未下鞫廳大臣繼以請拿而堂上以仇賊已捕徐爲更議事 此下矣仇賊雖已見捕乃在他人之手則渠之失捕之罪 尙在身上命送三人而二人已囚鞫廳 請拿囚議處爲答則鼎臣特一未囚之罪人耳渠何敢陳自明之疎 有若爲已功者啓哉 且其疎中有揣摩仇賊之意先及於疎中也 討逆之法至嚴且重 此臣之所以不敢輕易捧疎以入待一院長官之出仕矣 今聞鼎臣到處以臣等之不入渠疎爲非云 臣等入之則討逆不嚴有傷鞫獄之體面不入則鼎臣深疾之言無已不得已捧入之意敢啓

[풀이]

장수 현감(長水縣監) 이정신(李鼎臣)이 구경록(仇景祿)을 체포하는 일 때문에 상소하여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형방 승지 박홍도(朴弘道)가 이에 대해 아뢰기를,



“이정신이 전후로 역적 구경록을 체포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신이 옥체(獄體)에 근거하여 잡아 가둘 것을 계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 비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국청의 대신들이 계속해서 그를 잡아오자고 청하였으나 성상께서는 ‘역적 구경록이 이미 체포되었으니, 천천히 다시 의논하도록 하자’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역적 구경록이 이미 체포는 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잡힌 것이니, 그에게 역적을 잡지 못한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두 사람이 이미 잡혀 구금되었고, 국청에서 잡을 것을 청하자 ‘의논해 처리하라’고 답하셨으니, 그렇다면 정신은 단지 아직 가두지 않은 하나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스스로 변명하는 소장을 올려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의 소장 가운데는 역적 구경록의 생각을 미루어 헤아리면서 자신에게 영향이 미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역적이 아직 원정을 바치기도 전에 어떻게 감히 역적의 뜻을 미리 소장 가운데에 언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적을 치는 법은 지극히 엄하고도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신이 감히 경솔하게 <소장을> 봉입하지 않고 정원의 장관이 출사하기를 기다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정신은 도처에서 신들이 자신의 소장을 봉입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들이 봉입한다면 역적을 치는 법이 엄하지 않아서 국옥(鞠獄)의 체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봉입하지 않으면 정신의 매우 미워하는 말이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할 수 없이 봉입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됩니다.>”

하였다.

[홍도(弘道)는 처음에 이이첨을 섬겨 부자간이 되기로 약속하여 전후로 화려한 관직을 주체넘게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다 이첨이 그를 품어서 길러준 것이었다. 홍도는 또 몰래 인군이 사랑하는 김상궁(金尙宮)과 결탁하여 인군의 총애를 받아 성세(聲勢)가 이첨과 서로 비등하게 되었다. 이에 홍도는 마침내 이첨을 잡을 생각을 내어 이 옥사를 이용하여 이첨을 잡으려고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비록 이첨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을 분하게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홍도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을 미워하였다.]





● 인조 1년 4월 11일(경오)

命致祭權譚趙守倫崔沂黃赫等錄用其子孫 赫字晦之長水人  
長溪府院君廷彧子也 萬曆庚辰 文科壯元傳承政院承旨 壬  
辰之變膺保護王子之 命至會寧叛民執王子一行 以與賊及其  
歸 當路娼嫉者 摘取陷賊時文字中以深文 初謫理山其後量  
移信川 至壬子申慄教唆死囚 構成逆獄蓋赫家曾與慄之祖點  
因事相詰 遂成仇怨以此慄陰誘誣引 遂逮獄杖死 守倫字景  
至 豐壤人應教廷機之子 中己卯司馬小學於成渾之門學務爲  
已 操守貞介安貧固窮訓誨後生 曾以大臣薦晚就蔭  
仕 宰二縣皆有去後思及壬子獄坐書於被逮以死 沂字清源  
海州人 宣廟朝登文科歷敬三司官至觀察 清謹端懿律已甚嚴  
廢朝時出牧海州 海獄起遂被逮拷死 人皆哀之 譚字汝章號石  
洲 安東人故參議擘之子也 爲人倜儻不羈言論筌豁力學能  
文尤工於詩格律清麗造語精妙 近世論詩家上乘必以譚爲首  
早拋舉子業除官不就放浪江湖間 唯以詩酒自娛凡有壹鬱不  
平必以詩發之 每聞朝家得失亦作詩嘲之 以故詠柳一絕忤於  
戚畹 及旨壬子坐詩案被刑以死



풀이

권필(權鞞), 조수륜(趙守倫), 최기(崔沂), 황혁(黃赫) 등에게 치제(致祭)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도록 명하였다.

황혁의 자는 회지(晦之)로 장수인(長水人)이며 장계 부원군(長溪府院君) 황정욱(黃廷彧)의 아들이다. 만력(萬曆) 경진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승정원 승지에 전보되었다. 임진년 변란 때에 왕자를 보호하라는 명을 받고 회령(會寧)에 이르렀는데, 반민(叛民)들이 왕자의 일행을 붙잡아 적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다가 귀환하게 되어서는 그를 미워하던 당시 집권자들이 적에게 붙잡혀 있을 때 보냈던 서신의 문자를 끄집어 내어 가혹한 율문을 적용하였으므로 처음 이산(理山)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신천(信川)으로 양이(量移)되었다. 그 뒤 임자년에 이르러 신율(申慄)이 사형수를 사주하여 역옥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는 대체로 황혁의 가문이 일찍이 신율의 조부 신점(申黈)과 어떤 일로 서로 다투다가 마침내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신율이 몰래 유도하면서 그를 무고하여 이끌어 들이게 하였는데, 마침내 옥사에 연루되어 장사(杖死)하였다.

조수륜의 자는 경지(景至)이며 풍양인(豐壤人)으로 응교 조정기(趙廷機)의 아들인데, 기묘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어려서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힘쓰고 절조를 굳게 지켰으며 곤궁한 생활 속에서도 안빈락도하였으며 후생을 가르쳤다. 일찍이 대신의 천거를 받아 늦게야 음관(蔭官)으로 벼슬 길에 나아가 두 고을의 수령을 역임



하였는데 모두 그가 떠난 뒤에까지 고을 백성들이 그를 흠모하였다. 그러다가 임자년의 옥사 때에 서찰 문제로 연좌되어 체포된 뒤 죽었다.

최기의 자는 청원(淸源)인데 해주인(海州人)이다. 선묘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를 역임한 뒤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는데, 청렴하고 단정했으며 자기 단속에 매우 엄하였다. 폐조 때에 해주 목사(海州牧使)로 나갔는데, 해주 옥사(海州獄事)가 일어나 마침내 잡혀 고문을 받고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다.

권필의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로 안동인(安東人)이며 고(故) 참의 권벽(權擘)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기개가 커 얹매이는 성품이 아니었으며 언론이 명쾌했고 학문에 힘쓰면서 글을 잘 지었는데 특히 시에 능했다. 그의 시는 격률(格律)이 맑고 어휘 구사가 정묘하여 근세에서 시가(詩家)의 상승(上乘)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그를 첫째로 거론한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포기하였고 관직에 제수되어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강호를 방랑하면서 오직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스스로 즐겼다. 마음이 언짢고 우울할 적이면 반드시 시를 지어 발산했으며 조정의 잘못된 일을 들을 때마다 또한 시를 지어 조롱하곤 하였다. 이 때문에 버드나무를 읊은[詠柳] 절구(絶句) 한 수가 외척에게 저촉되어 미움을 받았는데, 급기야 임자년에 이르러 시안(試案)에 연좌되어 형을 받고 죽었다.



## ● 인조 2년 2월 11일(을미)

平明 大駕到葛院長水縣監張遇漢 領兵數百 迎謁路左 上駐馬慰諭命屬於漢南都元帥

[풀이]

해뜰 무렵에 대가가 갈원(葛院)에 이르니 장수 현감(長水縣監) 장우한(張遇漢)이 군사 수백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맞이하여 뵈었다. 상이 말을 멈추어 위유(慰諭)하고 한남 도원수(漢南都元帥)에게 예속시키라고 명하였다.

## ● 인조 2년 7월 12(갑자)

幼學黃爾徵黃衷洪命一等上疏曰 臣高祖臣廷或歷事兩朝榮寵罕比位躋峻秩 名載勳書而抱冤窮泉不得瞑目 則非但在子孫爲無涯之痛 其於國家亦未必不爲欠典矣 若其被誣受禍之由則前已略及於疏中 而且錄上當初所呈廟堂之文已經 睿覽則其間曲折 聖明固已洞燭矣 大概不過以馳檄之際 語侵當路故適此事會以作修郟之地 乃就文字之末去其真狀 只出假狀 謄書請罪眩亂眞僞爲言官者 承其風旨必欲置之死地而後已 至爲私護姻戚之語上撼宸聽 宜廟嫌畿言逼遂命遠竄而不



得白其冤焉 其所周旋委曲不過爲保全王子於虎狼之口 以不負受委之責至於與賊抗辭不屈之狀 賊酉移怒於八歲孫男支解之同時被擄者人之所目覩也 且真假而狀只是軍中行詭之事 雖使假狀卽爲眞狀 旣曰日本將軍清正云 則所謂關白殿下乃彼賊自稱其主之辭 非自我眞狀之比 固不足爲罪況乎露其誑示之假狀 匿其上達之本狀者乎 假狀亦非本文而謄書以送 故峻其語併與王子手札諺書密通者而瘦之嗚呼 人心之巧且慘乃如是耶 宣祖大王洞燭無餘其在謫中 每稱其冤四賜食物三命放釋 下教曰黃廷彧非子之功臣乃 太祖之功臣也眷顧之意如此其切至 而終爲一種之論所沮 使成命不行此亦命也 宣祖賜詩若干首幸脫於壬子酷禍之餘 得留今日則豈非大其或者導達我 聖明以成 宣祖之遺志乎扇面宸墨有非閭閻私藏之寶 故並爲奉進倘蒙 睿覽可知 宣祖聖意之有在 伏願湔滌罪名 復其原爵則泉下之魂庶乎無憾矣 上下其䟽于禁府判府使李廷龜金塗面啓曰 廷彧之事 但以狀啓中稱關白殿下爲罪案 局外之人或有疑而怒之者 厥後廷彧之供辭及上廟堂文出而始知其所云 臣字其所云殿下者 皆是假狀而乃彼賊自稱其主之辭 上達本狀及王子手札 自有別件而皆寢不達云 其稱冤宜矣 八歲孫兒支解於眼前則不臣之狀亦可見矣 宣祖賜詩宛然猶在 燭其冤狀而思欲開釋之意溢於宸章 先王遺志蓋可知矣 聖上御極幽冤畢伸光國元勳獨被黯昧於九泉之下 䟽內辭緣似當依願而不敢擅便 請議大臣左議政尹昉右議政申欽議曰 廷彧當初狀啓有真假兩件而卒受黯黜非 先王之意也 觀廷彧上朝堂書則被誣可見 聖上御極無幽不燭無冤不伸而獨廷彧之目 不暝於泉下 請依本府公事伸理復官 上徒之



廷彧字景文號芝川長水縣人 翼成公喜之後也 器字峻整博洽  
 群書能文章 明廟朝登第歷款三司 宣廟朝第光國元勳典文衡  
 位至長溪府院君 辛卯罹士禍罷官家居 壬辰之變受命護王子  
 入北道 遇叛民陷于賊賊以王子一行 置軍中爲質及 天朝與  
 賊通和遂歸之 辛卯賊書之來也 廷彧方主兵柄與大司憲尹斗  
 壽倡爲陳奏之論 已忤當路又以兩湖檄文秦檜國忠之句尤被  
 其切齒 至是以危法中之竄吉州 宣廟知其冤至賜御製詩 其  
 詩曰 澣海風塵暗 間關保護功 愧予情未報 冤子淚先紅 世  
 事浮雲外 孤城疊棘中 是非應有定 還玦豈無終 一別幽懷未  
 易開 浩然閑臥子陵臺 從來宦海瞿塘險 莫恨人言市虎來 命  
 放歸田里其後 恩宥又至於再而輒有尼之者 竟卒於田里年七  
 十六抱枉不伸者殆三十餘年 至於伸雪復官

#### 풀이

유학(幼學) 황이징(黃爾徵), 황부(黃裒), 홍명일(洪命一) 등이  
 상소하기를,

“신의 고조(高祖)인 신 황정욱(黃廷彧)은 두 조정을 차례로  
 섬기면서 영광과 총애가 견줄 데 없어 지위는 높은 벼슬에 오  
 르고 이름은 훈적(勳籍)에 실렸으나 지하에서 억울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지 못하고 있으니, 자손에게 끝없는 아픔이 될 뿐  
 만 아니라 국가에도 반드시 흠전(欠典)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함당하고 화(禍)를 받은 까닭에 대해서는 전에 이  
 미 대략 소 가운데에 언급했고 또 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당초 묘당(廟堂)에 바친 글을 이미 예람하셨으면 그 사이의 곡절에 대해 성명(聖明)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급히 격문(檄文)을 띄울 즈음에 말이 당로자(當路者)를 범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 그 일을 기회로 삼아 양값음을 하려고 사용된 단어를 트집잡은 데 불과한 것인데, 진장(眞狀)을 없애버리고 가장(假狀)만을 끄집어내어 베껴 쓴 뒤 죄주기를 청함으로써 진위(眞僞)를 어지럽힌 것이었습니다. 이에 언관(言官)으로 있던 자들이 그 풍지(風旨)에 따라 반드시 죽을 처지에 두고야 말려고 사사로이 인척을 감쌌다는 말까지 하여 위로 신청(宸聽)을 어지럽혔는데, 선조(宣祖)께서 그 말이 억지라는 혐의를 갖고 계시면서도 마침내 멀리 귀양 보내라고 명하시어 그 억울함을 아뢰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선한 곡절은 왕자(王子)를 호랑(虎狼)의 입에서 보전하여 위임받은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적과 항변하여 굽히지 않았던 정상으로 말하면 적의 추장이 여덟 살 되는 손자에게 화풀이를 하여 사지를 자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같이 잡혀간 사람들이 목격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장과 가장 두 가지로 했던 것은 군중(軍中)에서 속임수를 쓰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설사 가장을 진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일본의 장군 청정(清正)’이라 하였고 보면 이른바 ‘관백 전하(關白殿下)’라고 한 것은 저들 적이 자기 임금을 스스로 칭한 말로서 우리가 곧바로 보낸 서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디 죄를 주



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속여서 쓴 가장만 들춰내고 진정으로 아뢰는 본장(本狀)은 숨겼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이라는 것 역시 보내졌던 본문이 아니고 베껴 써서 보낸 관계로 그 말이 준열하게 된 것인데, 언서(諺書)로 밀통한 왕자의 수찰(手札)마저 아울러 숨겼으니, 아,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교묘하고도 참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조 대왕께서는 이런 사실을 남김 없이 통촉하시어 그가 적소(謫所)에 있을 때 번번이 그 억울함을 말하며 네 번이나 음식을 내리고 세 번이나 석방을 명하셨으며, 하교하시기를, ‘황정욱은 내 공신이 아니라 태조(太朝)의 공신이다.’ 하셨습니다. 돌보신 뜻이 이처럼 매우 지극하셨는데도 끝내 한 가지 논의에 막혀 성명(成命)이 거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운명이라 할 것입니다. 선조께서 시(詩) 몇 수를 내리셨는데 다행히 임자년의 참혹한 화에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남아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우리 성상의 시대에 와서 선조의 유지를 이루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채에 쓰여 있는 신묵(宸墨)은 여염에 사사로이 감출 보배가 아니기에 아울러 바치니, 혹 예람하시면 선조의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죄명을 씻고 본래의 벼슬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지하의 넋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그 소를 금부에 내리니, 판부사 이정구(李廷龜), 김류(金瑬)가 회계하기를,

“황정욱의 일은 다만 그의 장계(狀啓) 가운데에 ‘관백 전하’



라고 칭한 것을 죄안(罪案)으로 삼은 것인데, 국외(局外)의 사람 중에는 혹 의심하여 분노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황정욱이 공초한 말과 묘당에 올린 글이 나와서야 비로소 그가 신(臣)이라고 한 것과 전하라고 한 것은 모두가 가장(假狀)이고 바로 저 적들이 자기 임금을 스스로 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상달한 본장(本狀) 및 왕자의 수찰은 본디 별건(別件)이 있었으나 다 아뢰지 않았다 하니, 그가 원통함을 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덟 살인 손자를 눈 앞에서 사지를 잘랐다면 신복(臣服)하지 않은 정상도 알 수 있습니다. 선조께서 내리신 시가 완전히 남아 있어 그 억울한 정상을 통촉하여 풀어 주려고 생각하신 뜻이 신장(宸章)에 넘치니, 선왕의 유지를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성상께서 등극하여 억울한 일은 다 풀어 주셨는데 광국(光國)의 원훈(元勳)만이 구천 아래에서 억울한 죄를 당하고 있으니, 소 안의 사연은 바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이 의논드리기를, “황정욱의 당초 장계에서는 진장과 가장 두 개가 있었으며 끝내 억울한 죄를 받은 것은 선왕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황정욱이 묘당에 올린 글을 보면 무함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상께서 등극하여 통촉하시지 않은 억울한 일이 없고 풀어주시지 않은 억울한 일이 없는데 황정욱의 눈만이 구천 아래에서 감지 못하고 있으니, 본부(本府)의 공사(公事)에 따라 신리(伸理)하여 복관(復官)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황정욱의 자는 경문(景文)이고 호는 지천(芝川)이며 본관은 장수(長水)로서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의 후손이다. 인품이 준수하고 못 서적에 널리 통하였으며 문장에 능하였다. 명종(明宗) 때에 급제하여 삼사(三司)를 두루 역임하고, 선조(宣祖) 때에 광국 원훈(光國元勳)에 책록(策錄)되었으며 문형(文衡)을 맡고 작위(爵位)는 장계 부원군(長溪府院君)에 이르렀는데, 신묘년에 사화(士禍)에 걸려 관직에서 파면되어 집에 물러가 있었다. 임진년의 변란 때에 명을 받고 왕자(王子)를 호위하여 북도(北道)에 들어갔다가 반민(叛民)을 만나 적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적이 왕자 일행을 군중(軍中)에 인질로 가둬 두었다가 중국과 화의를 통하게 되자 드디어 돌려 보냈다. 신묘년에 적의 글이 왔을 때 황정욱은 병권을 맡고 있으면서 대사헌 윤두수(尹斗壽)와 함께 진주(陳奏)하자는 논의에 앞장섰다가 당로자를 거슬렀고, 또 양호(兩湖)에 보낸 격문 가운데 진회(秦檜), 양국충(楊國忠)에 관한 글귀를 사용하여 더욱 당로자들이 절치부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때에 이르러 억지로 법을 적용하여 길주(吉州)에 귀양보냈는데, 선조가 그 억울함을 알고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그 시에,

한해의 풍진이 어두웠던 때  
고생하며 보호한 공이 있는데  
부끄럽게 내 뜻은 갚지 못하고  
원통하게 그대 눈물 먼저 붉구나  
세상일은 뜬 구름 밖의 것이요



고성은 가시나무 쌓인 속에 있도다  
 시비가 정해질 때 있을 것이니  
 끝내 도로 부르지 않을까보냐  
 한번 떠나 속마음 드러내기 어려우니  
 호연히 자릉대(子陵臺)에 한가하게 누웠구나  
 본디부터 벼슬길은 구당(瞿塘)처럼 험하거니  
 남이 말한 시호래(市虎來)를 한탄하지 말라

하고, 석방시켜 시골에 돌아가게 하도록 명하였다. 그 뒤에 은유(恩宥)가 또 두 번에 이르렀으나 문득 막는 자가 있어서 마침내 시골에서 죽으니, 나이가 일흔 여섯이었다. 억울함을 품고 씻지 못한 지 30여 년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죄를 씻어 주고 벼슬을 회복시켰다.

● 인조 3년 1월 17일(병인)

全羅道南原府長水縣癘疫大熾 一邑死者二百餘人監司李溟  
 啓聞 命兩醫司優送藥物以救之

[풀이]

전라도 남원부(南原府)와 장수현(長水縣)에 여역이 크게 번져 한 고을에서 죽은 사람이 2백여 명이나 되었다. 감사 이명(李溟)



이 계문하자 의사(醫司) 2명과 약품을 넉넉하게 보내어 구하도  
록 명하였다.

● 인조 4년 3월 23일(병인)

全羅道長水縣私奴金水弒其主伏誅

[풀이] \_\_\_\_\_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의 사노(私奴) 김수(金水)가 상전을 시  
해한 죄로 복주(伏誅)되었다.



## ● 인조 6년 9월 15일(임신)

上引見公清兵使申景裕 黃海監司張紳 水原府使李時白 碧潼郡守張時憲 喬桐縣監李志賤 長城縣監洪振文等 上問景裕曰治兵幾何 景裕曰往在戊午敗沒于深河者不改其籍适亂胡變 散亡頗多尙不團束以數則逃故相半 以技則不知坐作進退 況其他乎 上曰近者治兵既有兵使又有營將 而乃如此耶 景裕曰此非手下恒留之卒 不過一二番巡歷教習作輟無常何望鍊材此非營將之罪也 上曰湖西與嶺南熟勝 景裕曰不如嶺南 上曰黃海道今歲旱災甚酷 所聞見何如 紳曰延白尤甚山郡則稍稔矣 以所運江都之米 今可賑救而明春種糧計無所出 上又問關西流民多聚海西云 今尙仍留乎 紳曰前日流來者二千餘人而今則賑救已罷故不知其多寡矣 上曰其無餓死者乎 紳曰 新穀既出似無餓死者 而但衣不能掩體必將凍死矣 上曰國家所恃者惟安黃兩鎮備禦之具如何 紳曰今者僅作城廓而二面甚低當改築而所患者力不足也 上曰曾聞鄭忠信之言 使城廓不出於墻堞之外 不便於禦敵云未知如何 紳曰此言是也 當待入防軍欲改築矣 上曰人說城中井泉不多云如何 紳曰井泉則可鑿而飲 軍無見糧此甚可憂海西田稅盡入關西 故更無給餉之路不得已請除出本道之稅 未知該曹何以稟處也 上曰似甚便當而方副急於關西不遑他矣 上曰城守之策必使斯民與父母妻子俱入然後 可驅而之戰矣 紳曰瑞興山城首陽山城皆云形勝而但民之願入者 九月長水兩山城故今先修築者 蓋從民願也 上曰民情皆欲入守山城乎 紳曰然



上曰是則鄭鳳壽龍骨死守之驗也 海西一道前年被兵 今年阻  
飢非卿無以鎮之 往欽哉

[풀이]

상이 공청 병사(公淸兵使) 신경유(申景裕), 황해 감사 장신(張紳), 수원 부사 이시백(李時白), 벽동 군수(碧潼郡守) 장시헌(張時憲), 교동 현감(喬桐縣監) 이지천(李志賤), 장성 현감(長成縣監) 홍진문(洪振文)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경유에게 하문하기를, “다스리는 병사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경유가 아뢰기를,

“지난 무오년에 심하(深河) 전투에서 패한 뒤로 병적부를 개정하지 않았는데, 이괄(李适)의 난과 호란(胡亂)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수가 흩어져 도망했는데도 아직까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도망하거나 유고(有故)인 자가 서로 반절쯤 되고 훈련 정도로 보면 제식동작도 알지 못하는 형편인데, 더구나 다른 것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군사를 훈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병사(兵使)도 있고 또 영장(營將)도 있는데 이 모양이란 말인가?”

하니, 경유가 아뢰기를,

“이 병사들은 장수가 항상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지휘하는 병사가 아니고 한두 번 순회하며 교습시켜 일정치 않게 이동시키



는 자들이니, 어떻게 훌륭한 병사로 훈련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영장의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서(湖西)와 영남(嶺南)은 어느 쪽이 나은가?”

하니, 경유가 아뢰기를,

“호서가 영남만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는 올해 한재(旱災)가 혹심하다 하는데, 보고 들은 것이 어떠한가?”

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연안(延安)과 배천(白川)이 더욱 심한데 산간 고을의 경우는 조금 곡식이 익었습니다. 지금은 강도(江都)에서 운반해 온 쌀로 진휼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 봄 종자 곡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볼 계책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하문하기를,

“관서(關西) 지방의 유민들이 다수 해서(海西)로 모여 들었다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전일에 흘러 들어온 자가 2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진휼하는 일이 이미 끝났으므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굶어죽은 자는 없는가?”

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새 곡식이 이미 나와서 굶어죽은 자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



나 몸을 제대로 가릴 옷이 없으니, 앞으로 필시 얼어죽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의지하고 있는 곳은 오직 안악(安岳)과 황주(黃州) 양 진(鎭)이다. 수비 대책은 어떠한가?”

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이번에 간신히 성랑(城廊)을 만들었습니다만 두 면이 매우 낮아 개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찍이 정충신(鄭忠信)의 말을 듣건대 성랑(城廊)을 성가퀴 밖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적을 막는 데 불편하다고 하였다. 모르겠다면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입방군(入防軍)을 기다려서 개축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 안에 우물이나 샘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우물이나 샘은 파서 마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군대에 먹일 양식이 없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해서의 전세(田稅)는 모두 관서로 들여 보냈기 때문에 다시 군량을 지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도의 세를 덜어내 주기를 청했던 것인



데, 해조에서 어떻게 품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매우 온당한 말인 듯하다마는 현재 관서의 급한 처지를 돌보느라 다른 데에는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 처자와 함께 모두 성에 들어가게 한 뒤에 죽을 힘을 내어 싸우게 하는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서흥 산성(瑞興山城)과 수양 산성(首陽山城)에 대해 모두들 형세가 좋다고 하는데, 다만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은 구월 산성(九月山城)과 장수 산성(長水山城) 두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곳을 먼저 수축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산성에 들어가 지키고 싶어하는가?”

하니, 장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야말로 정봉수(鄭鳳壽)가 용골 산성(龍骨山城)을 사수했던 본보기라 할 것이다. 해서 지역은 지난해에 병화를 입는데다가 올해 기근까지 겹쳤으니, 경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다. 가서 직무를 잘 수행하라.”

하였다.



## ● 인조 12년 2월 16일(계유)

道體察使金瑬啓曰 從事官李景義馳啓中 扶安縣監許穡長水  
縣監鄭沄有不治之狀 請罷職 順天府使李紘 咸悅縣監李偉  
光陽縣監李大根治績最著 請論賞 上從之

풀이

도체찰사 김류가 아뢰기를,  
“종사관 이경의(李景義)의 치계에 부안 현감(扶安縣監) 허색(許穡), 장수 현감(長水縣監) 정운(鄭沄)은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이 있다고 하였으니 파직시키고, 순천 부사(順天府使) 이현(李紘), 함열 현감(咸悅縣監) 이위(李偉), 광양 현감(光陽縣監) 이대근(李大根)은 치적이 매우 현저하다고 하였으니 논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인조 17년 10월 8일(신묘)

備局啓請修治茂朱縣赤裳山城 以本縣及錦山龍潭鎮安長水雲峯珍山等七邑 分屬本城略如笠巖舊規 令僧覺性稱以都摠攝 恒住城中 無事則守護有事則協守 上從之卽巡檢使朴潢之議也

[풀이]

비국이 계청하기를,

“무주현(茂朱縣)의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수리한 다음, 본 고을 및 금산(錦山), 용담(龍潭), 진안(鎭安), 장수(長水), 운봉(雲峯), 진산(珍山) 등 7읍을 본 산성에 분속(分屬)시키고 대략 입암(笠巖)에 시행했던 옛 규례와 같이 승려 각성(覺性)에게 도총섭(都摠攝)의 칭호를 주어 항상 성내에 거주하면서 일이 없을 때에는 수호하고 유사시에는 협수(協守)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는 곧 순검사(巡檢使) 박황(朴潢)의 의논이었다.





● 효종 3년 9월 6일(을해)

全南道長水縣人禹漢爲惡虎所咬 其妻忠今與虎相搏 禹漢賴以不死監司以聞

[풀이] \_\_\_\_\_

전남도 장수현(長水縣) 사람 우한(禹漢)이 포악한 범에게 물리자 그 아내 충금(忠今)이 범과 격투를 벌여 우한이 그 덕분에 죽지 않았음을 감사(監司)가 계문(啓聞)하였다.

● 효종 9년 4월 22일(무자)

全南道長水縣大雨雹

[풀이] \_\_\_\_\_

전남도 장수현(長水縣)에 큰비와 우박이 내렸다.





● 현종 2년 8월 4일(경술)

長水任實等縣隕霜殺草 三陟府雨雪 藍浦縣地震.

풀이

장수현(長水縣), 임실현(任實縣) 등에 서리가 내려 풀이 죽었다. 삼척부(三陟府)에 눈이 내리고, 남포현(藍浦縣)에 지진이 일어났다.

● 현종 7년 3월 5일(을유)

乙酉 憲府 啓 官家以長水任實等邑民人開墾之地 折受冒占 民怨大興 請依道臣查啓及本曹回啓 還給本主 上不從.



풀이

헌부가 아뢰기를,

“궁가(宮家)가 장수(長水), 임실(任實) 등의 고을에 백성이 개간한 땅을 떼어받아 마구 차지하고 있으므로 백성의 원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올린 장계 및 본조의 회계(回啓)에 따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 ● 현종 7년 9월 13일(경인)

全羅道南原長水等地雨雹.

풀이

전라도의 남원(南原), 장수(長水) 등지에 우박이 내렸다.



● 현종 10년 5월 28일(경신)

全羅道長水縣雨雹.

[풀이] \_\_\_\_\_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우박이 내렸다.

● 현종 11년 4월 23일(기유)

己酉 全羅道雲峰長水等地 連夜霜降 傷損各穀.

[풀이] \_\_\_\_\_

전라도 운봉(雲峰), 장수(長水) 등지에 밤마다 계속 서리가 내려 각종 곡식을 손상시켰다.



## ● 현종개수실록 2년 8월 4일(경술)

湖南長水任實等縣隕霜殺草 關東三陟府雨雪 湖西藍浦縣地震.

[풀이]

호남의 장수(長水), 임실(任實) 등 고을에 서리가 내려 풀이 죽었고, 관동(關東)의 삼척부(三陟府)에 눈이 내렸으며, 호서(湖西)의 남포현(藍浦縣)에 지진이 있었다.

## ● 현종개수실록 7년 2월 23일(갑술)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 全羅道監司閔維重 以赤裳山城變通事 啓稟矣 盖赤裳形勢絕險 屢經兵亂 一不被兵 故戊午始藏 實錄辛巳藏 璿源錄 置叅奉二員 守僕二十四名 射夫八十四名 又置左右寺刹 募入僧徒 以爲守護之地 且以此城介於湖嶺間 爲賊路要衝 故以茂朱龍潭錦山三邑軍兵 全屬山城 又割鎭安軍三十九名 珍山軍三十名 長水軍九十六名 添屬馬 維重之意 以爲此城 若直爲藏史 則不必設倉庫備器械置軍兵以爲招盜速寇之資 若兼



爲保障之地 則所屬軍兵 不足把列城堞所儲糧餉 不足支給兩月 今計莫如悉罷軍兵糧器之備 絕寇盜窺覩之端 只令叅奉典守 日如太白五臺之例 不然則陞茂朱爲府 割錦山之安城面 沃川之陽山面而屬之俾作獨鎮 舉一邑民丁 編之城籍 則其於保障之道 可以無欠 若以大段更張爲難 則以鎮安軍三百十名 專屬山城 如錦山龍潭之例 以長水珍山兩邑軍兵還屬左後本營 則山城軍額 比前有加 而其在兩邑 亦無分裂之弊云 維重此言 不爲無見矣. 上曰 城之大小 未知如何 茂朱軍兵 可以獨守乎 顧謂翰林崔後尙曰 翰林纔已目覩 形勢果如何. 後尙曰 三面絕險 人不能通行 只北門一路 僅通人馬而亦甚險絕矣 上曰 險絕如許 則似不必多用軍丁 茂朱龍潭錦山三邑軍 猶足把守 鎮安軍兵 雖不屬可也更門便否於道臣而後 處之可也 江華留守徐必遠曰 本府軍兵 今欲分作砲射兩隊習藝矣 勿論會付藥丸 量宜除出 以爲習藝之用 且本府所儲箭竹雖多 而積滯年久 不合於造箭矣 上曰 未知合用幾許 必遠曰 藥丸則可用二千斤箭竹則可用三萬枝矣 上曰 會付藥丸 姑先取用 箭竹一半 自該寺給之 一半自內弓房給之 必遠曰 本府烽燧 今有四處 而其中三處 似爲不緊只存河陰一烽 並罷其餘 移用其軍何如李浣曰 必遠之意 蓋欲除出烽軍以爲陸軍 而烽軍亦何可偏廢乎 柳赫然曰 江都當兩西三南沿海交會之路當初設烽 意非偶然 豈有緊歇異於古今之理乎 積曰 赫然之言是矣 請令兵曹 詳考緊不緊然後 稟處似當矣 上可之 必遠曰 軍兵試才時 無物賞格 若以戶曹奴婢貢布 或以會外米 或以老職通政帖量給 則似便矣



積曰 戶曹貢布則不可輕許 宜給以會米五百餘石矣 太和曰 至於帖文 則事甚苟且矣 上從之 積曰 兩司既停溫幸之啓 必先擇日然後 方有分付之事矣 上曰 近來日氣猶寒 欲觀日候擇日至於 應行之事 預令料理可也 積曰 軍兵容入之數 令兵判先爲定奪何如 洪重普曰 扈 駕軍兵 以便近言之 則當用水原軍 而上年既經扈 駕 不可使偏勞 而但他營則皆非沿路近邑 調發難便矣 上曰 依留都軍兵例 書入各營 受點調用可也 重普曰 上年行幸時 用京畿忠清兩道驛馬 其數六十一匹 今此慈殿之行以三十匹磨鍊 都數不遇九十一匹 而即今兵曹及京畿驛馬合二百匹 忠清道驛馬三百匹 雖非司僕馬 亦可足用矣 上曰 自外磨鍊以入 則當自內參酌分付矣 太和曰 御營軍侍衛之數 不可 不預定矣 積曰 先定 兩殿駕行先後然後 侍衛軍數 可以磨鍊矣 上曰 卿等之意如何 太和積曰 臣等之意則以爲 大駕先導 慈殿居後 每次止舍時 大殿率百官祇迎 似當矣 上曰子雖前導 以子先後射隊 分爲三隊 一作前驅 一居兩行間 一作後殿百官在於最後 則比上年加用 不過左右挾輩軍百六十名矣 太和曰 聖教允當 當以此磨鍊取稟矣 應教李敏敍曰 今番 行幸雖出於萬不獲已 而民情事勢 大異於前前年則乃是初 幸 故萬民爭瞻 羽旄莫不欣悅 今則年年 行幸貽弊民間 必不無怨咨之心 凡事不可不十分節損矣 上曰然 敏敍曰 今年飢饉 八路同然 而畿甸尤甚 賑救之事 宜令大臣 預講節目 太和曰 曾因臺啓 已令諸道查啓 被災地方 以爲開賑之地 而設



粥一事 更爲分付京畿 着實舉行似當矣 敏敘曰京中亦令該廳 設粥賑救宜矣 上曰 依爲之 戶曹判書鄭致和曰 卽今都民 無不飢餒 而欲爲賑救 則力有所不贍 兩倉所儲陳菽數千石 輕價發賣 以爲飢民一分蒙惠之地何如 上從之 司諫李翊曰 享 上之物 臣子之所當盡心力而供之者 貽弊於民 雖不可顧 然如雉獐之小傷皮毛 似無所損於敬謹之道 而臣聞上年 行幸時 御供物膳 必揀不傷皮毛者 故大爲民弊云 如此之事 似當變通矣 上曰 予亦聞之 已令變通矣 早知如此 上年豈令有此弊乎

풀이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전라 감사 민유중이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변통할 일로 계품하였는데 대개 적상은 형세가 지극히 험하여 여러 번 병란을 겪었으나 한 번도 병화(兵禍)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오년에 비로소 《실록》을 보관하고 신사년에 또 《선원록》을 보관한 후에 참봉 2명, 수복 24명, 사부(射夫) 84명을 두고 또 좌우 사찰을 두어 승도들을 모집해 들여 수호하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호남과 영남 사이에 있어서 도독질하는데 요충지가 되므로 무주(茂朱), 용담(龍潭), 금산(錦山) 이 세 읍의 군을 전적으로 산성에 속하게 하고 진안군(鎭安軍) 39명과 진산군(珍山軍) 30명, 장수군(長水軍) 96명을 떼어내어 여



기에 소속시켰습니다.

유중의 의도는 ‘이 성에 만약 단지 사책만 보관한다면 창고를 설치하고 기계를 갖추어 놓고 군병을 배치하여서 도둑들을 불러들이는 화근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만약 겸하여 보장하는 터전으로 삼는다면 소속 군병은 성첩에 배치하기에 부족하고 쌓아놓은 군량도 2달을 버티기에 부족하다. 지금의 계산으로는 군병과 군량과 기계의 대비를 모두 파하여서 도적들이 엿보는 단서를 끊어버리고 단지 참봉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되 한결같이 태백산(太白山)과 오대산(五臺山)의 예와 같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茂朱)의 안성면(安城面)과 옥천(沃川)의 양산면(陽山面)을 떼어 내어 소속시켜서 단독으로 진(鎭)을 만들게 하고 한 읍의 민정(民丁)을 성적(城籍)에 편입한다면 보장(保障)하는 도리에 흠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대단히 경장(更張)하는 것으로 어렵게 여긴다면 진안군 3백 10명을 전적으로 산성에 소속시키되 금산과 용담의 규례와 같이 하고 장수, 진산 양읍 군병으로 좌우의 본영에 소속시킨다면 산성의 군액이 전에 비하여 더해지고 양읍에 있어서도 분열할 폐단이 없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민유중의 이 말은 견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의 크기가 어떠한가? 무주 군병이 단독으로 지킬 만한가?”

하고, 한림 최후상(崔後尙)에게 이르기를,

“한림이 이미 직접 보았으니 형세가 어떻던가?”

하자, 후상이 아뢰기를,



“3면이 매우 험하여서 사람들은 통행하지 못합니다. 단지 북문으로만 겨우 인마(人馬)가 통행할 수 있는데 그 길도 몹시 험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험하기가 그러하다면 군정(軍丁)을 많이 쓸 필요가 없을 듯하다. 무주, 용담, 금산 세 고을의 군사만으로도 오히려 파수하기에 충분하니 진안군 병사는 비록 소속시키지 않더라도 가하다. 다시 편부에 관하여 도신에게 물어본 뒤에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화 유수 서필원이 아뢰기를,

“본부 군병을 지금 포수와 사수 양대로 나누어서 훈련시키도록 하고 물론 약환(藥丸)을 회부하되 적당량을 제출해서 연습용으로 삼게 하소서. 또 본부에 비축해 둔 전죽(箭竹)이 비록 많으나 적체된 지가 오래 되어서 화살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총합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필원이 아뢰기를,

“탄약은 2천 근이 들고 전죽은 3만 자루가 쓰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회부한 약환을 우선 취해 쓰고 전죽은 반은 해당 관청에서 지급하고 반은 내궁방(內弓房)에서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필원이 아뢰기를,

“본부의 봉수(烽燧)가 지금 네 곳이 있는데 세 곳은 그다지



긴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음(河陰) 한 곳만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혁파해서 그 군병을 옮겨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완이 아뢰기를,

“필원의 의도는 봉군(烽軍)을 덜어내어 육군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봉군도 어찌 편파적으로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혁연이 아뢰기를,

“강도는 양서와 삼남의 연해지의 교회하는 길목이므로 당초에 봉수를 설치한 것은 우연한 뜻이 아닐 것인데 어찌 긴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옛날과 지금이 다를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혁연의 말이 옳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긴요한 것과 긴요하지 않은 것을 상세하게 살펴본 연후에 품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필원이 아뢰기를,

“군병을 시재(試才)할 때에 상으로 줄 물품이 없습니다. 호조의 노비 공포를 혹 회외미(會外米)로 하거나 혹 노직 통정첩을 양급해 주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호조 공포는 가볍게 허락할 수 없으니 회미 5백여 석을 지급 하도록 하소서.”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첩문의 경우에는 일이 매우 구차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허적이 아뢰기를,



“양사가 온천에 가는 일에 대하여 아뢰던 것을 중지하였으니 반드시 먼저 택일한 뒤라야 바야흐로 분부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일기가 오히려 차가우니 날씨를 보아서 택일하고자 한다. 응당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미리 헤아려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필요한 군병의 숫자를 병판에게 먼저 정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대가를 호위하는 군병은 편리한 것으로 말한다면 마땅히 수원군을 기용해야 하는데 상년에 이미 대가를 호위하였으므로 편파되게 수고를 끼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영(營)인 경우엔 연로(沿路)와 가까운 읍이 아니므로 조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도 군병의 예에 의하여 각영을 써서 들여서 낙점을 받아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보가 아뢰기를,

“상년에 행행할 때에는 경기, 충청 양도의 역말을 이용하였는데 그 수효가 61필이었습니다. 지금 자전이 행행할 때에 30필로 마련하면 총수가 91필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병조와 경기 역말을 합하면 2백 필이 되고 충청도 역말도 3백 필이나 되므로 비



록 사복마(司僕馬)가 아니라도 이용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부에서 마련하여 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안에서 마땅히  
참작하여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어용군이 시위하는 숫자는 미리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먼저 양전이 행행하는 문제를 결정한 연후에 숫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에는 대가가 먼저 인도하고 자전이 뒤에 가되 매  
차 관사에서 설 때에 대전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가 맞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앞에서 인도하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선후의 사대  
(射隊)를 셋으로 나누어 1대는 앞에 가고 1대는 중간에 서고 또  
1대는 뒤에 남게 하며 백관은 가장 뒤에 있게 한다면 상년에  
비하여 더 쓴 숫자가 좌우 협연군이 1백 60명에 불과할 것이  
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타당합니다. 마땅히 이것으로써 마련하여 취



품하겠습니다.”

하였다. 응교 이민서가 아뢰기를,

“이번 행행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민정과 사세가 그전과 매우 다릅니다. 작년에는 처음 가는 일이었으므로 백성들이 깃발을 다투어 보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지금 해마다 가게 되어서 민간에 폐를 끼치게 되니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충분히 절약해야만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민서가 아뢰기를,

“금년에 기근이 팔로가 다 같은데 경기가 더욱 심합니다. 진구할 일을 대신으로 하여금 미리 그 절목을 강정하게 하소서.”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일찍이 대관의 계사로 인하여 이미 제도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지방을 조사하여 아뢰게 하여 진구할 바탕으로 삼았지만, 죽을 베푸는 일은 다시 경기에 분부하여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민서가 아뢰기를,

“서울에도 해청으로 하여금 죽을 베풀어서 진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지금 도성의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진구하고자 한다면 물력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양창에 비축해둔 묵은 콩 수천 석을 싼 값으로 팔아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일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사간 이익이 아뢰기를,

“위에 올리는 물품은 신하들이 마땅히 심력을 다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민간에게 폐를 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상한 꿩, 노루의 모피는 공경하는 도리에 흠되는 바가 없는 듯합니다. 신이 듣건대, 지난해 행행할 때에 상계 바치는 물건을 반드시 상하지 않은 모피를 가렸기 때문에 민폐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변통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듣고 이미 변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줄을 일찍이 알았다면 지난해에 어찌 이와 같은 폐단이 있게 했겠는가?” 하였다.

### ● 현종개수실록 7년 3월 5일(을유)

乙酉 司憲府啓 請以長水任實等邑諸宮家折受冒占之地 還給未折受前開墾之民 上不從

[풀이]

사헌부가 아뢰기를,

“궁가(宮家)가 장수(長水), 임실(任實) 등의 고을에 떼어받아 마구 차지한 토지를, 떼어받기 전에 개간했던 백성에게 돌려 주



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현종개수실록 7년 9월 13일(경인)

全羅道南原長水等地 雨雹

[풀이] \_\_\_\_\_

전라도의 남원(南原), 장수(長水) 등지에 우박이 내렸다.

● 현종개수실록 10년 5월 28일(경신)

全羅道長水縣 雨雹

[풀이] \_\_\_\_\_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우박이 내렸다.



● 현종개수실록 11년 4월 23일(기유)

已酉 全羅道雲峰長水等地 連夜下霜 傷損各穀

[풀이] \_\_\_\_\_

전라도 운봉(雲峰), 장수(長水) 등지에 밤마다 계속 서리가 내려 각종 곡식을 손상시켰다.





● 숙종 1년 2월 23일(신해)

全羅道暗行御史朴泰尙 廉問入來 書啓任實縣監申啓澄 長水縣監韓鼎相 海南縣監黃徵 沃溝縣監尹荇 茂朱府使趙昌期 群山萬戶韓泰興等罷職

풀이

전라도 암행 어사(全羅道暗行御史) 박태상(朴泰尙)이 염문(廉問)하고 들어와서, 임실 현감(任實縣監) 신계징(申啓澄), 장수 현감(長水縣監) 한정상(韓鼎相), 해남 현감(海南縣監) 황징(黃徵), 옥구 현감(沃溝縣監) 윤연(尹荇), 무주 부사(茂朱府使) 조창기(趙昌期), 군산 만호(群山萬戶) 한태흥(韓太興) 등을 파직할 것을 서계(書啓)하였다.



## ● 숙종 4년 11월 19일(병진)

丙辰 鎮安長水地震

풀이

진안(鎭安), 장수(長水)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 ● 숙종 12년 9월 6일(정해)

引見大臣備局諸臣 大司成金昌協請對同入 時大提學李敏敘  
屢違牌於科試以向年李鼎命事 不安於掌試故也 玉堂官趙相  
愚論斥之 敏敘愈不安 久不供職 至是 領議政金壽恒陳變通  
之意 上命遞文衡 本職吏判亦遞之 江華留守申晷曰 江都自  
設墩臺 凡軍器中長銃 甚爲關重 今此墩臺 相去甚踈常用烏  
銃 不能及遠 必須長銃 可以用之 而一墩臺所藏 不過十柄  
其數甚少方欲加設 而所入鐵炭 無路辦備 李敏敘曾莅本府  
時 爲備鐵炭 略給價本 募人取辦 事畢啓聞 請加賞典 而迄  
無一人蒙賞者 故今欲依此收募 莫有願當者 誠爲可慨矣.  
上曰 旣令應募 不賞其勞 事未妥當 令該曹及時收用可也.  
又曰 江都津船 數甚些少 戰船只載軍兵 不能載牛馬 必須  
多備津船 可須緩急 今聞全羅左水營船材木 風落者甚多 今



若擇其可合船材者 造作津船 數十隻而運來 則事甚便當. 上曰 依爲之 金昌協曰 守齋儒生 但是鄉中圓點之徒 京中士子 無一人入守自 上若有別樣勸獎之方 則士子必多有居齋者矣 壽恒曰 粵在 祖宗朝 非但爲士子勸獎 專爲聖廟居守之重 或別遣承旨 或令掖庭下人 往考食堂到記 卽命製述 特賜直赴 且有特命甲乙丙別作 一科放榜之事 故儒生舉皆欣聳 樂於居齋矣 今則鄉儒若干人外 他無守齋之人 近來此弊誠爲可慮 不可無別樣激勸之道矣. 上曰 聳動別舉 前秋亦已 行之而予嘗觀祖宗朝故事 頗有如此之別舉矣 先是 因儒臣李頤命所達 凡榻前傳啓 不以文字 以言語解釋奏達事 定式 掌令元振澤奏事之際 恆恟失措 啓辭措語 大半落漏 又不能以言語解釋奏達上曰 近來臺諫奏事 必以言語 解釋以達 而此臺諫獨以文字 且多有落漏者 何也 振澤惶恟不知所對 僅僅奏畢而退 獻納崔奎瑞申前啓 至吳挺緯改配遠地事 上例答勿煩 壽恒曰 挺緯移配時 非以挺緯爲可恕 沿海罪人不可疊配一縣 故配所偶定於長水 而臺諫累月爭執 押去都事留中路鬪傳之弊 亦甚可慮 上曰 都事之久滯中路亦有弊 挺緯改配 壽恒言 元振澤以文字傳啓 且於金煥之啓 全沒措語 致勤聖教 請遞其職 上從之

[풀이]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는데, 대사성(大司成) 김창협(金昌協)이 청대(請對)하여 함께 들어왔다. 이



때 대제학(大提學) 이민서(李敏敍)가 여러번 과시(科試)의 패초(牌招)를 어겼는데, 그것은 지난해에 이정명(李鼎命)의 일로 인하여 시관(試官)을 맡기가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옥당관(玉堂官) 조상우(趙相愚)가 논박(論駁)하여 배척하니, 이민서는 더욱 불안하여 오래도록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에 와서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변통해 줄 뜻으로 아뢰니, 임금이 문형(文衡)을 체임(遞任)시키고 본직(本職)인 이조 판서의 직도 체임시키게 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신정(申晷)이 아뢰기를,

“강도(江都)에 돈대(墩臺)를 설치한 후로는 모든 군기(軍器)중에 장총(長銃)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돈대는 서로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늘 조총(鳥銃)을 쓰게 되나 멀리 미치지 못하므로, 반드시 장총이라야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 한 돈대에 비치된 것은 10자루에 불과하니, 그 수효가 매우 적습니다. 바야흐로 더 설치하고자 하오나 들어가는 철탄(鐵炭)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민서(李敏敍)가 일찌기 본부(本府)에 부임했을 적에 철탄을 준비하기 위하여 값을 약간 지급하면서 사람을 모집하여 마련하고 일을 마친 다음에 이를 계문(啓聞)하여 상을 주기를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한 사람도 상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도 그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려고 하나 자원하는 자가 없으니, 진실로 개탄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응모하게 하고 그 공로를 상주지 않는 것은 타당한 일이 못된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제때에 수용(收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강도(江都) 나루의 배는 그 수요가 매우 적습니다. 전선(戰船)에는 군병(軍兵)만 실을 뿐 소나 말은 실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나루터에 배를 많이 준비해야만 위급할 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전라도(全羅道) 좌수영(左水營)에 배를 만드는 목재가 바람에 의해 꺾어진 것이 매우 많다고 하니, 이제 그 중에서 배 만드는데 알맞은 목재를 가려서 나룻배 수십 척을 만들어 운반해 온다면, 일이 매우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김창협(金昌協)이 아뢰기를,

“재(齋)를 지키고 있는 유생(儒生)은 다만 향중(鄉中)의 원점(圓點)을 찍는 무리들이고, 경중(京中)의 선비는 한 사람도 들어가 지키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성상(聖上)께서 만약에 별도로 권장하는 방도가 있으시면 거재(居齋)하는 선비들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고, 김수항(金壽恒)은 아뢰기를,

“지난 조종조(祖宗朝) 때에는 선비만을 위해서 권장했을 뿐만이 아니고, 오로지 성묘(聖廟)를 지키는 중요성을 위하여 혹은 승지(承旨)를 특별히 보내기도 하고, 혹은 액정서(掖庭署)의 하인(下人)으로 하여금 가서 식당의 도기(到記)를 상고하여 즉시 제술(製述)하도록 명하고 특별히 직부(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또 특명을 내려 갑, 을, 병의 과거 제도를 별도로 만



들어 방방(放榜)한 일이 있었으므로 유생 모두가 기뻐하여 기꺼이 거재(居齋)했었으나, 지금은 시골 선비들 약간 명 외에는 재(齋)를 지키는 사람이 따로 없으니, 근래에 이러한 폐단은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격려하는 방도를 별도로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을 권장시키기 위한 특별 과거는 지난 가을에 이미 시행했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조종조(祖宗朝) 때의 정사(政事)를 살펴보니, 그러한 특별 과거는 자주 있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유신(儒臣) 이이명(李頤命)의 건의에 의하여 무릇 탑전(榻前)에서 전개(傳啓)하는 것은 문자로 아뢰지 아니하고 말로 해석하여 아뢰도록 규정을 정했었는데, 장령(掌令) 원진택(元振澤)이 일을 아릴 적에 겁을 먹고 당황하여 계사(啓辭)의 말을 만들 적에 반수 이상이나 누락시켰고, 또 제대로 말로 해석하여 아뢰지 못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대간(臺諫)이 일을 아릴 적에 반드시 말로 해석하여 아뢰게 했는데, 이 대간만이 문자로 아뢰며 또 누락시킨 것이 많이 있으니,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원진택이 두려워하며 대답할 바를 모르다가 겨우 아뢰기를 마치고 물러갔다. 헌납(獻納) 최규서(崔奎瑞)가 앞서의 계청(啓請)을 되풀이하고 심지어는 오정위(吳挺緯)를 먼 곳으로 고쳐 유배(流配)시키자고까지 하였는데, 임금이 관례대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오정위를 이배(移配)시킬 적엔 오정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닷가의 죄인을 모두 한 고을에 겹쳐 유배시킬 수가 없으므로 유배 장소를 우연히 장수(長水)로 정한 것이었는데, 대간들이 여러 달을 두고 고집스럽게 논쟁(論爭)하면서 압송(押送)하는 도사(都事)를 중로(中路)에 머물게 하여 주전(廚傳)하는 폐단이 있게 하였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사(都事)를 중로에 오래 머물게 한 것도 폐단이 있는 것이다. 오정위를 다른데로 유배시키라.”

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원진택(元振澤)은 문자로 전계(傳啓)하였고 또 김환(金煥)의 계사(啓辭)에 대해 전연 말을 만들 줄 몰라 성상의 하교까지 계시게 하였으니, 청컨대 체직(遞職)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숙종 12년 11월 29일(기유)

右議政李端夏上劄曰 今年災異凶荒 振古所無 畿甸雖云稍優 道路之間 持匹布斗粟者 亦被殺掠云 他道可推知也 臣恐前頭 羣恣大起 有土崩瓦解之患 不獨人民死亡 爲可慘像也 庚戌秋凶荒 不至如今年之甚 而辛亥麥又大無 其時錦山之賊 前座首爲魁 有掠取長水縣軍器 入據智異山 剽劫州郡之計 況今民心 又非向日之比 巨猾之爲謀



何止一處而已也 今冬日氣恒溫尙無大雪 嗣歲有麥 又未可期 而儲蓄之匱竭 視辛亥 又不啻相懸非有大警動大節省之舉 則國無維持之策 曲禮曰 歲凶年穀不登 君膳不祭肺馬不食穀 祭事不懸 大夫不食梁 士飲酒不樂 其註曰 膳美食之名 不祭肺 言不殺牲爲盛饌也 祭必有鍾鼓之懸 不懸 言不作樂也 大夫食黍稷以梁爲加 自君至士 各舉一事 其實相通耳 雜記 孔子曰 凶年則乘駑馬 祀以下牲 其註曰 下牲 如常祭用大牢者 降用小牢 小牢者降用特牲 特牲者 降用 特豚之類 以年凶故貶損也 其所謂大牢 今牛羊豕也 小牢 羊豕也 特牲一犢也 特豚 一兒豬也 臣又觀崔鳴吉丁丑封事有曰 今日祭享 旣已裁減 其他用度亦不如前日之浩多 則所定貢案 宜量入爲出 爲數年行用之計爲 先須布 以紓目前民力 但此是權宜救民之政 元非永達遵守之規元定貢案 亦不可不一時磨鍊須布 令外方小民洞知朝廷本意然後 他日國家可免失信之謗云 此盖元貢案 見失於亂離掇拾散亡 更爲修正 又就亂離後 國力量入爲出 別爲目前行用之案以待國力稍裕 欲依元貢案行之之意也 就此觀之 祭享有裁減之舊例 臣取考奉常寺祭物膳錄 則諸道各邑中米條 以丁丑減 甲午復舊懸註 此盖酒米也 若除甲午復舊之數 則雖有所減 仁祖朝以後 宗廟山陵祭位 有加甲午復舊者 有不足於卽今酒米至於引用其他邊豆之品 恰盛其器之外無復餘剩加減者矣 若依雜記祀以下牲之禮 則社稷宗廟永寧殿文廟常祭用大牢者 宜降用小牢 而但都下不能一切禁屠人食牛肉 而國家大祭享不用牛牲 事體未安 臣意用牛豕二牲 不用羊牲



則合於降用小牢之禮 而亦無未安者矣 風雲雷雨山川城隍嶽海瀆先農先蠶雩 祀歷代始祖及厲祭蠶祭鄉校郡以上常祭 用小牢者 宜降用特牲 京外釋奠從享 州縣社稷靈星禳祭 用豕牲者 宜降用特豚 臣又取考禮曹謄錄 外方鄉校牛脯 戊寅年以獐脯代用 禮文則本無鹿脯 而以鹿脯難備 故代以牛脯 戊寅年則以牛疫後牛脯難備 故代以獐脯 獐鹿同品 代用恰好矣 且外方鄉校 本無用牛牲之文 而只爲作脯 必宰牛 自宣惠廳 春秋給價小邑八石大邑至二十石 於此變通 則儲置米用下者 可大減矣 且念古禮 此等降減 似非直欲稱荒歲財力 亦可見貶損弭災之意 而年不順成 八蜡不亦此意也 祭享既以凶年裁減 則不懸一款亦遵古禮爲當 丁丑以後 宗廟文廟皆不用樂 而復舊之後則雖如辛亥凶年 亦無撤樂之事 蓋其時廷臣 未有以古

禮陳請而然也 當萬姓餓死之日 祖宗陟降之靈 必不安於聽樂 殿下奉宗廟祭之以禮 斯爲大孝 凶歲不用樂 卽禮也 不如此 臣恐反爲非禮也 宜自明年春享 社稷宗廟大祭以下 皆用祀以下牲之禮 軒懸之樂 陳而不作 則神人交有所感動 而待常年復舊 則幽明兩無所憾矣 近日傳旨特降 且有自下陳請御供物膳 多有減損 臣民孰不欽仰也 祭享御供 亦既裁減 則國家凡百用度一切減剋 必就目今國力 量入爲出 如丁丑亂後之爲 待常年歲入稍加 還復舊案 則此是 聖祖良相遭難已行之例 伏願詢于廟堂而必行焉 臣又近見故相臣李敬輿 孝宗朝筭辭 有世宗朝宮人不滿百數 廢馬十匹之語 世宗大王卽我東方之聖主也 爲治當法 祖宗 其念于茲 人或以祭享



裁減事 以爲士夫 偷安之習已成痼疾 在下之人 不能克自貶損 如在泥露之中 而終歸於徒減 祭享而已 則反不如初無此舉之爲愈到此 臣亦不能無瞿然 臣聞奢侈之害 甚於天災 臣之所憂 正在於此 若從祭享而降減 則有識士夫必皆克 祛宴安之習思與同胞之民 共入生道 宗國之基 永見鞏固 而臣又嘗聞流傳舊說 世宗大王 常憂閭閻 頗有侈風 言及於相臣黃喜 喜對曰 臣當有以矯之 後日登對 喜以大布爲章服及裏衣 入見曰 臣統率百官而自身始如此 百僚 何敢踰侈乎 然自上亦知此意 躬行示儉爲當云 則世宗納用其言一時侈習 大變云 如臣眇末 雖忝相職 何敢議此 而亦在聖主賢相一轉移之間 此又臣不能無望者也. 祭享變通則雖是禮經聖人之說 臣何敢以管見自信也. 下詢 廟堂之外 又問于原任大臣及在外大老 僉議皆以爲不可 則臣亦無所恨矣 答以筭陳之說 出於憂國之至誠 子用嘉歎 可不體念焉 可以變通事 令廟堂議處 而祭享裁減事 事體重大 當問于諸大臣及在外儒賢 商確處之 仍遣史

官諭之 後收議于諸臣 領議政金壽恒以爲曾在 仁祖朝丙子年 特罷各陵五享大祭 丁丑亂後 又罷宗廟朔望祭 今此減牲撤懸 此之停罷祭享 事禮稍輕依筭辭行之 恐無不可 而第有區區之慮 右相未及進筭 以書私問於臣敢有所 云云. 今其筭末所陳 在下之人不能自克貶損 如在泥露之中 終歸於徒減 祭享而已. 則反不如初無此舉云者 卽臣答書中語也 以事理言之 君臣上下交修相勉 務爲節約 以稱其裁減廟享之意可也 臣之此言 自知不免於苟且 姑息 今見筭辭 不勝慚



恧 然嘗見朱子與南軒張氏 論節祀當廢與否 而有曰今於俗節 既已據經廢祭 而生者則飲食宴樂 隨俗自如殆非事亡如存之意 也 雖與今日事差異 亦可見先賢察理慮事 委曲周慎之意矣 且數百年創行 之舉 不可草草議定令二品以上 會議賓廳 庶合重祀典之道 領府事金壽興 判府事鄭知和以爲 祭祀之禮以誠信忠敬爲主 而亦必奉之以牲 安之以樂 獨先裁減 豈非未安之甚乎 教理姜錕金昌集以爲 右相之筭 出於大變通大

振作之意 而第君臣上下 苟不隨事節損 一如搶攘之際 則恐未免爲徒損

祭享之歸 副校理金萬吉弘文博士宋疇錫以爲 君相實操化柄 殿下苟與大臣 斷而行之 痛自節損 無或有一毫侈汰之事 則今此節省之舉 未必不爲紓國救民之張本矣 正言韓聖佑以爲 今日冗費之可省者 不能悉從減罷 而先於廟享 議此裁減 豈不未安乎 副護軍朴世

采以爲 陳筭主意 出於救民 稽於禮經 非可指難 其未透者 只是變通之後不知朝廷所行諸事 其於表裏名實之際 能無一毫未盡之恨耳 此在神人上下之體 所係莫大 惟聖上深量而審處之 李翔以爲 惟此減損祭享之舉 誠聖代鞏固宗祊之道 一時減損 乃所以爲血食萬世之墓也 當此累歲荐饑之餘 公私掃如 危急存亡 間不容息 享祀不得不減 享祀既減則進御凡百 亦令務從簡略 夫然後 特凡科率之可省者 自不得石省 然則其源豈不在於享祀之減耶 相臣之議 實獲此心 經費之省 先從祀典而始 傳曰 大臣筭辭 實出於憂國靡不用極之意



而第 祖宗朝以來 雖值大侵 未嘗輕議於廟享者 盖以事體重大故也 反復思惟 廟享裁減 終有所未安者 似難輕議矣. 以此論之 牲牢之減損 登歌之停廢 事體重大實非一國創設別祭隨時罷行者之此也 今茲右相所引禮文如此 則自周以降至宋南渡以後 上下數千載之間 果有行之者否乎 設有一時振作之舉 每不免上下不相應 終始不相稱 多未見實效而止 惟在 聖上熟講而處之 判府事閔鼎重以爲 古今異宜 俗尚不齊苟不隨時而從宜 徒欲膠守而泥古 則恐於其間 或不無爽其本意 反致爲弊之端 且念今日君臣上下 一心焦慮 上有以盡吾所以共承宗廟之心 下有以盡 吾所以拯救元元之實 則固爲盡善矣 如或畏敬難持 怠忽易生 在下之人 或不能皆以我 殿下之心爲心 飲食衣服之費 多不能變改其常 而獨於宗廟之奉 先加節損 則恐或有歉於我聖上痛自裁削之至誠也. 奉朝賀宋時烈以爲 大臣所陳 是古聖之制 而朱子嘗以爲 節祀既已據經廢之 而生者隨俗自如 則非事亡如事存之意 今廟薦之儀減省 生人凡百 無所節縮 則與議者 終未免假經作僞之罪 故尤不敢容喙知事南龍翼以爲 相臣之筭語 出自古經皆有根據 而第國之大事在祀 祀典且莫大於太廟 故曾前大侵之年亦無降殺之舉 太牢登歌之盛禮 今若猝然減撤 則其在事體 誠有所未安 且人心不古 狃安成習泥露切已之患有間於亂離風草 感應之效 難望其敏速 臣意 則今此節省自上躬先大布大帛 一如衛侯經亂之際 士大夫家婚喪葬祭之禮一切定式 以至吏胥下人 盡革其踰制奢侈之弊然後 廟享減



損之事 似當徐議 左參贊趙師錫戶曹判書柳尙運兵曹判書李師命工曹參判徐文重吏曹參判朴泰尙以爲 殿下以曹丘會稽之心 躬大布大練之儉 君臣上下如在泥露之中以其所節縮而贏餘者 賙恤濱死之民 猶且不及有萬分不得已之勢而後 上及於宗廟百神之祀 則輕重先後之序得 而神人之際 兩無所憾 判尹李翻以爲 有民而後有國 有國而後宗廟百神 亦皆有依 今此含生之類 將無子遺 雖以廟享之重 未免有裁省之議 推以凶年祀用下牲之義 可見其言之有據繼使犧牲不備 未知其必害於義理 大司成任相元以爲凶年殺祭 載諸禮經 國朝亦有已行之例 卽今國儲匱竭 民生飢困 稅入之縮 無異於兵後 雖宗廟之祭 稍減邊豆之品 撤鍾鼓之響 以示節損憂恤之意 似不害於事先之道 禮曹參判沈梓同知尹以濟司直柳炅刑曹參判朴相馨以爲 目今饑饉荐臻 民命近止 大臣之引古陳筭 蓋出於節損救民之意 而自周以後 上下數千年間 非無凶年飢歲 雜記所載之外 別無已行可徵之文 享禮至重 有難輕議 戶曹參判申琬右尹崔錫鼎以爲 國家祭享之詳定 初出於聖君賢臣之所講究 著爲一王之禮 永久遵行 則茲事體大誠有不可易以變改者 獻納閔鎮周以爲 今日此舉 出於萬不獲已 則君臣上下 正宜交修共勉 以盡節約之實然後 方可以無憾 而近日國事 常患有始無終 設若俗 尙未變 侈濫猶前而廟享之儀通



[풀이]

우의정(右議政) 이단하(李端夏)가 차자(笞子)를 올리기를,  
 “금년 재해의 흉작은 예전에 없던 바로서 경기(京畿) 지방이 조금 낫다고는 하지마는, 노상에서 소량의 피륙이나 곡식을 가진 자라도 살해와 약탈을 당한다고 하오니 타도는 이를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은 앞으로 도적 떼가 크게 일어나면 토붕 와해(土崩瓦解)의 근심이 있을 것이니, 다만 백성이 굶주려 죽는 참사(慘事)에만 그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경술년 가을의 흉작이 금년같이 심하지 않았으나, 그 이듬해인 신해년의 보리 농사가 또 큰 흉작이었습니다. 그 때 금산(錦山)의 도적은 전임 좌수(座首)가 괴수가 되어서 장수현(長水縣)의 병기(兵器)를 약탈해 가지고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웅거하면서 각 고을을 협박 약탈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민심은 또 예전과 같지 아니하니 큰 간활(奸猾)의 계획이 어찌 한 곳에만 그치겠습니까? 올해는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아직 큰 눈이 오지 않았으니, 내년의 보리 농사는 또 어떠할는지 알 수 없으며, 저축한 곡식이 떨어지면 신해년과 비해 볼 때 또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경계하고 크게 절약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나라를 유지할 방책이 없을 것입니다.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재해(災害)로 흉년이 들면 군주의 선(膳)에 부제폐(不祭肺)하며,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아니하며, 제사에 불현(不懸)하며, 대부(大夫)가 양(梁)을 먹지 아니하며, 사(士)는 술을 마시고 즐기지 아니한다.’ 하였고, 그 주해(註解)에



이르기를 ‘선(膳)은 미식(美食)의 명칭(名稱)이고 부제폐(不祭肺)란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풍성하게 잘 차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사(祭祀)에는 반드시 종과 북을 달아 놓고 음악을 연주하는 법인데, 불현(不懸)이란 주악(奏樂)을 하지 아니함을 말함이다. 대부(大夫)는 서(黍)와 직(稷)을 먹고 양(梁)으로 가식(加食)한다. 군주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 각각 한 가지씩만 들어서 말하였지만 그 실상은 서로 통하는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잡기(雜記)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흉년이 들면 노마(駑馬)를 탈 것이며, 제사에는 하생(下牲)을 쓴다.’라 하고, 그 주해에 이르기를, ‘하생(下牲)이란 제사에 상제(常祭)에 대뢰(大牢)를 써야 할 사람은 강등해서 소뢰(小牢)를 쓰고, 소뢰를 써야 할 사람은 강등해서 특생(特牲)을 쓰고, 특생을 써야 할 사람은 강등해서 특돈(特豚) 따위를 쓴다. 흉년인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해에서 이른바 ‘대뢰’란 요즈음의 소[牛], 양(羊), 돼지[豕]이고 ‘소뢰(小牢)’란 양, 돼지이고 ‘특생(特牲)’이란 송아지이고, ‘특돈(特豚)’이란 새끼돼지입니다.

신이 또 최명길(崔鳴吉)의 정축년 상소문을 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이번의 제향(祭享)에 대해서는 이미 절감하였으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용도도 역시 예전처럼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니, 정해진 공안(貢案)을 마땅히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년 동안은 그러한 방침으로 재정(財政)을 운용할 계획임을 먼저 백성에게 널리 알려서 피폐된 민력이 조금 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을 구휼(救恤)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고, 본래 영원토록 준수할 규정이 아니므로 평상시에 적용할 근본적인 공안(貢案) 또한 마련해서 백성에게 공포하여 외방의 소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본뜻을 환하게 알도록 해야만 후일 국가가 믿을 수 없다는 비방을 면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당초에 정한 공안의 원본을 난리 중에 잃어버리고, 흩어져 없어진 것을 다시 주워 모아서 수정하였고, 또 난리를 치른 뒤에 국력에 알맞게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목전(目前)의 시행 방침을 세웠다가 국력이 조금 유족(裕足)해지기를 기다려서 원래의 공안대로 시행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적(文蹟)으로 보면 제향(祭享)에 절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신이 봉상시(奉常寺)의 제물 등록(膳錄)을 상고해 보니, 제도(諸道)와 각읍(各邑)의 중미(中米) 조목에, '정축년에는 감하였고 갑오년에는 복구하였다'라고 주(註)를 달았는데, 여기에 '중미(中米)'란 대개 주미(酒米)입니다. 만약 갑오년에 복구한 수량을 제하면 비록 감했다고 하나 인조조(仁祖朝) 이후에는 종묘(宗廟)와 능묘(陵墓)의 제위(祭位)에 갑오년에 복구한 것보다 많았는데, 오히려 현재의 주미에도 모자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밖에 제기(祭器)에 담아서 쓸 용품에 있어서도 제기에 알맞게 담은 것 외에는 다시 감할래야 감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잡기(雜記)에 기재된 '하생(下牲)'의 예로 제사를 차린다면 사직(社稷),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문묘(文廟)의 상제(常祭)에 대뢰(大牢)로 쓰던 것을 강등해서 소뢰(小牢)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서울 일대에 소 잡는 것을 일체 금하지 못하



여 사람은 쇠고기를 먹으면서 국가의 큰 제향(祭享)에는 소를 쓰지 않는다면 미안할 일입니다. 신의 의견에는 소와 돼지 두 가지만 쓰고 양(羊)을 쓰지 않는다면 소뢰로 강등하는 예문(禮文)에 합당할 것이고, 미안하지도 않을 듯합니다. 풍운 뇌우(風雲雷雨), 산천(山川), 성황(城隍), 악해독(嶽海瀆),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雩祀), 역대 시조(歷代始祖) 및 여제(厲祭), 독제(蠶祭), 향교(鄉校), 군(郡) 이상의 상제(常祭)로 소뢰(小牢)를 쓰는 경우는 강등해서 특생(特牲)을 쓸 것이며, 서울과 지방 문묘의 종향위(從享位)와 주현(州縣)의 사직(社稷), 영성(靈星), 영제(榮祭) 등 시생(豕牲)을 쓰는 경우에는 강등해서 특돈(特豚)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또 예조(禮曹)의 제물 등록(膳錄)을 상고해 보니, 지방 향교에 쓰는 우포(牛脯)를 무인년에는 장포(獐脯)로 대신 썼습니다. 예문(禮文)에는 본래 우포(牛脯)가 없었고 녹포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포로 대신했었는데, 무인년에는 우역(牛疫)으로 인하여 우포를 갖추 수 없었으므로 장포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장(獐)과 녹(鹿)은 같은 품종이므로 대신 쓰기에 아주 알맞습니다. 또 지방 향교에도 본래 우생(牛牲)을 쓰라는 조문은 없었으나, 다만 포(脯)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소를 잡게 되므로, 선혜청(宣惠廳)에서 춘추로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는데, 소읍(小邑)에는 8석(石)이고, 대읍(大邑)에는 20석에 이르렀으니, 그것을 적절하게 변통하면 저치미 지급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고례(古禮)에 이렇게 강등하고 감축하는 것은



단지 흉년의 재력에 맞추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평소에 절감 검약함으로써 재화(災禍)를 멎게 하는 뜻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사(年事)가 순조롭게 성숙하지 아니하면 팔사(八蜡)가 통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또한 이러한 뜻입니다. 제향은 흉년으로 인하여 감하게 되면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한 가지 조항도 고례(古禮)에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축년 이후에 종묘와 문묘의 제향에 모두 음악을 연주하지 않다가 복구한 이후에는 비록 신해년과 같은 흉년에도 음악을 폐지하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그 때의 조신(朝臣)들이 고례를 주청(奏請)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는 흉년을 만났는데, 조종(祖宗)의 영혼이 음악을 듣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종묘를 받들고 예절에 맞게 제사를 모셔야 그것이 대효(大孝)이며, 흉년에 음악을 쓰지 않는 것이 곧 예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의 생각으로서는 도리어 예절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마땅히 내년 춘향(春享) 때부터 사직과 종묘의 대제 이외에도 모두 하생(下牲)의 예(禮)를 적용하여 제향하고 헌가악(軒架樂)은 진열만 해 둔 채 연주하지 않으면 신(神)과 사람이 서로 감동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평년을 기다려 복구한다면 신과 사람이 모두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근일에 특별히 전지(傳旨)를 내리시고, 또 신하들이 주청해서 어공 물선(御供物膳)을 많이 감손(減損)하였으니, 신민된 자로서 그 누가 공경하여 앙모(仰慕)하지 않겠습니까? 제향 용품과 어공(御供) 또한 이미 재감(裁減)하였으니, 국가의 모든 용도를



일체 감축하여서 반드시 현재의 국력에 알맞도록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하기를 정축년의 난리를 겪은 직후처럼 하시고, 평년에 세입(歲入)이 조금 늘어난 때를 기다려 본래의 공안(貢案)대로 환원(還元)하면, 이것이 바로 옛적에 성조(聖祖)와 훌륭한 정승이 재난(災難)을 만났을 적에 이미 시행했던 전례인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의정부(議政府)에 하문하시어 꼭 시행하도록 하소서.

신이 또 근래 고 정승 이경여(李敬輿)가 효종조(孝宗朝)에 올린 차자를 보니 세종 대왕(世宗大王) 때는 궁인(宮人)이 1백명 미만이었고, 어구(御廐)의 마필(馬匹)이 열 마리도 안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 대왕은 곧 우리 나라의 성군(聖君)이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 점을 생각하소서. 사람들은 혹 제향을 감손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대부(士大夫)들이 평소에 안일한 습성으로 이미 고질이 되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검약하고 절감할 수 없어 마치 진흙과 이슬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데, 마침내 제향만을 감손할 뿐이라면 그러한 처사는 도리어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신 역시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사치의 폐해가 천재(天災)보다 더 심하다 하오니, 신이 걱정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제향을 강등하여 감축할 경우 견식이 있는 사대부들이 반드시 모두 안일(安逸)에 젖은 습성을 버리고 일반 동포(同胞)와 더불어 함께 살길을 찾아가기를 생각한다면 우리 나라의 기반이



영구히 견고(堅固)해질 것입니다.

신이 또 전해 오는 옛이야기를 들으니, 세종 대왕께서 민간에 자못 사치스러운 풍습이 있음을 늘 걱정하시어 정승 황희(黃喜)에게 말씀하시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었는데, 훗날 등대(登對)할 적에 황희가 굵은 베로 장복(章服)과 내의(內衣)를 지어 입고 들어와서 임금을 뵈고 말하기를, ‘신은 백관을 통솔하는 자로서 신 자신이 이런 차림새를 하였으니, 백관이 어찌 감히 사치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상께서도 이러한 뜻을 이해하셔서 몸소 검약을 실천하여 보여 주심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세종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시자 한 때의 사치스러운 폐습이 크게 고쳐졌다고 합니다. 신과 같이 못난 사람이 비록 외람되게 정승의 직위에 있아오나 어찌 감히 그러한 것을 거론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거룩한 군주와 어진 정승이 생각을 한 번 전환시키는 데 달린 것이므로, 이것이 신 역시 희망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제향을 변통하는 일은 비록 예경(禮經)에 있는 성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신이 어찌 감히 좁은 소견으로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議政府)에 하문(下問)하신 외에 또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밖에 있는 대로(大老)에게 물으셔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두 불가하다고 반대한다면 신 또한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차자에 진달한 사연은 나라를 근심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말이므로, 내가 칭찬하여 감탄(感歎)하는 바이니, 체념(體念)



하지 아니하겠는가? 변통할 만한 것은 의정부로 하여금 상의 해서 처결하기로 하겠고, 제향을 절감하는 일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니,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밖에 있는 유현(儒賢)에게 문의해서 참작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내 사관(史官)을 보내어 유지(諭旨)를 전하였다. 뒤에 여러 신하들에게 수의(收議)하였는데,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일찍이 인조조(仁祖朝) 병자년에는 특히 각 능묘(陵墓)의 오향 대제(五享大祭)를 폐지하였고, 정축년의 난리 이후에는 또 종묘(宗廟)의 삭망제(朔望祭)를 폐지하였었는데, 지금 그 희생(犧牲)을 감하고 헌가악(軒架樂)을 철폐하는 따위는 제향을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데 비하면 사체(事體)가 약간 경미하오니 우의정(右議政)의 건의대로 실행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한편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의정이 차자를 올리기에 앞서 서면으로 신에게 묻기에 감히 거기에 대해 대답한 일이 있었사온데 지금 그 차자 끝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검약(儉約)하고 절감할 수가 없어서 마치 진흙과 이슬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데, 마침내 제향만을 감손할 뿐이라면 그러한 처사는 도리어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바로 신의 답서(答書) 중의 말입니다. 사리로 말하건대, 위로 임금과 아래로 신하가 서로 노력해서 절약을 힘써 제향(祭享)을 절감(節減)하는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 말이 구차하고 고식적(姑息的)임을 면치 못하는 줄을 스스로 깨닫고 있던 중에 지금 차자(答子)의



내용을 보니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주자(朱子)가 장남헌(張南軒)에게 보낸 편지에 절사(節祀)를 폐지하는 일이 옳으나 그르냐 하는 문제를 논변(論辨)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지금 속절(俗節)의 다례(茶禮)를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이미 폐지하였는데, 산 사람은 음식과 연락(宴樂)이 시속(時俗)에 따라 전과 같으니, 이는 죽은이 섬기기를 산사람 섬기듯이 한다는 뜻에 매우 어긋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문제와는 좀 다르기는 하나, 또한 선현(先賢)들이 사리를 고찰하고 염려하는 데 자상하고 신중히 하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시행하던 일을 갑자기 경솔하게 의정(議定)할 수 없으니, 2품 이상의 관원을 빈청(賓廳)에 불러서 회의하도록 하는 것이 제전(祭典)을 소중히 여기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영부사(領府事) 김수항(金壽恒)과 판부사(判府事) 정지화(鄭知和)는 아뢰기를,

“제사를 받드는 예법(禮法)은 성신(誠信)과 충경(忠敬)을 위주로 하고, 또 받드시 희생(犧牲)을 드리고 음악으로 위안하는 법입니다. 이 일로써 논한다면 희생을 줄이고 등가(登歌)를 정지하는 일은 사체(事體)가 중대한 것이므로, 사실상 한 나라에서 별제(別祭)를 창설해서 수시로 폐지하기도 하고 시행하기도 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우의정이 인용한 예문(禮文)이 이와 같다면 주(周)나라부터 송(宋)나라가 남천(南遷)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에 과연 실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령 한 때 용단을 내려 실행했던 일이 있



있더라도 번번이 상하가 서로 응하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대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었으니 다만 성상(聖上)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조처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민정중(閔鼎重)은 아뢰기를,

“예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풍속이 같지 아니한데, 진실로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할 줄을 모르고, 그저 옛것만을 고수하면서 변통하지 않는다면, 혹 그 사이에 그 본의를 벗어나서 도리어 폐단이 생기게 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오늘날 군신(君臣) 상하가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하여 위로는 종묘(宗廟)를 받드는 성심을 극진히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제하는 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진실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지니기 어렵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는 마음은 생기기 쉬워서 아래 있는 사람이 모두 우리 전하의 마음처럼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음식과 의복 등의 소비를 평상시와 다름 없이 하면서 종묘(宗廟) 제사를 받드는 데에만 먼저 절감한다면, 혹시 전하께서 몸소 삭감하시는 지성(至誠)에 미흡(未洽)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은 아뢰기를,

“대신들이 아뢴 말은 이것이 옛날 성인(聖人)이 제정(制定)한 바이오나, 주자(朱子)가 일찍이 말하기를, ‘절사(節祀)는 이미 예경(禮經)에 따라 폐지하였는데도 산 사람은 시속에 따라 전과 다름없으니, 죽은이 섬기기를 산사람 섬기는 것과 같이 하



는 본의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종묘의 향사(享祀)와 의례(儀禮)를 절감하자고 하면서 산사람의 모든 용도는 조절하여 감축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의정(議定)한 사람은 마침내 예문을 핑계삼아서 거짓을 저지른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감히 함부로 말 참견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남용익(南龍翼)은 아뢰기를,

“정승(政丞)이 아뢴 말씀은 옛날 예경(禮經)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근거(根據)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의 큰 일은 제전(祭典)에 있고, 제전은 종묘(宗廟)의 향례(享禮)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큰 흉년에 있어서도 제수(祭需)를 줄인 일이 없었습니다. 태뢰(太牢)와 등가(登歌)의 성대한 예절(禮節)을 지금 만약 갑자기 줄이고 철폐한다면, 사체(事體)에 진실로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인심이 예전과 다르고 안일(安逸)한 습성이 몸에 배어서 진흙과 이슬이 몸에 닥치는 걱정도 난리 중에 고생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 바람 앞에 풀이 쓰러지듯이 임금의 덕화(德化)에 감응(感應)하는 효과를 신속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 이 절감하는 문제는 먼저 주상(主上)께서 굵은 베옷에 거친 명주관을 쓰기를 한결같이 위후(衛侯)가 난리를 치른 때와 같이 하시고, 사대부의 집에 혼례(婚禮), 상례(喪禮), 장례(葬禮), 제례(祭禮)는 일체 법을 정하여, 이서(吏胥)와 하인(下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도에 지나치게 사치한 폐습을 고친 다음 제향(祭享)을 절감하는 일은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좌참찬(左參贊) 조사석(趙師錫), 호조 판서 유상운(柳尙運), 병조 판서 이사명(李師命), 공조 참판 서문중(徐文重), 이조 참판 박태상(朴泰尙)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조구(曹丘), 회계(會稽)의 있었던 일로 마음을 가져 몸소 굶은 배와 거친 명주 옷을 입고 검약을 실천하시고 군신(君臣) 상하가 진흙과 이슬 속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절약한 물화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백성을 구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 비로소 종묘(宗廟)와 백신(百神)의 제향(祭享)에까지 미쳐 간다면 경중과 선후의 순서가 합당하게 되고, 신(神)과 산사람이 다같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판윤(判尹) 이숙(李翹)은 아뢰기를,

“백성이 있어야만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만 종묘와 백신이 의지할 데가 있을 것인데, 지금 백성이 장차 살아 남을 수가 없게 된 판국이니, 비록 중요한 종묘(宗廟) 제향(祭享)이라도 절감하자는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흉년에는 제사에 하생(下牲)을 쓴다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그 말이 근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희생(犧牲)이 평상시보다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리에 어긋나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고, 대사성(大司成) 임상원(任相元)은 아뢰기를,

“흉년에 제례(祭禮)를 강쇄(降殺)하는 일은 예경(禮經)에 기재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국고가 탕갈되고 민생이 굶주려서 세입(稅入)의 감소가



난리 이후와 다름이 없으니, 비록 종묘(宗廟)의 제향에 제수(祭需)를 조금 줄이고 음악 연주를 폐지하여 용도를 절약하여 기민(飢民)을 구휼(救恤)하는 뜻을 보여 준다고 하더라도 조선(祖先)을 섬기는 도리에 허물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예조 참판 심재(沈粹), 동지(同知) 윤이제(尹以濟), 사직(司直) 유경(柳旻), 형조 참판 박상형(朴相馨)은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만나 백성이 굶주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으므로, 대신이 고례(古禮)를 인용하여 차자를 올린 것은 대체로 국가의 용도를 절약해서 백성을 구제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周)나라 이후로 수천 년 동안에 흉년 기근이 없지 않았지만 《잡기(雜記)》에 기재된 이외에는 별다르게 절감한 전례를 증거로 삼을 명문(明文)이 없으니, 지중(至重)한 향례(享禮)를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호조 참판(戶曹參判) 신완(申琬)과 우윤(友尹) 최석정(崔錫鼎)은 아뢰기를,

“국가의 제례를 상정(詳定)한 것은 당초 거룩한 군주와 현명한 신하가 강구(講究)하여 한 왕조의 예법(禮法)을 만들어 영구히 준수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실로 쉽사리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헌납(獻納) 민진주(閔鎭周)는 아뢰기를,

“오늘날 이러한 조처는 만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일이니, 군신(君臣) 상하가 마땅히 서로 힘쓰고 노력하여 절약하는 실효를 거둔 뒤에라야 바야흐로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나라의 정사(政事)가 매양 시작했다가는 흐지부지되는 병



통이 있는데, 만약 세속의 풍습을 개선하지 못하여 사치한 버릇은 전일과 다름이 없으면서 유독 종묘의 제향(祭享)의 의식(儀式)만 먼저 절감한다면 어찌 매우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교리(校理) 강현(姜鉉)과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우의정의 차자는 크게 변통하여 아주 진작(振作)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군신(君臣) 상하가 진실로 일에 따라 절약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기강이 문란할 때와 다름 없이 한다면 아마도 공연히 제향만 줄인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고, 부교리(副校理) 김만길(金萬吉)과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 송주석(宋疇錫)은 아뢰기를,

“군주와 재상(宰相)은 만백성을 교화하는 권병(權柄)을 잡고 있으니, 전하께서 진실로 대신과 더불어 과감하게 실행하시고 통절(痛切)히 절약하셔서 조금이라도 사치한 일이 없게 한다면, 지금 이 절감하는 조처가 반드시 급박한 국가의 재정을 돕고 백성을 구휼하는 장본(張本)이 될 것입니다.”

하고, 정언(正言) 한성우(韓聖佑)는 아뢰기를,

“오늘날 필요하지 아니한 모든 용도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삭감하지 못하고 먼저 종묘(宗廟) 제향(祭享)만을 절감한다면 어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호군(副護軍) 박세채(朴世采)는 아뢰기를,

“우의정이 아뢴 본뜻은 기민을 구제하기 위함이었고 예경(禮經)을 상고해도 난처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만 마음에 찝찝한 점은 이렇게 변통한 뒤에 조정에서 실행하는 모든 행사가 표리(表裏)와 명실(名實)이 조금도 미진한 유감이 없게 될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신(神)과 사람, 그리고 위아래의 도리에 있어서 지대한 관계가 있으니, 다만 성상(聖上)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처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상(李翔)은 아뢰기를,

“이번에 향사 비용(享祀費用)을 절감하자는 거조는 실로 성대(聖代)의 종묘(宗廟)를 굳건히 하기 위한 방법이고, 한 때의 절감은 마침내 자손 만대에 영구히 향사하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흉년이 거듭된 나머지 공사(公私)의 재정이 탕갈되어 위급 존망이 경각(頃刻)에 달려 있는 이 즈음에 향사(享祀)를 절감(節減)하지 않을 수 없고, 향사를 절감하게 되면 궁중(宮中) 진상(進上)의 모든 용도 또한 절약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줄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재정(財政)을 감축(減縮)하는 근본이 어찌 향사(享祀)를 줄이는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승의 의논은 사실상 그러한 마음에 맞는 것이니, 경비의 절감은 제례(祭禮)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차자의 사연은 참으로 나라를 극진히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지금까지 비록 큰 흉년을 만났을지라도 종묘(宗廟)의 향사(享祀)를 경솔하게 의논한 사람은 없었으니, 그것은 사체(事體)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종묘 향사를 감축하



는 것은 끝내 미안한 점이 있으므로 경솔하게 의논하기는 어렵겠다.”  
 하였다.

● 숙종 20년 5월 20일(병술)

獻納尹誠教 正言李廷謙論長水縣監安汝益典獄奉事安世禎  
 卽無賴之徒 而張希載之妖妾 卽其孽族也 閔黯初欲締結希  
 載 初以汝益等爲之階梯 寅緣交好 潛相通議 逮至己巳 乃  
 以不識丁之人 圖占小科 卽通仕籍 及今黯與希載 表裏相和  
 欺弄機關 至於流入諺札 謀害坤殿 一國人心 切齒腐心 夫  
 黯與希載之 相與親密 尋究其源 專由於汝益 等請並 邊遠  
 定配 上從之

[풀이]

헌납 윤성교(尹誠教)와 정언 이정겸(李廷謙)이 논핵하기를,  
 “장수 현감(長水縣監) 안여익(安汝益)과 전옥 봉사(典獄奉事)  
 안세정(安世禎)은 본시 무뢰한(無賴漢)으로서 장희재(張希載)의  
 요망한 첩이 바로 그 일족(孽族)입니다. 민암(閔黯)이 애당초 장  
 희재와 결탁하려고 할 때에 처음 안여익 등으로 사다리를 놓아  
 엉겨붙어 좋게 지내고 몰래 서로 통모하다가 기사년에는 정자  
 (丁字)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과(小科)를 도모해 주고 즉시 사적



(仕籍)에 오르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민암이 장희재와 더불어 안밖으로 서로 짜고 기관(機關)을 마음대로 조종(操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찰(諺札)을 유입(流入)시켜 곤전(坤殿)을 모해 했으니, 온 나라의 인심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바입니다. 대저 민암이 장희재와 더불어 서로 친밀하게 된 그 근원을 찾는다면 전적으로 안여익 등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청컨대 모두 변방 먼곳으로 귀양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숙종 21년 8월 1일(경인)

全羅道南原雲峰長水等地 自是日連二夜霜降 諸道皆然 狀聞相續

[풀이] —————

전라도의 남원(南原), 운봉(雲峰), 장수(長水) 등지에, 이날로부터 연거푸 이틀밤 서리가 내렸으며 제도(諸道)가 모두 그러하였으니, 장문(狀聞)이 서로 잇따랐다.



## ● 숙종 22년 2월 3일(경자)

庚子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南九萬言 畿民大都貧乏 而不念農作之爲本業 苟趨目前升斗之廩 離鄉去土 流入京師者 不可勝計 奸冒又居其半 稍宜防遏其中有土田者 諭以農時迫近 使返本業 因資之糧料及種子 遣還其土 上曰 但可保其精審耶 左議政柳尙運曰 雖難保其精審 而近萬人屯聚 恐顛 沓熏染致疾疫滋熾 諸臣或言無精審理 或言且可 諭遣 上命諭遣之 九萬言 京都根本 宜先周恤 請將江都米數萬石 以賑之 上從之 尙運與禮曹判書尹趾善皆曰今年若又未登 他日之憂 非今日比 江都蓄積 何可輕發 上復曰 比言亦有理 退而反覆熟講 趾善言 畿殿民窮莫甚 而守今或有閉糶不賑者 上問誰也 趾善曰 水原府使李彥紀 楊州牧使金盛迪 上命從重推考 另加申飭 尙運言 今茲畿饑 不減兵禍 兄係彌文 宜一切姑寢 若儒生殿講 武臣朔試射 亦爲不急之務 上曰 武士勸將不可全廢 尙運陳領敦寧尹趾完一脚右膝下墜落 大臣得此奇 疾 宜遣醫以問 九萬又請周急 又言前參判林泳 歿於京邸 家在湖南 運樞爲雖此時不可官給擔夫 宜量給銀布 使之私雇返葬 上並從之 副提學吳道一言 姜世龜有清儉節 雖有護黨之失 宜加原恕 甲戌問事郎廳洪重夏 丁時潤 吳尙文 波得元等 亦宜收叙 上遂命世龜職牒還給重夏等並叙用 九萬請解李畚銓任 使速赴朝 且其兄知縣湖西 宜移之畿邑 以便畚往省 許之 持平李彥經啓姜榆事 上曰 其疏語之



陰慘 無異濟億請竄不爲過 但既竄濟億 又竄榆則陳疏論辨  
者 必紛起作鬧參疏者 皆不赴學 勿爲煩論

[풀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전라도 열 고을의 수령(守令)이 재황(災荒)이 더욱 심한 것으로써 연명(聯名)으로 상소하여, 전세미(田稅米)를 모두 면포(綿布)로 환작(換作)하여 가을이 되거든 바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조정에서 이미 급재(給災)하고, 또 세액(稅額)의 반을 줄였으므로 다시 줄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나, 민간에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음도 생각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허가하여야 마땅합니다. 또 열 고을 이외에 남원(南原), 창평(昌平), 옥과(玉果) 같은 곳도 재상(災傷)을 입은 것이 열 고을과 다를 바 없으나, 듣건대 그 수령이 유고(有故)하여 연명하지 못하였다 하니, 마찬가지로 허가하여야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운봉(雲峰)은 이미 죄다 줄이도록 허가하였는데, 현감(縣監) 맹양호(孟養浩)도 연명하였습니다.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이러하므로, 진정(賑政)을 맡기기 어려워 그대로 둘 수 없을 듯하나, 지금 영송(迎送)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우선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읍(諸邑)에서 청한 것을 모두 허가하라. 운봉은 파직하여야 하겠으나, 우선 종종 추고하라.”

하였다. [열 고을은 금산(錦山), 순창(淳昌), 용담(龍潭), 고산(高山), 진산(珍山), 임실(任實), 진안(鎭安), 장수(長水), 동복(同福) 및 운봉(雲峰)이다.] 남구만이 또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지선(尹趾善)을 갈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이 때 윤지선이, 유생(儒生)이 상소하여 배척한 일 때문에 오래도록 인퇴(引退)한 채 나오지 않아서 대정(大政)이 점점 늦추어져 가므로, 남구만이 아뢰어 갈게 된 것이다. 이 때 도성(都城) 안에 명화적(明火賊)이 일어났는데도 아직 잡지 못하였으므로, 남구만이 좌포도 대장(左捕盜大將), 우포도 대장(右捕盜大將)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기전(畿甸)은 넉넉히 구휼(救恤)하여야 마땅하니,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의 돈으로 부족한 곡물의 수를 대급(代給)하여 씨앗을 사서 쓰는 밑거리로 삼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남구만이 전 응교(應敎) 김진규(金鎭圭)를 서용하라는 명이 오래도록 내리지 않은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여 거두어 서용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 주지 않았다. 또 강민저(姜敏著)를 사유(赦宥)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더욱 거론할 수 없다.”

하였다.



## ● 숙종 27년 10월 24일(정축)

鞠廳罪人 鄭彬尹順命 各刑問三次 訊杖三十度 罪人張天漢 刑問一次 訊杖三十度 並前招內無加減 罪人安世禎刑問一次 訊杖三十度 招曰 身於戊辰九月初十日 與閔章道往 會淑正家 其翌日又與章道及希載 同往閔宗道家 則宗道下鄉云其子彦良 與之相接 而謀議辭緣則章道先曰 南人換局事 以希載作爲蹊逕 則可成云 希載曰 惟命是從 彦良曰 叔主之計誠好云 他餘辭緣 前招內無加減鞠廳啓曰 罪人鄭彬尹順命三次嚴刑 一向堅忍不服 罪人張天漢安世禎 嚴訊之下猶不直招 而世禎則前招發端之語 亦不一一吐實 只以戊辰年問渠與章道希載 往會於宗道家 與其子彦良酬酌設話 略有所供 其他辭緣皆稱前招內無加減減情狀尤極痛惡 請並加刑得情 世禎所引閔彦良 請拿來 罪人安 汝益前招中聚會之說 己巳年問 果有所問 淑正家聚會時 矣姪則年少 或有往來之事云 而更待諸因覈問後稟處事 啓達矣 其時招辭 猶不盡其實狀 請以此更推 答曰依啓 並嚴刑得情 罪人鄭彬尹順命 各刑問四次 訊杖三十度 罪人張天漢安世禎 各刑問一次 訊杖三十度並前招內無加減 罪人安益更招曰 身有惡姪世禎奸毒 淑正之故 陷比死地矣 己巳年聚會之說矣 姪世禎以果有翻局之功衆所稱道 而已巳前後 世禎與其黨類常常聚會于希載家 而聚會黨類之



某某 知不得且身甲 戌年爲長水倅 其年族卽定配於順天 乙亥年放還 丙子年得風病 至于今不能如 常 戶庭之間 尙且扶杖 何能往來於聚會之處乎 此外更無所達 罪人閔彥良招曰 身於庚戌辛亥年間 借入四寸大父家故 世禎居在其後 身自童稚 有相知之 分矣 其後更不相見 而已巳年 身與五寸叔章道 自大父家下來章道爲賀世禎小 科 要入世禎家 身與之同入 庚戌以後 始復相見 只問寒暄而已 己卯年身自 謫所放還後 世禎忽然來見身 自厥以後至 于今日 更無相見之事 自己巳至己 卯十年之內 身若與世禎 有相見之事 則死猶甘心 至於謀議事 全不知得 罪人 吳始復招曰 身本以罪累之蹤屏伏鄉村 千萬意外 伏聞 大行王妃禮陟之音 不勝罔極 聞卽登途 夜深後到東門外 待罷漏奔哭 而分義所在不敢退歸 仍住 於闕下近處閭家 所謂趙時旻 以其父與身文武同榜之故 魯前在京時 時或往 來矣 聞身入來 紛沓中來見 卽時退去 而成服過後 日晚未及還鄉矣 時旻適爲 來見身偶問哭班往來時聞之 則或云禧嬪依例服喪 或云不爲服喪 閭巷間所 聞何如 時旻曰 閭巷所傳亦如此 而未得其詳云云 伊時問答 不過如斯 身偶 以所聞 泛然言及 而時旻意以身欲得其詳歟 渠之聞於某處 元非身所知 至於 張希載家安否 生理等說 本非身之所發口 無據莫甚 而服制一款事 偶然語及 至有逮問之舉實是意慮之所不及 傳旨內辭綠 千萬曖昧 鞠廳啓曰罪人鄭彬 尹順命張天漢安世禎等 其情迹已露 而運次嚴訊 一向抵諱 誠極痛惋 請並加 刑 罪人安汝益聚會



之事 專歸之其姪渠則稱以有病 元不往來 已涉可疑 至於其姪之已巳前後蹤迹渠已知之 而其黨類謀議 皆以爲不知者 明是飾詐 請刑 推 罪人閔彦良與安世禎 旣曰童稚相識 而前後相面 不過二三番云者 殊不近 似 請與世禎一處面質 罪人吳始復偶以所聞 言及不時炆云 而時炆之招則以 爲服喪與否 不得聞知 汝須詳探云爾 則彼此所供 大假相左 請時炆處更推後 稟處答曰依啓 鞫廳姑罷

풀이

국청 죄인(鞫廳罪人) 정빈(鄭彬)과 윤순명(尹順命)을 각각 세 차례 형문(刑問)하였는데, 신장(訊杖)이 30도(度)에 이르렀고, 죄인 장천한(張天漢)을 한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이 30도에 이르렀으나, 모두 전의 공초와 다름이 없었다. 죄인 안세정(安世禎)을 한 차례 형문하고, 신장이 30도에 이르니, 공초하기를, “저는 무진년 9월 초 10일에 민장도(閔章道)와 더불어 숙정(淑正)의 집에 가서 모였습니다. 그 이튿날 또 민장도, 장희재(張希載)와 더불어 민종도(閔宗道)의 집에 같이 갔더니, 민종도는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였고 그 아들 민언량(閔彦良)이 저희를 상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謀議)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장도가 먼저 ‘남인(南人)이 환국(換局)하는 일은 장희재를 중간 매개로 삼아야만 성사시킬 수가 있다.’ 하였더니, 장희재가 ‘명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언량



이, ‘숙부의 계획은 정말로 좋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밖의 사연은 전의 공초와 다를 바가 없었다. 국청(鞠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정빈과 윤순명을 세 차례 엄하게 형문하였는데, 줄곧 완강히 견디며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장천한과 안세정은 엄하게 심문하는 아래에서도 오히려 바로 공초하지 아니하였는데, 안세정은 전의 공초에서 단서(端緒)를 낸 말도 또한 일일이 실토하지 아니하고 단지 무진년 간에 그가 민장도, 장희재와 더불어 민종도의 집으로 가서 모여, 그 아들 민언량과 주고받은 말들만 대략 공초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연은 모두 전의 공초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일컬으니, 그 정상이 더욱 지극히 간악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형문을 더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安汝益)은 전의 공초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은 기사년간에 과연 들은 바가 있는데, 숙정의 집에 모였을 때에 저의 조카는 나이가 어렸으나, 혹 왕래한 일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 죄수들을 핵문하기를 기다렸다가 뒤에 계품(啓稟)하여 처리할 일을 계달합니다. 그리고 그 때 공초한 사연도 오히려 그 실상을 다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아울러 엄하게 형문하여 실정을 캐내도록 하라.”



하였다. 죄인 정빈과 윤순명을 각각 네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이 30도에 이르렀고 죄인 장천한과 안세정을 각각 한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을 30도에 이르렀으나, 모두 전의 공초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죄인 안여익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는 악한 조카 안세정과 간악하고 악독[奸毒]한 숙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을 처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사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은, 저의 조카 안세정이, ‘정말로 환국(換局)한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칭도(稱道)한다’라고 하였고, 기사년 전후에 안세정이 그 당류(黨類)와 더불어 항상 장희재의 집에 모였으나 그 모였던 당류가 누구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저는 갑술년에 장수 군수(長水郡守)가 되었다가, 그 해에 도로 곧 순천(順川)에 정배(定配)되었으며, 을해년에 석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년에 풍질(風疾)을 얻어서 지금까지 보통 때와 같지 않습니다. 집 문앞과 뜰 사이에서도 오히려 또 지팡이를 짚는데, 어찌 능히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 왕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밖에는 달리 아뢴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죄인 민언량이 공초하기를,

“저는 경술년과 신해년 사이에 사촌 대부(大父)의 집을 빌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안세정이 그 뒤에 거주하였는데, 제가 어린아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만나지 못하였었는데, 기사년에 제가 5촌숙(五寸叔) 민장도와 더불어 대부(大父) 집에서 돌아오다가 민장도가 안세정의



소과(小科)를 축하하려 안세정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므로 제가 그와 더불어 같이 들어갔고, 경술년 이후에 비로소 다시 서로 만났었는데 다만 절후에 대한 인사를 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묘년에 제가 적소(謫所)에서 석방되어 돌아온 뒤 안세정이 홀연히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다시 서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기사년에서 기묘년에 이르기까지 10년 이내에 제가 만약 안세정과 더불어 서로 만난 일이 있다면, 죽어도 좋을 것입니다. 모의(謀議)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였다. 죄인 오시복(吳時復)이 공초하기를,

“저는 본래 죄루(罪累)의 자취가 있어 시골에 처박혀 있었는데, 천만 뜻밖에도 대행왕비(大行王妃)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망극함을 이기지 못한 채, 소식을 들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이슬한 뒤 동대문(東大門) 밖에 이르러 파루(罷漏)를 기다려 분곡(奔哭)하였는데, 분의(分義)가 있는 바라 감히 물러나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그대로 대궐 근처의 여염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시경(趙時旻)은 그 아버지가 저와는 문무과(文武科)의 동방(同榜)이었으므로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때때로 혹 왕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분답(紛番)한 가운데서도 와서 만나고는 즉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성복(成服)이 지난 뒤 날이 저물어 미처 시골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조시경이 마침 왔길래, 제가 우연히 묻기를, ‘곡반(哭班)에 왕래할 때에 들으니,



어떤 이는 「희빈이 예(例)대로 상복을 입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는데, 여항(閩巷)의 소문은 어떠한가? 하였더니, 조시경이 ‘여항의 소문도 또한 이와 같으나, 그 상세한 바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문답은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바를 가지고 대충 말하였는데, 조시경은 제가 그 상세한 것을 알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곳에서 들었는지는 원래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장희재의 집에 안부와 생활 따위의 말은 본래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 근거가 없는 것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리고 복제(服制)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우연히 언급했던 것인데, 저에게까지 미쳐 묻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실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전지(傳旨) 가운데의 사연은 천만 번 애매합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정빈과 윤순명, 장천한, 안세정 등은 그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으나 연달아 엄하게 심문하는데도 줄곧 버티고 숨기니, 진실로 지극히 통분스럽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형문을 더하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은 사람들이 모였던 일을 오로지 그 조카에게 돌리고, 그 자신은 병이 있다고 핑계대며 원래 왕래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미 의심스러운 데 관계됩니다. 그 조카의 기사년 전후의 종적(蹤迹)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 당류(黨類)의 모의(謀議)를 모두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을 꾸며서 속이는 것입니다. 청컨대 형



추(刑推)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이 안세정과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서로 알았다고 하고는 전후에 서로 만난 것이 불과 두 세 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너무나 사리에 가깝지 아니 하니, 청컨대 안세정과 더불어 한 곳에서 면질(面質)하게 하소서. 죄인 오시복은 우연히 들은 바를 조시경에게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조시경의 공초에서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들어서 알지를 못하니, 네가 모름지기 자세하게 탐문하라’고 했다고 하였으니, 피차에 공술한 것이 대단히 서로 어긋납니다. 청컨대, 조시경에게 다시 추국한 다음에 계품(啓稟)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 숙종 34년 2월 12일(기축)

己丑 發遣暗行御史于諸道 忠清道李翊漢鄭栻 慶尙道朴鳳齡李頤晚 全羅道 黃啓河李廷濟 後數月 次第復命 翊漢貶林川郡守李湛 結城縣監鄭棟隆 海美 縣監李喜喜泰褒 鴻山縣監金與慶 栻貶鎮岑縣監鄭世模 清州牧使李宜晚 同縣監洪重享褒恩津縣監沈廷老 鳳齡 貶大丘判官朴世集 寧海府使李宜晚 河陽縣監李仁復褒長鬐縣監李東益順晚 貶山陰縣監鄭纘輝 咸陽郡守李鼎華 啓河 貶古阜郡守韓沅 長興府使朴星錫 海南縣監柳東起 井邑縣監權高 靈光 郡守朴守剛 龍安縣監宋相淹 興德縣監林再茂 泰仁縣監崔昌演褒羅州牧使李 益著 廷濟 貶 雲峰縣監鄭文彬 樂安郡守張友軫 長水縣監金混 渾陽府使韓世讓

[풀이]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제도(諸道)에 파견(派遣)하였다. 충청도(忠清道)에는 이익한(李翊漢), 정식(鄭栻)을, 경상도(慶尙道)에는 박봉령(朴鳳齡), 이이만(李頤晚)을, 전라도(全羅道)에는 황계하(黃啓河), 이정제(李廷濟)를 보내었다. 그 뒤 수월(數月)만에 차례로 복명(復命)하였는데, 이익한은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담(李湛), 결성 현감(結城縣監) 정동룡(鄭棟隆), 해미 현감(海美縣監) 이희태(李喜泰)를 폄론(貶論)하고, 홍산 현감(鴻山縣監)



김흥경(金興慶)을 포계(褒啓)하였으며, 정식(鄭栻)은 진감 현감(鎭岑縣監) 정세모(鄭世模), 청주 목사(淸州牧使) 이만령(李萬齡), 영동 현감(永同縣監) 홍중형(洪重亨)을 폄론하고, 은진 현감(恩津縣監) 심정로(沈廷老)를 포계(褒啓)하였으며, 박봉령은 대구 판관(大丘判官) 박세집(朴世集), 영해 부사(寧海府使) 이의만(李宜晩), 하양 현감(河陽縣監) 이인복(李仁復)을 폄론하고, 장기 현감(長鬐縣監) 이동익(李東益)을 포계(褒啓)하였으며, 이의만은 산음 현감(山陰縣監) 정찬휘(鄭纘輝), 함양 군수(咸陽郡守) 이정화(李鼎華)를 폄론하였으며, 황계하는 고부 군수(古阜郡守) 한항(韓沆), 장흥 부사(長興府使) 박성석(朴星錫), 해남 현감(海南縣監) 유동기(柳東起), 정읍 현감(井邑縣監) 권설(權高), 영광 군수(靈光郡守) 박수강(朴守剛), 용안 현감(龍安縣監) 송상엄(宋相淹), 흥덕 현감(興德縣監) 임재무(林再茂), 태인 현감(泰仁縣監) 최창연(崔昌演)을 폄론하고,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익저(李益著)를 포계(褒啓)하였으며, 이정제는 운봉 현감(雲峰縣監) 정문빈(鄭文彬), 낙안 군수(樂安郡守) 장우진(張友軫), 장수 현감(長水縣監) 김혼(金混), 담양 부사(潭陽府使) 한세양(韓世讓)을 폄론하였다. [폄론[貶]한 자는 혹은 나문(拿問)하고 혹은 파직(罷職)하였으며, 포계한 자는 혹은 승직(陞職)하고 혹은 비단을 내려 주었다. 관서(關西), 관북(關北), 해서(海西), 관동(關東)도 모두 같았다.]



## ● 숙종 37년 11월 5일(경인)

義禁府以 權高事 議大臣 右議政趙相愚以爲 權高事 肯啓在於夫差有無 告目虛實 而道臣緘辭 與所供相左 不可以渠之 難於捉納 而遂議收殺 窮訊得情似合獄體 行判府事李頤命以爲高之罪 以臺啓觀之 死有餘罪 而以李濟緘答言之 告目出示 旣在北咨之前 又無賊運海島 動兵日期等語高罪似有輕矣 但夫差之有其人 告目之非詐妄 終不自明 三訊而不承 使高 果自造妖誕之言律無可引應死之文 然其人有積謗 其事甚陰秘經議酌處 不復明覈 則無以破 羣情之惑湖南捕賊時 營裨鄭道積諸人 必審其情節 郭基之則親見夫業云 所莅長水玉果井邑錦山等邑 爲其爪牙者 亦必有與知之人 並宜憑問 且其在王果也 託以賑民 請得營穀 營築海堰 朴弼明爲監司時 行查未竟云 此雖不關於此事 亦宜嚴究高 今姑停刑仍囚 今京外法司 各別嚴問於應問各人 以斷其罪上 命依李判府事議施行



[풀이]

의금부(義禁府)에서 권설(權設)의 일을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조상우(趙相愚)는 말하기를,

“권설의 일은 긴요한 것이 김부차(金夫差)란 자가 있는지 여부와 고목(告目)의 허실(虛實)에 있는데, 도신(道臣)의 함사(緘辭)와 공초(供招)한 바가 서로 어긋납니다. 그에게 납공(納供)을 독촉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갑자기 수쇄(收殺)해서는 안되니, 끝까지 신문(訊問)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옥체(獄體)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행 판부사(行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은 말하기를,

“권설의 죄는 대계(臺啓)로 보건대 죽어도 죄가 남겠으나, 이제(李濟)의 함답(緘答)으로 말하건대, 고목(告目)을 내어 보인 것이 이미 북자(北咨)가 오기 전이었고, 또 ‘해도(海島)의 적(賊)과 연대하여 군사를 동원할 기일 등을 정했다’는 등의 말이 없으니, 권설의 죄는 가벼운 듯합니다. 다만 김부차(金夫差)란 그런 사람이 있는지와 고목의 사망(詐妄)하지 않음이 끝내 자명(自明)하지 않아 세 번 신문하여도 승복(承服)하지 않고 있는데, 설사 권설이 과연 스스로 요탄(妖誕)한 말을 지어냈더라도 율법에 인용하여 죽일 만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이 쌓이고 그 일이 매우 음비(陰秘)하니, 논의를 거쳐 참작하여 처리하고 다시 분명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들의 미혹(迷惑)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호남(湖南)에서 적을 잡을 때 영비(營裨) 정도적(鄭道積)과



제인(諸人)은 반드시 그 정절(情節)을 살폈을 것이고, 곽기지(郭基之)란 자는 몸소 김부업(金夫業)을 보았다고 하며, 다스렸던 장수(長水), 옥과(玉果), 정읍(井邑), 금산(錦山) 등의 고을에 그의 조아(爪牙)가 된 자들도 역시 반드시 참여해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빙문(憑問)해야 합니다. 또 그가 옥과에 있을 때 백성을 진휼(賑恤)한다고 핑계하고 영곡(營穀)을 청해 얻어서 바다 독을 쌓았는데, 박필명(朴弼明)이 감사(監司)로 있을 때 가서 조사하기를 끝내지 못하였다고 하니, 이는 비록 이 일에 관계되지 않더라도 역시 엄하게 추구(推究)해야 합니다. 권설은 이제 우선 형을 정지하고 그대로 가두었다가 경외(京外)의 법사(法司)로 하여금 각별히 응당 물어야 할 각인(各人)에게 엄히 묻게 하여 그 죄를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판부사 이이명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라 명하였다.



## ● 숙종 37년 11월 27일(임자)

義禁府罪人權高更推高援據道臣守令及前後文報 縷縷自明  
禁府請令本道查啓從之 前縣監鄭道 亦以高捕賊時事 拿問  
納供 槩以爲癸未年 以監司同閔 鎮遠軍官隨往 主將密招分  
付曰 長水縣監權高 熟暗智異山賊情 須馳往密問即馳進密  
問 則高曰 此賊歲時 必聚會窟穴 趁此時往探 則可無失捕  
之患 及期而往 則高言 今行可以必捕 仍曰 從某山某路 作  
官行樣張傘疾 馳 則賊徒必不爲疑 依其言甲申正朝 馳入德  
裕山所謂賊徒 見官行之過 無不望見 俄而 二人登高 舉手  
揮之 伏兵數十餘名 突出盡縛賊徒 其中二三名逃走 使所率  
下人 沒數結縛並搜其贓物 歸語高曰 伏兵何人所送高曰 此  
亦吾所定送者 又曰何若是詳知其 伏處及道里地形乎 答曰  
有一人投入賊中 動靜無不詳知 問其人爲誰 卽夫差夫業叔  
姪 登高揮手者此人也 歸以告主將 其問曲折 不過如斯 禁  
府啓請待郭基之 問後稟處高所莅四邑人與知者 及海堰事  
俱未查到 郭基之亦自西邑就拿 未及納供 而適值大赦 並放  
釋



## [풀이]

의금부(義禁府) 죄인 권설(權尙)을 다시 추문하였는데, 권설이 도신(道臣), 수령(守令) 및 전후의 문보(文報)를 이끌어 누누이 스스로 변명하므로 금부에서 본도로 하여금 조사해 아뢰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前) 현감(縣監) 정도적(鄭道積)을 또한 권설이 포적(捕賊)할 때의 일로써 나문(拿問)하여 납공(納供)했는데, 대강 말하기를,

“계미년에 감사(監司) 민진원(閔鎭遠)의 군관(軍官)으로 따라갔는데, 주장(主將)이 몰래 불러 분부하기를 ‘장수 현감(長水縣監) 권설이 지리산(智異山)의 적정(賊情)을 잘 아니, 모름지기 달려가 비밀히 물으라.’ 하기로 즉시 달려가 비밀히 물었더니, 권설이 말하기를, ‘이 적들은 세시(歲時)면 반드시 굴 속에 모여 드니, 그 때에 가서 탐색하면 잡지 못할 염려가 없다’ 하였습니다. 기일이 되어 갔더니, 권설의 말이 ‘지금 가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 하고는, 이어 말하기를, ‘어떤 산을 따라 어느 길로 가되 관행(官行) 모양으로 일산(日傘)을 펴고 달려가면 적도(賊徒)들이 반드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갑신년 정조(正朝)에 덕유산(德裕山)으로 달려 들어갔더니, 이른바 적도(賊徒)들은 관행(官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금 후 두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손을 흔들자 복병(伏兵) 수십여 명이 뛰어나와 적도를 모조리 묶었으며, 그 중 2, 3명이 도주하므로 거느리고 있던 아랫사람을 시켜 전부 결박하고, 아울러 그들의 장물(贓物)을 찾아냈습니다. 돌아와 권설에



게 말하기를, ‘복병은 누가 보낸 것인가?’ 하니, 권설이 말하기를, ‘이 역시 내가 정해 보낸 자들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어떻게 그들이 숨어 있는 곳과 도리(道里)의 지형을 것처럼 자세히 아는가?’ 하니, 답하기를, ‘한 사람을 적 가운데 투입(投入)해 놓아 동정(動靜)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기에, 묻기를, ‘그가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김부차(金夫差), 김부업(金夫業) 숙질(叔姪)인데, 높은 곳에 올라가 손을 흔든 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와 주장(主將)에게 그간의 곡절(曲折)을 고하였으니,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금부(禁府)에서 계청하기를,

“곽기지(郭基之)의 나문을 기다린 후에 품처하겠습니다.”

하였다. 권설이 재직했던 네 고을 사람으로 알고 있는 자와 해언(海堰)에 대한 일은 모두 사계(查啓)가 도착하지 않았고, 곽기지 역시 서읍(西邑)에서 잡혀 와 미처 납공(納供)하기 전에 마침 대사(大赦)를 만나 아울러 석방되었다.



● 숙종 40년 12월 27일(을미)

乙未 全羅左道暗行御史李眞儒 復命 貶長水縣監金鎮望 綾州收使鄭一寧 並論前南原府使李聖漢貪饕不法狀

[풀이] \_\_\_\_\_

전라좌도 암행 어사 이진유(李眞儒)가 복명(復命)하여 장수 현감(長水縣監) 김진망(金鎮望)과 능주 목사(綾州牧使) 정일녕(鄭一寧)을 폄직(貶職)하고, 전(前) 남원 부사(南原府使) 이성한(李聖漢)의 탐오(貪汚)하고 법을 어긴 정상을 아울러 논핵하였다.

● 숙종 43년 6월 29일(임자)

全羅左道暗行御史洪啓迪 還朝復命 谷城前縣監金萬敵 寶城郡守金錫夏 昌平縣令鄭重海 長水縣監任叡 濟州牧使洪重周 以不治不法 或拿或罷

[풀이] \_\_\_\_\_

전라좌도 암행 어사(全羅左道暗行御史) 홍계적(洪啓迪)이 조정에 돌아와 복명(復命)하였다. 전 곡성 현감(谷城縣監) 김만직



(金萬敵), 보성 군수(寶城郡守) 김석하(金錫夏), 창평 현령(昌平縣令) 정중해(鄭重海), 장수 현감(長水縣監) 임선(任叡), 제주 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 등은 잘 다스리지 못하고 법을 어겼다 하여 나문(拿問)하거나 파직하였다.





● 경종 3년 11월 21일(정유)

禁府堂上姜銳李眞儒等 請對 以偽造御批罪人黃夏臣黃尙質  
 設鞫嚴問爲請 上從之 又請醫官李時弼一體設鞫 上 亦許之  
 李萬根供辭以爲 得見於趙龍錫 故問於龍錫 則轉引黃尙質  
 尙質又以出自其叔夏臣爲言 禁府請拿夏臣 而仍請設鞫 夏  
 臣未及覈實 而爲此徑請 有乖獄體 盖欲張太其事也 相臣亦  
 知其失 而默無一言 他尙何論眞儒奏 全羅監司黃爾章 以本  
 道荐飢狀請 移配長水 定配人閔昌道於他道 而道內竄配者  
 不特昌道一人 則獨爲狀請 殊失事體 請監 司推考 湖南邑  
 疊 配者及遠近不均者分 配諸遺 上從之 遂移配全羅道 竄  
 謫人李喜朝等十二人于諸道 喜朝自靈巖 移鐵山 魚有龍自  
 靈巖移泗川 金礪者靈巖移河東 李重協自海南移慶源 朴師  
 益自泰仁移清河 趙道彬自沃溝移安陰 李秉常自扶安移咸陽  
 權膺自 扶安移開寧 李益命自光州移吉州 閔昌道自長水移  
 聞慶 黃璿自茂長移陽德 憤無逸自金堤移寧遠 眞儒憑藉本  
 道狀請 並遷諸謫而以謫客 並萃一道 惑亂人心 易生禍變爲  
 言 主此已甚之論時 諸人被配未幾奔竄 南北 其中李喜朝老



病未及到配在遠奄歿 喜朝以遺逸 進秩至亞卿嘗蒙禮遇雖其  
訾謗溢世 而黨禍至及於山林怨毒日深 其敗可立而待矣

[풀이]

금부 당상(禁府堂上) 강현(姜鉉)과 이진유(李眞儒) 등이 청대(請對)하여 어비(御批)를 위조한 죄인 황하신(黃夏臣), 황상질(黃尙質)을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중히 신문(訊問)할 것을 청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또 청하기를,

“의관(醫官) 이시필(李時弼)도 일체 설국(設鞫) 하소서.”

하니, 임금이 또한 허락하였다. 이만근(李萬根)의 공사(供辭)에 ‘조용석(趙龍錫)에게서 얻어 보았다’ 하였으므로 조용석에게 물었더니, 황상질을 끌어대었고, 황상질은 또 그 숙부(叔父)인 황하신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황하신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고, 이어 설국(設鞫)할 것을 청하였는데, 황하신을 채 핵실(覈實)하지도 않고 앞질러 이런 청을 한 것은 옥체(獄體)에 어긋남이 있으니, 대개 그 일을 확대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상신(相臣) 역시 그 실수를 알고서도 묵묵히 한 마디 말도 없었으니, 다른 일이야 논해 무엇하겠는가? 이진유가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황이장(黃爾章)은 본도(本道)에 거둬 흉년이 들었다면서 장수(長水)에 정배(定配)된 사람인 민창도(閔昌道)를 다른 도(道)에 이배(移配)할 것을 장청(狀請)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내(道內)에 찬배(竄配)된 자가 단지 민창도 한 사람뿐이 아니니, 한 사람을 장청하는 것은 사체(事體)를 아주 잃는 일입니다. 청컨대 감사(監司)를 추고(推考)하고, 호남(湖南)의 고을에 겹쳐 유배(流配)된 자와 멀고 가까운 것이 고르지 못한 자를 여러 도(道)에 나누어 유배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따랐다. 드디어 전라도(全羅道)에 찬적(竄謫)된 사람인 이희조(李喜朝) 등 12인을 여러 도에 이배(移配)했는데, 이희조는 영암(靈巖)에서 철산(鐵山)으로, 어유룡(魚有龍)은 영암에서 사천(泗川)으로, 김여(金礪)는 영암에소 하동(河東)으로, 이중협(李重協)은 해남(海南)에서 경원(慶源)으로, 박사익(朴師益)은 태인(泰仁)에서 청하(淸河)로, 조도빈(趙道彬)은 옥구(沃溝)에서 안음(安陰)으로, 이병상(李秉常)은 부안(扶安)에서 함양(咸陽)으로, 권응(權鷹)은 부안에서 개령(開寧)으로, 이익명(李益命)은 광주(光州)에서 길주(吉州)로, 민창도는 장수에서 문경(聞慶)으로, 황선(黃璿)은 무장(茂長)에서 양덕(陽德)으로, 신무일(愼無逸)은 김제(金堤)에서 영원(寧遠)으로 각각 옮겨졌다. 이진유가 본도의 장청(狀請)을 빙자하여 아울러 여러 적소(謫所)를 옮겨는데, ‘적객(謫客)이 한 도(道)에 모두 모여 있으면 인심을 혼란(惑亂)시키고 쉽게 화변(禍變)이 생기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대단히 심한 이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 때 여러 사람이 유배(流配)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북으로 분주하게 귀양을 갔는데, 그 중에서 이희조는 늙고 병들어 미처 배소(配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길에서 갑자기 죽었다. 이희조는 유일(遺逸)로 직질(職秩)이 아경(亞卿)에까지 올랐고 일찍이 예우(禮遇)를 받았다. 아



무리 그 험뜯고 비방하는 것이 세상에 넘친다 하더라도 당화(黨禍)가 산림(山林)에까지 미쳐 원한이 날로 깊어지니, 그 실패를 서서 기다릴 수 있겠다.

● 경종개수실록 3년 11월 21일(정유)

丁酉 移配湖南竄謫人十二人于諸道 李喜朝自靈巖移鐵山 魚有龍自靈巖移泗川 金礪自靈巖移河東 李重協自海南移慶源 朴師益自泰仁移清河 趙道彬自沃溝移安陰 李秉常自扶安移咸陽 權膺自扶安移開寧 李益命自光州移吉州 金昌道自長水移聞慶 黃璿自茂長移陽德 慎無逸自金堤移寧遠

[풀이]

호남(湖南)에 찬적(竄謫)된 사람 12인을 제도(諸道)에 이배(移配)하였다. 이희조(李喜朝)는 영암(靈巖)에서 철산(鐵山)으로 옮기고, 어유룡(魚有龍)은 영암에서 사천(泗川)으로 옮기고, 김여(金礪)는 영암에서 하동(河東)으로 옮기고, 이중협(李重協)은 해남(海南)에서 경원(慶源)으로 옮기고, 박사익(朴師益)은 태인(泰仁)에서 청하(清河)로 옮기고, 조도빈(趙道彬)은 옥구(沃溝)에서 안음(安陰)으로 옮기고, 이병상(李秉常)은 부안(扶安)에서 함양(咸陽)으로 옮기고, 권응(權膺)은 부안에서 개령(開寧)으로 옮기고, 이익명(李益命)은 광주(光州)에서 길주(吉州)로 옮기고, 민창



도(閔昌道)는 장수(長水)에서 문경(聞慶)으로 옮기고, 황선(黃璿)은 무장(茂長)에서 양덕(陽德)으로 옮기고, 신무일(愼無逸)은 김제(金堤)에서 영원(寧遠)으로 옮겼다.





● 영조 1년 10월 16일(경진)

司諫李顯祿上疏略曰 噫今日亂賊之所以必討者 雖匹夫匹婦皆能知之而 殿下方且力拒公議 輒從末減 以爲如是處分 則不害爲好生之德 無妨於姑息之政 而殊不知 祖宗三百年傳授之業 駸駸然日隲於危亡之域亟舉嚴討 射將墜之綱常 得以復植焉 燕商之潛挾私貨 透漏事情 府之利其收稅 不禁痼弊之狀 已悉於 清北繡衣之啓 而臣問今番賚咨譯官 挾帶私商 而銀貨極其狼籍 此亦灣府 搜檢不嚴之致也 賚咨官及首譯宜今嚴查推治 至於團練軍官及商賈八包等謬 規 嚴立科條 一切防塞焉 長水縣石橋倉 卽貢稅收捧船運出浦之所而耆老所差 人輕起築堰之役 調發亡邑之民丁 又今出給縣倉賑廳米 將欲截塞倉前之大浦 今若塞浦 則縣倉將輟 更無可設之地 浦眼失業 舉有流亡之患 憑藉京司 侵虐 下民之罪 可勝誅哉 臣謂其任事者數人 宜今攸司 從重科罪 而並罷其役焉 批曰 近日之事 予豈徒守先入之見哉賚咨事 今攸司推治疏末事 依施



[풀이]

사간(司諫) 이현록(李顯祿)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아! 오늘 난적(亂賊)을 반드시 토죄(討罪)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비록 필부 필부(匹夫匹婦)일지라도 모두 능히 이를 알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또 공의(公義)를 강력히 거절(拒絶)하시고 번번이 말감(末減)을 따르시니. 이와 같이 처분(處分)하신다면 호생(好生)의 덕에는 해로움이 되지 않고 고식(姑息)적인 정사에는 무방(無妨)한 것이라 여기시지마는, 조종조(祖宗朝) 3백년 전수(傳授)의 업적이 급속(急速)하게 날로 위망(危亡)의 지경에 떨어지는 것을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빨리 엄중한 토벌(討伐)을 거행하여 장차 떨어지려는 강상(綱常)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연상(燕商)이 몰래 사화(私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정(事情)을 누설시켰으나, 의주(義州)에서는 그 수세(收稅)를 이득(利得)으로 삼아 고질적인 폐해를 금지시키지 않은 형상이 이미 청북(淸北) 암행 어사(暗行御史)의 계달(啓達)에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이 듣건대 이번에 재자관(齎咨官)과 역관(譯官)이 사사로이 상인(常人)을 데리고 가면서 은화(銀貨)가 매우 낭자(狼藉)하였다고 하니, 이것도 또한 의주(義州)에서 수색하여 검거하는 것이 엄격치 못한 소치입니다. 재자관(齎咨官)과 수역관(首譯官)을 마땅히 엄중히 조사하여 추문(推問)해 다스리고 단련 군관(團戀軍官)과 상고(商賈), 팔포(八包) 등의 틀린 규례에 대해서는 엄하게 과조(科條)를 정하여 일체 막도록 하소서.



그리고 장수현(長水縣)의 석교창(石橋倉)은 곧 공세(貢稅)를 수봉(收捧)하여 배[船]로 운반할 때 포구(浦口)로 나가는 곳인데, 기로소(耆老所)의 차인(差人)이 경솔하게 제방을 쌓는 역사(役事)를 일으켜 7읍(邑)의 민정(民丁)을 조발(調發)하고 또 현창(縣倉)의 진휼청(賑恤廳) 쌀을 내어 주며 장차 창고 앞의 큰 포구(浦口)를 끊어 막으려고 하니, 지금 만약 포구를 막으면 현창(縣倉)은 장차 철폐 되어 다시는 설치할 곳이 없게 될 것이고 포구의 백성은 생업(生業)을 잃게 되어 온통 떠돌아 다니는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니, 경사(京司)를 빙자(憑藉)하여 하민(下民)에게 침범 학대(虐待)한 죄를 이루 다 주책(誅責)하겠습니까? 신은 그 일을 맡은 자 두서너 사람을 마땅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중한 데로 따라 과죄(科罪)하고 아울러 그 역사를 파(罷)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요즘의 일이 내가 어찌 한갓 선입견(先入見)만을 지킨 것이겠는가? 재자관(齎咨官)의 일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고하여 다스리고 상소 끝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겠다.”

하였다.



## ● 영조 5년 4월 6일(경진)

庚辰引見大臣備堂 命進西征錄 右議政李台佐曰 朝家行賞已足 而軍校輩 皆以未入別單爲怒 望賞太過矣 上曰 別單依甲子庚申例爲之 俾慰軍情好矣 仍 命趙顯命李森李逐良出去 更爲抄錄入侍 台佐曰 李匡德狀啓 語多不擇匡德人品及文辭 不能紆餘 如備局報狀 例皆如此 而以其人品 本如此 故受而不較也 殿下頃罷折受孰不敬仰 乾止山有何難罷之事 而辭氣如此 殊非 獎直之道矣 上曰藩臣道理 異於經臺諫其所執則是 而言豈可若是無嚴 台佐曰 殿下於 眞殿主脈之地 必欲折受於新生翁主官房者 臣實未曉 三百餘年爲眞殿永陳之地 豈可折受於官房乎 其於聽聞何如也 上曰 子若知 眞殿來脈 豈可給官房乎 台佐曰柳汀順 乃中興第一勳臣 而此地賜給後 以 眞殿主脈 還寢命還屬 眞殿 更給官家以他處則好矣 欲卽行關而下教與 殿下平日處事有異 故姑止不送 若但奉行聖旨 則非置臣於此職之意 故敢達矣 史臣書之以 太祖眞殿主脈 四百年永陳之地 某朝折受於官房 則豈不有累於 聖德乎 上久不下答兵曹判書趙文命奏 醴泉前郡守徐宗一當變初 不無功勞 而見漏於原從 宜追錄於原從一等允之 台佐曰 臣以乾止山事陳達 未承發落之前 文命徑以他事陳達 請推考允之 司諫姜必慶進曰 大臣所奏不賜答 非敬大臣之道矣 上曰 予於匡德事方有所思 故未及下答 而



諫臣之言 誠是矣 備忘當改下 還入之 文命陳諫官中漢語將  
 絕種 清學十員中 三科窠宜除出二窠 移屬漢學以爲試才付  
 科之地又陳漢學兼教授 全無爲官擇人之意 成廟朝 內瞻副  
 正崔時珍 賤人也 以善華語兼教授 昔年掌令金德承 以善華  
 語久兼教授矣 二員中一窠 極擇文官中 曉漢語者 破格差下  
 似宜允之台 佐進軍功加抄別單 上覽訖 命承旨書之曰 初別  
 單中禹夏亨孫命大朴敏雄申震燾李泰昌呂必善李禹錫李龜端  
 任洙田萬積朴慶泰崔以俊金爾章 皆以軍功 加資實職 令兩  
 銓 各別錄用 李天球閔濟萬 已承傳 而今無實職 令該曹作  
 窠調用 追別單中 金有漢姜相周崔時晚朴俊慶趙得重洪以源  
 申漫高道成李世寶閔濟章 俱以軍功 已授加資 亦令兩銓 各  
 別錄用 而其中受實職承傳者 爲先待闕卽補 姜碩耆石瑞昱  
 吳壽鵬李漢震 只有相當職除授承傳 高萬世劉錫亮李興祥  
 及初別單中 方得規崔潤等只授邊將承傳 而并尙未調用 非  
 激勵之意 春臺試才四分者 亦作闕收用 況胃失石樹功者乎  
 其令兩銓相當職爲先調用 邊將承傳者 依觀武才例作窠以付  
 而金柱天賞加賞銀 已授僉使 今無可論 日後調用 趙泰先  
 免喪後 旣令同知除授 今則勿論 李震一 今雖實職 功不下  
 於桂天僉使除授往者捕盜軍官之前後效力 已多 旣入別單者  
 宜有激勸之道 李天萬僉使除授 居昌假將丁載興 此等外方  
 之人 宜先激勸令兵曹 各別調用 前監司黃璿旣卒逝 已贈職  
 而忠州牧使金在魯 旣已褒加 重臣體重 其無可施之賞與林  
 世謙金尙鼎并勿論 鄭觀賓鄭壽邦柳耆相金斗剛 并陞叙 金  
 濼加一階李萬興柳一章 并實職除授文以益安就章 并邊將承



傳 其外守令邊將 下至軍士奴隸 或加資或陞叙 或準職除授 或右任差定 或免役或免賤或給馬或米布題給或令本道 參酌 施賞有差 茂長官奴命輝愛萬并免賤沃溝縣監申以衝陞叙 雲峰前營將孫命大已賞 勿論 全州閑良李泰三加資 茂長將校孫益道金鱗河廉應圭 并加資全州閑良金潤鼎鄉將官 差定 鎮安前縣監李淨 準職除授 雲峰千摠折衝姜萬廈加資 司果朴起龍已賞 勿論 哨官判官崔汝大 南原前把摠李仁邦 右任差定全州司果全弼 右任差定 給米布 閑良都世康加資 南原都將洪世一米布從優題給 沃溝下吏林致榮 鄉將官差定 茂長將校金再輝黃處坤 薛厚建金泰成申漢宇金弼俊金順光人吏金百齡金相鉉金相潭金德球金光漢安時益朴致興張麗台金相潤 使令裴次中朴尙金燾突朴幕運李燾已劉永金準已金升白 官奴弼興破回致三七月金挺良明土里 并米布題給 全州判官李錫仁 準職除授 雲峰討捕軍官閑良張漢三 已賞 勿論 南原千摠閑良金道圭加資 雲峰討捕軍官判官朴完業 右任差定 米布從優題給南原僉正許浹令該曹調用 雲峰把摠判官金聲玉右任差定旗鼓官判官李萬點右任差定僉正崔萬屹米布題給 討捕軍官判官朴碩彬加資 鄉吏朴必清加資 咸陽下吏徐文徵 使令宋有發 已賞 勿論 雲峰哨官閑良白日大任差定 米布題給 待變色金震采 鄉將官差定 下吏金虎良崔碩泰 鄉將官差定官奴再光國芳 使令吳舉先韓間儀 并米布問題給 鎮安前僉使全舜佐 令該曹調用老除下吏鄭后泰閑良高俊迪 鄉將官差定 旗牌官崔浩 領將崔尙起 軍官徐海必朴命龜金碩昌已授鄉將官者 右任差定 其餘并鄉將官差定



長水將校鄭益漢鄭雲哲 米布題給 茂朱勸武士閑良李世達  
 鄉將官差定 官奴幸元義俊 限三年免役領將前把摠張震良  
 下吏朴泰好 軍官閑良韓蓋起 使令林得萬 軍官閑良金斗載  
 下吏白雲澄 并米布題給 全州司果張重翊 高山民人林英遠  
 將校林德采 雲峰閑良金允耆 并米布題給 折衝林東弼米布  
 從優題給 知穀官判官李再芳 司果李致達 米布從優題給 南  
 原哨官閑良柳一星 雲峰哨官閑良朴信一 右任差定 閑良金  
 以內 司果趙漢徵 鄉吏朴必敬朴泰興 南原旗牌官閑良孔德  
 金雲峰旗牌官閑良朴乃采 谷城哨官閑良呂泰益金德輔 并米  
 布題給 昌原千摠閑良玄永徵 南原把摠判官魚萬光 哨官閑  
 良林元大 昌平哨官閑良文斗天 南原哨官閑良丁必具張斗  
 杰姜時傑玉果別將閑良沈世榮南原別將閑良徐漢重 雲峰待  
 變軍官閑良金彥章全時大金世望 討捕刑房吏徐致道 討捕  
 軍官閑良楊萬彭 鎭安軍官金重喆安以泰趙重呂 雲峰勦捕將  
 折衝郭後僑 旗牌官閑良李處三 長水旗牌官司果金始萬 把  
 摠閑良李弼天哨官閑良金世中李尙魏 鎭安軍官李碩才金光  
 弼朴有天朴元宗金成雲沈善白金未達 長水下吏鄭華晶禹廷  
 九 使令徐漢龜別牌姜厚得 茂朱勸武士閑良韓碩順朴自進旗  
 牌官閑良徐以昌 下吏金再重尹是衝梁啓澄宮奴夙骨里令金  
 黔 同 下吏黃再灑 使令崔加八里姜芝里金 軍官閑良李世郁  
 使令金石屎將前別將李晚得 宮奴順伊 領將折衝韓蓋國 宮  
 奴莫山 領將閑良張命維 司果金應弼并米布分等題給 南原  
 軍官朴叟章 鄉將官差定 米布題給使令良人徐漢昌私奴姜丹  
 午 都將李貴大徐渭大 軍官趙尙采金夏植鄭東益朴弼義 鎭



安軍官鄭夏命田有稷李龜萬金龍劉汝望徐必先黃汝才朴先  
 昌尹必興 把摠李時蔓 哨官金必英金廷華旗牌官張時建朴仁  
 宗張相五李如梅 知穀官李昌培礪山哨官金仁覺 鎮安軍官徐  
 魏昌 茂朱討捕軍官閑良金尙惺 下吏朴以檢 步兵韓興三 官  
 奴順伊 使令林得萬討捕軍官司果李泰景 閑良李枝郁 旗牌  
 官閑良尹日就金鎮弼 武學趙起鳳 勸武士閑良梁時海 哨官  
 朴進發 使令元貴千 官奴梅突信永幸得 中軍閑良崔鳳來中  
 部千摠閑良李萬蕃 左司 把摠閑良金以鏡 前哨官兼 司僕金  
 大錫 判官姜泰民閑良 鄭以昌梁以濟 知穀官兼司 金重鉉  
 旗鼓官兼司僕金萬鏡 旗牌官閑良金起兌司官司僕崔成錫 閑  
 良金時慶朴致三朴泰華崔益京金義擇兼司僕崔日善朴茂載  
 閑良李晚得 司果金自成 閑良金聲發崔俊京黃英弼梁德白  
 黃連澄金聲遠趙乙善申件里金李弼先金成甲張孝仲朴以杞梁  
 碩祉徐以昌 兼司僕李聲大金汝載金永才 珍山左部左司右哨  
 官梁俊載 中哨官尹辰傑 旗牌官崔善發李戊才趙碩載朴泰儉  
 韓尙善錦山千摠閑良柳淵 哨官閑良洪萬龜黃河清 把摠閑良  
 梁鳳至 哨官閑良 辛必宗權萬貞 判官朴成鳳 龍潭哨官判官  
 朴成業 閑良朴震茂 旗牌官司果白受 玉 閑良宋世望李夏柱  
 李大成 全州折衝金禹器 并米布分等題給 清安出身楊敏 垺  
 李混 并加資 閔道昌 折衝延世鴻并調用 官奴許益返張起俊  
 并免賤 幼學延 若漢 半熟馬題給 上黨山城 折衝金漢翊加  
 資 實職除授 出身趙重廉加資 折衝 金志行 判官趙重泰 并  
 相當職除授 折衝金從弼 閑良成至恒黃龍澤 折衝林萬揆 李  
 震祐 并邊將承傳 米布加題給 營奴金尙鼎免賤 鎮撫崔瑞徵



米布從優題給 營 奴李后成金萬弼免賤 營奴金次雄朴興萬  
黃汝憲 已入原從 并勿論 閑良梁萬梁 斗慶 米布題給 前別  
將金晋熙 鎮撫柳根蕃 閑良朴天老趙春錫 折衝李泰錫郭信  
章金萬鎰 閑良鄭泰伯趙重璧金萬根罷得秋 鎮撫金弼徵 前  
別將李震弼 出身崔 成禹 并米布題給 官奴金次傑 營奴金  
次云張信元朴斗望 已入原從 勿論 谷生 郭次松 閑良郭信  
夏 良人金以太 御營軍孫之哲 米布題給 出身趙重伯加資  
閑 良李震儀 判官尹斗齡 邊將除授 營奴趙次錫 已入原從  
勿論 使令崔雲先 米布 題給 閑良表以貴 司果金尙迪閑良  
金萬錫金萬鍾金斗鎰營奴柳天三金貴傑 閑良 罷弼善林時茂  
斗實金弼枝梁斗益宋順傑金斗剛朴東就 貢士郭斗七 閑良金  
萬徵 私奴朴明起 使令張突同金太明 官奴金義達 私奴金元  
石 以上官營奴等 限五年 免役 其餘米布問題給 鎮川千摠  
禹夏哲加資 士人趙重觀 半熟馬題給 趙重鼎相 當職除授  
宋載泰米布題給 前判官林鳳瑞幼學金鼎弼 將校池七星 并  
米布問題 給槐山前郡守金爾璋 出身成禹績並加資 假吏李  
枝望 邊將除授 木川幼學李命 達 相當職除授 幼學尹以寬  
李箕賢尹以五尹柄尹楮金東來李振夏尹料李若濟金 泰斗崔  
昌祚李著鳳李若裕尹以天李光夏 并來布題給 竹山閑良金弼  
雄 木川貢生 申若演律生安上瑞 閑良趙完璧 并米布題給  
天安討捕軍官李廷夏加資 軍牢全 業三 米布題給 清州討捕  
軍官高允昌加資 軍牢李往山 米布題給槐山陰禹碩 米 布題  
給清州哨官金一豪 軍牢金萬石米布題給公山討捕軍官邊得  
泰驛吏申從必 米布題給 清州使令郭次萬 限已身免役 鎮川



吏孫斗樞李孝才 米布題給槐山假 吏裒始弘 邊將除授沔川  
 御營保韓無致 限已身免軍役 閑良具時華加資 懷仁士 人朴  
 來翊加資 燕岐座首張碩徵 軍功遞兒僉知除授 清州討捕軍  
 官金漢廷 鄉將 官右任差定 軍牢金山益 木川折衝申瑞輝  
 私奴金崑澄 米布題給 清州使令私奴 韓順立 已入原從 勿  
 論 沃川將校鄭時雄鄭時大 米布題給 清州折衝劉貴說 沃  
 川將校李萬蕃 報恩官奴李直李仁蕃 報恩出身周道興 閑良  
 朴震興 天安幼學柳 時華 騎兵禹石章 清安出身林世 禧 清  
 州使令李萬業 木川幼學李萬經慶陳聖時 清州待變軍官成至  
 恒 懷德幼學宋夏疇 溫陽司果方最一 清安別將韓時泰 并來  
 布分等題給清州討捕軍官鄭壽一 右任差定 軍牢李白隱同  
 米布題給 清州寺奴郭碩昌 清州討捕軍官金聲振 軍牢李自  
 必 討捕軍官李永培宋義元 軍牢朴燾 巨非李往山金米同 軍  
 牢私奴朴時同 鎮川吏宋就載咸時輝 將校姜必成槐山鄉吏陰  
 光薰 假吏陰億年陰體坤裒八萬稷山司果李萬根木川幼學金  
 弘運 全義寺奴鄭世雄 鎮川閑良金運亨 清州閑良梁次佺 并  
 米布間分等題給 朴時同已入原從 勿論 丹陽幼學辛翊華李  
 萬煜申周潤權字恒張世達申致泰李萬馨 并煙戶役限三年除  
 減 公山討捕軍官李 燦勿論 廣州出身鄭夏翊 清州折衝禹善  
 大朴泰重 軍牢楊至來 并米布分等題給 清州使令朴龍 大興  
 前哨官尹道雄 清州旗牌官金靈泰郭雲徵金斗載 使令劉有才  
 以上 自本道 參酌施賞



풀이

대신(大臣)과 비당(備堂)을 인견(引見)하고 《서정록(西征錄)》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조정에서 공을 논하여 상(賞)을 행한 것이 이미 충분한데도 군교(軍校)들이 모두들 별단자(別單子)에 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으니, 상을 바라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별단자는 갑자년과 경신년의 전례에 따라 만들어 군정(軍情)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 조현명(趙顯命), 이삼(李森), 이수량(李遂良)에게 나가서 다시 초록(抄錄)하여 가지고 와서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광덕(李匡德)의 장계(狀啓)는 말을 가리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광덕의 인품과 문사(文辭)가 여유 작작하지 못하여 비국(備局)에 보고하는 서장(書狀)도 으레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품이 본디 이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전하(殿下)께서 지난번 절수(折受)를 파하신 데 대해 누군들 우러러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지산(乾止山)의 절수를 파하는 것에 무슨 어려워할 것이 있기에 사기(辭氣)가 이와 같단 말입니까? 자못 정직을 권장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번신(藩臣)의 도리는 경악(經幄)이나 대간(臺諫)과는 다르다. 그가 고집하는 것은 옳지만 말을 어찌 이렇게 무엄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진전(眞殿)의 주맥(主脈)이 되는 지역을 기필코 새로 태어난 옹주 궁방(翁主宮房)에게 절수(折受)케 하려고 하는 이유를 신은 실로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3백여 년 동안 진전을 위하여 오래도록 묵혀 왔던 땅을 어떻게 궁방에 절수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그것이 진전의 내맥(來脈)인 줄 알았다면 어찌 궁방에 출급(出給)했겠는가?”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유순정(柳順汀)은 국가를 중흥(中興)시킨 제일의 훈신(勳臣)이었습니다만, 이 땅을 사급(賜給)한 뒤에 그것이 진전의 주맥이라는 이유로 도로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니 도로 진전에 예속시키도록 명하시고 궁가(宮家)에는 다시 다른 곳을 사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시 관문(關文)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하교가 전하께서 평일에 하시던 처사와 달랐기 때문에 우선 중지하고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성지(聖旨)를 봉행만 할 뿐이라면, 이는 신을 이 직책에 둔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사신(史臣)이 태조(太祖)의 진전(眞殿)의 주맥으로 4백 년 동안 오래도록 묵혀 왔던 땅을 아무 임금 때 궁방(宮房)에 절수케 하였다고 기록한다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가 되



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오랫동안 하답(下答)하지 않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문명(趙文命)이 주달하기를,

“예천(醴泉)의 전 군수(郡守) 서종일(徐宗一)은 변이 발생한 초기를 당하여 공로가 없지 않았는데도 원종 공신(原從功臣)에서 누락되었으니, 의당 원종 공신 일등(一等)에 추록(追錄)해야 됩니다.”

하니, 윤휴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신이 건지산의 일 때문에 진달하여 아직 발락(發落)을 받기도 전에 조문명이 경솔하게 다른 일을 진달하였으니, 청컨대 추고하소서.”

하니, 윤휴하였다.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 나아가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아뢴 바에 대해 오랫동안 답을 내리지 않으시니, 이는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광덕의 일에 대해 바야흐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처 하답(下答)하지 않았는데, 간신(諫臣)의 말이 진실로 옳다. 비망기(備忘記)를 마땅히 고쳐서 내리겠으니, 도로 들이게 하라.”

하였다. 조문명이 진달하기를,

“역관(譯官)들 가운데 한어(漢語)를 하는 사람이 장차 끊어지게 되었으니, 청학(淸學) 하는 10원(員) 가운데 세 개의 요과(料窠)에서 두 개의 요과를 덜어내어 한학(漢學)에 이속(移屬)



시킴으로써 재주를 시험보여 요과(料窠)에 붙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또 진달하기를,

“한학의 겸교수(兼教授)는 전혀 벼슬자리를 위하여 사람을 가린다는 뜻이 없습니다. 성종조(成宗朝) 때 내섬시 부정(內瞻寺副正) 최시진(崔時珍)은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한어(漢語)를 잘했기 때문에 겸교수가 되었었고, 예전에 장령(掌令) 김덕승(金德承)도 한어를 잘한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겸교수를 지냈습니다. 2원 가운데 1과(窠)는 문관 가운데에서 한어(漢語)를 잘하는 사람을 극진히 가려 파격적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하니, 윤희하였다. 이태좌가 더 초록(抄錄)한 군공(軍功)의 별단(別單)을 올리니, 임금이 열람하고 나서 승지에게 쓰라고 명하고서 이르기를,

“당초의 별단(別單) 가운데에서 우하형(禹夏亨), 손명대(孫命大), 박민웅(朴敏雄), 신진소(申震燾), 이태창(李泰昌), 여필선(呂必善), 이우석(李禹錫), 이귀서(李龜瑞), 임수(任洙), 전만적(田萬積), 박경태(朴慶泰), 최이준(崔以俊), 김이장(金爾章)은 모두 군공에 의거하여 가자(加資)했으니,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실직(實職)에 각별히 녹용(錄用)하게 하라. 이천구(李天球), 민제만(閔濟萬)은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는데도 지금 실직(實職)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리를 만들어 조용(調用)하게 하라. 추가로 올린 별단 가운데 김유한(金有漢), 강상주(姜相周), 최시만(崔時晩), 박준경(朴俊慶), 조득중(趙得重), 홍이원(洪以



源), 신만(申漫), 고도성(高道成), 이세보(李世寶), 민제장(閔濟章)은 모두 군공에 의거하여 이미 가자(加資)되었으니, 또한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각별히 녹용(錄用)하도록 하되, 그 가운데 실직에 차임하도록 승전(承傳)을 받은 사람은 우선 궐원(闕員)이 나는 대로 즉시 보임(補任)하게 하라. 강석기(姜碩耆), 석서욱(石瑞昱), 오수봉(吳壽鵬), 이한진(李漢震)은 이미 상당(相當)한 관직을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다. 고만세(高萬世), 유석량(劉錫亮), 이흥상(李興祥)과 처음의 별단 가운데 방득규(方得規), 최윤(崔潤) 등은 이미 변장(邊將)에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는데도 아울러 아직껏 조용(調用)하지 않고 있으니, 격려 권면하는 의의가 아니다.

춘당대(春塘臺)의 시재(試才)에서 4푼(分)을 받은 사람도 궐원에 따라 수용(收用)했는데, 더구나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공을 세운 사람이겠는가? 양전으로 하여금 상당한 관직에 우선 조용하게 하라. 변장에 제수하라고 승전을 받은 사람은 관무재(觀武才)의 예(例)에 의거하여 과(畝)를 만들어 부직(付職)시키라. 그리고 김주천(金柱天)은 은(銀)을 상가(賞加)하였고 이미 첨사(僉使)에 제수되었으니, 지금은 일후(日後)에 조용(調用)할 것을 논할 것이 없다. 조태선(趙泰先)은 탈상(脫喪)한 뒤에 이미 동지(同知)를 제수하게 했으니, 지금은 논하지 말라. 이진일(李震一)은 이제 실직을 받았으나, 공이 김천주에게 밀돌지 않으니, 첨사에 제수하라. 지난번 포도 군관(捕盜軍官)으로 있으면서 전후로 힘을 다한 것이 이미 많은 사람으로서 이미 별단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의당 격려하고 권면하는 도리가 있어



야 하니, 이천만(李天萬)은 첨사에 제수하라. 거창(居昌)의 가장(假將) 정재흥(丁載興) 등은 외방(外方) 사람이니, 의당 먼저 격려 권면시켜야 한다. 병조로 하여금 각별히 조용(調用)하게 하라. 전 감사(監司) 황선(黃璿)은 이미 졸서(卒逝)하였으므로 증직(贈職)하였고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재로(金在魯)는 이미 포상(褒賞)하고 가자(加資)하였다. 중신(重臣)에 대해서는 사체가 중하여 시행할 만한 상이 없으니, 임세겸(林世謙), 김상정(金尙鼎)과 함께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라. 정관빈(鄭觀賓), 정수방(鄭壽邦), 유기상(柳耆相), 김두강(金斗剛)은 아울러 승진 서용(敍用)하고, 김유(金澁)는 한 품계를 가자하며, 이만흥(李萬興), 유일장(柳一章)에게는 아울러 실직을 제수하라. 문이익(文以益), 안취장(安就章)에게는 모두 변장(邊將)에 제수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그 밖에 수령, 변장에서 아래로 군사(軍士), 노예(奴隸)에 이르기까지 가자(加資)하기도 하고 승서(陞敍)하기도 하며 준직(準職)을 제수하기도 하고 우임(右任)에 차정(差定)하기도 하며 면역(免役)시키기도 하고 면천(免賤)시키기도 하며 말을 지급하기도 하고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기도 하며 본도(本道)로 하여금 참작하여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도록 하라. 무장(茂長)의 관노(官奴)인 명휘(命輝), 애만(愛萬)은 아울러 면천시키고 옥구 현감(沃溝縣監) 신이형(申以衡)은 승서(陞敍)하라. 운봉(雲峯)의 전 영장(營將) 손명대(孫命大)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전주(全州)의 한량(閑良) 이태삼(李泰三)은 가자하고, 무장(茂長)의 장교(將校) 손익도(孫益道), 김인하(金麟河),



염응규(廉應圭)에게는 아울러 가자하며, 전주의 한량 김윤정(金潤鼎)은 향장관(鄉將官)에 차정하고, 진안(鎭安)의 전 현감(縣監) 이정(李淨)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라. 운봉의 천총(千摠)인 절충 장군(折衝將軍) 강만하(姜萬廈)에게는 가자하고, 사과(司果) 박기룡(朴起龍)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초관(哨官)인 판관(判官)의 최여대(崔汝大)와 남원(南原)의 전 파총(把摠) 이인방(李仁邦)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전주의 사과(司果)인 전필방(全弼邦)은 우임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한량 도세강(都世康)에게는 가자하고 남원의 도장(都將) 홍세일(洪世一)에게는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옥구(沃溝)의 하리(下吏)인 임치영(林致榮)은 향장관(鄉將官)에 차정하고 무장의 장교 김재휘(金再輝), 황처곤(黃處坤), 설후건(薛厚建), 김태성(金泰城), 신한우(申漢宇), 김필준(金弼俊), 김순광(金順光)과 인리(人吏) 김백령(金百齡), 김상현(金相鉉), 김상담(金相潭), 김덕구(金德球), 김광한(金光漢), 안시익(安時益), 박치흥(朴致興), 장여태(張麗台), 김상윤(金相潤)과 사령(使令) 배차중(裵次中), 박상(朴尙), 김독돌(金蠶突), 박막련(朴莫連), 이독이(李蠶已), 김승백(金升白)과 관노(官奴) 필흥(弼興), 파회(破回), 치삼(致三), 칠월(七月), 김정량(金挺亮), 명토리(明土里)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라. 전주 판관 이석인(李錫仁)은 준직을 제수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討捕軍官) 한량 장한삼(張漢三)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남원 천총(千摠)인 한량 김도규(金道圭)에게는 가자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인 판관(判官) 박완업(朴完業)은 우임(右任)에 차



정하고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공하라. 남원의 첨정(僉正) 허협(許浹)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고, 운봉의 파총(把摠)인 판관 김성옥(金聲玉)은 우임에 차정하고, 기고관(旗鼓官)인 판관 이만점(李萬點)은 우임에 차정하고, 첨정(僉正) 최만흠(崔萬屹)에게는 미포(米布)를 제공하며, 토포 군관인 판관 박석빈(朴碩彬)에게는 가자하고, 향리(鄉吏) 박필청(朴必淸)에게는 가자하며, 함양(咸陽)의 하리(下吏) 서문징(徐文徵)과 사령(使令) 송유발(宋有發)에게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운봉의 초관(哨官)인 한량 백일대(白日大)는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공하라. 대변색(待變色) 김진채(金震采)는 향장관(鄉將官)에 차정하고, 하리(下吏) 김호량(金虎良), 최석택(崔碩泰)는 향장관에 차정하며, 관노(官奴) 재광(再光), 국방(國芳)과 사령(使令) 오봉선(吳奉先), 한간의(韓間儀)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공하게 하라.

진안(鎭安)의 전 첨사(僉使) 전순좌(全舜佐)는 해조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라. 노제(老除)된 하리(下吏) 정후태(鄭后泰)와 한량 고준적(高俊迪)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기패관(旗牌官) 최호(崔浩)와 영장(領將) 최상기(崔尙起)와 군관(軍官) 서해필(徐海必), 박명귀(朴命龜), 김석창(金碩昌)은 이미 향장관에 제수된 사람이니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향장관에 차정하라. 장수(長水)의 장교(將校) 정익한(鄭益漢), 정운철(鄭雲哲)에게는 미포를 제공하고 무주(茂朱)의 권무사(勸武士) 한량 이세달(李世達)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관노(官奴) 행원(幸元), 의준(義俊)은 3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며, 영장



(領將)인 전 파총(把摠) 장진량(張震良)과 하리(下吏) 박태호(朴泰好)와 군관(軍官)인 한량 한신기(韓薰起)와 사령(使令) 임득만(林得萬)과 군관인 한량 김두재(金斗載)와 하리 백운징(白雲澄)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공하라. 전주의 사과(司果) 장중익(張重翊)과 고산(高山) 민인(民人)인 임영원(林英遠)과 장교(將校) 임덕채(林德采)와 운봉의 한량 김윤구(金允耆)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공하라. 절충(折衝) 임동필(林東弼)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공하고, 지구관(知穀官)인 판관(判官) 이재방(李再芳)과 사과(司果) 이치달(李致達)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공하라. 남원의 초관(哨官)인 한량 유일성(柳一星)과 운봉의 초관인 한량 박신일(朴信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라. 한량 김이내(金以內)와 사과(司果) 조한징(趙漢徵)과 향리(鄉吏) 박필경(朴必敬), 박태흥(朴泰興)과 남원의 기패관인 한량 공덕금(孔德金)과 운봉의 기패관인 한량 박내채(朴乃采)와 곡성(谷城)의 초관인 한량 여태익(呂泰益), 김덕보(金德輔)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공하라.

창원(昌原)의 천총(千摠)인 한량 현영징(玄永徵)과 남원의 파총인 판관 어만광(魚萬光)과 초관인 한량 임원대(林元大)와 창평(昌平)의 초관인 한량 문두천(文斗天)과 남원의 초관인 한량 정필구(丁必具), 장두걸(張斗杰), 강시걸(姜時傑)과 옥과(玉果)의 별장(別將)인 한량 심세영(沈世榮)과 남원의 별장인 한량 서한중(徐漢重)과 운봉의 대변 군관(待變軍官)인 한량 김언장(金彦章), 전시대(全時大), 김세망(金世望)과 토포관인 형방리(刑房吏) 서치도(徐致道)와 토포 군관인 한량 양만팽(楊萬彭)과 진안



(鎭安)의 군관(軍官)인 김중철(金重喆), 안이태(安以泰), 조중려(趙重呂)와 운봉의 초포장(勦捕將)인 절충(折衝) 곽후교(郭後僑)와 기패관인 한량 이처삼(李處三)과 장수의 기패관(旗牌官)인 사과(司果) 김시만(金始萬)과 파총인 한량 이필천(李弼天)과 초관(哨官)인 한량 김세중(金世中), 이상위(李尙魏)와 진안(鎭安)의 군관인 이석재(李碩才), 김광필(金光弼), 박유천(朴有天), 박원종(朴元宗), 김성운(金成雲), 심선백(沈善白), 김미달(金未達)과 장수(長水)의 하리인 정화정(鄭華晶), 우정구(禹廷九)와 사령(使令) 서한귀(徐漢龜)와 별패(別牌) 강후득(姜厚得)과 무주의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한석순(韓碩順), 박자진(朴自進)과 기패관인 한량 서이창(徐以昌)과 하리 김재중(金再重), 윤시형(尹是衡), 양계징(梁啓澄)과 관노(官奴) 숙골리(夙骨里)와 사령 김검동(金黔同)과 하리 황재호(黃再灑)와 사령 최가팔리(崔加八里), 강물리금(姜訖里金)과 군관인 한량 이세욱(李世郁)과 사령(使令) 김석시(金石屎)와 영장(領將)인 전 별장(別將) 이만득(李晩得)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영장인 절충(折衝) 한시국(韓盡國)과 관노 막산(莫山)과 영장인 한량 장명유(張命維)와 사과(司果)인 김응필(金應弼)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라. 남원의 군관 박을장(朴聃章)은 향장관(鄉將官)에 차정하고 미포를 지급하라.

사령(使令)인 양인(良人) 서한창(徐漢昌)과 사노(私奴) 강단오(姜丹午)와 도장(都將) 이귀대(李貴大), 서위대(徐渭大)와 군관(軍官) 조상채(趙尙采), 김하식(金夏植), 정동익(鄭東益), 박필희(朴弼羲)와 진안의 군관인 정하명(鄭夏命), 전유직(田有稷), 이



귀만(李龜萬), 김용(金龍), 유여망(劉汝望), 서필선(徐必先), 황여  
 재(黃汝才), 박선창(朴先昌), 윤필흥(尹必興)과 파총(把摠) 이시  
 만(李時蔓)과 초관 김필영(金必英), 김정화(金廷華)와 기패관 장  
 시건(張時建), 박인종(朴仁宗), 정상오(張相五), 이여매(李如梅)  
 와 지구관(知穀官) 이창배(李昌培)와 여산(礪山)의 초관인 김인  
 각(金仁覺)과 진안의 군관인 서위창(徐魏昌)과 무주의 토포 군  
 관인 한량 김상성(金尙惺)과 하리 박이검(朴以檢)과 보병(步兵)  
 한흥삼(韓興三)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사령 임득만(林得萬)  
 과 토포 군관인 사과(司果) 이태경(李泰景)과 한량 이지욱(李枝  
 郁)과 기패관인 한량 윤일취(尹日就), 김진필(金震弼)과 무학(武  
 學) 조기봉(趙起鳳)과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양시해(梁時海)와  
 초관 박진발(朴進發)과 사령 원귀천(元貴千)과 관노 매돌(梅突),  
 신영(信永), 행득(幸得)과 중군(中軍)인 한량 최봉래(崔鳳來)와  
 중부(中部)의 천총인 한량 이만번(李萬蕃)과 좌사 파총(左司把  
 摠)인 한량 김이경(金以鏡)과 전 초관(哨官)인 겸사복(兼司僕)  
 김대석(金大錫)과 판관 강태민(姜泰民)과 한량 정이창(鄭以昌),  
 양이제(梁以濟)와 지구관(知穀官)인 겸사복(兼司僕) 김중현(金  
 重鉉)과 기고관(旗鼓官)인 겸사복 김만경(金萬鏡)과 기패관인  
 한량 김기태(金起兌)와 겸사복 최성석(崔成錫)과 한량 김시경  
 (金時慶), 박치삼(朴致三), 박태화(朴泰華), 최익경(崔益京), 김의  
 택(金義擇)과 겸사복인 최일선(崔日善), 박무재(朴茂載)와 한량  
 이만득(李晚得)과 사과 김자정(金自成)과 한량 김성발(金聲發),  
 최준경(崔俊京), 황영필(黃英弼), 양덕백(梁德白), 황연징(黃連  
 澄), 김성원(金聲遠), 조을선(趙乙善), 신건리금(申件里金), 이필



선(李弼先), 김성갑(金成甲), 장효중(張孝仲), 박이기(朴以杞), 양석지(梁碩祉), 서이창(徐以昌)과 겸사복 이성대(李聲大), 김여재(金汝載), 김영재(金永才)와 진산(珍山)의 좌부 좌사(左部左司) 우초관(右哨官) 양준재(梁俊載)와 중초관 윤진걸(尹辰傑)과 기패관 최선발(崔善發), 이무재(李茂才), 조석재(趙碩載), 박태검(朴泰儉), 한상선(韓尙善), 금산(錦山)의 천총인 한량 유연(柳淵)과 초관인 한량 홍만귀(洪萬龜), 황하청(黃河淸)과 파총인 한량 양봉지(梁鳳至)와 초관인 한량 신필종(辛必宗), 권만정(權萬貞)과 판관 박성봉(朴成鳳)과 용담(龍潭)의 초관인 판관 박성업(朴成業)과 한량 박진무(朴震茂)와 기패관인 사과(司果) 백수옥(白受玉)과 한량 송세망(宋世望), 이하주(李夏柱), 이대성(李大成)과 전주의 절충(折衝) 김우기(金禹器)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안(淸安)의 출신(出身)인 양민후(梁敏瑩), 이혼(李混)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민도창(閔道昌)과 절충 연세홍(延世鴻)은 아울러 조용(調用)하라. 관노 허익반(許益返), 장기준(張起俊)에게는 아울러 면천(免賤)시키고 유학(幼學) 연약한(延若漢)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고 상당 산성(上黨山城)의 절충 김한익(金漢翊)에게는 가자하고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출신(出身) 조중렴(趙重廉)은 가자하고, 절충 김지행(金志行)과 판관 조중태(趙重泰)에게는 아울러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절충 김종필(金從弼)과 한량 성지항(成至恒), 황용택(黃龍澤)과 절충 임만규(林萬揆), 이진우(李震祐)에게는 아울러 변장에 제수하도록 승전(承傳)을 받들고 미포를 더 제급하라. 영노(營奴) 김상정



(金尙鼎)은 면천시키고, 진무(鎭撫) 최서징(崔瑞徵)에게는 미포를 넉넉히 제공하게 하고, 영노 이후성(李后成), 김만필(金萬弼)은 면천시키고, 영노 김차웅(金次熊), 박흥만(朴興萬), 황여헌(黃汝憲)은 이미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들었으니 아울러 논하지 말라. 한량 양만중(梁萬重), 양두경(梁斗慶)에게는 미포를 제공하고, 전 별장(別將) 김진희(金晉熙)와 진무(鎭撫) 유근번(柳根蕃)과 한량 박천로(朴天老), 조춘석(趙春錫)과 절충 이태석(李泰錫), 곽신장(郭信章), 김만일(金萬鎰)과 한량 정태백(鄭泰伯), 조중벽(趙重璧), 김만근(金萬根), 나득추(羅得秋)와 진무(鎭撫) 김필징(金弼徵)과 전 별장(別將) 이진필(李震弼)과 출신 최성우(崔成禹)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공하라. 관노(官奴) 김차걸(金次傑)과 영노(營奴) 김차운(金次云), 장신원(張信元), 박두망(朴斗望)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공생(貢生) 곽차송(郭次松)과 한량 곽신하(郭信夏)와 양인(良人) 김이태(金以太)와 어영군(御營軍) 손지철(孫之哲)에게는 미포를 제공하라. 출신 조중백(趙重伯)에게는 가자하고 한량 이진의(李震儀)와 판관 윤두령(尹斗齡)에게는 변장을 제수하고, 영노 조차석(趙次錫)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사령 최운선(崔雲先)에게는 미포를 제공하고 한량 표이귀(表以貴)와 사과(司果) 김상적(金尙迪)과 한량 김만석(金萬錫), 김만중(金萬鍾), 김두일(金斗鎰)과 영노 유천삼(柳天三), 김귀걸(金貴傑)과 한량 나필선(羅弼善), 임시무(林時茂), 김천석(金天碩), 유만성(柳萬成), 김시징(金時徵), 김재중(金載重)과 사과 김두재(金斗載)와 진무 송일천(宋日天), 주철만(朱哲輓), 김득경



(金得鏡), 양두실(梁斗實), 김필지(金弼枝), 양두익(梁斗益), 송순결(宋順傑), 김두강(金斗剛), 박동취(朴東就)와 공사(貢士) 곽두칠(郭斗七)과 한량 김만징(金萬徵)과 사노(私奴) 박명기(朴明起)와 사령(使令) 장돌동(張突同), 김태명(金太明)과 관노(官奴) 김의달(金義達)과 사노 김원석(金元石), 이상의 관노(官奴)와 영노(營奴) 등은 5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고 그 나머지는 쌀이나 베를 제공하고 진천(鎭川)의 천총(天摠)인 우하철(禹夏哲)에게는 가자하고, 사인(士人) 조중관(趙重觀)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공하며, 조중정(趙重鼎)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송재태(宋載泰)에게는 미포를 제공하고, 전 판관(判官) 임봉서(林鳳瑞)와 유학(幼學) 김정필(金鼎弼)과 장교(將校) 지칠성(池七星)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공하라. 괴산(槐山)의 전 군수(郡守) 전이장(全爾璋)과 출신 성우적(成禹績)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가리(假吏) 이지망(李枝望)은 변장에 제수하라. 목천(木川)의 유학 이명달(李命達)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고, 유학(幼學) 윤이관(尹以寬), 이기현(李箕賢), 윤이오(尹以五), 윤병(尹柄), 윤거(尹楮), 김동래(金東來), 이진하(李振夏), 윤두(尹料), 이약제(李若濟), 김태두(金泰斗), 최창조(崔昌祚), 이시봉(李蓍鳳), 이약유(李若裕), 윤이천(尹以天), 이광하(李光夏)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공하라. 죽산(竹山)의 한량 김필웅(金弼雄)과 목천(木川)의 공생(貢生) 신약연(申若演)과 율생(律生) 안상서(安上瑞)와 한량 조완벽(趙完璧)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공하고, 천안(天安)의 토포 군관 이정하(李廷夏)에게는 가



자(加資)하고, 군뢰(軍牢) 전업삼(全業三)에게는 미포를 제공하고, 청주(淸州)의 토포 군관 고윤창(高允昌)에게는 가자하며, 군뢰 이왕산(李往山)에게는 미포를 제공하라. 괴산의 음우석(陰禹碩)에게는 미포를 제공하고, 청주의 초관(哨官) 김일호(金一豪)와 군뢰 박씨동(朴氏東)에게는 미포를 제공하며, 토포 군관 한두징(韓斗澄)에게는 가자하고, 군뢰 최옥속(崔玉粟)에게는 미포를 제공하며, 군뢰 김만석(金萬石)에게는 미포를 제공하고,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변득태(邊得泰)와 역리(驛吏) 신종필(申從必)에게는 미포를 제공하라.

청주의 사령(使令) 곽차만(郭次萬)은 그 자신에 한해 면역(免役)시키고, 진천의 아전 손두추(孫斗樞), 이효재(李孝才)에게는 미포를 제공하며, 괴산의 가리(假吏) 배시홍(裵始弘)은 변장에 제수하고, 면천(沔川)의 어영(御營)의 보인(保人)인 한무치(韓無致)는 그 자신에 한해 군역(軍役)을 면제시키며, 한량 구시화(具時華)에게는 가자하고, 회인(懷仁)의 사인(士人) 박내익(朴來翊)에게는 가자하며, 연기(燕岐)의 좌수(座首) 장석징(張碩徵)은 군공 체아(軍功遞兒)인 첨지(僉知)에 제수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한정(金漢廷)은 향장관(鄉將官)의 우임(右任)에 차정(差定)하고, 군뢰(軍牢) 김산익(金山益)과 목천의 절충(折衝)인 신서휘(申瑞輝)와 사노(私奴) 김곤징(金崑澄)에게는 미포를 제공하라. 청주의 사령(使令)인 사노 한순립(韓順立)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옥천(沃川)의 장교(將校) 정시웅(鄭時雄), 정시대(鄭時大)에게는 미포를 제공하고, 청주의 절충인 유귀열(劉貴說)과 옥천의 장교 이만번(李萬蕃)과 보은(報



恩)의 관노 이직(李直), 이인번(李仁蕃)과 보은(報恩)의 출신(出身) 주도흥(周道興)과 한량 박진흥(朴震興)과 천안의 유학(幼學) 유시화(柳時華)와 기병(騎兵) 우석장(禹石章)과 청안의 출신 임세희(林世禧)와 청주의 사령 이만업(李萬業)과 목천의 유학 이만경(李萬慶), 진성시(陳聖時)와 청주의 대변 군관(待變軍官) 성지항(成至恒)과 회덕(懷德)의 유학 송하주(宋夏疇)와 온양(溫陽)의 사과(司果) 방최일(方最一)과 청안의 별장(別將) 한시진(韓時秦)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 정수일(鄭壽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군뢰(軍牢) 이백은동(李白隱同)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청주의 사노(寺奴) 곽석창(郭碩昌)과 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성진(金聲振)과 군뢰 이자필(李自必)과 토포 군관인 이영배(李永培), 송의원(宋義原)과 군뢰 박독거비(朴燾巨非), 이왕산(李往山), 김미동(金米同)과 군뢰인 사노(私奴) 박시동(朴時同)과 진천의 아전인 송취재(宋就載), 함시휘(咸時輝)와 장교 강필성(康必成)과 괴산의 향리(鄉吏) 음광훈(陰光薰)과 가리(假吏) 음억년(陰億年), 음체곤(陰體坤), 배팔만(裵八萬)과 직산(稷山)의 사과(司果)인 이만근(李萬根)과 목천의 유학 김홍운(金弘運)과 전의(全義)의 사노(寺奴) 정세웅(鄭世雄)과 진천의 한량 김운형(金運亨)과 청주의 한량 양차전(梁次佺)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박시동(朴時同)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단양(丹陽)의 유학 신익화(辛翊華), 이만욱(李萬煜), 신주윤(申周潤), 권우항(權宇恒), 장세규(張世逵), 신치태(申致泰), 이만형(李萬馨)에게는 아울러 연호(煙戶)의 역(役)을



3년을 기한으로 제감(除減)해 주라.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이찬(李燦)은 논하지 말라. 광주(廣州)의 출신 정하익(鄭夏翊)과 청주의 절충(折衝) 우선대(禹善大), 박태중(朴泰重)과 군뢰(軍牢) 양지래(楊至來)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고, 청주의 사령(使令) 박용(朴龍)과 대흥(大興)의 전 초관(哨官) 윤도웅(尹道雄)과 청주의 기패관(旗牌官) 김영태(金靈泰), 곽운징(郭雲徵), 김두재(金斗載)와 사령 유유재(劉有才) 이상은 본도(本道)에서 참작(參酌)하여 시상(施賞)하게 하라.” 하였다.

### ● 영조 9년 8월 7일(을묘)

上 親鞫金元八等於仁政門 問元八 元八供 凶書辭意之窮凶極惡 臣豈不知 而他人亦有謄書者 故臣亦謄書 鳳禧則以爲書中有可觀語云矣 命施烙刑十二度 更爲加刑 元八再供 鳳禧出示凶書之際 謂臣曰 戊申洵洵 果然以此而致然云矣 要覽則臣使班孽李書房 爲稱人書之 下段所書 則是臣自寫矣 編問崔鳳禧曰 令者元八供中 汝持凶書 示元八曰 若是之故 有其事云 而所謂某事 卽戊申事云 若是之說其事之云 俱極凶獍 凶書得於何處 示元八時酬酢何事 鳳禧供 臣不勝杖今始直告 尹徵商 往鎮安八公山 逢着邊山月出庵僧太眞 得來其書 傳及於臣 元八來臣家謄去是實 而其書之辭 蓋指戊申



事 有曰血流成川 路塞烟絕云矣 加刑二十二度 再供所謂文書 卽編年之類 而天地運氣之推占者也 長水居尹衡商及鄭元相膽出於太眞處 而傳給於其弟徵商及臣者也 逐年編次有嘲弄之意 此非凶書乎 臣家中有凶書二本 一則徵商所傳編年 一則戊申掛榜 而此則丁未年臣移萬峽中矣 其年臘月間 過客 三人 來宿於臣家 伊夜密密相議 翌朝去後 遺落文書 卽凶書也 臣仍爲臧置 三人姓名則陝川居鄭復相復天復世三兄弟 而一則死於戊申陣中 二人商在 元八膽去之凶書卽此書也 南原盧以謙鄭重濟兄弟及自咸陽移萬臣洞者李姓喪人 俱是戊申賊徒 形迹殊常盧哥鄭哥 與臣要與謀逆圖取南原 仍欲犯國 元八亦入同黨凶書則一鏡 作之其書初頭則以 皇曆萬年爲辭 此則臣家所在書也 元八所膽者 乃戊申掛榜書也 鄭重濟兄弟及盧以謙 與其姪年可十六七者六七人 設軟泡會於南原百福寺 要臣同去 而病未及往 三四日後 掛書出 必是此人等所爲 衆口一談云矣 鳳禧元八面質 鳳禧曰 汝以凶書 爲得於吾家 故吾亦以此納供 此果掛榜凶書 而掛於南原飛鴻峙者也 元八曰 其書卽凶書 而元非編年者也 鳳禧曰 編年書則尤爲凶惡故汝只告此書矣 編年中戊申癸丑兩年 尤爲嘲弄矣 又曰 汝若不欲同事 則凶書何以膽去乎 其時吾曰 汝輩庸孱不可與同事云 則汝豈不曰 吾輩亦當不久於平民 王侯將相寧有種乎云耶 元八曰 此則誣告矣 問元澤 元澤供 臣兄元八 與崔鳳禧 同黨謀反 而節次則臣不知矣 加刑三十度



[풀이]

임금이 김원팔(金元八) 등을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親鞫)하였다. 김원팔을 신문하니, 김원팔이 공초하기를,

“흉서(凶書)의 사의(辭意)가 지극히 흉악한 것을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다른 사람이 또한 베껴 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신 또한 베끼어 썼던 것이고, 최봉희는 ‘글 내용에 볼 만한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낙형(烙刑) 12도(度)를 시행하라고 명하고 다시 형(刑)을 가하니, 김원팔이 재차 공초하기를,

“최봉희가 흉서(凶書)를 내어 보일 무렵에 신(臣)에게 이르기를, ‘무신년에 흉흉했던 것도 이러한 까닭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람(要覽)》은 신이 반열(班擘) 이서방(李書房)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하였고, 하단(下段)에 쓴 것은 바로 신 자신이 썼습니다.”

하였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하기를,

“지금 김원팔이 공초 가운데 네가 흉서를 가지고 김원팔에게 보이면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는데, 이른바 그런 일이란 곧 무신년의 일을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다는 말이나 그런 일이라고 한 것은 모두가 지극히 흉악하다. 흉서는 어느 곳에서 얻었고 김원팔에게 보일 때 수작한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臣)이 장(杖)을 견디지 못해 이제야 직고(直告)합니다. 윤



징상(尹徵商)이 진안(鎭安) 팔공산(八公山)에 가서 변산(邊山) 월출암(月出庵)에 있는 중 태진(太眞)을 만나고 그 글을 얻어 가지고 와서 신에게 전한 것입니다. 김원팔이 신의 집에 와서 베껴 간 것은 사실이며, 그 글의 사연은 대개 무신년의 일을 지적한 것으로서 ‘괴가 흘러 내를 이루고 길이 막혀 민가에 연기가 끊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였는데, 22도의 형(刑)을 더하였다. 최봉희가 재차 공초하기를,

“이른바 문서(文書)는 곧 편년(編年)의 종류인데 천지(天地)의 운기를 미루어 점친 것입니다. 이는 장수(長水)에 사는 윤형상(尹衡商)과 정원상(鄭元相)이 태진에게서 베껴 내어 그 아우인 윤징상과 신에게 전해 준 것인데, 해에 따라 편차(編次)한 것으로 조롱(嘲弄)한 뜻이 있었으니, 이것이 흥서가 아니겠습니까? 신의 집안에 흥서 2본(本)이 있으니, 하나는 윤징상이 전한 편년(編年)한 것이고, 하나는 무신년에 괘榜(掛榜)한 것인데, 이것은 정미년에 신이 산협(山峽)으로 옮겨 살 때의 것입니다. 그 해 선달 무렵 과객(過客) 세 사람이 신의 집에 묵고 그날 밤 매우 치밀하게 서로 의논하였는데, 이튿날 간 뒤에 떨어뜨린 문서(文書)가 있었으니, 바로 흥서였습니다. 신은 그것을 그대로 감추어 두었는데 세사람의 성명은 합천(陝川)에 사는 정복상(鄭復相), 정복천(鄭復天), 정복세(鄭復世) 삼형제로서 하나는 무신년에 진중(陣中)에서 죽었고 두 사람은 아직 살아 있는데 김원팔이 베껴 간 흥서는 곧 이 글입니다. 그리고 남원(南原)에 노이겸(盧以謙), 정중제(鄭重濟) 형제와 함양(咸陽)에서 신의 동내로 이사온 이가(李哥)인 상인(喪人)은 모두가 무신년의 적도(賊徒)로서 형



적(形迹)이 수상하였습니다. 노가(盧哥), 정가(鄭哥)는 신에게 역모(逆謀)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남원을 취하려 도모하고 곧 서울을 침범하려고 하였으니, 김원팔도 같은 당(黨)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서는 김일경(金一鏡)이 지은 것으로서 그 글 초두(初頭)에 ‘황력 만년(皇曆萬年)’이란 말로 사연을 꾸몄는데, 이는 신의 집에 있는 글이요, 김원팔이 베긴 것은 바로 무신년에 괘방(掛榜)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제 형제와 노이 겸은 나이 겨우 16, 7세 되는 조카 6, 7인과 더불어 남원 백복사(百福寺)에서 연포회(軟泡會)를 설비(設備)하고는 신에게 같이 가기를 청했는데, 병으로 인하여 미처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3, 4일 뒤에 괘서가 나왔으니, 필시 이 사람들의 소위라고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최봉희와 김원팔을 면질(面質)시켰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네가 흥서를 내 집에서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공초를 바쳤는데, 이는 과연 괘방(掛榜)한 흥서(凶書)로서 남원(南原) 비흥치(飛鴻峙)에 걸렸던 것이다.”

하니, 김원팔이 말하기를,

“그 글은 곧 흥서이나 원래 편년(編年)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편년으로 된 글은 더욱 흉악하기 때문에 너에게 단지 이 글만 알려 준 것이다. 편년으로 된 것 가운데서 무신년, 계축년의 것은 더욱 조롱(嘲弄)이 심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만약 일을 같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흥서를 무엇하러 베껴 갔는가? 그 당시 내가 ‘너희들은 용렬하고 잔약하여 같이 일하는 데 참여시킬 수 없다.’ 하니, 네가 ‘우리도 평민에 있을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왕후 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종자가 있는가?’ 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원팔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고(誣告)다.”

하였다. 김원택(金元澤)을 신문하니, 김원택이 공초하기를,

“신(臣)의 형 김원팔이 최봉희와 같은 당으로서 모반(謀反)하였으나, 절차(節次)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30도의 형(刑)을 더하였다.

### ● 영조 9년 11월 15일(임진)

行推鞠罪人金南赫高萬齡二梅等 與繼寶面質 繼寶皆辭屈  
上命訊問繼寶 繼寶初供 臣於今年五月晦間往探于全羅道則  
南原百福寺 順天松廣寺掛書而泰仁黔里居兩班洪九采 井邑  
常漢金命信徐廷遠 興德兩班金八起常漢鄭齊仁 扶安兩班  
金萬釋 昌平兩班高萬齡等 八月十六日會于高萬齡家 有所  
酬酌 故踰牆而人竊聽於窗外則以爲兩次掛榜終無其效待開  
春掛榜於八道而圖國 又供南原則高萬齡親往掛之 順天則金  
南釋親往掛之云 鄭齊仁金南釋則曾識其面其餘則問于萬齡



家兒婢 則云以某處母性人矣 蓋臣曾於丁未謫居興德戊申冬蒙放詳聞其時賊情 已知某某人之爲賊黨 故聞其姓而知其名矣 再供萬齡家兒婢 曾所識其面故伊日又逢厥婢而問之曰 今日來汝家者某邑某人耶 婢曰然以此知某某人之聚會矣 南繹供 臣名卽南赫 非南繹也 洪九采金八起 但聞其名而不知其面高萬齡之名似聞之 而未能詳記 初不聚會 豈有謀議掛書等說 千萬孟浪高萬齡供所謂來會之人 不但不知其面亦不聞其名掛書之說寧有是事 臣家計稍厚昨今年嶺湖乞客甚多 臣雖不知爲誰某而渠輩必有知臣者矣 又有一事可辨者 臣於八月十六日爲觀監試初試赴長水試所元不在家矣 二梅供 上年秋間有一着氈笠乞人 來言謫居慶尙道 今方解還 願得米升錢兩而以米少許給之則其人怒其少出門曰 汝家裝作篙田其外元無問答矣 南赫等與繼寶面質 互相發明而繼寶每每沮屈 至於高萬齡伊日不在家之說 不能答 故有訊問之命 鄭齊仁亦在發捕之中 而興德近處 元無齊仁爲名者 假都事柳仁燾 以鄭仁先之仁字相同 拿來仁先與繼寶面質 彼此皆曰不知 故卽爲放送其後繼寶 連四次嚴訊物故 金南赫以本事脫空 命放送高萬齡二梅 移送秋曹各別嚴問

[풀이]

추국(推鞠)을 행하였다. 죄인 김남혁(金南赫), 고만령(高萬齡), 이매(二梅) 등을 김계보(金繼寶)와 면질(面質)시키니, 김계보가 말이 막혔다. 임금이 김계보를 신문하라 명하자, 김계보가 처음



공사(供辭)에서 말하기를,

“신이 금년 5월 그믐 사이에 전라도에 가서 염탐했는데, 남원(南原)의 백복사(百福寺), 순천(順天)의 송광사(松廣寺)에 괘서(掛書)가 있었고, 태인(泰仁) 검리(黔里)에 사는 양반(兩班) 홍구채(洪九采), 정읍(井邑)의 상한(常漢) 김명신(金命信)과 서정원(徐廷遠), 흥덕(興德)의 양반 김팔기(金八起), 상한 정제인(鄭齊仁), 부안(扶安)의 양반 김남역(金南釋), 창평(昌平)의 양반 고만령(高萬齡) 등이 8월 16일 고만령의 집에 모여 수작(酬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넘어 들어가 창 밖에서 몰래 들으니, ‘두 번 괘방(掛榜)했으나 끝내 효과가 없으니 봄이 되길 기다렸다가 팔도(八道)에 괘방하여 나라를 도모하자’고 했습니다.”

하고, 또 공초(供招)하기를,

“남원에는 고만령이 직접 가서 괘방했고, 순천에도 김남역이 직접 가서 괘방했다고 했습니다. 정제인과 김남역은 일찍이 얼굴을 알고 있었으나, 그 나머지는 고만령 집의 어린 계집종에게 물었더니 아무 데 사는 모씨(某氏) 성(姓)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개 신은 일찍이 정미년에 흥덕(興德)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무신년 겨울에 방면(放免)되었는데, 그 때 적정(賊情)을 상세히 듣고 이미 어떠한 사람이 적당(賊黨)인지를 알았던 까닭에 그 성(姓)을 듣고는 이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재차의 공초에는 이르기를,

“고만령의 집 어린 계집종은 일찍이 그 얼굴을 알았던 까닭에 그날도 또 그 계집종을 만나 ‘오늘 네 집에 온 사람은 아무 고



을의 아무개이냐?’ 하고 물었더니, 계집종이 ‘그렇다’고 하여, 이 때문에 어찌어찌한 사람이 모여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김남역(金南釋)이 공술하기를,

“신의 이름은 남혁(南爍)이지, 남역(南釋)이 아닙니다. 홍구채, 김팔기는 다만 이름만 들었을 뿐이며 그 얼굴은 모릅니다. 고만령이란 이름은 들은 것 같기는 하지만 상세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모이지도 않았는데 어찌 모의(謀議)를 했겠습니까? 왜서 등의 말은 허무맹랑합니다.”

하였다. 고만령은 공술하기를,

“이른바 와서 모였다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서에 대한 말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신은 가계(家計)가 다소 넉넉하므로 작년과 올해에 영호(嶺湖)의 걸객(乞客)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신은 비록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들은 반드시 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신은 8월 16일 감시(監試)의 초시(初試)를 보려고 장수(長水)의 시소(試所)에 갔었기 때문에 원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매(二梅)는 공술하기를,

“지난해 가을 쯤에 전립(甑笠)을 쓴 한 걸인(乞人)이 와서 말하기를, ‘경상도(慶尙道)에서 귀양살이하다가 이제 막 풀려나 돌아온다’고 하면서 쌀 한 되박과 돈 몇 푼을 달라기에 쌀 약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적다고 화를 내면서 문을 나가며 말하기를, ‘네 집은 장차 축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고, 그 밖에는 원래 문답(問答)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김남혁 등과 김계보를 면질(面質)시키니 서로 발명(發明)하는데 김계보가 매번 말이 막혔고, 고만령이 그날 집에 없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으므로 신문(訊問)하라는 명(命)이 있었던 것이다. 정제인 또한 발포(發捕)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흥덕(興德) 근처에는 원래 제인(齊仁)이라는 이름을 쓰는 자가 없었으며, 가도사(假都事) 유인도(柳仁燾)가 정인선(鄭仁先)의 인(仁)자와 사로 같다하여 잡아왔던 것이다. 정인선과 김계보를 면질시키니, 피차 모두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釋放)했다. 그 뒤 김계보는 연달아 네 차례의 엄한 신문에 물고(物故)되었다. 김남혁은 본 사건에서 탈공(脫空)되었으므로 석방하라고 명했고, 고만령과 이매는 추조(秋曹)에 이송(移送)하여 각별히 엄문(嚴問)하게 하였다.

### ● 영조 10년 7월 14일

憲府 申前啓 不允又啓言政注問曰可曰否 宜付一世公議 而吏曹三堂讒 命入侍旋卽一時並黜 事體顛倒 景色愁沮 請還寢外補之命 嚴批不從 仍教曰 身爲耳目之官 不思規正 敢稱公議 此等之習不可以長 仍命黜補李台徵爲長水縣監

[풀이]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태징(李台徵)이다.] 에서 전계



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정주(政注) 사이의 왈가 왈부(曰可曰否)는 마땅히 일세(一世)의 공의(公議)에 붙여야 하는데도, 이조(吏曹)의 3당상(三堂上)을 겨우 입시(入侍)할 것을 명하였다가 곧바로 일시에 모두 출보(黜補)시켰으니, 사체(事體)가 전도(顛倒)되고 경색(景色)이 수저(愁沮)합니다. 청컨대 외보(外補)하라는 분부를 도로 정지하소서.”

하였으나, 엄중한 비답을 내리고 따르지 않았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자신이 이목(耳目)의 관원이 되어 규정(規正)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공의(公議)를 핑계했으니, 이런 습관을 조장(助長)시킬 수는 없다.”

하고, 이어서 이태징(李台徵)을 출보(黜補)하여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 영조 33년 1월 18일(경술)

捕盜大將李章吾請對以長水人金義澤 呈書備局援告他人有不道之說 上曰是必見高廷燁事而爲此也 此類若不嚴懲何以勵末世卽 命押送全羅監營 與被告人對質後啓聞重繩以社後弊



[풀이]

포도 대장 이장오(李章吾)가 청대(請對)하고, 장수(長水)사람 김의택(金義澤)이 비국에 정서(呈書)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대어 고발하면서 부도(不道)한 말이 있었다고 말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틀림 없이 고정엽(高廷燁)의 일을 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류를 만약 엄중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세(末世)의 사람들을 면려(勉勵)하겠는가? 즉시 전라 감영으로 압송(押送)하게 하여 피고인(被告人)과 대질시킨 뒤에 계문(啓聞)하여 엄중하게 다스림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하라.” 하였다.

● 영조 33년 3월 1일(임진)

命湖南道臣 慰諭羅州沃溝長水等民 昨冬湖南御使李顯重 訶察賊情虛實以來 上命更往宣布德意至是 顯重歸奏羅州自 逆志後常以居本州爲恥 沃溝長水亦因時澤義澤之變 人心未 定故有是命



[풀이]

호남 도신에게 명하여 나주(羅州), 옥구(沃溝), 장수(長水) 등의 주민을 위유(慰諭)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겨울에 호남 어사 이현중(李顯重)이 역적의 실정에 대해 허실(虛實)을 염탐해 온 뒤에 임금이 다시 가서 덕의(德意)를 선포하도록 명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이현중이 돌아와 아뢰기를,

“나주에서는 역적 윤지(尹志)의 사건이 있는 후부터 항상 본주(本州)에 살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옥구와 장수에서도 송시택(宋時澤), 김의택(金義澤)의 변고로 인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다.

● 영조 39년 8월 1일(을유)

命旌全羅道長水縣士人西門培妻鄭氏 良人林東三妻吳召史  
 閭 又施恤典于綾州士人李光离光坤及長城士人孔弼章初 上  
 命諸道臣 採奏孝烈特異者 至是湖南前道臣元景淳 啓聞故  
 有是 命鄭氏以潔行爲鄉里稱 忽爲强暴所侵 至於毀裳鄭氏  
 大呼 隣人奔救之 遂免汚辱 鄭氏曰 不辨而死 誰能明我志  
 者卽告于官 杖殺其强暴者旣而泣曰 吾身雖不汚 但一臂爲  
 其所診 留此汚全身矣 引刀剔之 遂自縊死 吳召史初寡養舅  
 姑守志 其母欲改嫁之 召史曰欲一哭夫墓而後許之 遂負其



乳兒往失之曰 夫何往使我聞此言乎 乃爬凍塚十指流血字母  
垂盡 樵女哀之 扶往夫黨家 慰譬終不聽飲藥死 光离兄弟善  
居喪 夜失火將延柩 光离昌火入 其弟亦隨之 抱柩上下俱燒  
死而柩則無恙 人稱孝誠 弼章事親孝及歿泣血及葬 手植松  
柏樵童戒之曰 此乃孔孝子墓 勿翦也

[풀이]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의 사인(士人) 서문배(西門培)의 아내 정씨(鄭氏)와 양인(良人) 임동삼(林東三)의 아내 오소사(吳召史)의 마을에 정표(旌表)하라고 명하였다. 또 능주(綾州)의 사인(士人) 이광리(李光离), 이광곤(李光坤)과 장성(長城)의 사인 공필장(孔弼章)에게 홀전(恤典)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처음에 임금(世宗)이 제도(諸道)에 명하여 효열(孝烈)이 특이한 사람을 조사하여 아뢰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호남(湖南)의 전 도신(道臣)인 원경순(元景淳)이 계문(啓聞)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정씨는 행실이 깨끗한 것으로 향리(鄉理)에 소문이 났는데 갑자기 강포한 자의 겁침(劫侵)을 당하여 치마를 찢기기에 이르자 정씨가 큰소리로 외치니, 이웃 사람이 달려가 구해주어 드디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면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분변하지 않고 죽으면 누가 나의 뜻을 밝혀줄 수 있겠는가?”



하고, 즉시 관(官)에 고발하여 그 강포한 자를 장살(杖殺)케 하였다. 그리고 나서 울면서 말하기를,

“나의 몸은 비록 더럽혀지지 않았으나 한쪽 팔은 그에게 비틀렸었으니, 이를 그대로 두면 온몸이 더러워진다.”

하고, 칼을 가져와 베어내고 드디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오 소사는 일찍 과부(寡婦)가 되어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수절(守節)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개가(改嫁)시키려 하자, 오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무덤에 가서 한번 곡(哭)한 다음 허락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젓먹이 어린아이를 업고 가서 통곡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왜 먼저 가서 나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합니까?” 하면서, 이에 손으로 얼어 붙은 무덤을 마구 파니 열손가락에서 피가 흘렀다. 그리하여 아기와 어머니가 드디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나무하는 여인(女人)이 그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부축하고 남편의 집안 사람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위로하고 달래었으나 끝내 듣지 않고 약(藥)을 마시고 죽었다. 이광리 형제는 거상(居喪)을 잘 하였는데, 밤에 실화(失火)하여 시체가 든 관(棺)이 타게 되자 이광리가 불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아우도 따라서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관을 아래 위에서 끌어안은 채 함께 불에 타서 죽었는데, 관은 아무 탈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효성에 감동된 소치라고 일컬었다. 공필장은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이를 섬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자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장사지내고 나서는 손수 소나무와 잣나



무를 심고서 초동(樵童)들에게 경계시키기를,

“이것이 바로 공효자(孔孝子)의 무덤이니, 나무를 베지 말라.”

하였다.





● 정조 8년 4월 30일(갑인)

嶺南湖南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 兩南道臣上畢賑啓教  
 曰 嶺南畢賑 狀本來到雖與兩湖畿甸關東等諸道之大賑有異  
 守令論賞一款不可全然不論 且有私賑人亦宜有褒賞 命吏兵  
 判賑堂備局有司堂上 使卽登對稟處 嶺南金海府使金履禧兒  
 馬賜給 興海郡守成大中陞叙 湖南前兵使曹學臣 前水使孫  
 相龍 各熟馬賜給 寶城前郡守鄭彥衡右職調用 南平縣監柳  
 曾養等四人陞品 已陞資者表裏賜給已準職者 內三品調用  
 私賑守令南原府使徐侃修準職除授 願納人邊將調用 或加  
 資有差

[풀이]

영남과 호남에 진휼을 베풀었는데, 정월부터 시작하여 이 때  
에 진휼을 마쳤다.

[영남의 공진(公賑)으로, 영해(寧海), 순흥(順興), 풍기(豊基),  
영덕(盈德), 청하(淸河), 지례(知禮), 연일(延日), 흥해(興海), 장기  
(長鬐), 문경(聞慶), 영양(英陽), 진보(眞寶), 영천(榮川), 양산(梁



山), 김해(金海), 영산(靈山), 봉화(奉化), 하동(河東), 칠곡(漆谷), 인동(仁同) 등의 고을과, 황산(黃山), 창락(昌樂), 송라(松羅), 유곡(幽谷) 등의 역(驛)과 조령(鳥嶺), 포항(浦項) 등의 진(鎭)의 총 기민(飢民) 20만 3천 4백 구(口)이고 진곡(賑穀) 1만 6천 6백 50 석이었다.

호남의 공진으로 전주(全州), 나주(羅州), 광주(光州), 능주(綾州), 여산(礪山), 영암(靈岩), 영광(靈光), 진도(珍島), 김제(金堤), 보성(寶城), 익산(益山), 고부(古阜), 임피(臨陂), 만경(萬頃), 금구(金溝), 용안(龍安), 함열(咸悅), 무장(茂長), 함평(咸平), 무안(務安), 해남(海南), 옥구(沃溝), 흥덕(興德), 운봉(雲峰), 흥양(興陽), 태인(泰仁), 부안(扶安), 남평(南平), 장수(長水), 고창(高敞), 곡성(谷城), 남원(南原), 순천(順天), 장성(長城), 장흥(長興), 낙안(樂安), 창평(昌平), 광양(光陽), 진안(鎭安), 강진(康津), 옥과(玉果), 화순(和順), 정읍(井邑), 등의 고을과, 병영(兵營), 좌수영(左首營), 우수영(右水營), 벽사(碧沙), 청암(淸岩), 경양(景陽) 등의 역(驛)과, 법성(法聖), 임자도(荏子島), 고군산(古群山), 군산(群山), 임치(臨淄), 위도(蝟島), 지도(智島), 어란(於蘭), 다경포(多慶浦), 목포(木浦), 녹도(鹿島), 검모포(黔毛浦), 격포(格浦), 방답(防踏), 고금도(古今島), 신지도(薪智島), 고돌산(古突山), 회령포(會寧浦), 위봉도(威鳳島), 흑산도(黑山島) 등의 진(鎭)과, 나주(羅州), 진도(珍島), 흥양(興陽), 순천(順天) 등의 목장(牧場)에, 총 기민 2백 21만 4백 66구이고, 진곡 11만 1천 3백 40석 영이었다.]

양남의 도신이 진홀을 마친 장계를 올리니, 하교하기를,

“영남의 진홀을 마친 장본(狀本)이 도착하였는데, 비록 양호



(兩湖)와 기전(畿甸), 관동(關東) 등 제도의 대진(大賑)과는 차이가 있으나 수령에게 논상(論賞)하는 한 조항을 전혀 논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또 사사로이 진휼한 사람 역시 마땅히 포상해야 한다.”

하고는, 이조 판서, 병조 판서, 진휼청 당상, 비국의 유사 당상에게 명하여, 즉시 등대(登對)하여 품처하게 해서, 영남은 김해부사(金海府使) 김이희(金履禧)에게 아마(兒馬)를 사급하고, 흥해 군수(興海郡守) 성대중(成大中)은 승서(陞敍)하였다. 호남은 전 병사(兵使) 조학신(曹學臣)과 전 수사(水使) 손상룡(孫相龍)에게 각기 숙마(熟馬)를 사급하고, 보성(寶城)의 전 군수 정언형(鄭彦衡)은 우직(右職)에 조용하게 하였으며, 남평 현감(南平縣監) 유증양(柳曾養) 등 4인은 승품(陞品)하고, 이미 자급을 올린 자에게는 표리(表裏)를 사급하였으며, 이미 준직(準職)된 자는 내삼품(內三品)에 조용하고, 사사로이 진휼한 수령 남원 부사(南原府使) 서간수(徐侃修)은 준직을 제수하였으며, 원납인(願納人)은 변장(邊將)에 조용하거나 혹은 차등을 두어 가자(加資)하였다.



## ● 정조 10년 11월 11일(신사)

旌孝子通德郎洪朝泳縣監成德求學生俞雋南原士人邢世績學  
生金宅淳開城府士人李鼎濡 孝婦松禾武士韓震配妻盧氏 烈  
女良人崔壽煥妻崔氏 學生任教常妻李氏 學生劉益燁妻玄氏  
學生吳允常妻金氏 坡州士人洪宇周妻李氏 興陽鮑人金占山  
妻南氏 南平軍役羅小采妻黃氏 長水良女粉黛 忠臣贈兵曹  
參議梁大樸間 孝子學生崔道觀迪觀 縣監李之老 珍島巫夫  
妻天福 並復其戶

## [풀이]

효자들에게 정문을 하사하였는데, 통덕랑 홍조영(洪朝泳), 현감 성덕구(成德求), 학생 유준(俞雋), 남원(南原) 사인(士人) 형세적(邢世績), 학생 김택순(金宅淳), 개성부 사인 이정유(李鼎濡)이고, 효부(孝婦)는 송화(松禾) 무사(武士) 한진배(韓震配)의 처 노씨(盧氏)였다.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였는데, 양인(良人) 최수환(崔壽煥)의 처 최씨(崔氏), 학생 임교상(任教常)의 처 이씨(李氏), 학생 유익엽(劉益燁)의 처 현씨(玄氏), 학생 오윤상(吳允常)의 처 김씨(金氏), 과주(坡州) 사인(士人) 홍우주(洪宇周)의 처 이씨, 흥양(興陽) 포인(鮑人) 김점산(金占山)의 처 남씨(南氏), 남평(南平) 군역(軍役) 나소채(羅小采)의 처 황씨(黃氏), 장수(長水) 양녀(良女) 분대(粉黛)였다. 충신 증 병조 참의 양대박(梁大樸)의



집과 효자 학생 최도관(崔道觀), 최적관(崔迪觀)과 현감 이지로(李之老), 진도(珍島) 무부(巫夫) 강천복(姜天福)에게 모두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었다.

● 정조 11년 5월 23일(기축)

京畿嶺南湖南湖西關東關北六道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  
 諸道道臣 以畢賑啓 施賞有差 京畿通津府使黃仁煥 坡州  
 牧使洪仁默階梯職待窠調用 金浦郡守俞漢緯準職除授 通津  
 前郡守李弘遂加資後實職調用 驪州牧使李文源鹿皮一令賜  
 給 高陽郡守李素 富平府使尹耆東兒馬賜給 利川府使沈錙  
 陰竹縣監崔在修上弦弓賜給 願納人李秉堉等除職 或賞加帖  
 嶺南長鬐縣監柳煥輔準職除授 咸陽府使李得駿階梯職陞遷  
 宜寧縣監洪善養準職調用 慶州府尹金履容賜表裏 晉州牧使  
 金履鈺兒馬賜給 蔚山府使沈公藝 巨濟府使金赫陞敘 願納  
 人黃得麟等除職或帖加 湖南兵使李漢五 前水使許任 右水  
 使申遇文賜璽書表裏 海南縣監尹守默加資 樂安郡守沈默之  
 光陽縣監許溟 長興府使宋載瑞 咸平縣監宋觀休 已準職者  
 營將中軍中陞遷 未準職者道內府使郡守差擬 康津縣監閔廷  
 桓 興德縣監張集紹 高敞縣監朴文綱 任實縣監徐有豐準職  
 調用 淳昌郡守洪守榮 谷城縣監林夏喆 和順縣監林性運陞  
 職調用 願納人張益福等除職或賞加 湖西林川前郡守金載允



泰安縣監朴沔賜表裏 連山縣監金思秬 鎭岑縣監尹龜錫陞  
品調用 恩津縣監曹命峻熟馬賜給 願納人帖加 關東蔚珍縣  
令洪致範階梯職調用 平海前郡守鄭殷誠 通川郡守金東鎭陞  
敘 高城郡守李取源兒馬賜給 平海郡守金履彬 歙谷縣令張  
漢喆不粧弓賜給 願納人等帖加 又命是年五部發賣時 漢城  
府堂郎部官惠廳堂郎施賞 判尹鄭昌順賜鹿皮 宣惠提調徐有  
隣金履素賜上弦事任好常守令調用 願納人除邊將

[풀이]

경기(京畿), 영남(嶺南), 호남(湖南), 호서(湖西), 관동(關東), 관북(關北) 여섯 도(道)의 설진(說賑)을 정월(正月)부터 베풀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휼을 마쳤다. [경기. 광주(廣州), 수원(水原), 통진(通津), 풍덕(豐德), 인천(仁川), 부평(富平), 김포(金浦), 고양(高陽), 교하(交河), 과천(果川) 등의 고을과 덕포(德浦), 덕적(德積) 등의 진(鎭)의 총 기민(饑民)은 17만 8천 9백 39구(口)이고, 진곡(賑穀)은 1만 3천 4백 44석(石) 영(零)이며, 강화부(江華府)의 사진(私賑)은 총 기민이 4천 2백 32구이고, 진곡은 1백 86석 영이며, 전(錢)이 6백 24냥 영이다.

영남. 남해(南海), 웅천(熊川), 거제(巨濟), 진해(鎭海), 양산(梁山), 청하(清河), 칠원(漆原), 장기(長鬐), 울산(蔚山), 함안(咸安), 김해(金海), 동래(東萊), 연일(延日), 기장(機張), 하동(河東), 곤양(昆陽), 고성(固城), 사천(泗川), 초계(草溪), 밀양(密陽), 진주



(晉州), 거창(居昌), 지례(知禮), 단성(丹城), 함창(咸昌), 함양(咸陽), 언양(彦陽), 산청(山淸), 경주(慶州), 흥해(興海), 영해(寧海), 영덕(盈德), 의령(宜寧), 합천(陝川), 청도(淸道), 하양(河陽), 경산(慶山), 삼가(三嘉), 현풍(玄風), 대구(大丘), 인동(仁同), 영산(靈山), 영천(榮川), 예천(醴泉), 성주(星州), 상주(尙州), 창녕(昌寧), 봉화(奉化), 선산(善山), 안동(安東), 고령(高靈), 금산(金山), 안의(安義) 등의 고을과 좌병영(左兵營), 우병영(右兵營), 좌수영(左水營)의 우후(虞侯), 귀산(龜山), 사랑(蛇梁), 당포(唐浦), 삼천포(三千浦), 남촌(南村), 구소(舊所), 비적량(非赤梁), 미조항(彌助項), 평산(平山), 가덕(加德), 제포(薺浦), 안골(安骨), 천성(天城), 신문(新門), 청천(淸川), 부산(釜山), 다대(多大), 개운(開雲), 두모(豆毛), 서평(西平), 포이(包伊), 서생(西生), 지세(知世), 옥포(玉浦), 영등(永登), 조라(助羅), 가배(加背), 울포(栗浦), 장목(長木), 금도(金島), 독용(禿用) 등의 진(鎭)과 자여(自如), 소촌(召村), 송라(松羅), 황산(黃山), 사근(沙斤), 성현(省峴) 등의 역(驛), 진주(晉州), 울산(蔚山) 등의 목장(牧場)의 총 기민이 1백 8만 8천 2백 87구이고, 진곡은 8만 3천 5백 31석 영이다.

호남. 나주(羅州), 남원(南原), 순천(順天), 장흥(長興), 보성(寶城), 영광(靈光), 영암(靈巖), 진도(珍島), 낙안(樂安), 만경(萬頃), 광양(光陽), 강진(康津), 부안(扶安), 무장(茂長), 무안(務安), 흥덕(興德), 고창(高敞), 동복(同福), 진안(鎭安), 장수(長水), 운봉(雲峰), 흥양(興陽), 구례(求禮), 해남(海南), 함평(咸平) 등의 고을과 병영(兵營), 좌수영(左水營), 우수영(右水營), 격포(格浦), 방담(防踏), 사도(蛇渡), 법성(法聖), 임자도(荏子島), 가리포(加



里浦), 고금도(古今島), 고군산(古群山), 위도(蝟島), 임치(臨淄), 여도(呂島), 발포(鉢浦), 녹도(鹿島), 금갑도(金甲島), 남도(南桃), 지도(智島), 다경포(多慶浦), 목포(木浦), 마도(馬島), 신지도(薪智島), 어란이진(於蘭梨津), 검모포(黔毛浦), 회령포(會寧浦), 고돌산(古突山), 흑산도(黑山島), 섬진(蟾津) 등의 진(鎭)과 나주, 진도, 홍양, 순천 등의 목장, 벽사역(碧沙驛)의 총 기민 1백 55만 6천 4백 39구이고, 진곡은 8만 6천 1백 71석 영이며, 사진(私賑)은 전주(全州), 광주(光州), 순창(淳昌), 금산(錦山), 창평(昌平), 옥과(玉果), 곡성(谷城), 화순(和順), 임실(任實), 용담(龍潭) 등의 고을의 총 기민이 27만 5천 4백 38구이고, 진곡은 1만 6천 9백석 영이다.

호서. 태안(泰安), 온양(溫陽), 평택(平澤), 아산(牙山), 직산(稷山), 석성(石城), 홍산(鴻山), 정산(定山), 부여(扶餘), 음성(陰城), 신창(新昌), 비인(庇人), 청양(靑陽), 공주(公州), 서천(舒川), 보령(保寧), 홍주(洪州), 결성(結城), 천안(天安), 전의(全義), 예산(禮山), 한산(韓山), 남포(藍浦) 등의 고을과 수영(水營), 행영(行營), 마량(馬梁), 서천포(舒川浦), 소근(所斤) 등의 진(鎭), 성환(成歡), 이인(利仁) 등의 역(驛)의 총기민이 27만 9천 8백 77구이고, 진곡이 1만 7천 75석 영이며, 사진(私賑)은 임천(林川), 은진(恩津), 연산(連山), 진잠(鎭岑) 등의 고을과 금정역(金井驛)의 총 기민이 3만 2천 6백 57구이고, 진곡은 2천 3백 38석 영이다.

관동. 간성(杆城), 고성(高城), 울진(蔚珍), 평해(平海), 흙곡(歙谷), 통천(通川) 등의 고을의 총 기민이 1천 6백 3구이고, 진곡



은 9백 94석 영이다.

관북. 안변(安邊), 북청(北靑), 갑산(甲山), 삼수(三水), 이원(利原), 단천(端川), 길주(吉州), 명천(明川), 경성(鏡城), 부령(富寧), 무산(茂山), 회령(會寧), 종성(鍾城), 온성(穩城) 등의 고을의 총기민이 9만 5백 31구이고, 진곡은 2천 4백 14석 영이다.]

여러 도(道)의 도신(道臣)이 진흙을 마쳤다고 아뢰니,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경기의 통진 부사(通津府使) 황인영(黃仁煥)과 파주 목사(坡州牧師) 홍인묵(洪仁默)은 계제직(階梯職)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하고, 김포 군수(金浦郡守) 유한위(兪漢緯)는 준직(準職)을 제수하고, 통진 전 군수(通津前郡守) 이홍수(李弘遂)는 가자(加資)한 후 실직(實職)에 조용하고,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문원(李文源)에게는 녹비[鹿皮] 한 령(令)을 사급(賜給)하고, 고양 군수(高陽郡守) 이소(李素)와 부평 부사(富平府使) 윤기동(尹耆東)에게는 아마(兒馬)를 사급하며, 이천 부사(利川府使) 심계(沈鈺)와 음죽 현감(陰竹縣監) 최재수(崔在修)에게는 상현궁(上弦弓)을 사급하고, 원납인(願納人) 이병후(李秉堙) 등에게는 제직(除職)하거나 혹은 상가(賞加), 체가[帖加]하였다. 영남의 장기 현감(長鬐縣監) 유환보(柳煥輔)는 준직을 제수하고, 함양 부사(咸陽府使) 이득준(李得駿)은 계제직(階梯職)으로 승천(陞遷)하고, 의령 현감(宜寧縣監) 홍선양(洪善養)은 준직에 조용(調用)하고, 경주 부윤(慶州府尹) 김이용(金履容)에게는 표리(表裏)를 사급하고, 진주 목사(晉州牧使) 김이계(金履鈺)에게는 아마(兒馬)를 사급하고, 울산 부사(蔚山府使) 심공예(沈公藝)와 거제 부사(巨濟府使) 김혁(金爍)은 승서(陞敘)하



고, 원납인 황득린(黃得麟) 등은 제직하거나 혹은 체가하였다. 호남 병사(湖南兵使) 이한오(李漢五), 전수사(前水使) 허임(許任), 우수사(右水使) 신우문(申遇文)에게는 새서 표리(璽書表裏)를 내리고, 해남 현감(海南縣監) 윤수묵(尹守默)은 가자하고, 낙안 군수(樂安郡守) 심묵지(沈默之), 광양 현감(光陽縣監) 허명(許溟), 장흥 부사(長興府使) 송재서(宋載瑞), 함평 현감(咸平縣監) 송관휴(宋觀休) 가운데 이미 준직(準職)한 자는 영장(營將), 중군(中軍) 가운데서 승천하고 준직하지 않은 자는 도내(道內)의 부사나 군수에 차의(差擬)한다. 강진 현감(康津縣監) 민정환(閔廷桓), 흥덕 현감(興德縣監) 장집소(張集紹), 고창 현감(高敞縣監) 박문경(朴文綱), 임실 현감(任實縣監) 서유풍(徐有豐)은 준직에 조용하고, 순창 군수(淳昌郡守) 홍수영(洪守榮), 곡성 현감(谷城縣監) 임하철(林夏喆), 화순 현감(和順縣監) 임성운(林性運)은 승직하여 조용하고, 원납인 장익복(張益福) 등은 제직하거나 혹은 상가한다. 호서(湖西)의 임천 전 군수(林川前郡守) 김재구(金載久), 태안 현감(泰安縣監) 박형(朴洞)에게는 표리(表裏)를 하사하였다. 연산 현감(連山縣監) 김사석(金思棼), 진잠 현감(鎭岑縣監) 윤귀석(尹龜錫)은 승품(陞品)하여 조용하였다. 은진 현감(恩津縣監) 조명준(曹命峻)에게는 숙마(熟馬)를 사급하고, 원납인은 체가하였다. 관동(關東)의 울진 현령(蔚珍縣令) 홍치범(洪致範)은 계제직(階梯職)에 조용하고, 평해 전 군수(平海前郡守) 정은성(鄭殷誠), 통천 군수(通川郡守) 김동진(金東鎭)은 승서(陞敍)하고, 고성 군수(高城郡守) 이최원(李最源)은 아마(兒馬)를 사급하고, 평해 군수(平海郡守) 김이빈(金履彬), 흡곡



현령(歙谷縣令) 장한철(張漢喆)은 꾸미지 않은 활을 사급하고, 원납인 등에게는 체가하였다. 또 명하기를,

“이해 오부(五部)에서 발매(發賣)할 때의 한성부의 당상관과 낭관, 부관(部官)과 선혜청의 당상관, 낭관에게 시상하라. 판윤(判尹) 정창순(鄭昌順)에게는 녹비[鹿皮]를 내리고, 선혜청 제조 서유린(徐有隣), 김이소(金履素)에게는 상현궁(上弦弓)을 내리고, 진휼청 낭청 이창회(李昌會), 민백준(閔百準)은 승품하여 조용하고, 남부 도사(南部都事) 박영원(朴英源), 북부 봉사(北部奉事) 임호상(任好常)은 수령에 조용하고, 원납인은 변장(邊將)을 제수하라.”

하였다. [오부(五部)의 발매는 총 2만 6천 9백 66호(戶)에 쌀 4천 8백 91석(石) 영(零)이었다.]

### ● 정조 13년 9월 9일(임진)

全羅道觀察使尹行元以善政碑撤去 啓教曰二去已酉 茂長倅之鄭權碑亦在撤去之中 備局跋辭 限以甲子續典刊行以後 則今以六十年以上人 混同修啓 道伯事寧不悶然乎 一事二事舉措如此 此豈不爲朝廷之羞恥乎



[풀이]

전라도 관찰사 윤행원(尹行元)이 선정비(善政碑)를 철거하는 문제로 계문하니, 하교하기를,

“전전번의 기유년에 세운 무주(茂朱), 장수(長水)의 수령 정권(鄭權)의 비 또한 철거 대상 속에 들어있는데, 비국의 발사(跋辭)는 갑자년 《속전(續典)》이 간행된 이후로 한정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60년 이전의 사람까지 싸잡아 혼동하여 아뢰었으니, 도백(道伯)의 일처리가 어찌 민망하지 않겠는가. 한두 가지 일에 거조가 이와 같으니, 이 어찌 조정의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 ● 정조 17년 5월 19일(경술)

湖南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 上下道臣權襪狀啓于吏兵曹曰 今子一心所重 卽奉先與爲民也 日前陵官事 亦有下教 旣聞通一道賑事之告完 豈可以坐齋不爲回下乎 賑廳堂上吏兵判來會公廡 以草記回啓 吏兵曹啓言 節度使李壽鵬 自備穀二千二百餘石 宜施璽書表裏之典富民願納三千石 嘉善張益福宜加資後實職調用 一千石以上嘉善河福彥等九人 宜實職除授 五百石以上將校徐有源等三人 宜賞加 未滿五百石折衝金福奎 宜施帖加成給 允之 教曰 富民願納中前僉使張益福 前此補賑石數 合而計之 近於萬包 此等之人 宜有



援例收用守令特爲承傳 前五衛將河福彦 通計亦甚夥然 邊將瓜滿人作窠差送 折衝朴大采 數過二千石 不可除職而止 特爲加資 折衝鄭彦禧等七人 皆過千石 今此實職承傳之請 循例允下 仍作休紙 是豈聳勸之意乎 依近例五衛將或 實職中次次調用 其餘帖加之類 如有已經實職者 亦依近例以賞加施行

【풀이】

호남에 진휼을 베풀었는데, 정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휼을 끝마쳤다. 【공진(公賑)으로는 병마 절도영과 우도수군 절도영의 나주(羅州), 장흥(長興), 영암(靈巖), 진도(珍島), 보성(寶城), 낙안(樂安), 용담(龍潭), 만경(萬頃), 흥양(興陽), 강진(康津), 해남(海南), 옥구(沃溝), 진안(鎭安), 함열(咸悅), 구례(求禮), 운봉(雲峰) 등의 고을과 사도(蛇島), 고금도(古今島), 가리포(加里浦), 고군산(古群山), 군산(群山), 방답(防踏), 위도(蝟島), 임치(臨淄), 임자도(荏子島), 녹도(鹿島), 마도(馬島), 발포(鉢浦), 신지도(薪智島), 어란(於蘭), 여도(呂島), 이진(梨津), 회령포(會寧浦), 남도포(南挑浦), 금갑도(金甲島), 지도(智島), 목포(木浦), 검모포(金毛浦), 다경포(多慶浦), 고돌산(古突山), 흑산도(黑山島), 섬진(蟾津), 격포(格浦) 등의 진과, 벽사역(碧沙驛), 흥양, 진도, 순천, 나주 등 목장의 기민(飢民) 총 1백 3만 8천 6백 87명에 진휼곡은 6만 3백 53석이었고, 사진(私賑)으로는 좌



도 수군절도영의 전주(全州), 능주(綾州), 남원(南原), 순천(順天), 여산(礪山), 영광(靈光), 김제(金堤), 고부(古阜), 익산(益山), 순창(淳昌), 임실(任實), 광양(光陽), 부안(扶安), 무장(茂長), 화순(和順), 임피(臨陂), 곡성(谷城), 옥과(玉果), 용안(龍安), 흥덕(興德), 함평(咸平), 무안(務安), 고창(高敞), 장수(長水), 창평(昌平), 남평(南平), 진산(珍山) 등의 고을과, 법성(法聖), 위봉(威鳳) 등의 진과, 삼례(參禮), 오수(獒樹) 등 역(驛)의 기민 총 20만 1백 72명에 진휼곡은 1만 3천 1백 68석이었다.]

상이 도신 권엄(權嚴)의 장계를 이조, 병조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선 대를 받드는 일과 백성을 위하는 일이다. 일전에 능관(陵官)의 일로도 전교를 내린 일이 있지만, 한 도를 통틀어 진휼하는 일이 완결되었다는 보고를 듣고서 어찌 재계하는 일 때문에 회답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청 당상(賑廳堂上)과 이조, 병조의 판서는 관아로 나와서 초기(草記)로 회계하라.”

하니, 이조, 병조가 아뢰기를,

“절도사 이수봉(李壽鵬)은 곡식 2천 2백여 석을 스스로 준비했었으니 옥새를 찍은 상장과 표리(表裏)를 내리는 은전을 배풀어야 할 것이고, 부유한 백성으로 3천 석을 자원 납부한 가선 대부 장익복(張益福)에게는 가자한 뒤에 실직으로 등용해야 할 것이고, 1천 석 이상을 납부한 가선 대부 하복언(河福彦) 등 9인에게는 실직을 제수해야 할 것이고, 5백 석 이상을 납부한 장교(將校) 서유원(徐有源) 등 3인에게는 상가(賞加)해야 할



것이고, 5백 석 미만인 절충 장군 김복규(金福奎)에게는 체가(帖加)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윤택하고, 전교하기를,

“부유한 백성으로 자원 납부한 사람 가운데 전 첨사 장익복은 앞서 진휼을 도운 곡식 숫자까지를 합계하면 만 포(包)에 가깝다. 이런 사람은 의당 관례를 뛰어넘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령에 임명하는 것으로 특별히 승전(承傳)하도록 하라. 전 오위 장 하복언도 통계를 내면 또한 매우 많은 곡식이다. 변방 장수로 임기가 찬 자 중에 자리를 내어 임명해 보내도록 하라. 절충 장군 박대채(朴大采)도 숫자가 2천 석을 넘었으니 벼슬만 제수하고 그만둘 수 없다. 특별히 가자시키도록 하라. 절충 장군 정언희(鄭彦禧) 등 7인도 모두 1천 석이 넘었는데, 이번에 실직을 내려야 한다는 청을 관례에 따라 윤택만 하고 그대로 휴지가 되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세상 사람들을 권장하는 뜻이겠는가. 가까운 예에 따라 오위 장이나 혹은 실직 중에서 차차 등용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 체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만일 이미 실직을 지낸 자가 있으면 역시 가까운 관례에 따라 상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순조 2년 9월 12일(경진)

備局言壯勇營撤罷後 錢穀木布屯土軍器公廩區處移屬軍兵  
接濟戶曹內司各衙門奴貢給代措處之方 各具別單以入

풀이

비국에서 말하기를,

“장용영(壯勇營)을 철폐한 뒤에 돈, 곡식, 무명, 베, 둔토(屯土), 군기(軍器), 공해(公廩)를 구처하여 이속(移屬)하고 군병(軍兵)을 접제(接濟)하는 것과 호조, 내수사 각 아문(衙門)의 노비공(奴婢貢) 급대(給代)를 조처하는 방도를 각각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올립니다.”

하였다. [돈, 곡식, 무명, 베의 구처 별단 각 항 쌀의 합계 2만 3백 62석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 항 쌀의 합계 6천 8백 23석은 호조에 소속시킨다.

- 각 항 콩의 합계 2천 1백 66석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 항 콩의 합계 2천 6백 92석은 호조에 소속시킨다.



- 각 항 무명의 합계 2백 15동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 항 무명의 합계 2백 40동은 호조에 소속시키며, 각항 무명의 합계 4동은 병조에 소속시키고, 각 항 목 합계 24동은 훈국(訓局)에 소속시키며, 각 항 무명의 합계 22동은 금위영에 소속시키고, 무명 8동은 어영청에 소속키시며, 무명 20동은 영남에 소속시킨다.
- 각 항 배의 합계 24동은 호조에 소속시키고, 각 항 배의 합계 15동은 병조에 소속시킨다.
- 각 항 돈의 합계 4천 6백 냥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 항 돈 합계 2천 1백 55냥은 호조에 소속시키며, 각항 돈의 합계 4백 53냥은 금위영에 소속시키고, 각 항 전 합계 3백 13냥은 어영청에 소속시킨다. 돈 44냥은 군기시에 소속시키고, 각 항 돈의 합계 2천 8백 88냥은 병조에 소속시킨다. 각 항 돈의 합계 1천 8백냥은 경기도에 소속시키고, 각 항 돈의 합계 1만 4천 6백 7냥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각 항 돈의 합계 6만 5천 9백 38냥은 관서에 소속시키고, 각 항 돈의 합계 1만 6천 2백 13냥은 호남에 소속시키고, 각 항 돈의 합계 7천 6백 70냥은 영남에 소속시키고, 각 항 돈 합계 9천 6백 79냥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돈 3천 냥은 관동에 소속시키고, 돈 1천 냥은 관북에 소속시키고, 돈 9천 냥은 광주(廣州)에 소속시킨다.
- 별고(別庫)에서 관할하는 것 및 향색(餉色) 환곡(還穀)의 그대로 나누어 주었다가 모곡(耗穀)을 취하는 질(秩). 각 항 벼의 합계 6만 3천 6백 75석, 좁쌀 1백 11석은 경기도에 소속



시킨다.

- 각 향 좁쌀의 합계 1만 4천 석은 관서에 소속시키고, 좁쌀 9백 석은 해서에 소속시키고, 쌀과 좁쌀 합계 1천 1백 94석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각 향 쌀의 합계 2백 86석은 호남에 소속시키고, 쌀 4천 석은 영남에 소속시키고, 각 향 쌀의 합계 3천 5백 석은 관동에 소속시킨다.
- 배봉(拜峯)의 쌀 2천 7백 석, 벼 7천 석, 노량(鷺梁) 환곡미 1천 20석, 고성(古城)의 환곡미 1천 석, 벼 3천 2백 28석은 각각 해당 진(鎭)에 소속시킨다.
- 둔토(屯土)를 구처하는 질(秩), 부안, 고부, 고성, 김해, 창원, 황성, 홍주(洪州)의 둔토는 광주(廣州)에 소속시키고, 어지(於支)의 둔토는 어영청에 소속시키고, 진위, 음죽, 연천, 시흥의 둔토는 균역청에 소속시키고, 봉산, 황주, 용진, 안주, 박천, 장흥, 정주(定州), 진위(振威), 고양, 김포, 지평(砥平), 양근(陽根), 가평의 둔토와 전곶(箭串)의 내전세(萊田稅), 흥덕동(興德洞)의 포전세(圃田稅), 도저동(桃渚洞)의 포전세, 연곡사(鸞谷寺) 백지(白紙)는 내수사에 소속시키고, 수원, 안산, 시흥, 용인의 둔토는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장연(長淵), 광주(廣州), 가산(嘉山), 고성, 영유(永柔), 공주, 이천(伊川), 용강(龍岡), 음죽, 파주의 둔토는 균역청에 소속시키고, 과천의 둔토는 노량진(鷺梁鎭)에 소속시키고, 배봉의 둔토는 해당 목관(牧官)에 소속시킨다.
- 외별고(外別庫)에서 관할하는 유천(柳川), 평산(平山), 신천(信川)의 둔세(屯稅), 장수사(長水寺) 세와 수성고(修城庫)에



서 관할하는 대유(大有)의 둔토, 도지(賭地)의 조(租)와 울천고(蔚千庫)에서 관할하는 화소 내세(火巢內稅), 연산 둔세(連山屯稅), 평신 둔세곡(平薪屯稅穀)과 아병(牙兵)의 수포(收布) 7백 동 이상은 본래 오영(五營)에서 관할하던 것이나 그대로 수원부에 소속시킨다.]

### ● 순조 11년 3월 30일(무인)

其一. 延安田糴有弊 庚戌海溢後 永難起墾者 白地徵稅 癸甲慘歉後 還餉及軍民身米錢布 或全停或半停 而其後流離者 徵族徵隣未免白徵者也 海溢災結 今過二十有餘年 則雖或有永難起墾者 既有事目倭災亦無田結永頃 而年前度支之開出於守經之論置之 至於癸甲兩年停退 既施延民之大惠而戊辰仍停 尤爲曠絕之澤以其新舊并徵 有難濶狹亦爲置之

其一. 鳳山案付司饗諸院作米保 罷其納米之規 每石并雜費六兩五錢裁定事也 保米之每石七斗零之價 過六兩 以其有雜費故雖或如此 今則長山以北稅納 既令船運則裝發他邑之弊今無可論 若以裝發他邑時收捧之價 責出於本邑船運之時 則其可成說乎 以本色直納 一體裝發於本郡稅船則自無濫徵米價之弊 以此分付

其一. 金川泰北兩倉皆在大興山城爲松營句管 而本郡坊民分排以納之際 人馬致傷泰倉則移捧於青石鎮 北倉則下捧於郡倉 且大小南面移屬松營之後 各軍門價布保米 自松營收



捧統禦營則水軍納布與有頃 使本郡替當 依前以兩面之民充代京司上納各司情債 裁成節目分置京外事也 泰北兩倉所在穀物 卽城餉也 城餉之或當歉歲捧留邑倉 雖有一時許施之例永爲移捧於他鎮及郡倉有違設施本意 關問該道及松營稟處 大小南面今旣移屬於松營 軍民之納布充代自松營舉行則所在水軍九名之獨責於本郡者 果是無義亦爲關問該道及松營後從便快處京司上納情債之逐年增加 果有其弊定式外增加之數 亦令該道查實報來後處之 允之 又啓言 全羅道陳弊冊子判府內 道臣所陳舊災變通及耗作錢一款 令廟堂論理稟處 該邑中潭陽倅所陳 不但論一邑可以通行於八道 可以採施者 并列邑所陳 一體稟處事命下矣 本道舊災丙申查陳後 仍津者三千五百五十四結 每年白徵合有變通 京外衙門耗作錢 毋敢挪移必以元穀所在處 取耗執錢各官房各衙門屯稅 勿送導掌 令本官躬審執卜爲請矣 道臣所請三條 不但本道如此諸路此弊 無道不然 舊災乃是自前已陳 不入永頃 每以無麵之托 必徵不毛之地者 大非仁政之所行 實爲小民之切冤 然而田賦定制 已成金石必以新起與舊陳 參互對待以起補陳無減元結之摠 然後始許以陳頃 苟或不然則王土惟正之制 將不免漸就毀劃矣 此所以雖知白徵之弊 而終無請減之道者也 況今生穀之土 殆無不墾之地 比昔年不啻爲倍 而猶且元摠則漸減正稅則漸宿者是曷故也 直以守土者 舉昧田制 不能分曉於陳起之際 句刷於查量之節一任吏手 漫不省事之致也 另飭列邑益加惕然改圖之意 行會諸道京外耗作錢之一從本穀實數 無或隨價挪移 丙辰受教至爲嚴重伊時道臣至被竄配之典 故不無改關之效而數年纔過 又復如初近年則



尤爲蕩然山沿不均 益無可言矣至於京司作錢 若使道臣據法 俵邑俾不得隨時移易則寧有偏多偏少 此積彼朽之弊也 後若 犯科則先罪道臣之意 嚴關另飭京外導掌革罷事 已陳於關西 冊子回啓中 此亦一體施行 潭陽盛陳山訟之弊 而請定爲令 甲 別成節目備論邸債之習而請酌定分數 嚴加禁斷并與書院 及䟽廳之徵索京邸者 永爲防塞軍政則依癸亥之例 設廳簽丁 軍布則行戶斂之法 班賤均徵爲請矣 山訟之法隨品計步各有 等限說法之詳

莫如山訟而久則漸弛近益蕩然 廣占倫埋 百般驚駭之事 無 所不有此豈無法而然哉吏不守法 民不畏法 而法不能自行殆 無異於無法故也 金石科條昔非不足 今何容更定令甲 新刊 節目爲也 嚴飭內外掌訟之官俾之勿畏強禦 勿輕孤惇一從 祖宗朝已成之憲 無敢低昂惟法是斷則息鬧止訟之道 不外于 是矣私掘之罪 律本刑流而遇赦輒放 譬不知畏私自推埋情犯 絕慘者 式月斯生吏莫能禁 自今以往 勿待其自首必覈造謀 元犯用律後 雖遇曠蕩之時切勿揀入於赦典 則庶爲懲惡戢奸 之道 以此行會八道著爲定式邸債之弊自廟堂 成節目嚴立科 條 近尤切嚴而終不得洞革積弊 乃是守令之罪也 官用則隨 償吏負則卽報 至若私自債殖於民間臥債徵族之類并蕩本錢 犯者刑配 則邸民之間兩無相干百弊可以自止以此意 添入 節目嚴飭各道書院䟽廳 無得直捧邸錢 年前已筵稟永禁良役 之搜丁簽伍 惟在守令任怨守法不必自京設廳徒添優端 戶 布之法已以今遂行之意備陳於關西冊子回啓 并置之 光州還 穀限二萬石作錢移俵於穀少他邑 嚴立籍法 簽丁充役京外上



納元人情外 加徵自廟堂提飭爲請矣 穀摠之衰多益寡 道臣之職也 籍政之從實無漏 守令之責也 還穀則令道臣 按簿均俵俾無偏多之患 籍法則往雖無論始自後式年 必從家座 一一入籍以杜漏丁逃役之弊京外情債之弊 年增歲加百奸逾生末流之害都歸小民前後申飭 非不嚴明 而略不知叢弊復滋甚不但下屬之橫甚 卽係官長之不明外而關飭道臣 內而甘飭該司後若不悛先自官長重勘 查發犯者遠島刑配 靈光所在宮屯閣屯 勿送宮差閣屬依無土免稅例 付本邑捧納戶曹漁塩船稅一從船盆實數捧稅爲請矣外邑導掌之弊 漁塩偏徵之冤 已陳於前後回啓 無容更煩而今觀彼此道道倅臣所論 則爲弊無異其說惟同在公爲濫捧

在民爲冤徵 而通各路均爲次骨之冤 以此意 分付各宮房及內閣該廳使之查正釐掇 羅州還穀衙門各邑刪繁就簡 以杜吏奸 各司作錢一依海西元耗作錢例 必從詳定斗斛大小以鑰斛校正爲請矣 穀名司名釐正之論 自前已然向於關西冊子回啓亦有所一一敷陳 今不得疊煩而至於詳定作錢 關西則行之有年 佇見成效他道宜無異同 以此甘問便否於作錢衙門 以爲指一稟定之地 斗斛之以鑰斛校正 已有朝朝令式則自營邑往復爛商足可以準式施行 不必以此煩聞 淳昌還穀三萬石移送他邑之請 令道臣考簿均俵 順天統耗 使統營輸去之請 令帥臣 考例量處 務安陞戶抄上之際饒民謀頃 貧者苟充永罷抄上之法 自京精抄爲請矣 訓局陞戶 卽宿衛親兵選上之法本爲嚴重而今此邑倅所陳抄擇之際 存援爲弊上戶饒民百般謀頃 貧殘無依苟然冒充逃避相續 害及隣族云者弊則誠然所



以爲弊之至於如此者 專由於邑倅之不能懷遵法意 殫誠舉行之致 所謂饒民之謀頗貧殘之苟充 果誰之責能親執抄擇 勿委吏鄉饒民初不能規免 貧殘初不得苟抄受賂故援無依橫侵等許多奸弄 自無以獲售而所擇之軍亦可以精實 法本如是弊豈至此 且況選上亦非年年常有之事 而雖於式年之時列邑自有井間當次之中 亦有分定名數則每邑不過十數年一二名何可以此謂之有弊而遽議更張於莫重軍制乎 然既許以弊登聞 雖涉不審今不必論責該倅 以此申飭陞戶抄上之際 一遵舊法 毋循近弊之意使之預飭於各邑 咸平分定印冊之需出自結役民多白徵 如非進講冊子勿令印出雖當印役 十分省約爲請矣民邑貽弊 若是偏甚除非進講冊子及緊急所用 則無得容易發關頻數印上之意 分付玉堂內閣成均館 咸悅領運實有四弊 以倉屬七邑輸定差員爲請 而道臣之論亦以爲然然而壬子定式未久 又爲改式未知其果爲得宜且事係漕制變通 令該曹論理稟處 長水本以屯布收納而去辛亥別爲定式 代以屯錢不過其布貴之時 從民願更張則今此還以本邑布備納者亦出民願 以錢以布在公家亦無得失 依所請施行 康津稅位太依靈巖海南例太二石代以大米 一石爲請矣 本縣之濱海斥鹵種不宜荳亦與靈巖海南無異稅納難辨 民勢固然 靈巖則 肅宗庚子以其太農之不宜土 從民願以米換納 海南以米代納而皆以太二石代米一石 準折代換 康與靈海地既接壤 土宜亦同兩邑旣以變通康民之援此爲願 不是異事位太之在本廳 先受各貢亦以二石太換作一石米 則尤無窒碍依他邑例許施 全州礪山之糧餉屯土 沃溝之兩宮房及耆老所田沓 皆以地有陳



廢稅有定額 京納必責高摠 民稅未免倍徵 三邑所陳 皆以打量時起從實定稅爲請矣 蓋糧珣各屯 卽籍沒田畝之屬官者而土民則認以無主官吏則視爲利窟 稅非不歛而民猶以爲重納有定數而吏必欲加徵 如是之際 弊自層生 此則亦非京廳之所知也 當初定稅雖從實結年久之後 不無陳起則別遣打量一番釐正 亦係從民願之一端 分付該廳待年豐舉行 兩宮房及耆老所田畝 其所說弊 亦與餉屯無異 各送屯監 從實定稅之意 請一體分付允之 又啓言濟州陳弊冊子判付內 濟州等三邑條陳中 牧子與不緊烽臺革罷之論 三邑皆然烽臺則量宜存革事分付該道 牧子之弊 三年一點便否令太僕 從長稟處其餘諸條廟堂處之事命下矣濟州牧別儲穀 長留庫中以備不虞而以原還新捧牟米每年分數換色爲請矣 別儲穀已於庚午春爲湖南賑資移轉于湖南姑未及還報待還報更爲議定後稟處三邑烟臺之不緊處革罷爲請 而有量宜存革之命矣分付道臣更爲關問於本牧不緊當罷爲幾處論列稟處 各場牧子 式年一點爲請而有令太僕稟處之命三年與每年間便否 令該寺論理稟定大靜旌義之民 勿定於營役一從時居邑入籍爲請矣 本牧與兩邑所請一辭無異依此施行 各般身役從父役填充爲請矣所請得宜依此定式施行 大靜量田果難輕議置之 旌義吏校額外願屬一切勿許 并充軍役實出於刷漏丁嚴軍政之意 請依施允之 又啓言咸鏡道陳弊冊子判付內 廟堂稟處事命下矣

其一. 三水甲山鏡城等邑鹿茸封進時收斂之弊也 一對價一百兩 不爲不多而審藥輩從中操縱 執頃點退并與添價而徵出歸其私橐極爲痛駭依道臣所請 元會減一百兩 馱價十八兩外



更無敢以添價名色收斂民間之意 各別嚴飭藥用鹿茸 不計重數之多寡 惟擇性味之好否既有 先朝定式行會此後若果真品則兩數之差輕差重 勿爲執頃點退依定式封進之意 分付

其一. 咸興定平北青薦新進士生瓜魚生大口月令退限事也 無以赴時每請退限事體極屑越 既伏承與其常請退限 無寧改定月令之教 令該曹更爲稟處

其一. 茂山甲山慶興三邑穀多民少 移轉近邑事也 六鎮還多之弊無邑不然 道里且遠轉輸有弊令道臣往復各該邑 從長量宜變通俾無矯弊於此而移疾於彼之患

其一. 三水支放穀不足之數 以本邑軍餉常平賑恤私賑穀劃府事也 本邑處在一隅道里絕遠放下之需劃給他邑則轉輸之際 爲弊多端不可無變通之道 所請中常平賑恤穀無得移用之意 新有筵稟行會此則勿論軍餉 雖中支放之需亦係不輕 依關西例耗條中許劃 並與私賑耗條量宜取用而無敢犯入元穀之意 各別嚴飭

其一. 端川吉州之糖米明川高原之太還變通事也 端川吉州高原之依準折換作他穀 依所請許施而必以正穀換作 無敢以皮穀準折之意 申飭明川租粟太相代 端川皮糖改錄之說 大違法意有不可輕易議到 置之

其一. 茂山元田以續田施行事也 正田之降府續田係是法外有非自下仰請 亦難輕易許施而茂山之還多爲弊 卽朝家之素常軫念 而未得矯揉之要者也 火田加耕並入正結捧稅錄還其數甚多 而陳廢白徵至於屢千結 果如道臣所論則亦不可以正續之難於移換 一切薪持令道臣別定差官與本倅眼同摘奸 火



田之混入正田者從實區別狀聞後 更爲稟處

其一. 咸興元續田陳處頃給 新起處加現變通事也 陳田勸耕新起充結 自是法典 今次元續田陳荒處一並頃給 非所可論 至於新起之硬定數爻 本非定式而每年無一把加減 必是各邑之謬例 此後逐年執卜 從實數入摠之意 知委施行而如是之後 各邑從事減削或有隱匿漏落之弊 從後現發則該守令斷當施以田結幻弄之罪 以此一體嚴飭

其一. 長津改量事也 本府土地俱是續田而陳起相混賦役不均 一邑人民皆請改量云依所請許施 而改量之際不能審慎一頃半畝 若或失實則民國受弊 反不如不爲分付道臣嚴飭該倅無敢僨誤抵罪之地

其一. 文川洪原北青漁船稅減摠事也 漁場船隻本有定數 稅納需用加減不得 該請節目極其申嚴 減摠一款有難輕議 漁場壤廢船隻破傷處 必以新設場新造船代充元摠即不易之典 以此嚴飭

其一. 穩城慶興牧場馬孳故減數 獐種停罷事也 故失之三頃一徵孳產之三雌一息 卽各道牧場應行之式 有不可減數置之 獐馬買入 卽是取種之意而不慣水草 無一生存存在公則每年費穀 在民則每匹徵代有害無益果如道臣所論 而風氣既近於彼地 故孳長欲取於獐種者 必有自初意義有難遂罷置之

其一. 永興末鷹島馬匹移牧於文川獅老島事也 馬匹隈養則不授牧戶空場修築則貽弊村民 事甚無義都淵浦之移牧既有已行之例 依所請施行而不可以馬匹之移去 並送牧戶於文川 以此分付



其一. 甲山行錢事也 西邊則彼地相接處定限 陳廢民居之相距皆過屢百里 北邊則慶源會寧等處 或隔江而鷄犬相聞故西邊行錢而北邊則防塞者此也 甲山則距彼地無異西邊 而同是一道內邊地 六鎮則不許 甲山則獨許事近班駁請置之 允之又啓言 江原道陳弊冊子判付內 廟堂稟處事命下矣

其一. 道內二十六邑蓼價歲增戶收結斂番錢利錢 爲切骨難支之瘼 特許京作貢事也關東蓼弊無論大小諸邑通患 而曾前變通 計其一年所用之剩餘而作貢也 若以隨弊變通則莫重湯劑所需 殆無餘存而土貢之義亦果安在事體所在 不可邃議作貢置之

其一. 鐵原等未量九邑量田事也 田結紊亂之弊 諸道同然而湖西冊子中量田一事待年豐先試最急處 如有實效則當次第舉行之意 回啓蒙允 今亦依此施行之意分付

其一. 江陵等九邑海弊變通事也 海弊申飭前後何限而至有貢獻之特減 別卜之永塞則宜有矯揉之效 而弊端如前民不聊生 道臣援本塞源之論 可謂得其要領海戶中稍能自食者 圖免本役或托校案或陸軍任一人之後 并與其子侄而移居陸地海戶之餘存者十無一二 應役之徧苦勢所必至 除案守令之別般論勸 陸居海民之一例應役 誠得揉弊之方 依道臣所論施行 津主人之點退操縱固是弊端之甚者 而海戶直納邑倅親捧津主人名色 永爲革罷處置果爲得宜而執頃改備 厚價還捧之習 營邑官屬尤有甚於津主人 此等處嚴加察飭俾有終始之效 價錢收捧自官買取似爲揉弊之道 凡干啓下節目外 如有可以添入者 無論京外 多有追後磨鍊者 己未節目之添入



不必以擅便論一例許施

其一. 江陵蔘火稅十結許減事也 江陵嶺西地曠而磽居民鮮少火田之昔起今陳 非今斯今一百二十四結之內 兩聖朝特命蕩減之數至過百結 實出益下之盛德則到今十結蕩減 有不可靳持 而至於給代之數 爲三百餘兩云者未知從何辨出 且一結稅錢之至於三十兩之多 亦未知何故此則請令道臣 條列報來後 更爲稟處允之

[풀이]

1. 연안(延安)의 전적(田糴)에 폐단 있는 것으로는, 경술년의 해일 후에 영영 개간하기 어려운 곳에도 백지 징세(白地徵稅)하며, 계묘년, 갑진년의 참혹한 흉년이 든 뒤에 환향(還餉) 및 군민(軍民)의 신미전포(身米錢布)를 더러는 전부 정봉(停捧)하게 하고 더러는 절반을 정봉하게 하였는데, 그 뒤 유리(流離)한 자에 대한 족징(族徵)과 인징(隣徵)은 백지 징세를 면치 못하는 데 대한 것입니다. 해일로 인한 재결(災結)은 이제 20여 년을 지났으니 비록 더러 영영 개간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표재(俵災)할 사목(事目)은 있으나 또한 전결(田結)을 영탈(永頃)할 사목은 없으며, 몇 해 전에 호조에서의 공문도 수경(守經)하는 논의에서 나왔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계묘년과 갑진년에 정퇴(停退)하게 한 것은 이미 연안(延安)의 주민들에게 큰 혜



택을 베푼 것이며, 무진년에 그대로 정되하게 한 것은 더욱 보기 드문 혜택이 되는데, 그 신구(新舊)를 아울러 징수하는 것을 가지고 조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역시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봉산(鳳山)에서 안부(案付)한 사옹원(司饗院)과 제원(諸院)의 작미보(作米保)에 대하여 그 쌀로 납부하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매 섬[石]마다 잡비 6냥(兩) 5전(錢)을 함께 재정(裁定)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보미(保米) 매 석(石) 7말[斗]영(零)의 값은 6냥이 넘으며 거기다 잡비가 있기 때문에 비록 더러 이와 같을지라도, 지금은 장산(長山) 이북의 세납(稅納)을 이미 선운(船運)하도록 하였으니, 다른 고을에 장발(裝發)하는 폐단은 지금 논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고을에 장발할 적에 수봉(收捧)하는 값을 본읍(本邑)에서 선운할 때에 내도록 책임지운다면 그것이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색(本色)으로 직접 내게 하여 일체로 본군(本郡)의 세선(稅船)에 장발(裝發)하게 한다면 절로 쌀값을 지나치게 징수하는 폐단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분부 하소서.

1. 금천(金川)의 태창(泰倉)과 북창(北倉) 두 창고가 모두 대흥 산성(大興山城)에 있으며 송도 유영(松都留營)에서 구관(句管)하는데, 본군(本郡)의 방민(坊民)이 분배(分排)하여 납부하는 즘음에 사람과 말이 다치게 되니, 태창의 경우는 청석진(靑石鎭)에 이봉(移捧)하고 북창의 경우는 군창(郡倉)에 하봉(下捧)하게 하며, 또 크고 작은 남쪽 면(面)들을 송도



유영에 이속(移屬)한 뒤에 각 군문(軍門)의 가포(價布)와 보미(保米)를 송도 유영에서 수봉(收捧)하게 하고, 통어영(統禦營)의 경우는 수군(水軍)의 납포(納布)와 탈(頃)이 있는 것을 본군으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게 하며, 앞서 두 면(面)의 백성으로 경사(京司)의 상납(上納)이나 각사(各司)의 정채(情債)를 대신 채우게 한 것에 의거하여 절목을 재성(裁成)하여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배치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태창과 북창 두 창고에 있는 곡물은 바로 성향(城餉)입니다. 더러 흉년이 든 해를 만나 성향을 읍창(邑倉)에다 봉류(捧留)하는 것을 일시 허락한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영영 다른 진영(鎭營)이나 군창(郡倉)으로 이봉(移捧)하게 하는 것은 실시(設施)한 본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해당 도(道) 및 송도 유영에다 공문으로 하문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크고 작은 남쪽의 면(面)들은 지금 이미 송도 유영에 이속하였으며 군민(軍民)의 납포(納布)와 충대(充代)를 송도 유영에서 거행하게 하였으니, 그곳에 있는 수군 9명에 대하여 본군(本郡)에 독책(獨責)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뜻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당해 도(道) 및 송도 유영에 공문으로 하문하게 한 뒤에 편리에 따라 결정하고 조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경사(京司)에 상납하는 정채가 해마다 증가하여 정말로 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정식(定式) 외에 증가된 숫자에 대해서도 해당 도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윤희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진폐 책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도신이 진달한 바 구재(舊災)의 변동 및 모작전(耗作錢)에 대한 한 가지 항목은 묘당으로 하여금 사리를 따져 품처토록 하며, 해당 읍(邑) 가운데 담양(潭陽) 수령이 진달한 것은 한 고을에서 논할 뿐만 아니라 팔도에서 공통으로 시행할 만하니, 채택하여 시행할 만한 것은 여러 고을에서 진달한 것과 아울러, 일체로 품처토록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도(本道)의 구재(舊災)는 병신년에 묵은 것을 조사한 뒤로 그대로 묵은 것이 3천 5백 54결(結)인데, 해마다 백징(白徵)을 하는 만큼 합쳐서 변동함이 있어야 하며, 서울과 지방 아문(衙門)의 모작전(耗作錢)은 감히 나이(挪移)하지 말도록 하고, 반드시 원곡(元穀)이 있는 곳에서 모곡(耗穀)을 취하여 집전(執錢)하게 하며, 각 궁방(宮房)이나 아문의 둔세(屯稅)는 도장(導掌)을 보내지 말고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직접 살피 집행(執卜)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도신이 청한 세 가지 조목은 다만 본도에서 이러할 뿐만 아니고, 여러 도에서도 이러한 폐단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재(舊災)는 바로 그 전부터 이미 묵어 있는 것인데 영탈(永頤)에 편입하지 않고, 매번 무면(無麵)이라는 핑계로 곡식이 안 되는 척박한 토지에다 세금을 징수하고야 마니, 이것은 크게 인정(仁政)으로서 행할 바가 아니며 실로 소민(小民)들의 절절한 원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田賦)에 대한 정제(定制)가 이미 금석처럼 되어 있으니 반드시 새로 일군 것과 옛날에 묵힌 것을 서로 참고하고 대대(對待)하여 새로 일군 것으로 묵힌 것을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원결(元結)의 총액을 감함이 없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진탈(陳頌)을 허락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토(王土)에 대한 경상적 세공(稅貢)의 제도가 장차 점차로 훼손(毀劃)되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러한 점이 비록 백징(白徵)의 폐단을 알지라도 끝내 그것을 감해 주도록 청할 방법이 없게 되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지금 곡식이 나는 토지는 거의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옛날에 비하면 거의 갑절이 될 뿐만이 아닌데, 오히려 원총(元摠)은 점점 줄어들고 정세(正稅)도 점차로 줄어들게 되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모두 전제(田制)에 어두워, 묵히거나 개간하는 즈음에 제대로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고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절차를 주관하는 것도 능하지 못해 한결같이 아전들의 손에만 맡기고 멋대로 일을 보살피지 않은 소치입니다. 별도로 여러 고을에 경계하여 더욱더 조심스럽게 고치기를 도모하라는 뜻으로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게 해야 하며, 서울과 지방의 모작전(耗作錢)에 대하여 한결같이 본곡(本穀)의 실제 숫자를 따르게 하고 혹시라도 값을 따라서 나이(挪移)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진년의 수교(受敎)가 지극히 엄중하여 그 당시 도신(道臣)이 찬배(竄配)의 처벌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개관(改觀)하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몇 년을 겨우 지나자마자 또다시 처음과 같이 되었으며, 근년의 경우는 더욱 제멋대로 하고 있으며 산골과 바닷가가 균일하지 않은 것은 더욱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경사(京司)의 작전(作錢)에 있어서도 만약 도신으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고을에 나누어주게 하고 수시로 읍



기거나 바꿀 수 없도록 하였다면, 치우치게 많거나 치우치게 적으며 이쪽에는 쌓이고 저쪽에는 비게 되는 폐단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앞으로 만약 범과(犯科)하면 먼저 도신을 처벌한다는 뜻으로 엄중히 공문을 보내어 별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도장(導掌)을 혁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관서(關西)의 진폐 책자에 대한 회계(回啓) 가운데 진달하였으니, 이것 또한 일체로 시행하게 하소서.

담양(潭陽)에서는 산송(山訟)의 폐단을 크게 진달하면서 영갑(令甲)을 정하고 별도로 절목을 만들도록 청원하였으며, 저채(邸債)하는 풍습을 갖추어 논하면서 분수(分數)를 짐작해서 결정하는 데 대하여 엄격하게 금단(禁斷)을 가하며, 아울러 서원(書院)과 소청(疏廳)에서 경저(京邸)에게 징색(徵索)하는 것을 영영 막도록 청하였습니다. 군정(軍政)은 계해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청(廳)을 설치해서 첨정(簽丁)하고, 군포(軍布)의 경우에는 호렴법(戶斂法)을 시행하여 양반이나 천민이나 골고루 징수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송(山訟)에 대한 법은 품(品)을 따라 계보(計步)하여 각각 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으니, 법을 상세하게 마련한 것에 산송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되자 점점 느슨해졌으며, 요즈음에는 더욱 문란하여, 넓게 차지하고 몰래 매장하는 등 온갖 놀라운 일이 없는 곳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관리는 법을 지키지 않고 백성은 법을 두렵게 여기지 않아 법이 저절로 시행될 수가 없어 거의 법이 없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금석같은 과조(科條)가 옛날에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영갑(令甲)을 정하고 새로 절목을 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팎의 산송을 관장하는 관원에게 엄중히 경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력이 있는> 강어(強禦)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할 데 없는> 고경(孤惇)을 가볍게 보지 말며, 한결같이 조종조(祖宗朝)에 이미 만들어진 법을 따르고 감히 마음대로 유추 해석함이 없도록 하며 오직 법대로 결단하게 한다면, 시끄럽게 떠드는 소송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는 죄는 형률이 본래 유형(流刑)에 해당되는데 사면을 받게 되면 번번이 석방되므로 억지를 쓰면서 <처벌을> 두려워 할 줄을 모르고, 사사로이 추매(椎埋)하여 정범(情犯)이 몹시 참혹한 일이 달마다 생기는데도 관리가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그들이 자수(自首)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필코 계획을 꾸민 원범(元犯)을 조사하여 형률을 적용한 뒤에는, 비록 널리 사면[曠蕩]하는 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면하는 은전에 뽑아서 넣지 말도록 한다면, 거의 악한 자를 징계하고 간사한 짓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팔도에 행회(行會)하고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소서. 저채(邸債)에 대한 폐단은 묘당으로부터 절목을 만들고 과조(科條)를 엄격히 세우는 등 근래에 더욱 절실하게 하고 엄중히 하였는데도, 끝내 쌓인 폐단을 시원스럽게 혁파하지 못한 것은 바로 수령의 죄입니다. 관아에서 쓴 것은 그때그때 보상하고 관리가 진 빚은 즉시 갚도록 하며, 사사로이 민간에 빚을 놓아 이자를 받거나 와채(臥債)를 친족에게 징수하는 것과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모두 본



전은 탕감하게 하고 범한 자를 형배(刑配)하게 한다면, 저리(邸吏)와 백성 사이에 양쪽이 서로 관계가 없게 되어 온갖 폐단이 저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을 절목에 보태 넣어 각도(各道)에 엄중히 경계하게 하소서. 서원(書院)과 소청(疏廳)에서 저전(邸錢)을 곧바로 바치지 못하도록 몇 년 전에 이미 연품(筵稟)하여 영구히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양역(良役) 대상의 장정을 찾아내어 첩오(簽伍)하는 것은 오직 수령이 원망을 떠맡으면서 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부터 청(廳)을 설치하여 한갓 시끄러운 단서만 보태게 할 필요는 없으며, 호포법(戶布法)은 이미 지금으로서는 갑자기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써 관서(關西)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회계(回啓)에서 갖추어 진달하였습니다. 모두 그대로 두게 하소서.

광주(光州)는 환곡을 2만 석에 한하여 돈으로 환산하도록 해서 곡식이 적은 다른 고을에다 옮겨서 나누어주게 하며, 적법(籍法)을 엄중하게 세워 첩정(簽丁)의 충역(充役)과 서울, 지방의 상납(上納)에 원래의 인정(人情) 외에 더 징수하는 것을 묘당(廟堂)에서 거론하여 경계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곡총(穀摠)이 많은 것은 줄이고 적은 것은 보태도록 하는 것이 도신의 직분이며, 적정(籍政)은 사실대로 빠뜨림이 없게 하는 것이 수령의 책임입니다. 환곡은 도신으로 하여금 장부를 고찰하여 균일하게 나누어 주도록 함으로써 치우치게 많아지는 근심이 없도록 하며, 적법(籍法)은 지나간 것은 비록 논하지 않더라도 이 뒤로 식년(式年)부터 시작하여 반드시 가좌(家座)를 따라 날



날이 입적(入籍)하도록 해서 군정이 빠지거나 부역을 도피하는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의 정채(情債)에 대한 폐단은 해마다 증가하여 갖가지 간교함이 더 생겨나 마지막에 생기는 피해는 전부 소민(小民)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후로 거듭 경계한 것이 엄중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조금도 그칠 줄을 모르고 폐단이 다시 심하여 하속(下屬)들의 횡포가 심할 뿐만이 아니니, 바로 관장(官長)이 분명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도신에게 공문으로 경계하고 안으로는 해당 관사(官司)에 충분히 경계하되, 그 뒤에도 만약 고치지 않으면 먼저 관장부터 무겁게 죄를 주고, 범(犯)한 자를 조사해 가려 먼 섬에다 형배하도록 하소서.

영광(靈光)에 있는 궁둔(宮屯)과 각둔(閣屯)에 궁차(宮差)나 각속(閣屬)을 보내지 말고 무토 면세(無土免稅)의 사례에 의거하여 본읍(本邑)에 넘겨 주어 봉납(奉納)하게 하며, 호조의 어염세(漁鹽稅)와 선세(船稅)는 한결같이 배와 염분(鹽盆)의 실제 숫자에 따라 세금을 바치도록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지방의 고을에 대한 도장(導掌)의 폐단과 어염세(漁鹽稅)를 치우치게 징수하는 원망은 이미 전후의 회계(回啓)에서 진달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나 저 도의 도신(道臣)과 수령이 논한 바를 관찰하건대, 폐단이 다르지 않고 그 말이 같습니다. 그것은 공적으로는 지나치게 바치도록 한 것이며 백성에게는 원통하게 징수한 것이니, 공통으로 각도에서 고루 뼈를 깎는 원통함이 됩니다. 이 뜻을 각 궁방(宮房) 및 내각(內閣)과 해청(該廳)에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사하



여 바로잡고 개정하여 구체하게 하소서.

나주(羅州)는 환곡의 아문 명색(衙問名色)이 번거로운 것을 줄이고 간략하게 하여 서리(胥吏)들의 간교함을 막도록 하며, 각사(各司)의 작전(作錢)은 한결같이 해서(海西)의 원모곡(元耗穀)을 작전하는 사례에 의거하여 반드시 상정(詳定)한 것을 따르되, 두곡(斗斛)의 대소(大小)는 유곡(鎔斛)으로 교정(校正)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곡명(穀名)과 사명(司名)을 개정하는 논의는 그전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며, 지난번 관서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하여 회계(回啓)하면서 역시 낱낱이 펴서 진달한 바가 있었으니 지금 거듭 번거롭게 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여 작전하는데 대해서는 관서의 경우 시행한 지 몇 년이 되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다른 도에서도 의당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편부(便否)를 작전(作錢)하는 아문에다 충분히 물어서 한 가지를 지목하여 품정(稟定)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두곡을 유곡으로 교정하는 것은 이미 조정의 법령과 규정이 있으니, 감영과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오가며 충분히 상의하면 즉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번거롭게 아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순창(淳昌)의 환곡 3만 석을 다른 고을에 이송하게 하는 청원은 도신으로 하여금 장부[簿]를 상고하여 균일하게 나누어주도록 하며, 순천(順天)의 통모(統耗)를 통영(統營)으로 하여금 수송하여 가게 해달라는 청원은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고 헤아려서 조처하게 해야 합니다.

무안(務安)에서는 승호군(陞戶軍)을 뽑아 올리는 즘음에 부유



한 주민들이 탈하(傾下)하도록 도모하여 가난한 자로 구차스럽게 보충시키니, <승호군을> 뽑아 올리는 법을 영영 혁파하고 서울에서 정밀하게 뽑도록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훈련 도감의 승호군을 <뽑아 올리는 법은> 바로 숙위 친병(宿衛親兵)을 선발해 올리는 법으로 본래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을 원이 진달한 바 가려 뽑을 즈음에 누구는 그대로 두고 누구는 빼어버리는 것이 폐단이 되어, 상호(上戶)인 부유한 주민은 갖가지 방법으로 탈하하려고 도모하며, 가난하고 잔약하여 의지할 데 없는 자들만 구차스럽게 강제로 채우므로 도피하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피해가 이웃과 친척에게 미친다고 말한 것은 폐단이 실로 그러하나,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오로지 고을 원들이 능히 법의(法意)를 무섭게 생각하여 준수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거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부유한 주민은 탈하를 도모하게 하고는 가난하고 잔약한 자로 구차하게 채운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직접 가려 뽑는 업무를 잘 집행하고 아전이나 향임(鄉任)에게 맡기지 말았더라면, 부유한 주민도 당초에는 모면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가난하고 잔약한 자도 당초에는 구차하게 뽑히지 않았을 것이고, 뇌물을 받고 일부러 빼버리거나 의지할 데 없는 자에게 불법으로 침해하는 등, 허다한 간교와 농간이 저절로 행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가려 뽑은 군사도 날래고 근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은 본래 이와 같은데 폐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더구나 선발하여 올려보내는 일 또한 해마다 늘 있는 일이 아니고 비록 식년(式年)인 때라고는 하지만,



열읍(列邑)이 본래 정간(井間)에 정해진 당차(當次)가 있고 그 가운데에도 분정(分定)한 명수(名數)가 있으므로 고을마다 십수 년에 한두 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폐단이 있다고 말하면서 막중한 군제를 갑자기 의논하여 경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폐단에 대한 등문(登聞)을 허락하였으니, 비록 살피지 못한 데 관계되기는 하지만 지금 해당 고을의 원을 논박하며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로써 신칙하소서. 승호군을 뽑아 올릴 즈음에는 한결같이 구법(舊法)을 준행하고 폐단에 가까운 것은 따르지 말도록 하라는 뜻으로 각 고을에 미리 경계하게 하소서.

함평(咸平)은 분정(分定)한 인책(印冊)의 비용이 결역(結役)에서부터 나오지만 주민들에게 백징(白徵)하는 것이 많으니, 만일 진강(進講)하는 책자(아니면 인출(印出)하지 못하게 하고, 비록 인역(印役)을 당하게 되더라도 매우 줄여 간략히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주민과 고을에 폐단을 끼치는 것이 이와 같이 치우치게 심하니, 진강하는 책자가 아닌 것 및 긴급하게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쉽사리 공문을 발송하여 자주 인역(印役)을 올릴 수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옥당과 내각(內閣) 그리고 성균관에 분부하소서.

함열(咸悅)은 영운(領運)에 실제로 네 가지 폐단이 있으니 창속(倉屬)을 일곱 고을에서 돌아가며 차원(差員)을 정하도록 청원하였는데, 도신(道臣)의 논의 또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임자년에 규정을 정하였는데 오래되지 않아 또다시 규정을 고친다면,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이 조운



(遭運)하는 제도를 변통(變通)하는 데 관계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리를 따져 품처하게 하소서.

장수(長水)는 본래 순포(純布)로 수납(收納)하게 하였었는데 지난 신해년에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순전(純錢)으로 대납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면포가 귀할 때에 주민들의 청원을 따라 경장(更張)한 것에 불과하며, 이번에 도로 본색포(本色布)로 비납(備納)하게 한 것도 역시 주민들의 청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돈으로 받거나 면포로 받거나 공가(公家)에 있어서는 또한 득실이 없으니, 청원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강진(康津)은 세위태(稅位太)를 영암(靈巖)과 해남(海南)의 사례에 의거하여 콩 2석(石)에 대미(大米) 1석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본현(本縣)은 바닷가에 위치하였으므로 염분이 많아 콩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한 영암, 해남과 다름이 없으니, 세납(稅納)을 판비(辦備)하기 어려운 것은 주민들의 형편으로 보아 진실로 그러합니다. 영암의 경우는 숙종(肅宗) 경자년에 그곳은 콩농사가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여 주민들의 청에 따라 쌀로 바꾸어 바치게 하였으며, 해남에도 쌀로 대납하게 하면서 모두 콩 2석을 쌀 1석으로 대납하게 하고 준절(準折)해서 대환(代換)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진이 영암, 해남 지역과 이미 잇달아 닿아 있고 토산물 또한 같은데, 두 고을에는 이미 변통하게 하였으니 강진의 주민들이 이를 끌어다 청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위태(位太)로 본청(本廳)에 있는 것 가운데 각 공(各貢)으로 먼저 받은 것 또한 2석의 콩을 1석의 쌀로 환작(換作)하게 한다면 더욱 구애됨



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고을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전주(全州), 여산(礪山)의 양향(糧餉)과 둔토(屯土), 그리고 옥구(沃溝)의 양궁방(兩宮房) 및 기로소(耆老所)의 전답은 모두 지역적으로는 묵히거나 폐지한 것이 있고 세금은 정액이 있는데, 경납(京納)은 반드시 고총(高摠)을 책임지게 하므로 주민들의 세금은 갑절의 징수를 모면하지 못하니, 세 고을에서 묵히고 있는 것은 모두 타량(打量)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실제대로 세금을 정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대체로 양향이나 각 둔토는 바로 적몰(籍沒)한 전답을 관아에다 귀속시킨 것인데, 토민(土民)들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관리들은 보기를 이굴(利窟)로 여기므로 세금이 헐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주민들은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며, 바치는 것은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도 관리들은 반드시 더 징수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폐단이 자연 겹으로 생겨나는데 이는 또한 경청(京廳)에서 아는 바가 아닙니다. 당초에 세금을 정한 것이 비록 실제의 결수(結數)를 따랐다 하더라도 해가 오래된 뒤에는 묵히거나 일군 것이 없지 않으니, 별도로 타량하도록 파견하여 한차례 이정(釐正)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청원을 따라주는 한 가지 일이 됩니다. 해청(該廳)에 분부하여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게 하소서. 양궁방 및 기로소의 전답에 대하여 그 폐단을 말한 것 역시 양향, 둔토와 다름이 없습니다. 각기 둔감(屯監)을 보내어 실제대로 세금을 정하라는 뜻으로 일체로 분부하소서.”



하니, 윤택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제주 등 세 고을에서 조목으로 진달한 가운데 목자(牧子)와 긴요하지 않은 봉대(烽臺)를 혁파하도록 한 논의는 세 고을이 모두 그러하니, 봉대의 경우는 보존시키느냐 혁파하느냐 하는 것을 잘 헤아릴 일을 해도(該道)에 분부하도록 하고, 목자에 대한 폐단은 3년에 한 번 점검하는 편부(便否)를 태복시(太僕寺)로 하여금 장점을 따라 품처토록 하며, 그 나머지 여러 조목은 묘당에서 조치하도록 하는 일을 명하(命下) 하셨습니다. 제주목의 별저곡(別儲穀)을 오래도록 창고 안에 유치시켜 두게 한 것은 뜻하지 않는 일을 대비해서이니, 원환(原還)으로 새로 바치는 보리와 쌀은 해마다 숫자를 나누어 환색(換色)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별저곡은 이미 경오년 봄에 호남(湖南)의 진자(賑資)로 삼아 호남에 이전하고서 아직 미처 되돌려 받지 못하였으니, 되돌려 받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정(議定)한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세 고을의 연대(煙臺)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곳은 혁파하도록 청원한 데 대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보존시키거나 혁파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다시 본목(本牧)에 공문을 보내어, 긴요하지 않아 당장 혁파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인가를 묻고 논열(論列)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각 목장의 목자(牧子)에 대하여 식년(式年)에 한 번 점검할 것을 청원한 데 대하여 태복시로 하여금 품처하게 한 명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해마다 편부(便否)를 묻도록 해시(該寺)로 하여금 사리를 따져 품정하게 하소서.



대정(大靜)과 정의(旌義)의 주민들은 영역(營役)에 배정하지 말고 한결같이 현재 살고 있는 고을에다 입적(入籍)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본목(本牧)과 양읍(兩邑)에서 청원한 바가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각반(各般)의 신역(身役)은 아버지의 역(役)을 따라 채우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청원한 바가 적합함을 얻었으니 이에 따라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게 하며, 대정(大靜)의 양전(量田)은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정말로 그대로 두도록 하고, 정의(旌義)는 이교(吏校)의 원액(元額) 외에 투속(投屬)을 원하는 자는 일체 허락하지 말고, 아울러 군역에 보충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 누락된 장정을 찾아내는 데서 출발하여 군정(軍政)을 엄히 하라는 뜻으로 의시(依施)하소서.”

하니, 윤휴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경도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묘당에서 품처할 일을 명하(命下) 하였습니다.

1. 삼수(三水), 갑산(甲山), 경성(鏡城) 등의 고을에서 녹용을 봉진(封進)할 때에 수렴(收斂)하는 폐단입니다. 한 대(對)의 값이 1백 냥이라는 것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심약(審藥)의 무리가 중간에서 조종하여 트집을 잡아 점퇴(點退)하기도 하며, 아울러 값을 보태어 징출(徵出)하게 하고는 그의 개인 주머니로 돌리니 극도로 놀랍습니다. 도신이 청한 바에 의거하여 원회(元會)에서 1백 냥을 감하게 하며, 태가(駞價) 18냥 외에는 다시 감히 값에 보탠다는 명색(名色)으로 민간에서 수렴하는 것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엄



중하게 신칙하소서. 약용으로 하는 녹용은 중량이나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오직 성미(性味)의 좋고 좋지 않음만을 가리도록 이미 선조(先朝)때 규정을 정하여 행회(行會)하였으니, 이 뒤로는 만약 정말로 진품(眞品)일 경우 양수(兩數)가 조금 가볍거나 무겁더라도 트집을 잡아 점퇴하지 말고,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봉진(封進)하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1. 함흥(咸興), 정평(定平), 북청(北靑)에서 천신(薦新)하거나 진상(進上)하는 생과어(生瓜魚)와 생대구(生大口)에 대하여 월령(月令)의 기한을 물리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제 때에 하는 것이 없고 매번 기한을 물려주기를 청원하니, 사체(事體)가 극도로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삼가 항상 기한을 물려 주기를 청원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월령을 개정하라는 하교를 받들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품처하게 하소서.
1. 무산(茂山), 갑산(甲山), 경흥(慶興) 세 고을은 환곡은 많고 주민이 적으므로 가까운 고을에 이전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육진(六鎭)에 환상곡(還上穀)이 많은 폐단은 고을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으며, 도리(道里) 또한 멀어서 전수(轉輸)하는 데 폐단이 있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각 해당 읍과 의견을 교환하여 장점을 따르고 적합함을 헤아려 변통하되, 이쪽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저쪽으로 병폐를 옮기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
1. 삼수(三水)의 지방곡(支放穀) 가운데 부족한 숫자는 본읍



(本邑)의 군향곡(軍餉穀), 상평곡(常平穀), 진휼곡(賑恤穀), 사진곡(私賑穀)을 가지고 나누어주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본읍은 한쪽 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리(道里)가 아주 먼데, 방하(放下)하는 물품을 다른 고을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면 전수(轉輸)하는 즈음에 여러 가지로 폐단이 될 터이니, 변통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원한 가운데 상평곡과 진휼곡은 이용(移用)할 수 없도록 하는 뜻을 새로 연품(筵稟)하여 행회(行會)하였으니 이것은 논할 것 없지만, 군향이 비록 중하더라도 지방(支放)하는 물자 역시 가볍게 하지 못할 것이니, 관서(關西)에서의 사례에 의거하여 모조(耗條) 중에서 나누어 주도록 허락하고, 아울러 사진곡과 모조를 적당히 헤아려 가져다 쓰도록 하되, 감히 원곡(元穀)을 축내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엄중 경계 하도록 하소서.

1. 단천(端川)과 길주(吉州)의 당미(糖米)와 명천(明川), 고원(高原)의 태환(太還)을 변통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단천, 길주, 고원에 대해서는 준절(準折)에 의해 다른 곡식으로 환작(換作)하는 것을 청원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되, 반드시 정곡(正穀)으로 환작하게 하여 감히 피곡(皮穀)으로 준절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거듭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천에는 조(租), 속(粟), 태(太)를 서로 대납하게 하고, 단천의 피당(皮糖)을 개록(改錄)하라는 말은 크게 법의(法意)에 어긋나므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무산(茂山)의 원전(元田)을 속전(續田)으로 시행하게 하는데 대한 일입니다. 정전(正田)을 낮추어서 속전에다 부치는 것은 바로 법 밖의 사안에 관계되며 아래에서부터 앙청(仰請)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역시 경솔하게 시행하도록 허락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산의 환곡이 많은 폐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조정에서 평소에 항상 진념(軫念)하면서도 바로 잡거나 구제할 요점을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화전(火田)이나 더 일군 것을 모두 정결(正結)에 넣어 세금을 바치게 하고 환곡으로 기록하였으므로 그 숫자가 매우 많고, 묵히거나 폐기한 데 대한 백징(白徵)이 수천 결에 이르는데, 정말 도신이 논한 바와 같다면 정전이나 속전을 옮기거나 바꾸기 어렵다는 것으로 일체 미루어 나갈 수 만은 없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차관(差官)을 정하여 본 고을의 원과 함께 입회하여 적간(摘奸)하게 하며, 화전 가운데 정전에 뒤섞여 들어간 것은 사실대로 구별해서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다시 품처하도록 하소서.

1. 함흥(咸興)의 원전(元田)과 속전(續田) 가운데 묵힌 곳에 대한 탈급(頃給)과 새로 일군 곳으로 더 드러난 것에 대하여 변통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묵힌 전지에 대하여는 경작을 권하고, 새로 일군 토지를 결수에 충당하는 것은 원래 법전에 정해진 것이니, 지금 원전과 속전 가운데 묵거나 황폐해진 곳에 대하여 한꺼번에 모두 탈급하도록 하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니며, 새로 일군 것을 수효에다 강제로 정하는 것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아니나, 해마다 1파(把)의 가감도



없으니, 이는 반드시 각 고을의 잘못된 사례일 것입니다. 이 뒤로는 해마다 집복(執卜)하여 실제 숫자대로 입총(入摠)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위(知委)하여 시행하게 하며, 이와 같이 한 뒤에도 각 고을에서 한갓 감하고 줄이기만을 일삼거나 혹은 은닉, 누락시키는 폐단이 있어 뒤에 발각이 되면, 해당 수령은 결단코 전결(田結)을 환롱(幻弄)한 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이로써 일체 엄중히 경계하게 하소서.

1. 장진(長津)의 <전지(田地)를> 개량(改量)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본부(本府)의 토지는 모두가 속전(續田)인데다 묵히고 일군 것이 서로 뒤섞여 부역(賦役)이 고르지 않아 온 고을의 주민들이 모두 개량하기를 청원하였다고 합니다. 청원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되, 개량할 즈음에는 잘 살피거나 신중하게 하지 못하여 일경(一頃)이나 반묘(半畝)라도 혹시 실(實)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주민이나 국가가 폐단을 받게 되어 도리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해당 수령을 엄중 경계하여 감히 그릇되게 하여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1. 문천(文川), 홍원(洪原), 북청(北靑)의 어선세(漁船稅)를 감총(減摠)하는데 대한 일입니다. 어장(漁場)과 선척(船隻)은 본래 정해진 숫자가 있어 세납(稅納)과 수용(需用)을 보태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해청(該廳)의 절목(節目)이 극히 거둬 엄격하니, 감총하는 한 가지 일만은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장이 허물어지고 폐기되었거나 선척이 부서지고 손상된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 설치하는 어



장과 새로 만드는 선척으로 원총(元摠)을 대신 채우도록 하는 것은 곧 바꿀 수 없는 법이니, 이로써 엄중히 경계하게 하소서.

1. 온성(穩城)과 경흥(慶興) 목장말의 자산(晷産)과 고실(故失)을 감수(減數)하고 달종(撻種)을 정파(停罷)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고실(故失)이 세 번 탈나면 하나를 징수하게 하고 새끼를 낳은 세 마리의 암컷 가운데 한 마리를 바치게 하는 것은, 바로 각도의 목장에서 당연히 행하여야 할 규정이니 숫자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달마(撻馬)를 무역하여 들이는 것은 바로 종자를 얻고자 하는 뜻에서인데, 수초(水草)에 익숙하지 않아 한 마리도 생존하지 못하니, 공적으로는 해마다 곡식을 허비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필(匹)마다 대금을 징수하게 되어, 해로움은 있고 유익함은 없는 것이 참으로 도신이 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풍토와 기후가 이미 저쪽 땅[彼地]과 가깝기 때문에 번식시켜서 달종(撻種)을 취하려고 한 것은 반드시 당초부터 의의가 있었던 것이니, 갑자기 정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영흥(永興) 말응도(末鷹島)의 말을 문천(文川)의 사로도(獅老島)로 옮겨 기르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마필을 외양(隈養)하면서 목호(牧戶)를 주지 아니하고, 빈 목장을 수축(修築)하게 하면서 촌민(村民)들에게 폐단을 끼치게 되어 일이 너무나 의의가 없이 되며, 도연포(都淵浦)에 옮겨서 기르도록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으니 청원한 바에 의거하



여 시행하게 하되, 마필만 옮겨 가도록 할 수 없으니 목호를 문천에 함께 보내도록, 이로써 분부하소서.

1. 갑산(甲山)의 행전(行錢)에 대한 일입니다. 서변(西邊)은 저쪽 땅과 서로 닿아 있는 곳으로 기한을 정하여 <전지(田地)를> 묵히거나 폐기하므로 주민들의 살고 있는 곳과의 거리가 서로 모두 수백 리가 넘습니다. 그러나 북변(北邊)은 경원(慶源)과 회령(會寧) 등의 지역이 더러는 강을 사이에 두고서 닭 소리와 개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서변에서는 행전하게 하였으나, 북변에서는 막도록 한 것입니다. 갑산은 저쪽 땅과의 거리가 서변과 다름이 없고 동일한 한 도(道) 안의 변지(邊地)인데, 육진(六鎭)에는 허락하지 않고 갑산에서만 허락한다면, 일이 원칙 없이 처리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청컨대 그대로 두게 하소서.”

하니, 윤택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원도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묘당에서 품처할 일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1. 도내 26고을의 인삼값이 해마다 증가하고 가호마다 결렴(結斂)과 번전(番錢), 이전(利錢)을 거두는 것이 뼈를 자르는 듯이 지탱하기 어려운 병폐가 되니, 특별히 경작공(京作貢)을 허락하게 하는데 대한 일입니다. 관동(關東)의 인삼에 대한 폐단은 크고 작은 여러 고을을 따질 것 없이 공통된 근심거리여서, 지나간 적에 그 일년 동안 쓰고 남은 것을 계산하여 작공(作貢)하도록 변통하였습니다. 만약 폐단이



있을 때마다 변통하게 한다면, 막중(莫重)한 탕제(湯劑)에 사용하는데 남을 것이 거의 없게 될 터이니, 토공(土貢)의 뜻이 또한 정말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의 체모가 있는 바 갑자기 작공을 의논할 수 없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철원(鐵原) 등 개량(改量)을 하지 않은 9고을에 대하여 양전(量田)을 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전결(田結)이 문란한 폐단은 여러 도가 마찬가지로이지만 호서(湖西)의 진폐 책자(陳弊冊子) 가운데 양전에 대한 한 가지 일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우선 가장 시급한 곳을 시험하게 하고서 만일 실제 효과가 있으면 마땅히 차례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회계(回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1. 강릉(江陵) 등 9고을의 바닷가 주민에 대한 폐단을 변통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바닷가 주민에 대한 폐단을 신칙한 것이 전후로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만, 공헌(貢獻)을 특별히 줄이고 별복(別卜)을 영원히 막 폐지하였으니 바로잡고 구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할 터인데, 폐단이 여전하여 주민들이 애오라지 살아가지를 못하는 데 대한, 도신이 발본 색원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그 요령을 얻었다고 말할 만합니다. 바닷가의 가호(家戶)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자는 본역(本役)을 모면하려고 도모하여 간혹 교안(校案)에 의탁하거나 더러는 군임(軍任)에 오르거나 하여, 한번 들어간 뒤로는 그 자질(子姪)과 함께 육지로 이거(移居)해 버리므로 바닷가의 가호로 남은 것은 열에 한두 집도



없으니, 당연히 치루어야 할 역(役)이 치우치게 괴로운 것은 형세로 보아 필지(必至)의 것입니다. 제안(除案)한 수령을 별도로 논감(論勘)하고 육지에 사는 바닷가의 주민에게는 일례로 부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을 얻는 것이니, 도신이 논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진주인(津主人)이 점퇴(點退)하거나 조종(操縱)하는 것은 진실로 이 폐단이 심한 것이니 해호(海戶)가 직납(直納)해서 고을의 수령이 친봉(親捧)토록 하고, 진주인 명색(名色)은 영구히 혁파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 것이나, 트집을 잡아 개비(改備)하고 값을 후하게 해서 환봉(還捧)하는 풍습은 진주인보다 감영과 고을 관속들이 더 심하니, 이와 같은 곳에 대해서는 엄중히 규찰과 신칙을 더하여 나중이나 처음이나 하나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소서. 가전(價錢)의 수봉(收捧)은 자기 고을에서 가져다 바꾸게 하는 것이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만, 자기 고을에서 바꾸는 즈음에 헐값으로 강제로 취하려는 폐단 또한 반드시 있게 될 터이니, 다시 상의하고 헤아려 결정하여 폐단을 제거하려다가 폐단을 생기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소서. 모든 계하(啓下) 절목(節目) 외에 만일 첨가하여 넣을 만한 것이 있으면 서울이나 지방을 논할 것 없이 추후에 마련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기미년의 절목을 첨가하여 넣는 것은 반드시 마음대로 편리하게 논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1. 강릉(江陵)의 인삼과 화전의 세금에 대하여 10결(結)을 감



하여 주도록 허락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강릉의 대관령(大關嶺) 서쪽은 땅이 넓으면서도 메말라 살고 있는 주민이 드물고 화전으로 옛날에 일군 것도 지금은 묵히고 있으니, 지금이 지금이 아닐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1백 24결 내의 양 성조(聖朝)에서 특명으로 탕감해 준 숫자가 1백결이 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아랫사람에게 보탬을 주려는 성덕(盛德)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10결을 탕감하는 것을 아까워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급대(給代)한 수효가 3백여 냥이나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를 쫓아 판비(辦備)해 내야 할 지 모르겠으며, 또 1결의 세전(稅錢)이 30냥이나 되도록 많은 것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신으로 하여금 조목을 나열하여 보고하게 한 뒤, 다시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택하였다.



● 순조 12년 3월 13일(을유)

禮曹以各式年京外忠孝烈狀報政府 分等抄啓忠臣旌閭秩 孝子旌閭秩 烈女旌閭秩 孝婦旌閭秩 忠臣贈職秩 孝子贈職秩

[풀이]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의 경외(京外)의 충, 효, 열의 문서’를 정부(政府)에 보고했는데, 등급을 나누어 초계(抄啓)하였다.

충신 정려질(忠臣旌閭秩) [보은(報恩)의 고 부호군 이명백(李命百)은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의 문인(門人)으로 왜변(倭變) 때 창의(倡義)하여 보은을 지키다가 적암(赤巖)의 전투에서 죽었고, 청산(靑山)의 고 주부 박문강(朴文綱)은 정축년 노변(虜變) 때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鄭世規)를 따라 음죽(陰竹)에서 죽었다.]

효자 정려질(孝子旌閭秩) [서울 사는 고 참봉 오재능(吳載能), 고 교관(教官) 홍석보(洪錫普), 고 현령 홍헌유(洪獻猷), 고 도정 윤면원(尹勉遠), 고 참판 유의(柳誼), 고 학생 장후근(張厚根), 고 생원 이광유(李光裕), 고 학생 김치형(金致亨), 고 생원 홍헌모(洪憲謨), 경주부(慶州府) 고 사인(士人) 허호(許浩), 개성부(開城府) 고 사인 한광겸(韓光謙), 여주(驪州) 고학생 구석의(具錫儀), 영동(永同) 고 통덕랑(通德郎) 이현규(李顯揆), 목천(木川) 고 사인 김수필(金壽弼), 옥구(沃溝) 고 양인(良人) 정시손(鄭時



孫), 전주(全州) 고 한량 백행량(白行良), 상주(尙州) 고 사인 홍도운(洪道運), 금산(金山) 고 학생 조응방(曹應邦), 안동(安東) 고 학생 금홍달(琴弘達), 고 학생 이한오(李漢伍), 거제(巨濟) 고 학생 정유(鄭游), 평산(平山) 고 동지(同知) 조만길(趙萬吉), 평양(平壤) 고 사인 김취의(金就義), 위원(渭原) 고 사인 강건항(姜建恒), 안변(安邊)장교 신만화(申萬和), 함흥(咸興) 고 부사 위광익(魏光翼)이다.]

열녀 정려질(烈女旌閭秩) [서울 사는 고 사인 강언성(姜彦成)의 처 이씨(李氏), 고 학생 이원식(李元植)의 처 최씨(崔氏), 고 통덕랑 김노직(金魯直)의 처 송씨(宋氏), 고 교관 홍석보(洪碩普)의 처 조씨(曹氏), 고 학생 이철운(李轍運)의 처 유씨(柳氏), 고 생원 홍헌모(洪憲謨)의 처 윤씨, 고 사인 임우전(林雨田)의 처 정씨(鄭氏), 고 한량 김유항(金有恒)의 처 신씨(辛氏)와 고 학생 장후근(張厚根)의 처 이씨, 고 군수 정문재(鄭文在)의 처 김씨, 무의공(武毅公) 조심태(趙心泰)의 처 송씨, 고 생원 정우영(鄭祐榮)의 처 윤씨, 고 헌납 정지원(丁志元)의 처 이씨, 고 목사 홍술조(洪述祖)의 처 이씨, 고 생원 조의철(趙宜喆)의 처 이씨, 고 학생 서경보(徐慶輔)의 처 김씨, 고 현령 남성로(南省老)의 처 조씨(趙氏), 양인 김세봉(金世鳳)의 처 박성(朴姓), 고 학생 박종건(朴宗楡)의 처 김씨, 고 동지 이사룡(李思龍)의 처 고씨(高氏), 고 학생 이장철(李章喆)의 처 송씨, 개성부 고 학생 진득충(秦得忠)의 처 임씨(林氏), 고 사인 이영필(李英弼)의 처 김씨와 그의 종질(從姪)인 이응번(李應蕃)의 처 김씨, 영평(永平) 고 학생 김순인(金順仁)의 처 변씨(邊氏), 안산(安山) 고 사인 이도용(李道



容)의 처 김씨, 적성(積城) 고 학생 경육(慶堉)의 처 남씨(南氏),  
과주(坡州) 고 사인 김한규(金漢奎)의 처 조씨(趙氏), 통진(通津)  
고 주부 윤재익(尹在益)의 처 이씨, 과천(果川) 고 학생 홍유룡  
(洪有龍)의 처 전씨(全氏), 양주(楊州) 고 사인 홍선영(洪善泳)의  
처 조씨(曹氏), 여주(驪州) 고 학생 이광모(李光模)의 처 박씨,  
고사인 권순건(權順健)의 처 이씨, 연산(連山) 고 사인 백상준  
(白尙準)의 처 송씨, 서원(西原) 고 사인 오세환(吳世煥)의 처  
김씨, 목천(木川) 고 사인 남섭(南燮)의 처 김씨, 공주(公州) 고  
부사 유희원(柳晦源)의 처 김씨와 고 사인 이익선(李翼善)의 처  
한씨(韓氏), 회덕(懷德) 고 충목공(忠穆公) 이시직(李時稷)의 처  
이씨, 홍산(鴻山) 고 처녀 윤씨, 익산(益山) 고 사인 권시하(權時  
夏)의 처 조씨(趙氏), 창평(昌平) 고 사인 양학언(梁學彦)의 처  
이씨, 남평(南平) 고 양인 박처준(朴處俊)의 처 김성(金姓), 함평  
(咸平) 고 부장(部將) 윤해(尹海)의 처 강씨(康氏)와 고 사인 김  
석규(金碩圭)의 처 진씨(陳氏), 무안(務安) 고 사인 서익천(徐益  
天)의 처 정씨(鄭氏), 남원(南原) 고 사인 김익(金弼)의 처 이씨,  
고부(古阜) 고 사인 김방수(金芳洙)의 처 정씨(丁氏), 동북(同福)  
고 양인 정쌍룡(鄭雙龍)의 처 이성(李姓), 창녕(昌寧) 고 사인 성  
효열(成孝悅)의 처 손씨(孫氏), 경주(慶州) 관노(官奴) 현옥(顯玉)  
의 처 황아(黃娥), 안의(安義) 고 사인 김세적(金世績)의 처 허씨  
(許氏), 영덕(盈德) 고 사인 신길환(申吉煥)의 처 권씨(權氏), 선  
산(善山) 사노(私奴) 복재(卜才)의 처 김녀(金女), 밀양(密陽) 고  
사인 이석린(李錫麟)의 처 박씨, 통천(通川) 고 사인 임봉원(林  
鵬遠)의 처 고씨(高氏), 원주(原州) 고 사인 권유(權愉)의 처 원



씨(元氏), 금성(金城) 고 사인 배정로(裵廷老)의 처 진씨(秦氏), 금화(金化) 고 사인 이한유(李漢裕)의 처 한씨(韓氏), 횡성(橫城) 고 사인 김광한(金光漢)의 처 원씨(元氏), 정선(旌善) 고 공생(貢生) 고지걸(高志屹)의 처 김성(金姓), 삼척(三陟) 고 공생 김윤근(金允瑾)의 처 남성(南姓), 재령(載寧) 고 업무(業武) 손언장(孫彦章)의 처 한씨(韓氏), 장연(長淵) 고 사인 박한성(朴漢成)의 처 김씨, 서흥(瑞興) 고 사인 신재순(申在舜)의 처 유씨(柳氏), 해주(海州) 고 영리(營吏) 지상함(池相涵)의 처 김성(金姓), 의주(義州) 고 사인 백광련(白光鍊)의 처 최씨, 곽산(郭山) 고 학생 지덕룡(池德龍)의 처 김씨, 삼등(三登) 고 통덕랑 주평(朱坪)의 처 김씨, 강계(江界) 고 학생 김성삼(金省三)의 처 김씨, 평양(平壤) 고 사인 김이곤(金理坤)의 처 이씨, 개천(价川) 고 사인 이일초(李日初)의 처 김씨, 영흥(永興) 고 학생 김왕추(金旺秋)의 처 장씨(張氏), 함흥(咸興)의 고 학생李宗눌(李宗訥)

효부 정려질(孝婦旌閭秩) [서울에 사는 고 현령 홍헌유(洪獻猷)의 처 이씨, 예천(禮泉) 고 사인 이진헌(李鎭憲)의 처 권씨(權氏)이다.]

충신 증직질(忠臣贈職秩) [영동(永同)의 고 목사(牧使) 이수(李洙)는 기사년 곤전(坤殿)께서 손위(遜位)하셨을 때 벼슬하지 않고 스스로 폐(廢)했던 사람이다. 청도(淸道)의 고 만호(萬戶) 박경선(朴慶宣), 고 장사랑(將仕郎) 박경인(朴慶因)은 왜변(倭變) 때 의병을 일으켜 전사(戰死)했던 사람이다. 안의(安義)의 고 사인 김우석(金虞錫)은 무신년 역적 정희량(鄭希亮)의 변 때 창의(倡義)하여 역적을 잡았던 사람이다. 대구(大丘)의 고 부장(副將)



허득량(許得良)과 그의 종제(從弟) 고 정(正) 허복량(許復良)은 정축년 노변(虜變) 때 경상 병사 민영(閔楳)을 따라 쌍령(雙嶺)에서 전사했던 사람이다. 고 현령 최계(崔誠)와 그 아우 최인(崔認)과 그 종자(從子) 최동보(崔東輔)는 왜변 때 창의하여 공을 쌓은 사람이다. 밀양(密陽)의 고 참의(參議) 손조서(孫肇瑞)는 단묘(端廟) 때 육신(六臣)의 일이 있고 난 뒤 뉘우치고 스스로 폐기(廢棄)했던 사람이다. 상주(尙州)의 고 처사(處士) 채득기(蔡得沂)는 정축년에 남한 산성에서 내려온뒤 과거를 보지 않고 스스로 깨끗함을 지켰던 사람이다.]

효자 증직질(孝子贈職秩) [서울 사는 고 지사(知事) 황운하(黃運河), 고 학생 유해균(柳海均), 고 남학 교수(南學教授) 현계정(玄啓楨), 고 학생 이혼(李混), 고 감역(監役) 김정주(金鼎柱), 고 학생 심사정(沈師定), 고 사인 홍병오(洪秉五), 고 서윤(庶尹) 홍계서(洪啓瑞), 고 동지(同知) 이사룡(李思龍), 수원부(水原府) 고 참봉(參奉) 윤형로(尹衡老), 양주(楊州) 고 학생 이삼석(李三錫), 장단(長湍) 고 사인 한광세(韓光世), 양천(陽川) 고 통덕랑 김송제(金嵩濟), 부여(扶餘) 고 사인 최사백(崔賜百), 영동(永同) 고 사인 최복원(崔復源), 목천(木川) 고 정랑(正郎) 조명(趙銘), 공주(公州) 고 사인 윤박(尹搏), 서원(西原) 고 사인 송상휘(宋尙輝), 홍귀서(洪龜瑞), 진천(鎭川) 고 통덕랑 정도(鄭棹), 전주(全州) 고 사인 조대수(趙大壽), 이진운(李鎭運), 영암(靈巖) 고 직장(直長) 신사준(愼師浚), 장수(長水) 고 동지 김성보(金聖輔), 능주(綾州) 고 사인 박헌가(朴獻可), 고부(古阜) 고 사인 송수현(宋守賢), 금구(金溝) 고 사인 송정모(宋廷模), 지례(知禮) 고 사인 이수호(李



遂浩), 함창(咸昌) 고 사인 조수구(趙守球), 고성(固城) 고 사인 백봉래(白鳳來), 영월(寧越) 고 사인 엄계태(嚴啓泰), 강릉(江陵) 고 사인 신갑동(辛甲東), 고 생원 최현민(崔顯珉), 성천(成川) 고 현감 나홍점(羅弘漸), 강서(江西)고 학생 한태형(韓泰亨), 상원(祥原) 고 학생 방덕일(方德一), 중화(中和) 고 학생 한창대(韓昌岱), 용강(龍岡) 고 사인 김진수(金震秀), 삼화(三和) 고 사인 김처겸(金處謙)이다.]

### ● 순조 17년 3월 16일(기미)

推鞠 鞠罪人朴忠俊安有謙蔡壽永先是右議政金思穆戶曹判書朴宗慶承命入侍思穆啓言日昨戶判家有人自言 居延豐來告變 戶判卽送捕廳捧招以入矣 宗慶曰其所云云萬萬驚惋且告變人動靜 極爲殊常請更令捕廳 合坐究覈出招人隨現發直爲秘關於該道使之捕捉上送矣 至是思穆又請對言 今日得見捕廳合坐所捧之招萬萬驚心 而出於因供之一人卽在輦轂之下而有班名者云 當自王府設鞠究覈卽命凶絕悖不敢道不忍聞之說 此等凶賊不可晷刻容貸 今已日暮夜未明之前 例不得用法待明朝直捧結案 仍爲正法斷不可已也 上許之 諸大臣又言 江華罪人之至今偃息 寔出於惻怛之聖意而今則逆招所出如是狼藉雖以 殿下惻怛之心決不可一向薪持 今此諸囚不過蟻蝨之類 自當次第就戮而凶徒之根窩 若又如前假貸



則將不知幾箇梟獍之徒 看作奇貨從以籍口 而何樣禍機 伏在何地今番則斷以大義 快正典刑教曰 從當下教壽永長水人或稱賣藥或托行商交結賊黨 傳播訛言乃與金啓浩安有謙朴忠俊申盛文等諸漢 相聚於全州金孟億家以海舶來泊 景來生存之說 煽動人心又以先奪完營次向錦營設計而抄武士挾匕入京 刺殺柄用諸臣邀來沁都罪人 以舉大事事不成則自古群山 逃入濟州 請兵於馬島等說 爛漫酬酌 及忠俊發告逮捕諸賊屢加訊覈 壽永則又有鞫庭凶言以謀叛大逆結案 有謙盛文孟億以謀逆同參結案 而時又有忠清兵營所捉火賊張應人權堦等 以瑞緒相連一體鞫問應人堦及申在奎以知情不告 結案兵正法忠俊減死遠配 其餘株連諸囚 並酌放啓浩在逃則捕廳訶之

#### [풀이]

추국하였다. [영부사 이시수(李時秀), 판부사 김재찬(金載瓚), 한용귀(韓用龜), 위관(委官)인 우의정 김사목(金思穆), 판의금 박종경(朴宗慶), 지의금 이희갑(李羲甲), 동의금 이유명(李惟命), 권식(權焯)이다.] 추국 죄인은 박충준(朴忠俊), 안유겸(安有謙), 채수영(蔡壽永)이었다. 이에 앞서 우의정 김사목과 호조 판서 박종경이 명을 받들고 입시하였는데, 김사목이 아뢰기를,

“며칠 전 호조 판서의 집에 자칭 연풍(延豐)에 산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변(告變)을 하였으므로, 호조 판서가 즉시 포도청으로 보내서 공초(供招)를 받아 올리게 하였습니다.”



하고, 박종경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는 내용이 대단히 해괴할 뿐만 아니라 고변인의 동정이 매우 수상하니, 청컨대 다시 포도청으로 하여금 합좌(合坐)하여 끝까지 핵실하게 하고, 공초에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족족 곧바로 해당 도(道)에 비밀 공문[秘關]을 보내어 잡아 올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김사목이 또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오늘 포도청에서 합좌하여 받은 공초를 보니, 지극히 놀라 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공초에 나온 어떤 사람은 연곡지하(輦轂之下)에 사는데, 반명(班名)이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의당 의금부에서 국청을 열고 죄상을 따져 실정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니, 즉시 국청을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시임, 원임 대신이 의금부의 여러 당상을 인솔하고 청대하여 말하기를,

“죄인 채수영(蔡壽永)을 세밀히 캐어 물으니 매우 흉패(凶悖)하여 감히 입에 담지 못하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흉적들은 한시라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날이 저물었고 밤이 새기 전에는 으레 법을 집행할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바로 결안(結案)을 받아 즉시 정법(正法)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또 말하기를,

“강화 죄인(江華罪人)이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 있는 것은 실로 측은(惻怛)하신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이제는



역적의 공초에서 이처럼 나왔으니, 비록 전하의 측달하신 마음으로도 결코 줄곧 고집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번의 이러한 여러 죄수들은 서캐같이 하찮은 무리에 지나지 않으니 응당 차례차례 죽음을 당할 것이나, 흉도들의 근본을 또 전처럼 살려 둘 것 같으면 앞으로 몇 꽤거리의 흉악한 무리들이 기화(奇貨)로 생각해서 구실을 삼아 따를 것이니, 어떠한 화기(禍機)가 어느 곳에서 태동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쾌히 법을 바로 잡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뒤에 마땅히 하교하겠다.”

하였다. 채수영은 장수(長水) 사람인데, 혹은 약을 판다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행상이라고도 칭탁하면서 역적의 무리들과 교결(交結)하여 유언 비어를 퍼뜨렸다. 결국에는 김계호(金啓浩), 안유겸(安有謙), 박충준(朴忠俊), 신성문(申盛文) 등의 여러 놈들과 전주 김맹억(金孟億)의 집에서 모여 황해도에서 배가 내려온다느니 홍경래(洪景來)가 살아있다느니 하는 말로 인심을 선동하였고, 또 먼저 완영(完營)을 뺏은 다음에는 금영(錦營)으로 향할 계획이었는데, 무사(武士)를 뽑아 비수(匕首)를 들려 서울로 들여보내서 집권한 여러 신하들을 찔러 죽이고, 강화 죄인을 모셔와 큰 일을 일으킨다 하였으며, 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군산(古群山)으로 해서 제주에 도망해 들어가서 대마도에 청병(請兵)하겠다는 등의 말로 한창 수작하다가, 박충준의 발고로 제적(諸賊)이 체포되어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가하여 실정을 밝혀내게 된 것이다. 채수영은 또 국정



(鞫庭)에서 흉언을 발설하여 모반 대역죄로 결안(結案)하였고, 안유겸, 신성문, 김맹억은 모역에 동참한 것으로 결안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또 충청 병영(忠淸兵營)에서 체포한 화적(火賊) 장응인(張應人), 권훈(權埴) 등이 단서가 서로 연관되어 함께 국문하였는데, 장응인, 권훈 및 신재규(申在奎)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발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안하여 아울러 정법(正法)하고, 박충준은 감사(減死)하여 원배(遠配)하였으며, 나머지 연루된 여러 죄수들은 모두 참작하여 방면하였는데, 김계호는 도피하였으므로 포도청에 염탐할 것을 신칙하였다.





● 현종 8년 8월 10일(병술)

全羅左道暗行御史李宗秉干熙政堂 罪長興前府使鄭冕榮樂  
 安前郡守申在貞光陽前縣監沈宜泳潭陽前府使鄭文升雲峰縣  
 監許策和順縣監洪健厚長水縣監尹榮翼寶城前郡守南錫龜求  
 禮前縣監林相弼南原前前府使南駿應淳昌前前郡守洪升淵樂  
 安前前郡守金鼎遠等有差 因御史書啓也

[풀이]

전라좌도 암행 어사(全羅左道暗行御史) 이종병(李宗秉)을 회정당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전 장흥 부사(長興府使) 정면영(鄭冕榮), 전 낙안 군수(樂安郡守) 신재정(申在貞), 전 광양 현감(光陽縣監) 심의영(沈宜泳), 전 담양 부사(潭陽府使) 정문승(鄭文升), 운봉 현감(雲峰縣監) 허책(許策), 화순 현감(和順縣監) 홍건후(洪健厚), 장수 현감(長水縣監) 윤영익(尹榮翼), 전 보성 군수(寶城郡守) 남석구(南錫龜), 전 구례 현감(求禮縣監) 임상필(林相弼), 전전 남원 부사(南原府使) 남준응(南駿應), 전전 순창 군수



(淳昌郡守) 홍승연(洪升淵), 전전 낙안 군수(樂安郡守) 김정원(金鼎遠) 등을 차등있게 죄주었으니,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함이었다.

● 현종 13년 11월 25일(신축)

罪雲峰前縣監鄭裕健求禮前縣監姜集光陽縣監徐有恕和順縣監宋益洙樂安前郡守閔重憲南原前前縣監宋在誼長水前縣監鄭胄錫寶城郡守李定熙等有差 因御使書啓也

[풀이]

운봉 전 현감(雲峯前縣監) 정유건(鄭裕健), 구례 전 현감(求禮前縣監) 강집(姜集), 광양 현감(光陽縣監) 서유서(徐有恕), 화순 현감(和順縣監) 송익수(宋益洙), 낙안 전 군수(樂安前郡守) 민중헌(閔重憲), 남원 전전 현감(南原前前縣監) 송재의(宋在誼), 장수 전 현감(長水前縣監) 정주석(鄭胄錫), 보성 군수(寶城郡守) 이정희(李定熙) 등을 차등을 두어 죄주었다. 어사(御史)의 서계(書啓)에 말미암은 것이다.





● 고종 2년 5월 10일

命長水逋吏金始鎔令該道監營臬警因廟啓也

[풀이]

장수에서 횡령죄를 범한 범인 김시용은 해당 감영에서 목을 잘라 매답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묘당의 제의에 의한 것이었다.

● 고종 5년 11월 22일

召見全羅左道暗行御史鄭稷朝因書啓羅光陽前縣監李敏哲長水前縣監李象淵順天前營將朴鏞和薪智島前萬戶權槩等順天府使柳駟長興府使申錫游長水縣監李濟龜雲峯縣監任百源求禮縣監金教直等竝褒施陞敘



[풀이]

전라좌도 암행어사 정직조를 불러들여 만나보고 서면보고에 근거하여 광양 전현감 이민철, 장수 전 현감 이상연, 순천 전 영장 박용화, 신지도 전 만호 권은 등에게는 죄를 주고 순천 부사 유상, 장흥 부사 신석유, 장수현감 이제귀, 운봉현감 임백원, 구례현감 김교직 등에게는 모두 표창으로 벼슬을 올려 주었다.

### ● 고종 8년 4월 29일

進講 三軍府以羅州牧砲軍一百名珍島府火砲軍一百名潭陽府砲軍二十五名茂朱府砲軍二十二名長興府砲軍五十名順天府別武士二百名砲軍五十名礪山府別砲軍一百名金提郡砲軍四十名臨陂縣火砲軍三十名光陽縣砲軍一百名南原縣火砲軍一百名長水縣火砲軍十五名泰仁縣火砲軍二十九名扶安縣砲軍六十名咸平縣砲軍五十名務安縣砲軍二十二名咸悅縣砲軍三十名加里浦鎭砲軍七十四名法聖鎭沙格砲手三百三十六名群山倉漕軍砲手三百四名聖堂倉火砲漕軍一百九十二名設置啓又啓防守備禦之竝用砲射兵家萬全之策也扈衛軍官五十命擇其善射者使將官營率罔夜下送于沁營而弓矢則就武庫所在中量宜題給使之秘密舉行事分付何如允之仍教曰長弓一百二十張筒箇二百部長箭五百浮片箭二百浮筒兒二百箇自帑庫內下矣下送沁營量宜分給以爲備禦焉



[풀이]

3군부에서 보고하였다.

나주목에 포군 100명, 진도부에 화포군 100명, 담양부에 포군 25명, 무주부에 포군 22명, 장흥부에 포군 50명, 순천부에 별무사 200명과 포군 50명, 려산부에 별포군 100명, 김제군에 포군 40명, 임피현에 화포군 30명, 광양현에 포군 100명, 남원현에 화포군 100명, 장수현에 화포군 15명, 태인현에 화포군 29명, 부안현에 포군 60명, 함평현에 포군 50명, 무안현에 포군 22명, 함열현에 포군 30명, 가리포진에 포군 74명, 법성진에 사공, 격군, 포수를 336명, 군산창에 조군, 포수를 304명, 성당창에 화포군, 조군 192명을 내왔습니다.

또 제의하기를 “적을 방어하는 데서는 총 쏘는 군사와 활 쏘는 군사를 함께 쓰는 것은 군사가들에게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대책입니다. 호위군관 50명을 활을 잘 쏘는 사람들로 선발하여 장수가 인솔하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강화군영에 내려 보내며 활과 화살은 군기시에 있는 것 중에서 적당히 떼주고 비밀리에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승인하면서 지시하기를 “긴 활 120장과 통개 200부, 긴 화살 500부, 편전 200부, 통아 200개를 대궐 창고에서 내다가 강화군영에 내려보내어 적당히 나누어 줌으로써 방어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고종 15년 10월 19일

教曰長水縣竄配罪人金箕錫放

[풀어] \_\_\_\_\_

지시하시기를 “장수현에 귀양보낸 죄인 김기석을 놓아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장수현감>

연 번	장 수 현 감	왕 조 이 름	쪽
1	崔得之	세종 7년 12월 28일	32
2	吳致行	세종 16년 2월 4일	37
3	崔宗復	세조 2년 1월 10일	133
4	金永鼎	성종 2년 12월 26일	166
5	梁井明	성종 7년 12월 9일	192
6	閔繼點	명종 2년 7월 5일	230
7	趙 昱	명종 12년 11월 30일	232
8	愼友善	선조 6년 9월 20일	239
9	趙希顔	선조 11년 3월 28일	241
10	康復誠	선조 30년 10월 13일	259
11	嚴思敬	선조 30년 11월 2일	265
12	都與國	선조 32년 8월 19일	269
13	尹景男	선조 34년 8월 5일	272
14	奇 蘭	광해 1년 2월 12일	277
15	李繼祉	광해 2년 12월 28일	279
16	河 性	광해 6년 7월 3일	280
17	李鼎臣	광해 14년 8월 26일	287
18	張遇漢	인조 2년 2월 11일	293
19	鄭 沔	인조 12년 2월 16일	307
20	韓鼎相	숙종 1년 2월 23일	326
21	安汝益	숙종 20년 5월 20일	354
22	金 混	숙종 34년 2월 12일	367
23	權 高	숙종 37년 11월 27일	369
24	金鎭望	숙종 40년 12월 27일	375
25	任 散	숙종 43년 6월 29일	375
26	李台徵	영조 10년 7월 14일	417



27	鄭 權	정조 13년 9월 9일	434
28	尹榮翼	헌종 8년 8월 10일	486
29	鄭胄錫	헌종 13년 11월 25일	487
30	李象淵	고종 5년 11월 22일	488
31	李濟龜	고종 5년 11월 22일	488



찾아보기





## 찾아보기

### 경 종

- 3년 11월 21일 / 377
- 경종개수실록 3년 11월 21일 / 380

- 10년 4월 19일 / 282
- 10년 4월 27일 / 284
- 14년 8월 15일 / 285
- 14년 8월 26일 / 287

### 고 종

- 2년 5월 10일 / 488
- 5년 11월 22일 / 488
- 8년 4월 29일 / 489
- 15년 10월 19일 / 491

### 단 종

- 1년 6월 9일 / 111
- 2년 12월 28일 / 119
- 3년 4월 24일 / 120

### 광 예

- 1년 2월 12일 / 277
- 2년 12월 28일 / 279
- 6년 7월 3일 / 280
- 10년 3월 25일 / 281
- 10년 3월 28일 / 282

### 명 종

- 2년 4월 19일 / 229
- 2년 7월 5일 / 230
- 11년 9월 29일 / 231
- 12년 11월 30일 / 232
- 21년 7월 19일 / 233





**문 중**

- 1년 6월 19일 / 72
- 2년 2월 8일 / 79
- 원년 9월 19일 / 81

**선 조**

- 6년 9월 20일 / 239
- 11년 3월 28일 / 241
- 26년 6월 5일 / 242
- 26년 7월 20일 / 248
- 26년 11월 9일 / 251
- 29년 3월 4일 / 253
- 30년 10월 13일 / 259
- 30년 10월 21일 / 263
- 30년 11월 2일 / 265
- 30년 12월 16일 / 267
- 32년 8월 19일 / 269
- 34년 8월 5일 / 272

- 39년 11월 28일 / 273
- 선조수정실록 25년 7월 1일 / 276

**성 중**

- 1년 2월 3일 / 148
- 2년 12월 26일 / 166
- 3년 2월 1일 / 167
- 7년 12월 9일 / 192
- 11년 3월 21일 / 193
- 13년 12월 12일 / 197
- 18년 5월 17일 / 198
- 22년 7월 4일 / 198

**세 조**

- 1년 9월 11일 / 121
- 2년 1월 10일 / 133
- 3년 10월 20일 / 134





- 12년 7월 12일 / 139
- 14년 1월 7일 /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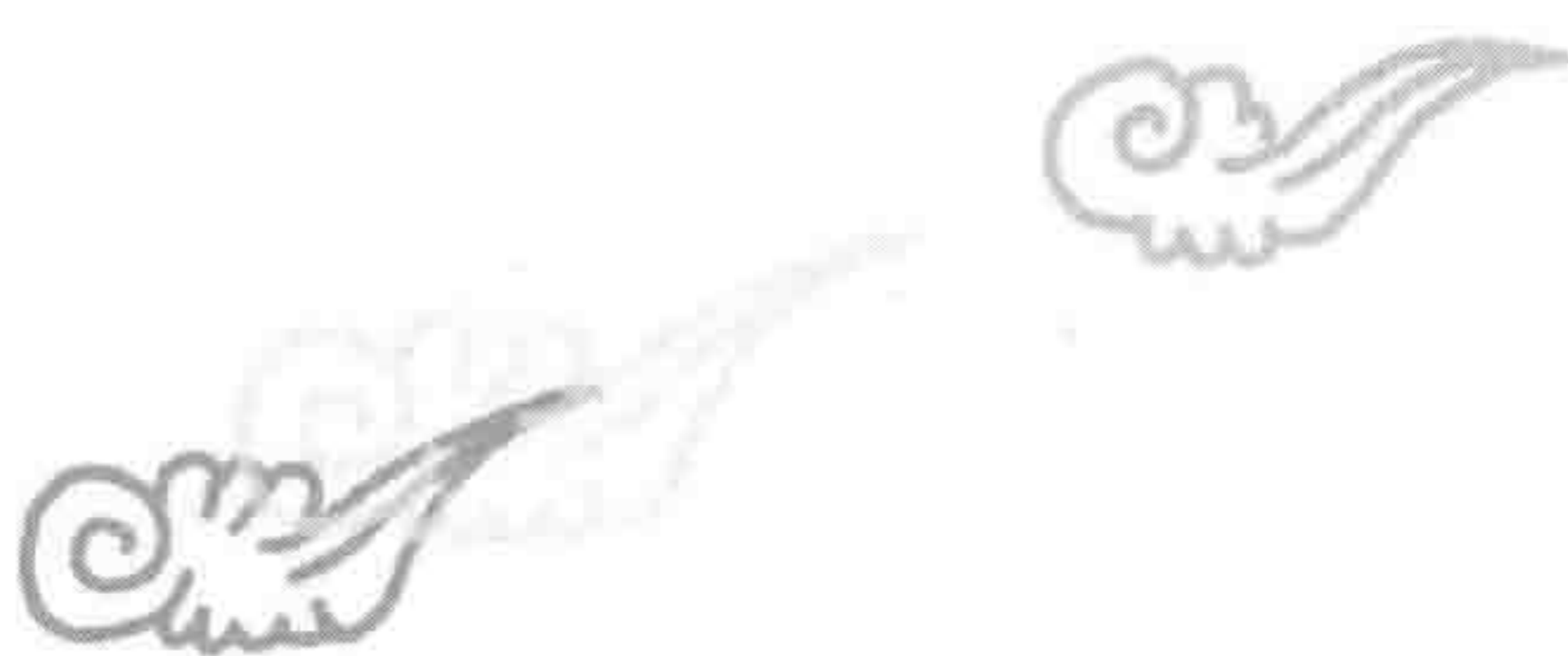
**수** **중**

**세** **중**

- 4년 3월 9일 / 32
- 7년 12월 28일 / 32
- 9년 9월 15일 / 33
- 10년 7월 14일 / 34
- 12년 4월 18일 / 34
- 14년 6월 23일 / 36
- 16년 2월 4일 / 37
- 27년 7월 13일 / 38
- 30년 5월 21일 / 51
- 150지리지/경상도/진주목/안음현 / 52
- 150지리지/경상도/경상도 / 53
- 151지리지/전라도/전라도 / 64
- 151지리지/전라도/남원도호부 / 79
- 151지리지/전라도/남원도호부/장수현 / 83
- 151지리지/전라도/남원도호부/진안현 / 85

- 1년 2월 23일 / 326
- 4년 11월 19일 / 327
- 12년 9월 6일 / 327
- 12년 11월 29일 / 332
- 20년 5월 20일 / 354
- 21년 8월 1일 / 355
- 22년 2월 3일 / 356
- 27년 10월 24일 / 359
- 34년 2월 12일 / 367
- 37년 11월 5일 / 369
- 37년 11월 27일 / 372
- 40년 12월 27일 / 375
- 43년 6월 29일 / 375





**순 조**

- 2년 9월 12일 / 439
- 11년 3월 30일 / 442
- 12년 3월 13일 / 476
- 17년 3월 16일 / 481

- 33년 3월 1일 / 419
- 39년 8월 1일 / 420

**연 신**

- 8년 5월 28일 / 206

**영 조**

- 1년 10월 16일 / 382
- 5년 4월 6일 / 385
- 9년 8월 7일 / 408
- 9년 11월 15일 / 413
- 10년 7월 14일 / 417
- 33년 1월 18일 / 418

**인 조**

- 1년 4월 11일 / 290
- 2년 2월 11일 / 293
- 2년 7월 12일 / 293
- 3년 1월 17일 / 300
- 4년 3월 23일 / 301
- 6년 9월 15일 / 302
- 12년 2월 16일 / 307
- 17년 10월 8일 / 308

**정 조**

- 8년 4월 30일 / 424
- 10년 11월 11일 / 427
- 11년 5월 23일 / 428





- 13년 9월 9일 / 434
- 17년 5월 19일 / 435

**증 증**

- 8년 4월 13일 / 207
- 11년 9월 10일 / 208
- 12년 4월 1일 / 209
- 13년 4월 27일 / 210
- 14년 10월 6일 / 210
- 15년 4월 8일 / 211
- 15년 4월 13일 / 211
- 17년 4월 7일 / 212
- 19년 4월 10일 / 213
- 21년 7월 3일 / 213
- 23년 4월 14일 / 220
- 23년 8월 21일 / 220
- 25년 8월 19일 / 226
- 37년 7월 3일 / 226
- 37년 12월 22일 / 227

- 39년 2월 3일 / 228

**테 증**

- 12년 9월 8일 / 31
- 16년 4월 29일 / 31

**면 증**

- 8년 8월 10일 / 486
- 13년 11월 25일 / 487

**면 증**

- 2년 8월 4일 / 310
- 7년 3월 5일 / 310
- 7년 9월 13일 / 311
- 10년 5월 28일 / 312





- 11년 4월 23일 / 312
- 현종개수실록 2년 8월 4일 / 313
- 현종개수실록 7년 2월 23일 / 313
- 현종개수실록 7년 3월 5일 / 323
- 현종개수실록 7년 9월 13일 / 324
- 현종개수실록 10년 5월 28일 / 324

**표 중**

- 3년 9월 6일 / 309
- 9년 4월 22일 / 309



책임연구원 : 오 종 근(동신대 교수)

보조연구원 : 손 선 희(대학원생)

노 하 중(대학원생)

김 일 동(어문학과)

김 향 미(어문학과)

김 경 모(어문학과)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長水史料

1999년 11월 25일 인 쇄

1999년 11월 30일 발 행

역은이 / 오 종 근

발행인 / 김 진 영

발 행 / 장수문화원

인 쇄 / 대인문화

〈비매품〉

\* 연락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장수문화원 (0656) 351-5349

<이 책은 군비보조에 의해 발행되었음>

---





워은이 吳宗根

전북 남원 출생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현재 동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저서〉

- ▶ 한국서사문학의 연구(형설출판사, 1995)
- ▶ 남원지방 민간신앙연구(도서출판 정, 1996)
- ▶ 나주지방 구전민간신앙(도서출판 정, 1997)
- ▶ 영산강 유역사 연구(도서출판 날빛, 1997)
- ▶ 장수지방 민속문화(도서출판 서진, 1998)
- ▶ 언어와 문장(도서출판 예원, 1998)
- ▶ 언어와 문학(도서출판 예원, 1998)
- ▶ 한자 2000자 쓰기 교본(대인문화, 1999)
- ▶ 여보계 산정에 오르거든 뺨뿔부터 보거나(수상집, 1996)

그외 다수의 논문이 있음.



조선왕조실록 자료조사팀(동심대)

책임연구원 : 오 종 근(동신대 교수, 문학박사)  
보조연구원 : 손 선 희(조선대 대학원생)  
노 하 중(조선대 대학원생)  
김 일 동(동신대 어문학과)  
김 향 미(동신대 어문학과)  
김 경 모(동신대 어문학과)



